

춘계 학술대회

동학(갑오)농민혁명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 일 시 : 1994. 5. 20 (금) / 21 (토)
- 장 소 : 건국대학교 상허기념도서관  
6 층 소회의실

한국정치외교사학회

춘계 학술대회

# 동학(갑오)농민혁명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 일 시 : 1994. 5. 20 (금) / 21 (토)
- 장 소 : 건국대학교 상허기념도서관  
6 층 소회의실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目 次

1890년대의 國內政治狀況 -----	이달순 .	1
1890년대의 사상적 흐름 -----	이택휘 .	
1890년대의 국제적 환경 -----	김경창 .	23
甲午 農民革命의 發生史的 背景 -----	申國柱 .	57
東學農民戰爭과 淸日兩國의 外交 -----	박일근 .	91
북한학계의 동학농민혁명 평가 -----	조 민 .	147



## 1890년대의 國內政治狀況

이 달 순\*

I. 머리말	IV. 지배자의 개혁
II. 지배자간의 극한 대립	1. 갑오개혁
1. 민비세력의 양강음	2. 대한제국
2. 태평 10년과 민비세도정치 종말	3. 황국협회의 반동
3. 민비세도와 부패	V. 맺은말
III. 피지배자의 정치참여	
1. 사회적 불안과 민요·민란	
2. 동학교도혁명	
3. 민주운동—독립협회	

## I. 머리말

정치의 기본 성격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에 있다고 한다. 말하자면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대립 관계인 것이다. 지배자는 그 지배의 범역을 될 수 있는 한 확대하려고 한다. 지배자가 지배의 범역을 확대한다는 것은 피지배자의 자유범역을 축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피지배자가 자유의 범역을 확대 한다는 것은 지배자의 지배의 범역을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양자의 대립관계는 힘에 의해서 결정된다. 피지배자의 경제적 생활이 전적으로 지배자에 의존하고 있는 사회에 있어서 지배자가 생활여탈권을 장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두 사람의 사회적위치는 물론 예외는 있지만 그 사회적 기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피지배자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또 지적으로 향상하여 그의 실력에 상부하는 사회적 위치를 요구하게 되면 지배자와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다. 피지배자로 부터 요구가 제기된다는 것은 즉 사회적 모순의 노정인 것이다. 다시말해서 피지배자의 사회적위치가 그의 실력과

\* 수원대 교수

상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때 지배자는 폭력적 지배수단을 행사해서라도 그 지배의 범역을 유지하려고 하나 결국에 가서는 피지배자는 그들의 실력에 상부하는 사회적 위치를 갖게 되고야 마는 것이다. 그래서 피지배자의 자유의 범역은 그 만큼 확대되고 지배자의 지배의 범역은 그 만큼 축소되는 것이다. 정치의 기본체제는 이러한 변화를 거듭한다. 근대적 민주주의는 이러한 변화에 의해서 도달된 것이다.(1)

1890년대 우리나라의 정치상황은 바로 「피지배자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또 지적으로 향상하여 그의 실력에 상부하는 사회적 위치를 요구하게 되면서 지배자와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시대였다. 피지배자로부터 요구가 제기된다는 것은 즉 사회적 모순의 노정 이라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치상황에서 지배자의 횡포와 지배자간의 대립관계 그리고 근대적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피지배자의 노력을 찾아 내보고자 한다.

조선왕조에서 지배자의 지배범역이 가장 확대되었던 때가 「세도」 정치시대였다. 원래「世道」라는 말은 유교적 정치이상에 있어서 王道理想의 구현을 의미했는데(2) 여기에서 「勢道」라 함은 제도상의 최고관직자가 아니라 국왕의 신임을 얻은 다른 실권자를 두어 百官의 上奏와 국왕의 결정이 모두 여기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機務를 여기에서 총괄하게 하는 변칙 정치를 의미한다.(3) 그런데 조선왕조말의 세도는 모두가 국왕의 외척의 일문이 정치에 관여하여 정권을 휘어 잡고 집권과 횡포를 자행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외척의 세도」라고 한다. 이 세도에서 「세다」라는 말이 나왔는지 아니면 백성들이 일컬어 「세다」라는 말을 「勢道」로 표현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정치사에는 勢道政治의 시대가 등장된 것이다. 세도정치는 「三政의 紊亂」이라는 행정의 부패를 초래했고 당쟁시대에 없던 민란이 전국을 휩쓸었다. 이때 왕권의 정통성과 위엄을 되찾겠다는 뜻을 지닌 高宗의 生父 興宣大院君이 집권하게 된다. 그는 안동金씨의 외척의 세도정치를 타도했다. 그리고 행정의 부패를 쇄신하고 민란을 수습하는데 크게 공헌 했다. 그러나 그도 國王의 아버지으로써 세도정치를 한 것이다. 그것도 장기간 집권함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독재자의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없다. 대원군의 독재를 무너뜨린것은 그의 며느리 민비였다. 왕정복귀라는 미명하에 대원군이 독재하자 민비는 국왕 고종의 親政이라는 이름을 빌어 정권을 잡았다. 이후 다

시 민씨의 외척 정권이 들어섰다.

## 2. 지배자간의 극한 대립

### 1. 민비세도의 양갈음

민비에게 정권을 빼앗겼던 대원군은 1882년 임도군란이 터지면서 군란을 수습하고 8년만에 다시 정권을 잡았으나 불과 33일만에 청국에 납치 되어갔다. 죽었다던 민비(4)가 재등장하여 다시금 정권에 간섭함은 물론 군란이전이나 다름없는 민비의 세도정치가 재현하게 되었다. 이에 청국을 등에 업은 민비세도정치를 뒤엎고져 한것이 친일적 개화당의 쿠데타였고 이것은 3일천하로 실패하고 말았다. 이 사태로 충돌했던 중·일양국이 철수하기로 한 친진조약으로 양국은 한반도를 공동간섭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러시아세력을 끌어들이는 한·러밀약설이 폭로되었다. 이에 놀란 청·일양국은 러시아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대원군을 석방·환국하게 한다. 1885년 7월27일 정부는 형식상 대원군의 석방환국을 요청하는 공문을 청국에 보냈고 중국은 이를 승인함으로써 대원군은 서울에 들어오게 되었다. 서울의 시민들은 일찍 國望山으로부터 환국하는 민비를 맞이하든때나 다름없이 열성과 호기심으로 그를 환영했다. 더우기 그를 잡아 가던 청국 군대들이 어마어마한 호위를 하고 있었다. 이같이 하여 雲峴宮의 옛사랑방에 다시 들어 앉게 된 대원군은 왕실과 종친을 찾아 귀국인사도 치르고 재경 외교사절과도 접견하여 전일과는 다르게 국제외교의 솜씨도 발휘하였다.(5)

한편 민비파에서는 대원군이 입경하던 날부터 대원군을 추종하는 무리들을 처형하고 그와의 접촉을 엄금하게 하였다. 사실 민비파의 대원군파에 대한 양갈음은 임오군란후 대원군납치로부터 거칠어 졌다. 군란수습으로 이루어진 제물포조약에서 한국은 일본에 배상금 50만환을 지불하는 것 외에 군란의 주동자까지도 처벌하게 되어 있었다. 한국은 청군에게 의뢰하여 대원군의 장자인 훈련대장 李載의 연금을 비롯해 왕십리와 이태원일대의 조선군인 부락을 습격하여 처참한 살륙과 체포·약탈을 감행 하였다. 그러나 다시 일본측의 요청에 의하여 7월에 9명 8월에 5명을 체포하여 처형또는 유배시켰다.(6) 다음으로의 양갈음은 1884년 쿠데타의 실패로 멀리 일본으로 망명간 金玉均, 朴

泳孝등을 암살하고자 거액의 경비를 던져가며 계속 10년간이나 자객을 밀파했다. 그리고 마침내 1894년 3월28일 上海에서 洪鍾宇의 권총저격으로 암살했다. 민비정권은 인천으로 돌아온 홍종우를 개선장군처럼 대우하는 한편 김옥균의 시체를 楊花津頭에서 대역부도 죄인으로 능지처참하는 동시에 다시금 전국에 목베어 보여주었다.(7) 대원군의 환국에 민비정권의 진면목은 무서운 중오와 양값음에 충혈·상기되고 있었다. 대원군이 입경하던날 임오군란의 도피죄인 金春承, 李承植 등을 길에서 처형하고 통역관 金炳文도 체포투옥했다. 그리고 누구나 운형궁출입을 엄금케 하였다. 운형궁문앞에 紅馬木같은 것을 세워놓고 외부인사의 출입을 따져 단속하였으며 장님이나 무당등으로 하여금 음해하는 기도를 올리기도 하였다.(8) 때에 따라서는 무시 무시한 내용으로 대원군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9) 이러한 양값음은 17,8년전을 연상케 하는 것이다. 1873년 민비의 침전에 화약물이 장치되고 그것이 폭발되어 경복궁에 4백간의 전각을 불태우는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10) 1년뒤인 1874년에는 당대의 세도재상인 閔升鎬 일가족의 폭사사건이 터졌다.(11) 그 뒤 얼마 못가서 민비세도에 아부하여 급작스레 영의정의 부귀영화를 누리게된 興寅君 李最應의 집에도 방화사건이 일어났던 것이다 마치 당시에 대한 양값음으로도 풀이된다. 어떠한 이러한 식으로까지 대원군을 제거코저 하였기 때문에 왕을 둘러싼 大院君과 閔妃의 싸움은 國事나 政治와는 동떨어진 골육상쟁의 처참한 피비린내나는 암투로 시종일관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양값음은 언제나 外勢를 등지고 있었으니 그것이 국제정치와 연관짓는 외교가 아니었고 이성을 상실한채 그들에게 이용만 당했다.

## 2. 太平10年과 민비세도정치의 종말

1884년 7월 朝-러통상조약을 맺게되자 웨버(C.Wäber)는 주조선공사겸 영사로서 계속 조선에 주재하여 그의 부인과 능란한 외교적 수완을 발휘했다. 한편 李鴻章에 의해서 파견된 외교고문인 멜렌둘후(möllendorf)나 민비는 청, 일양국의 침투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조선이 러시아와 접근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여겼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러시아와의 비밀협정설이 나돌기에 이르렀다.(12) 러시아 세력의 남하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그 위협을 느끼던 청국은 조선이 친러시아적 경향을 띄게 되자 크게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세계의 각지에서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던 영국은 조선에 있어서의 러시아의 진출에 대하여도 방관만은 하지 않았다. 영국은 청의 양해하에 고종22년(1885)함대를 파견하에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였다가 러시아나 어느나라도 조선의 영토를 점령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청국의 약속을 받아내고 1887년 2월 군함6척과 수송선 2척으로된 함대를 철수 하였다. 이러한 영국함대의 거문도 점거사건은 러시아 공사 웨버가 조선정부와 더욱 친밀한 접촉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또다시 朝·러사이의 비밀협약설이 떠들게 되었다. 그리하여 청의 이홍장은 전술한바와 같이 청국으로 납치해 갔던 대원군을 조선으로 돌려 보내서 고종을 중심으로한 왕정내의 친러시아적 세력을 견제케 하였다. 다음으로 이홍장은 멜렌돌후를 친러시아적이라 하여 파직.소환하고 그 대신 새로 미국인 데니(O.N.Denny)를 외교고문으로 영국인 메린(Henry F.Merrill)을 해관(海關)의 총책임자(총세무사)로 조선에 보내왔다. 멜렌돌후가 혼자하던 일을 두 사람으로 분담시킨 것은 그의 사례에 비추어 너무 큰 권력을 아무리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한손에 쥐어 주는것은 위험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제 袁世凱는 이러한 특수업무나 대외관계만이 아니요 내정에까지 宮內大臣(Mayor of the Palace) 직이나 다름없는 간섭을 감행하였다.(13) 이에 대해 민비와 척신들은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거문도사건을 계기로 구미열강의 앞에서는 大清帝國도 무력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대원군을 석방 송환한 데서 자기들 척족의 세도를 견제하려는 그의 속심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겼다. 더구나 1855년 이래 金玉均이 日本浪人들과 결탁하여 서울에 침입할 것이라는 소문이 항간에 떠들었다. 일반 민심은 물론이요 민비와 척신들의 놀라움은 컸다. 그리하여 그들 간에는 그야말로 비상사태가 생길 경우 일본은 말할것도 없고 청국도 믿을 수 없게 되었으니 러시아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굳어지게 되었다. 이 당시의 척족세도는 주로 閔泳翊 閔泳煥 민응식 민중묵 민공식등이 중심이며 거기에 洪在義, 金嘉鎮 등이 가담하여 국정을 요리하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서 민영익만이 러시아와의 제휴를 위협시하여 반대하고 정부에서는 고립상태의 金允植만이 반대할 뿐 거의가 러시아와의 제휴를 찬성하고 있었다.

이러한때 웨버공사에게 조선왕국을 러시아제국이 보호육성해줄것을 제의하는 문서가 총리내무 府事 沈舜澤도 알지못하게 그의 명의로 보내졌다. 이것

을 민영익이 원세개에게 밀보하였다. 제2 조, 러비밀협정설이다.(14) 이 밀약설에 대하여 원세개가 강력히 항의하였으나 조선과 러시아정부에서는 다같이 이를 부인하였다. 1987년 원세개는 이 밀약을 구실로 해서 대원군과 손잡고 쿠데타를 일으켜 王兄의 자인 이준용을 세자로 옹립하고 일반 인심이 세자에게로 돌아올 때까지 대원군으로 하여금 섭정케 할 계획을 세웠다. 이 고종폐위계획은 이홍장이 이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 이후 민비세도는 계속되었다. 1884년의 쿠데타이후 동학교도혁명까지 큰 정변은 없었다. 외교관계도 주변 국가간의 견제와 그들 국가간의 사정으로 소강상태를 이루 었었다. 이를 가 르켜「태평10년」(15)이라고 일컫는다. 그러나 「태평 10년」은 폭풍전야의 정숙이었던가 94년 동학혁명이 일어났다. 이로인하여 청일전쟁이 일어나자 일본 세력의 침투로 金弘集등의 친일내각이 득세하고 대원군은 일본에 의해 영립되어 친청파인 사대당을 축출하고 甲午개혁(更張)을 시작하였으나 집정이 어렵게 되자 청나라와 손잡으려다 쫓겨났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의 세력이 강성해졌으나 3국간섭으로 친러파가 등장하면서 민씨일파가 다시 득세하였다. 그러나 1895년 일본의 침략에 의하여 대원군이 다시 정권을 장악했다. 이때 민비가 궁중에 침입한 일본깡패들에 의해 시해되었다. 민비의 세도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 했다. 그러나 대원군도 乙未事變이라고 일컫는 민비시해를 지휘했던 미우라고로(三浦梧樓)가 본국으로 소환된후 정권을 내놓고 은퇴하였다. 대원군독재의 종식이였다. 골육상쟁의 세도권력의 싸움으로 지배자간의 갈등은 피지배자만의 희생을 강요했을뿐이다.

### 3. 민비세도와 부패

세도정치에는 부패가 만연하기 마련이다. 안동김씨의 의척의 세도정치때 3정의 문란은 조선왕조 행정사상 가장 추악한 행정의 부패였다. 민비의 세도 또한 장기간이었고 몇번의 정변과 또한 대원군파와의 골육상쟁의 정권다툼으로 행정의 부패상은 더욱 심했다. 그리고 시대의 변천은 행정의 부패도 근대화 되었다고나 할까? 변모했다고 하겠다.

첫째, 인사행정에 최대의 과오를 범하고 있었다. 국가를 위한 적재적소의 인재등용이 아니라 1882년의 군관과 1884년의 쿠데타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은 대원군도 그러했지만 민비의 척족들은 자당자파로 인사를 배치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어떠한 실정을 범하며 어떠한 사변이 터지더라도 최고의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는한 하루아침에 재기환원 할 수 있으며 반격보복도 문제없다는 것만을 통절하게 느꼈던 때문이다. 그랬기 때문에 중앙관서로부터 지방행정기관에 이르기까지 민씨성을 타고난 사람부터 배치 했다. 그래서 민씨족이나 그들과 인척관계이든지 하다 못해 문객의 말석이라도 차지하는 자면 행운아라고 일컬게 되었다는 것이다. (16)

정치적인 인사를 위해 특별히 과거시험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1882년의 9월에 과거시험이 시행되었는데 이것은 군란당시 민비의 피난에 공이 있는 尹泰駿과 군란후 대일교섭에 공이 있는 李祖淵 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김옥균 암살범 洪宗우를 우대하기 위해 그 복잡한 1894년 봄에 시험을 시행했다.(17)

둘째, 관직매매였다. 관리등용의 기준이 되어오던 과거제도는 결국 매문(賣文) 매서(買書)하는 거래장의 도박장이 되었다. 민씨척족권문에 천兩, 만兩헌납하는 자는 고시문제를 미리알거나 답안을 미리써서 제출하기도 하고 합격자 명단을 조작발표하면서 대과급제(大科及第)라고 떠드는 폐도 많았다. 과거시험때는 이미 합격자가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폐단이 심해져서 대과 급제에는 의례히 10만兩을 상납해야 했다. 이밖에 T O 밖에 보걸로 進士科에 100명을 더 선발하도록하고 2만냥씩 받으라는 왕명도 있었다.(18)

셋째, 국가재정의 궁핍이다. 국고는 이미 1882년 군란당시부터 탕진 되었는데 10년을 경과하면서도 국가재정에 대한 대책은 세워보지도 못했다. 예산지출에 공과 私의 구별도 없었다. 삼정문란당시를 연상케하는 증세의 문란이었다. 정규 조세수입이 4분지 1로 격감 되었다. 때문에 관리와 군대의 봉급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야기되기도 했다.(19)

넷째, 화폐의 남발이다. 좌의정 金炳始는 「신식화폐를 주조하기 위하여 典園局기계창을 새로 건축하는데 수백만금을 쓰고도 미흡하다니 어찌된 셈이냐」고 통탄하였다.(20) 다시말하면 국고수입을 위하여 정상적인 재원조성은 눈감아 버리고 화폐를 주조한다고 화폐제조창을 짓기위해 많은 돈을 허비하고도 그도 완성못했다는 것이고 화폐남발로 재정파탄이라는 현상을 초래했던 것이다.

다섯째, 문호개방과 경제체제의 붕괴다. 국내화폐가 완전히 신용과 유통가

치를 상실해버리고 외국화폐만이 가치가 있었다. 그리고 외국상품이 대량 수입되었다. 그것도 우리나라는 원료공급지인 동시에 그 상품시장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리하여 온 국민은 외래상품에 의존하는 생활에 젖게 되었다. 더욱이 국민들은 돈을 마련할 길 없어 일본상인 아니면 중국상인이 방출하는 고리대금업의 밥이되고 있었다.

여섯째, 왕실의 재정낭비다. 국가의 재정이 파탄에 이르고 국민의 생활고극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실의 사치와 낭비는 끊임 줄 몰랐다. 문호개방과 외교의식에도 그랬거니와 4월8일 연등놀이에 불꽃값으로 80만兩을 낭비하고 그것을 외채로 지불했다는 것이다. (21) 마치 불란서나 러시아혁명의 원인과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 3. 피지배자의 정치참여

#### 1. 사회적 불안과 민요,민란

민씨의 세도정치는 정치의 부패와 행정의 문란을 초래 하였다. 따라서 국고는 탕진되고 국민생활도 파탄에 직면하게 되었다. 1888년에는 삼남지방에 대흉작이 들고 관서지방과 의주일대는 큰 수재까지 발생하게 되어 국민들의 생활고는 더욱심하여 졌다. 이러한 상황이니 사회는 불안하고 국민은 동요하고 백성은 민란을 일으키기에 이르렀다.

먼저 도적떼가 일어났다. 金允植의 글을보면 1888년 10월이후 도적떼(火賊)의 글이 자주보이다가 그 뒤에는 귀양살이하는 산중 작은집의 부역에 까지와서 술 두개와 남비 하나를 훔쳐갔다고 했다. 또 도적떼가 도처에서 극성을 부린다는 소문이 떠도는데 原邱, 原州, 羅州등이 심하다고 했다. 그리고 素砂에서는 도둑떼 수백명가운데 捕卒과 砲手에게 16명이 죽고 6명이 붙잡혔고 나머지는 흩어져 도망갔다고 했다. 서울 安洞에서 전해온 서신에는 「근처에 도둑떼가 많은데 금년 농사가 풍년인데 참으로 괴이하다」고 썼다. 그리고 서울도 도적, 시골도 도둑이고 큰길가에는 도둑에게 피살당한 시체도 왕왕히 볼 수 있다 하였다.(22) 黃玆도 도둑떼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1891년과 92년사이의 글가운데에도 구중궁궐속 상감님의 처소에도 도적이 마음대로 물건을 훔쳐내건만 대책이 없다고 탄식하고 있다. 아래로는 귀양살이의 남비쪽도

도둑맞고 위로는 상감님의 온돌방까지 드나든다고 했다.(23)

한편 서울장안에서는 어린아이들을 훔쳐가는 일이 자주 생긴다고 하는 동시에 어처구니없는 유언비어가 인심을 소란케 하였다. 즉 서양인들이나 일본인들이 갓난애를 잡아 먹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잡아다 파는 도적이 있다고 했다. 우매하기 짝이없는 허무한 낭설임에 틀림없으나 이 소문은 다시금 元山, 仁川같은 개항장과 일반지방으로 전파되어 한때 전국 인심을 불안케 하였다.(24)

어쨌든 학정에 시달린 피지배자가 다시금 굶주림과 도둑과 모든 우환질곡에 신음하게 되자 그들은 또다시 쫓겨 항쟁할 수밖에 없다. 이제 연대순으로 전국각지에서 일어난 民擾, 民亂과 이에 흡사한 불안한 양상을 간추려보자.

1885년: 황해도와 여주 그리고 원주에서 관청에 들어간 난민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관리를 납치하고 불태워 죽였다. 1888년: 6月30日 北淸府에서 데모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함경남도 兵馬節度使 李容翊의 횡포와 부패에 항거한 것이었다. 7월에는 또 永興府에서도 일어났다.(42) 1889년:1월에 威北 吉州에서 상당한규모의 민란이 일어났고 강원도 旌善과 전라도 光陽과 水原에서 데모가 일어났다. 1890년:8월 威昌에서 데모가 일어나 관청에 뛰어들어 관리를 내쫓고 직인을 탈취하였다. 1891년:3월에 제주도 어민들이 대거 시위를 했다. 평안도민들 가운데 강을 건너 도망하는 백성이 10여만이 되었다. 8월에는 강원도 고성에서 10월에는 황해도 평산에서 데모가 일어났다. 1892년:3월 함흥에서 데모가 일어났고 德源府 에서도 일어났다. 8월에는 경상도 풍천에서 12월에는 평안도 성천과 강계 양읍에서 데모가 발생 했다. 12월에는 충청도 報恩帳內로 전라도 全州參禮로 전국의 동학교도들이 모여 교조의 누명을 벗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포교의 자유를 주장했다. 그들의 움직임속에는 민족종교로서의 교권이나 신앙문제만이 아니라 정치적이요 또 자치적인 비상한 욕구도 내포되고 있었다.(43) 1893년:2월5일 세자의 탄신 축하 과거시험때문에 전국유생들이 서울에 모였다. 때를 같이하여 동학대표 40명이 결문앞에 섰려 敎祖伸冤상소를 올렸다. 같은달 23일에는 威從府에서 데모가 일어났다. 3월에는 보은에 동학교도 수만명이 회집하였다. 6월에는 인천에서 병사와 시민 수백명이 인천항 감리서를 습격했다. 11월에는 청간, 개성 12월에는 황해도 鐵島에서 데모가 일어났다. 1894년:1월 黃州에서 데모가 두번씩 일어났고

강원도 金域에서도 일어났다. 1월10일 전라도 古埤에서 일어난 데모는 어느덧 동학교도들의 큰 조직과 결부되어 마침내 동학교도혁명으로 연결되었다. 이제 세도정치의 학정에서 비롯된 3정의 문란으로 항거한 농민들의 데모는 마침내 동학교도혁명으로 폭발하게 된 것이니 피지배자의 지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그들에 상부하는 위치를 요구하는 힘을 들고 나서게 된 것이다. 피지배자가 정치에 참여하게 된 셈이다.

## 2. 동학교도혁명

전제군주정치하에서 피지배자가 그들의 자유영역을 확대하는 길은 마침내 혁명으로 기존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것이다. 피지배자들의 저항은 도전으로 바뀌더니 이제 혁명의 단계에 들어 섰다. 1894년의 동학교도혁명이 그것이다.

혁명의 원인에 관하여 라스키는 「기나긴 실정이 누적되어 통치권의 정당성을 인식하는 객관적 능력이 결여될 때, 그리고 위정자가 이러한 불평과 불만에 대처함에 있어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기보다는 도리어 이것을 탄압하려고 할 때 또 억압이 실패하였을 경우 전면적인 타협을 시도하기보다도 도리어 가혹한 탄압을 끝까지 강행하려고 할 때 위정자의 선의에 대한 민중의 신뢰감이 소멸하였을 때 혁명이 일어난다」(21)고 하였다. 이미 우리는 앞에서 지배자의 횡포인 세도정치를 살폈고 그에 따른 실정과 부패로서 삼정의 문란을 분석했다 이에 대한 피지배자의 항의로 삼남의 민란이 일어났음에도 이에 대한 대처보다 대원군과 민비의 새로운 세도정치로 피지배자를 탄압했고 그들은 세도권력의 장악을 위해 「수구」와 「개화」를 내세워 시대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기 보다 무능한 왕을 제쳐 놓고 그들끼리 암투와 음모로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었다. 피지배자의 불만은 임오군란으로 그리고 갑신정변으로 터졌다. 피지배자는 가난에 쪼들리고 국가 재정은 더욱 궁핍하였다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구질서를 타파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동학혁명은 동학사상이 바탕이 되었다. 이 점에 대하여 필립(W. Philip)은 「사상의 폭동이 언제나 무장폭동에 앞선다」고 하였다.(22) 동학사상은 「事人如天」으로 나타나니 그것은 봉건적 신분질서를 철저히 부정하는 평등주

의인 것이다.(23) 다음은 補國安民이다. 피지배자가 부르짖는 安民은 of, by를 의미하는 것이다. 피지배자의 주체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동학 사상의 근본은 後天開闢이다. 즉 새로운 세상의 박두를 예언하는 것이다. 새로운 질서의 창조를 염원하는 피지배자의 정치사상인 것이다.

최제우가 동학을 제창한지 3년만인 1863년 말에 불들리어 그 이듬해 처형되고 동학은 사교로 탄압받게 된다. 그러나 그뒤 2세 교주 최시형과 충청, 전라 두도에서 교세가 크게 확장 되었다. 그러다가 여기저기 민란의 소문이 다시 번져 가던 1892년 충청감사로 부임해온 조병식은 새삼스럽게 동학교도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가혹하게 하였다. 마침내 최시형은 1892년 12월 삼례역에서 敎祖伸冤運動을 일으켰다. 1893년 2월에는 朴光浩를 선두로 40여명의 교도가 경복궁 광화문앞에서 엎드려 농성하였다.(24)

동학교도혁명은 1894년 전라도 고부군에서 비롯되었다. 군수 한 사람의 탐학이 온 나라를 뒤흔들게 한 혁명의 불씨가 된 것이다. 조병갑을 타도하기 위해 전봉준의 지휘 아래 무기를 탈취하고 곡식을 빼앗아 빈민들에게 분배하고 萬石湫를 파괴하였다. (25) 그리고 행진하며 전주를 점령하였다. 전주성을 (26) 포위했던 관군과 동학군은 타협화해하게 되고 전주성은 관군 손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리고 정부는 동학교도로 하여금 전라도의 각군에 이른바 執鋼所 53개소를 두게 하며 지방행정의 보조기관으로 삼게 하였다.

동학교도의 제2차 혁명봉기는 대일전으로 그 성격이 전환되었다. 혁명이 발발하여 정부로서는 관군의 힘으로 도저히 이를 진압할 수 없음을 알게되자 고종은 당시 대부분의 대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세가 급한것으로 판단하며 청국에 원병을 청하였다. 청은 군함을 인천으로 급파하는 한편 천진조약에 따라 일본에 그 사실을 알려 1894년 6월 일본병력을 서울에 진주 시켰다. 일본군대는 경복궁에 침입하며 민비정권을 무너뜨리고 여름밤 조선군대의 무장을 해제하였으며 조선왕권을 유린하고 친청정권을 몰아냈다. 이에 동학교도혁명군은 反倭를 부르짖으며 북진을 시작하였다. 이것이 혁명군의 제2차 봉기인 것이다. 전봉준은 첫째 혁명진압군의 실체가 일본군이고 둘째 일본의 조선침략으로부터의 구국 셋째 경복궁 침입에 대하여 정권타도에 앞장섰지만 그가 일본인이라는 점에서 극도의 적개심을 갖게 된것이다. 그리하여 제2차의 봉기는 항일구국투쟁적인 혁명전쟁의 성격으로 전환되었다. (27)

의인 것이다.(23) 다음은 補國安民이다. 피지배자가 부르짖는 安民은 of, by를 의미하는 것이다. 피지배자의 주체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동학 사상의 근본은 後天開闢이다. 즉 새로운 세상의 박두를 예언하는 것이다. 새로운 질서의 창조를 염원하는 피지배자의 정치사상인 것이다.

최제우가 동학을 제창한지 3년만인 1863년 말에 불들리어 그 이듬해 처형되고 동학은 사교로 탄압받게 된다. 그러나 그뒤 2세 교주 최시형과 충청, 전라 두도에서 교세가 크게 확장 되었다. 그러다가 여기저기 민란의 소문이 다시 번져 가던 1892년 충청감사로 부임해온 조병식은 새삼스럽게 동학교도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가혹하게 하였다. 마침내 최시형은 1892년 12월 삼례역에서 敎祖伸冤運動을 일으켰다. 1893년 2월에는 朴光浩를 선두로 40여명의 교도가 경복궁 광화문앞에서 엎드려 농성하였다.(24)

동학교도혁명은 1894년 전라도 고부군에서 비롯되었다. 군수 한 사람의 탐학이 온 나라를 뒤흔들게 한 혁명의 불씨가 된 것이다. 조병갑을 타도하기 위해 전봉준의 지휘 아래 무기를 탈취하고 곡식을 빼앗아 빈민들에게 분배하고 萬石狀을 파괴하였다. (25) 그리고 행진하며 전주를 점령하였다. 전주성을 (26) 포위했던 관군과 동학군은 타협화해하게 되고 전주성은 관군 손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리고 정부는 동학교도로 하여금 전라도의 각군에 이른바 執綱所 53개소를 두게 하며 지방행정의 보조기관으로 삼게 하였다.

동학교도의 제2차 혁명봉기는 대일전으로 그 성격이 전환되었다. 혁명이 발발하여 정부로서는 관군의 힘으로 도저히 이를 진압할 수 없음을 알게되자 고종은 당시 대부분의 대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세가 급한것으로 판단하며 청국에 원병을 청하였다. 청은 군함을 인천으로 급파하는 한편 친진조약에 따라 일본에 그 사실을 알려 1894년 6월 일본병력을 서울에 진주 시켰다. 일본군대는 경복궁에 침입하며 민비정권을 무너뜨리고 여름밤 조선군대의 무장을 해제하였으며 조선왕권을 유린하고 친청정권을 몰아냈다. 이에 동학교도혁명군은 反倭를 부르짖으며 북진을 시작하였다. 이것이 혁명군의 제2차 봉기인 것이다. 전봉준은 첫째 혁명진압군의 실체가 일본군이고 둘째 일본의 조선침략으로부터의 구국 셋째 경복궁 침입에 대하여 정권타도에 앞장섰지만 그가 일본인이라는 점에서 극도의 적개심을 갖게 된것이다. 그리하여 제2차의 봉기는 항일구국투쟁적인 혁명전쟁의 성격으로 전환되었다. (27)

이라고 하겠다. 먼저 독립협회의 구성층이 시민계층에 해당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주로 청년개화세력층 이었다. 초기의 독립협회 간부는 명문출신들이 많았고 대개 외유와 신교육을 받은 사람들 이었다. 특히 서구적 근대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譯科와 신교육의 이수자가 대단히 많았다. 인적 사항을 가지고 볼때에 독립협회운동에서는 이들 신지식층이 되어 시민, 농민, 노동자 개화와 무관등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주도회원의 주류를 이루었던 것은 「유식한 신사의 조직」으로 당시에 새로이 성장하고 있던 신지식층이었다. (31) 이러한 독립협회의 신지식층은 개항 이후에 성장한 개화세력의 결정체였다. 초기의 명문출신의 관료세력은 점차 탈락하고 오히려 새로운 사회계층, 中下층 또는 지방출신이 주류를 형성해 갔다. 다시말해서 이들은 대부분 중간계층의 신층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32) 여기서 우리는 서구시민혁명기의 지식인의 역할과 비교해 봄직한 것이다. 유럽의 경우 근대시민사회의 성립에도 역사적 전환을 하는 시기에 있어서 지식계층의 그들의 충성대상을 바꾸어 시민계층의 편으로 돌아서서 피지배자를 위한 이데올로기적「무기」를 제공함으로써 새시대의 전개에 대한 주장을 펼치게 되었다. 이것을 에드워드는「민족혁명사」에서 혁명의 한 징후로서 「지식층의 충성의 변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브린튼은 이것을 「지식층의 탈주」라고 정의하고 있다.(33)

독립협회운동의 주도세력은 주로 왕정하의 관료도 섞여 있었지만 그들은 서유럽의 시민사상을 수용하고 또 영향을 받아 「근대화」의 주역으로 전환되고 있었다. 그리고 지식층은 그들이 영향을 받은 서구문화의 강화로 기존질서의 모순을 비판하면서 반항형 지식인으로 등장하며 「革命」을 부르짖게 되었다. 독립협회는 분명 민주혁명운동을 전개한것이다.

#### 4. 지배자의 개혁

##### 1. 갑오개혁

일본은 조선에 내정개혁을 요구해왔다. 大鳥圭介는 1884년 6월1일 5개 조항의 내정개혁안을 제시했다. 오랫동안 쌓여 온 봉건적인사회체제와 절대주의적 왕정체제의 병폐로 이미 그 내부로부터 몰락 직전에 있던 조선왕조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개혁하여야 할 문제들이었음은 틀림없다. 그러나 조선

측은 내정간섭이라고 수락을 거부했다. 일본 주둔군은 6월21일 밤 경복궁을 점거하고 국왕과 왕비를 감금상태에 두고 직접 척족세도정권의 타도를 감행하고 새로들어 서울 정권의 수반으로 대원군을 입궐시켜 집정토록 하였다. (34) 그리고 23일에는 청국에 전쟁을 도발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만족할 만한 내정개혁을 단행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개혁추진기구로 군국기무처를 신설, 마침내 1894년 개혁 사무를 강행하였다. (35) 군국기무처는 김홍집을 총재관으로 朴定陽등 주로 개화파 인사 17명이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본공사 大鳥가 고문이라는 명목으로 배후에서 간섭하였다. 이 군국기무처는 초정치적 존재였다. 따라서 국왕이나 왕비의 존재는 무시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왕명에 의하여 모든 정치를 대행하기로 되어있어 대원군의 지위도 위협을 받았다. 이기관은 1894년 6월25일에 개설되어 약 반년동안 존속 되었으나 개설직후 3개월동안에 의결된 법안만도 208건의 다수에 미쳤다. 이들의 개혁에는 동학교도 혁명에서 나타난 백성들의 요구도 반영되었다. 그러나 이계획은 일본의 침략적 야욕과 그 간섭 밑에서 무리와 강제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일본의 참뜻은 개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침략에 있었다. 그래서 불합리한점이 많았다.(36) 1894년의 제1차 개혁이 시작된 후 조선왕조의 정계는 어수선했다. 첫째로 왕비민씨와 그 일당의 척족세도정권은 대원군의 재등장으로 완전히 붕괴되어 불평속에서 국왕의 신임만 의뢰하고 정세를 관망하고 있었다. 목전의 청일전쟁에 대해서는 국왕이나 왕비를 막론하고 청국의 승리를 기대하여 비밀리에 청국과 교섭하고 있었다. 둘째 대원군과 그 일족은 집권은 하였으나 친일 개화파를 중심으로 한 신정권의 세력에 떠밀리어 권력의 중심에서 떨어져 불만으로 가득차 있었다. 그들 역시 청에게 은근히 추파를 던지어 군국기무처에서 의결하는 여러가지 개혁을 늘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김홍집 내각은 적극적으로 내정개혁을 추진하면서도 청일전쟁의 전세를 관망하면서 개혁이 그 시행과 실효가 적다는 것을 자각하고 미온적이었다. 세계 일반국민은 戰禍에 시달려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었고 삼남지방에서는 동학교도 혁명의 여파로 그러한 불꽃이 다시 타오를 기세마저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복잡한 정치기상도는 마침내 울분을 튀기게 되었다. 군국기무처와 대원군일족이 정면 충돌 하였다. 대원군의 개혁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이었다. 대원군은 동학군의 전봉준 그리고 청국과 내통한다는 혐의와 함께 그의 손자 李俊

鎔의 쿠데타설까지 나돌았다. 결국 대원군은 정계에서 물러났다. (37)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일본은 주조선공사를 교체했다. 내무대신 井上가 왔다. 제2차 김홍집 내각을 일본에서 귀국한 朴泳孝와의 연립정부로써 출범시켰다. 그리고 제2차 내정개혁을 시작했다. 1894년 11월21일에는 조선왕조 최초의 勅諭을 8호까지 반포하여 정부의 인사 및 기구의 개편과 공문의 격식을 관보로 공표하였다. 2차 개혁에서는 군국기무처를 해체하고 갑신개화당을 등용하여 어느정도 자율적이며 정리된 개혁 조항을 제시했고 구제도와는 다른 근대화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고종은 1895년 1월7일에 세자와 대원군 종친 및 신하들을 인솔하고 종묘에 나가 洪範 14조를 포함한 독립의 선언문을 祖宗영전에 바쳤다. 이 홍범 14조는 조선 최초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1894년의 개혁의 정신이 잘 구현 되어 있었다.(38) 이와같이 해서 1,2차의 개혁이 이루어 졌다. 조선왕조는 민족 스스로의 혁명에 의해 근대적인 개혁을 단행하려던 동학교도혁명이 좌절되면서 일본이라는 외피에 의해 밖으로부터 뒤집어 씌워진 개혁을 당하게 된 것이다. 필요하고 당연한 개혁이었으나 갑오경장이라 불리는 1894년의 1,2차 개혁은 국민에 의해 쉽게 받아들여 지지 않고 반발을 일으켰던 것이다. 동학교도혁명으로 밑에서 일어난 요구는 외세에 의한 지배자의 개혁으로 받아들여졌다.

## 2. 大韓帝國

민비의 시해가 성공하자 康寧殿에서 대기하고 있던 대원군은 乾清宮으로 들어가 長安堂에서 고종과 대면하였다. 미우라公使도 자리를 같이 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 사건에 전혀 관계하지 않았다는 듯이 외무성 정무국 小村 수太郎 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반을 조선에 파견하여 진상을 조사하는 한편 그 비난을 피하는 수단으로 미우라공사 이하 사건에 연루된 자를 퇴국케 했다. 한편 고종은 10월10일에 민비의 位號를 복위시키고 친위대 장병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포하였다. 이어서 군부대신 조희연 경무사 권영진도 군대를 이끌고 국왕을 위협한 죄로 파면 시켰다. 수일 후에는 왕비의 시해사실을 발표하고 國喪을 정식으로 반포 하였다. 이와같이 왕후의 시해가 발표되고 정식으로 국상까지 치를 것을 알리자 대원군은 자책을 느껴 스스로 물러나고 이준용은 유학이란 명목으로 일본에 망명하고 말았다. 그런데 왕후의 국상이

발표되기 사흘전 春生門사건이 발생하였다. 李範晉, 李完用, 安桐壽등이 수십 명의 무장병사로 春生門을 통해 궐내로 들어가 경복궁을 점거한 다음 국왕을 러시아공사관으로 모셔놓고 쿠데타를 단행하고자 한 것이었다. 安桐壽의 밀고로 계획은 무산되고 33인이나 체포, 처형되고 이범진등은 러시아공사의 협력을 얻어 국외로 탈출하였다.(39) 이 사건을 수사하는 동안 李周會, 朴銑, 尹錫禹등 3인이 왕비시해의 조선측 범인으로 체포되고 처형 되었다.(40) 다른 한편 김홍집내각은 그 소란한 통에도 급격한 내정개혁에만 전력을 기울였다. 태양력을 채용하고 一世一元의 年號를 세우되 1896년 1월부터 建陽 이라는 새연호를 쓰게 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압제하에서의 개화정책은 일본의 침략 행위에 분격하는 일반국민들부터 맹렬한 반대를 받았다. 國母 피살의 사실은 더욱 인심을 자극하였다. 특히 단발령에는 목을 자르되 상투는 못 자른다는 강경한 반대에 부딪혔다.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각지에 義兵이 일어났다. 1896년 1월~4월에 걸친 의병은 경기, 강원도에서 충청, 경상, 전라도와 황해, 평안도까지 확대되었다. 정부는 친위대를 태반이나 지방으로 파견 이를 진압하지 않으면 안되는 곤경에 빠졌다.(41) 김홍집내각이 의병의 진압에 전력하느라고 수도의 경비를 소홀히 한 틈을 타서 재집권의 기회를 노리던 친러시아파세력과 러시아공사 wäber 공사 사이에는 중대한 습모가 있었다. 해외로 탈출했던 친러시아파의 거두 이범진과 웨이버의 활약으로 1896년 2월 11일 새벽 왕과 왕세자는 극비리에 궁궐을 빠져나가 러시아공사관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고종은 1897년 2월 20일까지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면서 정사를 베풀었다. 이것이 俄館播遷이다.(42) 국왕이 러시아공사관으로 옮기자 경무관 安奩를 통하여 김홍집, 유길준, 조희연, 장박등 5대신을 역적으로 몰아 포살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궐내로 달리던 김홍집과 정병하는 광화문앞에서 군중에 무참하게 맞아 죽었다. 그리고 신내각이 발표 되었다. 친러시아, 친미국의 양파의 연립내각이 성립된 셈이다. 민심수습을 위한 신내각의 노력은 별 효력을 보지 못했고 의병란은 그대로 계속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 내부에서도 또다시 분규가 생기었으니 친미국파와 친러시아파의 대립이 그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범진등의 친러시아파는 웨이버의 위력을 배경으로 국왕을 독점하고 정치를 강행하자 박정양, 이완용, 윤용구등의 친미국파가 차츰 반목 이탈 하게 되었다.

1896년 5월28일에는 「독립신문」에 국왕의 조속환궁을 역설하는 논설을 게재하였다. 내각에서도 박정양내부대신등이 민간인으로서는 金宗漢, 안경수등이 활발하게 환궁운동을 전개 했다. 이러한 사이에 국내의 환궁열은 점차 거세어갔다. 환궁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친러시아파에대한 비난의 소리가 높아졌다. 국민들은 조선 전래의 관습에 따라 거국적인 상소로써 왕의 환궁을 촉구 하였다. 儒生, 神士派, 幼學派등이 상소운동을 전개했다. 8도에 격문을 보내어 유생들의 상경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 장안의 각상점이 문을 닫고 폐점한다는 극단적인 논의마저 생겼다. 전국적인 국왕환궁의 여론이 들끓자 全炳始 이하 몇몇 대신들이 왕을 설득시키는데 성공 하였다. 드디어 2월20일 환궁이 실현 되었다. 만 1년만에 러시아공사관으로부터 환궁한 고종은 독립협회등의 강력한 진언을 받아들여 1897년 10월 12일에 국호를 大韓帝國이라고 年호를 光武라 고치고 王을 皇帝라 칭하며 우리나라가 자주독립국임을 내외에 선포 하였다. 다음날인 13일에는 당시의 주한외국공사도 거의 전부가 황제에게 축하인사차 예방했고 일본 러시아 미국 영국등 각국정부도 이 선포를 승인 하였다.(43) 그리고 앞서 사해당한 민비의 국장을 끌어 오다가 이때에 이르러 追尊明星皇后라 하고 11월 22일에 황후의 예를 갖추어 장례를 치루었다. 뒤이어 황제의 생모인 대원군부인이 광무2년 1월 9일 서거하고 生父인 대원군 역시 같은해 2월23일 서거하고 말았으니 그들의 파란 많던 생애는 대한제국의 탄생과 함께 모두다 완전히 종결되었다.(44) 대한제국은 이제 과거를 뒤우치며 슬픔을 씻고 새출발의 힘찬 발길을 내딛어야 했다.

### 3. 황국협회의 반동

독립협회의 성장과 세력의 확장은 고종황제나 정부로 하여금 그들의 실책을 반성하고 모든 것을 시정하고 노력하기보다도 증오와 시기으로써 독립협회를 대하게 되었다. 이에 그들은 독립협회를 약화시키고 그 운동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우선 서재필을 추방하였고 다음에는 보부상패로 황국협회라는 반동 단체를 조직케하여 독립협회에 반격을 가하기로 작정하였던 것이다. 황국협회의 정부측 후원자는 조병식, 한규설, 민중묵, 우기찬, 심상훈, 신기선, 민영기등 수구파 대신들이었고 이기동이 회장이되고 김옥균 암살범 洪鍾宇, 吉永根등이 협회창립의 중추역할을 담당 하였다. 이들은 우선 전국의 보부상(45)

을 동원하여 平涼子라는 흰갓을 씌우고 拘尾杖이라는 곤봉으로써 무장시켰다. 조병식이 독립협회로부터 몹시 규탄당하자 1897년 7월에 이 보부상중심의 황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한 다음 스스로 회장이 되어 독립협회에 대항하였다. 얼마안가서 명칭을 황국협회라 한 것이다.(46) 그러자 1898년 7월3일과 10일 독립협회는 조병식과 李容翊을 상대로 부패상소문을 올렸다. 이결과 7월21일 조병식을 해임시키게 되고 8월25일에는 이용익의 체포와 처벌을 신기선으로부터 약속받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9월11일 황제와 황태자에게 독차를 권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범인 孔洪植이 옥중에서 살해된 사실이 알려졌다. 독립협회는 법부대신 신기선의 인책사임을 요구하고 仁化門에서 연좌시위를 벌였다. 황제는 계속 해산을 중용-위협하였다. 그러나 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데모에 가담했다. 국민들도 성원을 보냈다. 황제는 굴복했다. 그리하여 신기선등이 파면당하고 의정부의정 심순택등이 퇴직처분을 받았다. 이때 보부상패 300여명으로 구성된 황국협회가 10월17일 정동독립협회 본부를 습격하는 사건을 일으켰다. 이에 대한 독립협회와 시민의 항의가 커치면서 11월 3일 그들의 요구대로 중추원이 개편하게 되자 이들은 민간대표로 참가할 심산으로 만민공동회를 해산하고 사무소에 돌아왔다. 그러나 11월 4일 독립협회에 갑자기 검거 선포가 붙었다. 공화정치를 꾀한다는 것과 윤치호가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는 이유로 황제는 독립협회의 주도인물을 체포하도록 하고 협회도 해산하게 하였으며, 만민공동회에 참석했던 정부각료 박정양등을 파면시켰다. 그리고 정부는 급격하게 반개혁의 조병식 박제순 민중목 민영기등으로 새내각을 조직 하였다. 그리고 이상재등 17명을 체포함과 사무소의 문서와 도장도 압수 했다. 독립협회회원들의 항의데모는 더욱 거세졌고, 종로를 중심으로 매일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47) 이들의 시위가 날로 높아짐에 정부는 17명의 협회간부를 석방하고 만민공동회대표 20명을 중추원 의관으로 추대할 것도 제의 하였다. 정부는 이와같이 타협하는 듯 하였으나 보부상을 주도하는 황국협회 회원을 수천명 동원하며 11월 21일 만민공동회를 습격케 하였다. 이로써 시내 곳곳에서 독립협회회원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청년 학생 그리고 시민들과 보부상 단원과의 사이에 유혈 충돌이 일어났다. 양편 사이의 충돌은 거듭되었다. 이 사태로 내각이 개편 되었다. 의정부 참정에 민영환 내부대신에 박정양등이 들어섰다. 그리고 윤치호에게는 체포영장이 취

소 되었다. 반면에 황국협회의 배후조종자와 직접지휘자들을 유배에 처하게 되고 보부상패에게는 해산 명령이 내려졌다. 11월 29일에는 南宮樞, 李承晩, 梁弘默등의 수십명을 증추원 의관에 임명도 하고 윤치호를 한성判尹에 임명하여 독립협회에 호의도 표시 하였다. 그러나 12월 16일의 증추원회의에서 망명중인 朴泳孝와 추방시킨 서재필을 종다수로 가결하며 정부요직에 등용하라는 명단 중에 포함시켜 그대로 건의 하였다.

황제와 정부는 이 결의안에 당황 하였다. 또한 유생들의 항소가 강경하게 대두 되었다. 정부는 이를 구실로 독립협회에 대한 최후의 탄압령을 내리고 말았다. 결의안에 가담한자들은 파면했다.

그리고 25일에는 독립협회에 대하여 11개조의 죄목을 열거 지적하고 內部和 軍部에 탄압령을 내렸다.(48) 이에 기세를 얻은 황국협회파들은 독립협회 본부를 습격 하였다. 독립협회 지도자들은 지리멸렬 되었다. 이로서 대한제국의 성립과 더불어 싹트기 시작했던 자주독립과 국민참정운동은 보수정치인들의 반동에 의하여 좌절되고 근대적 민주정치의 초보적형태는 자율적으로 진행되던 과정에서 유혈극으로 종식되고 말았다. 독립협회가 활약한 1896-1898년 사이의 민주운동은 동학교도혁명의 자극도 받은 지식인들의 혁명운동이었다고 하겠다. 이들 지식인들의 민주투쟁은 빛나는 발자취를 남기게 했다. 단지 아쉬운 점은 피지배자의 자유영역을 확대하려는 투쟁에서 같은 피지배자인 보부상의 반대를 받았다는 것이다.

황국협회는 독립협회가 의회개설운동을 벌일 때 하원도 함께 개설 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독립협회는 민도가 낮아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므로 황국협회의 폭력행위와 반발행위는 단순히 반동세력의 조종에 의한 것이었다고만 볼 것이 아니라 상류층 출신인 독립협회 회원들의 독선적인 選民意識에 반발 하였던 것이라 느껴진다.(49)

## 5. 맺는말

조선왕조시대는 유럽의 절대주의시대와 유사하다. 절대주의는 중세와 근대와의 모순이 충돌하는 두개의 국면을 내포하고 있다. 경제사적으로는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 해당되며 사상적으로는 근대시민의식이 싹

트게되는 시기다. 이러한 절대주의체제는 시민혁명에 의하여 타파되었다. 시민층이 유력화되면 절대주의 국가의 신분제 기구와 정치적 속박을 타파하여 자유로운 활동의 무대를 구하려 한다. 여기에 절대주의와 시민층과의 사이에 대립투쟁이 일어나고 시민혁명의 과정을 거치면서 절대주의는 해체되고 입헌주의국가에로 옮겨가는 것이다. 1890년대의 정치상황은 이러한 대립투쟁의 시기였고 위에서 그 과정을 살펴 보았다. 이를 요약하여 정리 해 본다.

① 먼저 지배자의 정치상황을 보자. 조선왕조의 권력구조는 세도정치로 표현 할 수도 있다. 왕위를 에워싼 외척의 세도정치였다. 세도정치의 부패와 학정으로 초래된 백성의 동요와 국민의 반란은 대원군의 독재정치를 가져왔고 그도 세도정치가 되었다. 그는 정권 유지를 위해 쇄국정책을 강행 하였다. 그러나 대원군을 쓰러트린 민비는 개국정책을 채택하여 대일외교의 문호개방정책을 표방하고 대원군이 이룩해 놓은 정사를 반대하고 휘방 하였다.

② 이제 피지배자의 정치상황을 보자. 1882년 6월 군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임오군란이다. 이 군사쿠데타는 민란 또는 농민반란의 연장 연속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1884년 지식인들의 쿠데타가 일어났다. 갑신정변이다. 민비의 개화파는 이제 수구세력으로 밀려나고 일본을 배경으로하는 開化獨立黨이라 일컫는 소장 정치가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러나 三日天下로 실패 했다. 이제 피지배층의 저변과 시민계층이 각기 지배층에게 반항하고 도전하기에 이르렀다.

③ 다시 지배자간의 극한 대립상황이 나타났다. 임오군란으로 민비는 피신했고 대원군은 민비의 국장을 발표했다. 대원군은 청국에 납치되고 민비의세도 정치가 다시 계속되었다.

1884년의 쿠데타로 충돌했던 청·일양국이 민비가 러시아의 세력을 끌어들이자 러시아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1885년 대원군을 석방, 환국케 했다. 그러나 민비파는 대원군파에 대한 일대 숙청을 단행하게 된다. 물론 군란 주동자에 대한 처벌도 참혹했다. 그뿐만아니라 갑신정변에 대한 보복으로 망명한金玉均을 10년이나 추적하여 살해 했다. 지배자 간의 대립을 물론 피지배자층의 도전에 대한 탄압은 극한적이었다. 이와같은 정치상황은 10년간 계속되었다.

④ 이제 피지배자층의 정치참여과정을보자. 민비의 세도정치로 국고는 탕

진되도 국민생활도 파탄에 직면하게 된다. 도둑이 들끓고 국민들은 불한안 생활을 하게 되는 가운데 전국각지 농민들의 반란으로 뒤덮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1894년 동학교도혁명 이 일어났다. 세도정치로 이어지는 지배자의 학정과 부패로 전국에서 크고작은 民亂이 200여군데서 꾸준히 일어났고 이 데모가 한데뭉쳐 동학교도혁명으로 폭발한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한편 혁명중에는 정치개혁의 요강을 발표하여 탐관오리, 양반, 부호들의 행패를 엄징할 것과 노비문서의 개선 과부개가의 허용 토지균분배제의 실시등 사회개혁의 정강을 선포 하였으니 이것이야말로 절대왕정에 도전하여 이를 타파하고 새로운 민주-평등의 정치질서를 세우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혁명의 성격으로 규정하여야 한다고 보겠다. 동학교도 혁명은 실패 했다. 그러나 영향은 컸다. 1896년 徐裁弼을 중심으로 독립협회가 결성 되었다. 처음에는 관료파와 신진 개화인사들을 중심으로 출발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협회의 주도세력이 신진 강경파로 대치되고 그 회원들도 열렬한 학생 청년층과 많은 기독교인들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요구 관철하였고 국민참정운동으로서 의회제도를 추진 하였다. 그들은 萬民共同會를 종로 네거리에서 개최 하였다. 민주정치의 전야에 다다른 것이다. 국민의 정치적 자각은 근대적 시민국가의 길로 지향 하였다.

##### ⑤ 지배자의 개혁

동학교도혁명은 비록 국한된 지방에서 일어난 것이지만 정부의 힘만으로는 이를 진압할 수 없었고 청.일양국의 군대 때문에 좌절 되었던 것이다. 그 공로를 내세우던 두 나라는 청.일전쟁을 일으켰고 그 결과는 일본의 승리로 끝났다. 이후 일본은 친일정부를 수립하여 국정개혁을 단행 하였다. 1.2차 갑오개혁이다. 물론 일본의 침략적 의도에 따라 강행된 내정개혁이다. 그러나 그 내용은 동학혁명에서 우리 백성들이 싸워 찾고자 하던 것이다. 혁명의 성과는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이 개혁이 일본의 조정을 받는 지배자들에 의해 타율적으로 시행 되었기 때문에 항일투쟁으로 변모된 국민의 자유의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뒤에 일어난 독립협회의 민주주의 독립운동은 「대한제국」을 탄생 시켰다. 물론 이것도 러시아, 일본등 우리나라에 대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들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독립협회등의 강력한 요구가 지배자들에 의해 실현 되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처럼 대한제국이 탄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 자주독립정신을 대표하는 독립협회와 사대보수사상에 젖어 버린 황국협회가 서로 싸웠으며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의 세력과 일본세력이 이 나라에서 각축하여 지배자들이 친일, 친러의 두 파로 갈라져 암투가 심하였다. 그 후 일본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대한제국은 13년만에 멸망 하고 말았다.

의병전쟁으로 비롯된 항일투쟁은 민족독립전쟁으로 이어져 3.1시민혁명과 함께 대한제국임시정부를 수립하여 독립을 선언한다. 해방과 함께 이승만의 정부가 섰으나 李氏王朝를 잇는 권위주의 정치가 이어지고 이에 대한 피지배층의 항거는 4.19학생혁명을 일으켜 장면 민주정부를 세웠다. 그러나 이어서 5.16쿠데타로 다시 군사권위주의체제가 30년간 지속 되었다. 양반 정치구조의 체제와 勢道狀況의 再現이었다. 그리고 6.10항쟁등을 통해 김영삼 민주정부가 들어선 것이다. 조선왕조의 세도정치로인한 횡포와 부패에 항거한 민란과 군란에서 시작된 피지배층의 항쟁은 1894년 동학교도혁명으로 폭발 한 것이다. 어쨌든 소득은 갑오개혁 이었다. 한편 시민계층으로 평가되는 지식인들은 1884년의 쿠데타가 3일天下로 실패된 뒤 1896년의 독립협회운동으로 민주화를 시도 하게 된 것이다. 지배층은 이 두갈래의 항쟁을 모두 탄압하게 되고 의세를 등에 업고 집권야욕에 눈이 어두웠다. 그결과로 나라를 빼앗긴 것이다. 이 두가닥의 세력이 한데 뭉쳐 민주독립 혁명의 주체세력이 되었다. 물론 의병전쟁으로 비롯된 항일투쟁도 독립전쟁으로 이어졌으나 그들의 忠君愛國의 성격은 민주화의 열기속에 수그러 졌다. 그리고 3.1시민혁명과 대한민국임시정부(제1민주정부)를 수립하여 독립을 선언했다. 해방과 함께 이승만정부가 李氏王朝를 이었다(承). 뒤늦게(晩) 말이다. 그 권위주의 체제는 4.19학생혁명으로 무너지고 장면정부(제2민주정)가 세워졌다. 그러나 이어서 5.16쿠데타로 다시 군사권위주의 체제가 30년간 지속 되었다. 6.10항쟁등을 통해 김영삼(제3민주정)정부가 들어선 것이다. 오늘의 정치현실은 1890년대의 정치상황을 100년만에 마무리 지은 것이라는 정치사적 평가를 주저하지 않는다.

the 1990s, the number of people in the UK who are aged 65 and over has increased from 10.5 million to 13.5 million, and the number of people aged 75 and over has increased from 4.5 million to 6.5 million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00).

There is a growing awareness of the need to address the needs of older people, and the need to ensure that the health care system is able to meet the needs of older people. The Department of Health (2000) has published a strategy for older people, which sets out the government's commitment to older people and the need to ensure that the health care system is able to meet the needs of older people.

The strategy for older people (Department of Health 2000) sets out the government's commitment to older people and the need to ensure that the health care system is able to meet the needs of older people. The strategy is based on the following principles:

- Older people should be able to live independently and actively in their own homes.
- Older people should be able to access the services they need to live independently and actively in their own homes.
- Older people should be able to access the services they need to live independently and actively in their own homes.

The strategy for older people (Department of Health 2000) sets out the government's commitment to older people and the need to ensure that the health care system is able to meet the needs of older people. The strategy is based on the following principles:

- Older people should be able to live independently and actively in their own homes.
- Older people should be able to access the services they need to live independently and actively in their own homes.
- Older people should be able to access the services they need to live independently and actively in their own homes.

The strategy for older people (Department of Health 2000) sets out the government's commitment to older people and the need to ensure that the health care system is able to meet the needs of older people. The strategy is based on the following principles:

- Older people should be able to live independently and actively in their own homes.
- Older people should be able to access the services they need to live independently and actively in their own homes.
- Older people should be able to access the services they need to live independently and actively in their own homes.

## 1890년대의 국제적 환경

김 경 창\*

I. 머리말	V. Rosen-西협정과 일본의 대한 재진출
II. 下關係와 청·조 종속관계의 종언	VI. 3국간섭과 일본의 요동반도 還付
III. 을미사변과 일·러세력의 소장	VII. 청국에서의 열강의 세력범위 확정
IV. 러시아세력의 조선진출	VIII. 맺은말

## I. 머리말

동학혁명을 도화선으로 유발된 淸日戰爭은 수세기간 평화공존적 관계를 지속해온 동북아국제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했는데 그 변화의 첫째가 17세기 이래 존속된 「淸·朝宗屬關係」에 종지부를 찍게한 일이고, 그 둘째는 淸屬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의 조선의 지배를 위요한 일·러(俄) 세력의 소장(消長)과정에서 생긴 사건들이 그 진퇴의 요인이 되었다는 일이며, 그 셋째는 이 전쟁에서의 패배로 그 약체를 폭로한 청국이 열강의 집중적인 침략의 대상으로 되어 이들 열강에 의한 中國分割을 가져오게 했다는 일이다.

먼저 그 「淸·朝宗屬關係」가 「국제문제화」된 것은 청일전쟁에 이르기까지의 약 30년간인데 그것은 19세기 후반에 있어서의 「西力東漸」과 이에 따른 일본의 발흥에 起因한다. 원래 조선국이 淸朝<sup>(1616~1912)</sup>에 기속(羈屬)된 것은 병자호란<sup>(1636~1937)</sup>의 결과 맺게된 和約으로써 비롯된다. 이 淸·朝간의 종속관계는 일반적으로 보는 宗主國과 附庸國간의 관계에 비교하면 많은 차이점과 애매점이 있는 것이다.

즉 청국은 조선국을 때로는 도덕적 儀禮관계로만 취급한 적도 있고 또 때로는 명실상부한 附庸國으로 취급한 적도 있어 그 취급방법이 일정하지 않았

\* 경희대학교 교수

다. 대체로 전자의 경우는 「청·조종속관계」가 국제문제화 되지 않았던 시기에서였고, 후자의 경우는 西勢東漸의 여파와 발흥한 일본의 야욕으로 淸·朝간의 종속관계가 국제문제화 되게 된 이후의 시기에서였다.

원래 朝·淸·日 3국은 역사적, 지리적으로 밀접한 관계하에 3국간의 평화 공존적인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구미(歐美)에 개국한 일본이 서구문물을 재빨리 흡수하여 부국강병과 침략주의를 내포하고 근대화하게 되고 그 침략방향을 조선에 돌리게 됨에 종래의 동북아의 기존질서가 파괴되는 운명에 이르게 되었다.

일본도 17세기 이래 지속되어온 淸·朝간의 종속관계를 당연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일본의 조선침략에 장애가 되는 것은 물론이며, 따라서 일본으로서서는 이 淸·朝간의 종속관계의 해결이 그 조선에의 침략에 앞서 처리되어야 할 선결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그 처리는 청·조종속관계의打破로써 일본의 야욕대로 조선을 자유처분하는 일이었다.

청·일간의 이른바 「朝鮮屬邦論」의 시비계쟁은 일본의 이와같은 동기에서 출발한 것이며, 이 계쟁에서 일본에 좋은 근거로서 이용된 것이 『조선은 중국의 屬邦이나 政教禁畧은 일체 그(조선)의 自主에 맡긴다』(맺는말 중 원문·출처 참조)는 「屬邦朝鮮」에 대한 청국의 기본태도의 대외표명이었다. 일본은 청국의 이 표명을 청국이 조선을 「自主(獨立)國이라고 自認한 것이라고 해석하여 이른바 「朝鮮屬邦論」을 부인했다. 그러나 청국은 전과 다름없이 「政教禁畧은 自主에 맡기나 조선은 중국의 屬邦이다」라는 입장을 견지하여 일본의 부인에 맞섰고, 이같은 청국의 입장에 조선의 위정자들도 추종했다.

일본은 그후 조선을 강요하여 朝日修好條規(=강화조약)를 체결(1876·2)했는데 그 수조(首條)에 『朝鮮國自主之邦』 운운을 의도적으로 삽입하여 조선을 「自主國」으로 규정하고 이 自主의 뜻을 일본은 「獨立」의 뜻으로 해석하여 우회적으로 「朝鮮屬邦論」을 부인하게 되자 이 일본의 의도를 알게된 청국은 임오(1882·7)·갑신(1884·12)의 양정변을 통하여, 조선에 宗主權을 강화하는 일방 일본세력을 압도, 일본으로 하여금 조선에서 물러서지 않을 수 없게 했다.

당시 실력으로 청국을 적대할 수 없었던 일본은 청국을 假想敵으로 설정, 군사력을 배양하여 好機만을 찾고 있었는데 때마침 조선에 일어난 동학혁명

은 일본의 對淸戰爭을 유발, 이제 양국은 전쟁으로 자국주장을 관철하게 된 것이다. 이 전쟁에서의 일본의 압도적 승리는 일본의 初志인 「淸·朝宗屬關係」의 부인을 관철하게 했다.

다음은 淸屬에서 벗어난 조선은 일본의 뜻대로 요리될 운명에 서게 되었는데 청국에 대체된 일본이 조선을 강압하게 되자 조선은 러시아에 의지하여 일본의 강압에 순응하지 않게 되었음으로(引俄拒倭) 일본은 이 사태의 타개를 위해 비상수단을 결행(乙未事變) 함으로써 세계로부터 국제적 범죄국으로 낙인 찍혀 부득이 조선을 지배할 지위에서 물러서게 되고, 러시아세력의 조선진출을 공인해야 했다. 한편 이 폭거(을미사변)는 국왕(國王)에게 자신의 안전에 극도의 위협을 느끼게 하여 비밀리에 러시아공사관에 移御케 됨으로써(俄館播遷), 이제 일본은 러시아와 이 사태의 현실을 인정하는 협정(Waeber·小村각서, Lobanov·山縣협정)을 체결하여 조선에서의 양국의 균등적 이해(利害)를 확인했다. 그러나 그후 러시아의 극동정책의 변화로 일본과 타협(이른바 滿韓交換主義) 함으로써(Rosen·西협정), 러시아는 滿洲방면에서의 경영에 주력하게 되고, 일본은 다시 한국에 진출하게 되어 淸日戰爭이전의 우위를 완전히 회복, 또다시 타열강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되었다.

끝으로 패전한 청국은 下關係約으로 일본에 영토를 할양하게 되나 할양영토의 일부(遼東半島)를 3국간섭으로 환수케 되는데 그 간섭의 恩威와 열강의 借款 공여로 일본에 각종 상금(償金)을 지불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청국은 그 은혜의 대가로 열강이 요구하는 영토의 그 어떤부분도 요구대로 租賃할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을 선행으로 열강에 의한 中國分割이 시작되었고, 차관 공여가 실마리가 되어 철도와 은행에 의한 中國征服이 개시된다.

위의 기술(머리말)은 이 글(論文) 내용의 주요윤곽을 개관한 것이고 다음의 本論은 보다 구체적인 사건별 진전을 史料와 기타 資料에 근거하여 추구해 본 것이다.

## II. 下關係約과 청·조 종속관계의 증언

청국이 조선을 구미제국에 개방시킨 저의는 일본의 北漸과 러시아의 남하를 방지하고 조선의 종주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하게 하는데 있었으나 그것은 오히려 청국의 조선지배권을 위협하는 결과로 되었다. 청국이 조선에서 압도적 세력을 행사할 때 러시아가 조선에 등장하여 조선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됨으로써 청국의 조선에 대한 종주권 강화기도를 크게 저해하고, 뿐만 아니라 이와같은 러시아의 남하정책은 영국의 극동정책과 대립하는 것이 되어 영국은 우리남해의 거문도(巨文島)를 점령(1885~1887)했다. 조선을 둘러싼 이 영·러의 대립은 러시아의 조선진출을 억제하고 그의 독점적 지배를 저지할 수 있었으나 그것을 계기로 조선은 청국의 일방적 지도에 순응하지 않고, 오히려 타강국(러시아)에 의지하여 청국의 지배를 벗어나려고 했으므로 청국은 대원군의 回釋(1882. 8. 26. 구치, 1885. 10. 5. 입경), 조선의 관세사무의 관장, 외교고문의 경질, 공사파견의 간섭, 특히 조선주재사신(使臣)을 경질하여 조선정부에 압력을 가해 보았으나 그 威嚇은 종전같이 행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청국은 조선에 어떤 대사건이 일어나 조선이 궁지에 함입하는 시기(時機)를 포착하여 일거에 청국에 의존하는 정부를 수립할 것을 의도했다.

한편 일본도 임오(1882. 7. 23)·갑신(1884. 12. 4) 양정변으로 두번이나 청국 세력에 압도되어 부득이 조선에서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으나 마침 조선을 중심으로 영·러양대 세력이 대항하여 그 어느일국도 조선에서 결정적 세력으로 될 수 없었을 때 경제적으로 진출하여 정치적 재진출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동학란(동학혁명)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어났던 것임으로 청국으로서는 종주국의 입장에서 내란진압을 구실로 조선에 강력히 간섭할 기회로 되었던 한편 동학당의 배척목표로 되고있던 일본에게도 정치적으로 재진출할 절호의 기회로도 되었던 것이다. 갑신후퇴 이후 앞으로 있을 청국과의 一戰에 대비하여 강력한 군사력을 배양한 일본은 오히려 조선의 동학반란 그 자체를 성원하면서 청국의 조선에 대한 태도를 주시하고 있었다.

자력으로 동학란(동학혁명)을 진압할 힘이 없는 조선정부는 청국에 파병진압을 요청했고, 청국은 파병에 앞서 친진협약(1885. 4. 18)의 제3조 규정에 따라 조선파병을 일본에 행문지조(行文知照)하자 일본도 재조선공사관·거류민

의 보호라는 명목으로 조선에 파병, 임오·갑신 양정변때의 수모에 대한 보복과 조선병탄의 初志를 관철하기 위해 선제공격으로 淸日戰爭을 개시했다. 전쟁은 일본의 육해군의 연전연승으로 드디어 청국은 일본에 굴복, 가혹하고 굴욕적인 下關係約(1895. 4. 17)에 서명했다.

먼저 이 조약 제1조에 의해 조선을 독점지배하는데 결정적 장애로 되었던 「청조종속관계」를 종언케 했다. 그 제1조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청국은 조선국의 완전무결한 자주독립국임을 확인한다. 따라서 우 자주독립에 손해가 될 조선국으로 부터 청국에 대한 貢獻典禮등은 장래 완전히 이를 폐지한다.』<sup>1)</sup>

이로써 청국은 조선을 완전자주독립국으로 확인하고 장래 조선의 貢獻典禮등을 일체 폐지하는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조선은 청국의 번속(藩屬)의 지위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으나 그것은 일본의 조선병탄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조선은 멀지않아 다시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轉落)될 운명에 서게 되었다.

### III. 을미사변과 일·러세력의 소장(消長)

#### 1. 을미사변(일인폭도 범궐·민비시해)

청국과의 전쟁의 승리로 조선에서 청국을 축출하고 청·조종속관계를 타파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3국간섭(후술)에 굴복하여 遼東半島를 청국에 환부한 일본은 조선에 대한 기본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조선에 대한 열강의 간섭, 특히 러시아의 간섭을 겁내 부득이 조선에 대한 불간섭방침을 채택(6월 4일의 각의결정)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일본은 될수록 간섭을 중지하고 조선을 자립시키는 방침을 취하게 되었다.<sup>2)</sup>

1) 王彦威·王亮編, 淸季外交史料, 光緒朝(4), 卷109(台北, 文海出版社印行, 1970(民國59)), pp.126~133(全權大臣 李鴻章奏 中日會議和約已成摺附馬關條約議訂專條另約停戰條約停戰展期專條及李鴻章咨李文廷芳等 呈文).

日本外交文書, 第28卷 第2冊(東京, 日本國際聯合協會, 1963), pp.362~380(1089 文書).

2) 日本外交文書, 第28卷 第1冊, pp.440~1(298文書).

이에 앞서 內相 井上 馨이 청일전쟁의 승리가 확실해짐에 따라 일본이 앞으로 자유처분할 수 있게된 조선을 자의대로 요리하기 위해 조선공사로 착임(1894. 10. 26) 했다가 조선정정(政情)의 변화를 보고하기 위해 귀국(1895. 6. 7)했을 때 일본의 당면전략(政略)을 납득하고 조선공사직에서 후퇴하여 본국정계에의 복귀를 희망, 자신의 후임으로 육군중장 三浦梧樓를 천거하고 다시 조선에 귀임했던 것이다.

그후 일본정부는 주일(日) 러시아공사 Hitrovo(Mikhail)로부터 「조선국의 완전독립을 위해 일본은 일체의 간섭을 중지하라」는 취지의 경고를 받게되어 일본정부는 井上이 천거한 三浦를 조선주재공사로 임명(8. 17)하고 井上の 귀국을 명했다. 井上은 9월 17일 한성을 떠나 귀국했다.<sup>3)</sup>

한편 왕실의 충애를 받고 있는 러시아공사 Waeber는 궁중(宮中)의 미국인 고문 Le Gendore(=李仙得)를 조종하여 왕조(王朝)의 안전을 위해 연아척왜(聯俄斥倭)를 헌책(獻策)케 했다.<sup>4)</sup> 이에 따라 왕실과 척족(戚族)계열은 친러정책을 노골화하게 되고 정부인사(人事)도 이 방향에서 단행했으며 기타의 당면시책에서도 「친러척왜」경향이 급격히 노정되었다. 특히 왕실은 이 성급한 조치에 병행하여 종래 문제로 되어온 훈련대의 해산설을 유포시켜 관계자들의 심정을 불안케 한데다가 세간에는 러시아에 함북(咸北)의 요지를 할양하고 그 힘을 빌어 왕실의 안전을 기할 것이라는 풍설과 미구(未久)에 일인고문을 축출할 뿐아니라 金弘集을 비롯한 각료들마저도 암살할 것이라는 소문이 유포되어 살벌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이와같은 조선의 政情으로 일본인들은 일본이 과거 1년간 추진한 내정개혁을 왕실과 친러파가 부인해 버리는 것이라고 해석했고 또 그 개혁으로 성립된 친일정부의 존재와 위신까지도 무시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sup>5)</sup>

한편 부임(9월 1일) 이래 잠시 정관태도를 취하면서 왕실을 중심으로 왕래되는 조·러양국의 태도를 주시하고 있던 三浦공사는 왕실이 「인아거왜책」

3) 日本外交文書, 第28卷 第1冊; pp.394~6(249,250,251,254 文書).

井上馨侯傳記編纂會, 世外井上公傳, 第4卷(東京, 原書房, 1968), pp. 512~9.

4) 菊池謙讓, 近代朝鮮史, 下卷(京城, 鷄鳴社, 1939(昭14)), pp. 392~3.

5) 小早川秀雄手記, 閔后狙落事件(「閔后弑害事件의 真相」(民友社譯本)), pp.23~4.

菊池謙讓, 上揭書(下卷), p.397.

朝鮮官報, 開國 504年 8月分.

(引俄拒倭策)을 점차 노골화하고 이에 따라 순검(巡檢)과 훈련대병사의 충돌사건이 빈발하고, 뒤따라 훈련대해산설이 대두될 뿐아니라 「할지인아설」(割地引俄說)과 일인고문 축출설, 대관(大官) 암살설등이 유포되어 세정이 소연해진 것을 기회라 하여 비상수단으로 친아배일(親俄排日)하는 민비(閔妃)를 제거함으로써 조·러관계를 단절시킬 것을 결심하고 흉계를 밀모(密謀)하게 되었다.

그러나 민비와 척족계열 및 친러파는 10월 7일 군부대신 安翊壽를 시켜 훈련대의 해산을 결정했다는 것과 다음날(8일) 무장해제도 단행할 방침이라는 것을 三浦공사에게 통고하게 하고, 아울러 閔泳駿을 궁내대신(宮內大臣)에 임명할 사전양해를 구하게 했다. 훈련대의 해산통고를 받은 三浦공사는 일본군 수비대대장(馬屋原務本)과 훈련대 제2대대장 禹範善등을 공사관으로 불러 8일 훈련대가 무장해제를 당하기전에 오늘밤(7일) 중으로 대원군을 응위입궐(擁衛入闕)하여 거사(擧事)할 결심이라는 것을 말하고, 휘하장병을 인솔하고 대원군호위의 임무를 담당할 것을 지시했다.<sup>6)</sup>

10월 8일(음 8월20일) 새벽 三浦공사의 주밀한 흉모하에 대원군은 훈련대, 일본경찰대, 일본군 1대대, 기타 일본인 수십명(무뢰한·검객·浪人·언론인등)에 호위되어 공화문으로 경복궁에 들어갔다. 이들 폭도들의 범궐을 시위대(侍衛隊)가 저항하다가 연대장 洪啓薰이 일병에 의해 살해되고, 궁내대신 李耕植도 살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비(閔妃)도 이들 일인폭도들의 흉인(凶刃)에 의해 시해되었다.<sup>7)</sup>

한편 러시아공사 Waeber와 미국공사대리 H. N. Allen은 궐내의 총성으로 심상치 않은 사태를 알게되자 국왕을 알현했는데 三浦공사와 대원군의 시립(侍立)속에서 공포에 싸인 국왕은 Waeber와 Allen에게 말없는 동정과 구조를 바라는 듯했다. 모든것을 짐작하고 퇴궐한 그들은 고립무원의 국왕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보내는 동시에 진정한 사변자료를 신속히 수집한후 한성주재 외국공사들과 공동으로 三浦공사를 방문, 이번사변의 전말과 일본이 사변에

6) 李瑣根, 韓國史(現代篇)(서울, 乙酉文化社, 1969), pp. 596~7.

7) 伊藤博文編, 秘書類纂, 朝鮮外交資料, 中卷(東京, 秘書類纂刊行會, 1936(昭11)), pp.409~435.

小早川秀雄手記(前掲譯本), pp.54, 77~8.

菊池謙讓, 前掲書(下卷), pp.401, 417~8.

관계한 사실을 질문, 추궁했다. 그러나 三浦는 자신이 주도한 엄연한 사실을 부인하고 「이번사변은 훈련대 해산설을 계기로 훈련대 병정들이 대원군과 공모하여 일으킨 소란이며, 일본군 수비대의 출동은 왕명(王命)으로 진압을 위해 파견된 것이고, 일인이 평복대검하고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러시아공사가 일본병과 평복발검(拔劍)한 일본인이 왕비전내에 침입하여 살상하는 것을 목격한 증인이 있으니 엄중히 조사해야 한다는 추궁에 三浦는 하는수 없이 조사의 필요를 시인하고, 사실이라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했다.<sup>8)</sup>

## 2. 아관파천과 Waeber · 小村협정

일본공사 三浦의 주밀한 흉모(凶謀) 하에 일인 폭도들이 범궐하여 그들의 독인(毒刃)에 민비(閔妃)가 시해(弑害)된 후 러시아공사 Waeber는 돌연 공사관 경비를 강화시킨다는 구실하에 1896년 2월 10일 인천 정박의 러시아군함으로부터 수병(水兵) 120명을 상륙, 입경시켰다. 이날 벌써 친러파를 중심으로 중대한 음모가 성숙해 갔는데 해외탈출에서 귀국한 李範晉은 Waeber공사와 밀의(密議)하고 궁녀 김씨와 엄상궁을 통하여 대원군과 친일파 및 일인들이 또 다시 국왕폐립(廢立)의 중대음모를 추진중이라는 정보를 국왕께 전달하고, 왕실의 안전을 위해서는 국왕은 극비리에 러시아공사관으로 이어(移御)해야 한다는 것을 내통했다고 한다.<sup>9)</sup>

예정계획대로 2월 11일(乙未 12월 28일) 새벽 국왕과 왕세자는 여교(女橋)를 타고 영추문(=신무문)을 무사히 나와 러시아병 50명에 호위되어 정동의 러시아공사관으로 외행(外幸)했다(俄館播遷 <sup><1896. 2. 11</sup> ~1897. 2. 20.>). 러시아공사와 李範晉, 李完用 등의 영접을 받으며 러시아공사관으로 들어간 국왕은 즉시 경무관 安桓에 명하여 일본세력을 배경으로 성립된 金弘集정부의 5대신(김홍집 · 유길준 · 정병하 · 조의연 · 장백)을 역적으로 낙인찍어 포살(捕殺)하라고 했다.<sup>10)</sup>

8) 日本外交文書, 第28卷, 第1冊, pp.494~5(359文書).

9) 日本外交文書, 第29卷, pp.689~690,692~3(356, 360文書).

10) 李瑄根, 前掲書(現代史), pp.730~1.

日本外交文書, 第29卷, pp.682~690(352, 353, 356文書).

이로써 1894년 6월 이래의 친일정권은 완전히 몰락되고 그 대신 친러·미 내각이 아관파천의 당일(2월 11일) 조직되었다.

이와같이 국왕이 일본세력의 감시에서 벗어나 러시아공사관에 외행하게 되자 일본이 지난 3년동안 쌓아 놓은 정치세력이 근본적으로 전복, 제거되게 되었으므로 이에 당황한 일본공사 小村(壽太郎) (1895. 10. 19, 三浦의 후임으로 취임) 1896. 5. 31까지 재임.은 이 사태를 단념·포기할 수가 없어 사변당일(2월 11일) 러시아공사관을 방문, Alexei de Speyer공사에게는 그 진상해명을 요구하고, 국왕께는 독립국가의 체면을 운운하여 속히 환궁(還宮)하기를 진언(進言)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공사는 「국왕께서는 현하의 정치정세가 중대하여 더이상 왕궁에 체류하는 것은 일신상의 안전을 위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세자와 함께 당공사관으로 피난했다」는 공한을 小村공사에게 보냄으로써 국왕 자의에 의한 피난임을 천명했고, 국왕도 「불안, 공포의 왕궁보다는 러시아공사관의 一室이 오히려 안전함으로 당분간 환궁할 수 없다」고 하여 小村공사의 진언을 즉석에서 거절했다.<sup>11)</sup>

사실 러시아는 3국간섭(후술)의 주도국으로서 요동반도를 환부케 하여 청국의 보호자임을 자임하게 되고, 또한 조선국왕의 아관파천을 계기로 하여 조선에서 일본세력을 배제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조선왕국의 보호자라도 자처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러시아를 극동제패에 있어서의 가상적으로 간주하고 군비확장 계획을 추진했으나 당시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러시아에 적대할 수 없었으므로 정면충돌의 위험을 회피하면서 주로 「외교교섭에 의한 타협의 길」을 모색하려고 했다.

그래서 일본정부는 주일 러시아공사와 주러 일본공사를 통하여 조선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내의(內意)를 타진한 후 2월 25일 조선의 小村공사와 러시아주

김홍집(총리)과 정병하(농상공)는 광화문 앞에서 잡혀 경무청으로 연행되던 도중 군중들과 순검들에 의해 타살되고, 어윤중(탁지)은 보은의 고향집으로 도피해 가다가 용인지경에서 난민에 의해 살해되었으며, 유길준·조의연·장박·권형진·우법선·이두황·이범래·이시호등은 피신했다가 일인의 보호하에 일본으로 망명했다.(日本外交文書, 第29卷, pp.683~7(353文書), 續陰晴史(上), p.445(光武元年丁酉12月21日條).

11) 李瑄根, 同書(現代史), pp.736~7.

日本外交文書, 第29卷, pp.687~8(353文書 附屬書2, 2月 11日字 在韓露公使書翰).

재 西(德二郎) 공사에게 다음과 같은 요지의 대러협상의 기본방침을 지시했다.

「1) 일본정부는 러시아정부가 국왕의 환궁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희망하며 만약 국왕이 일본병의 행동에 불안감을 갖는다면 앞으로 일본병은 일본공관과 조선거류 일인만을 보호할 것이고, 필요시에 국왕보호에만 사용할 것이라는 보증을 조선정부에 제공할 것이다.

2) 일본정부가 희망하는 것은 조선이 신정부를 조직할 때에는 공평무사한 인사(人士)로써 조직할 것이라는 취지를 일·러 양국이 국왕에게 권고하도록 하는데 있다.

3)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잔인한 보복형벌을 가하지 않도록 일·러 양국이 조선정부에 충고하자」<sup>12)</sup>

는 것이다.

이는 일·러양국이 공동으로 조선을 보호·감독하지는 것인데, 한편 일본정부는 이 내용을 주일 러시아공사 Hitrovo를 통해 러시아정부에 전달케 했다. 이에 대한 회답은 2월 3일 러시아외상(外相)이 주러 西공사에게 구두로 전달하고 문서회답은 3월 2일 Hitrovo공사를 통해 일본정부에 전달했는데 그 회답의 요지는 다음의 5개항이다.

「1) 국왕은 언제라도 수의로 환궁할 수 있고, 러시아공사는 이를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2) 러·일양국 대표자는 국왕에게 온건한 각신(閣臣)을 등용하고, 그 신하들에게 관대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것이다.

3) 양국의 대표자는 전선(電線) 보호를 위해 금일도 아직 외국군대를 필요로 하는지, 만약 역시 필요로 한다면 어느 선로(線路)에서 어느 정도의 군대를 필요로 하는지 이를 조사할 것이다.

4) 양국대표자는 또한 필요한 경우에 양국공관(공사·영사관)의 보호를 위해 취할 조치를 서로 협의할 것이다.

5) 위 상의(商議)는 쌍방이 서로 화충(和衷)의 정신으로써 할 것」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3월 3일 동의회답을 발송함으로써, 당면한 조선문제는 목전의 현실을 그대로 시인하고 앞으로 공동보조를 취한다는 전제하에 일

12) 日本外交文書, 第29卷, pp.742~4(410文書).

· 러 양국은 우선 타협하게 되었다.<sup>13)</sup>

위의 취지를 기초로 한 구체적인 협약체결은 조선주재 일·러자국공사에게 위임 했음으로 이에 따라 3월 12일부터 러시아의 Waeber공사와 일본의 小村공사의 사이에 협상이 진행되어 1896년 5월 14일 이른바 Waeber·小村협정(정식으로는 조선문제에 관한 일·러 양국 대표자 각서 = Memorandum)이 조인되었다. 의정된 각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왕이 환궁하더라도 그 안전에 대해 의구를 품지 않을 때가 되면 환궁을 진언하고, 일본대표자는 일본장사(壯士)들의 단속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을 보증한다.

2) 관대 온화한 인물을 내각에 등용할 것을 국왕에게 추천한다.

3) 부산·한성간의 일본전신선 보호를 위해 일본위병(衛兵)을 둘 필요가 있으며, 그 위병은 될수록 빨리 철병하고 헌병을 두나 그 총수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조선정부가 안녕질서를 회복하게 되면 각지로부터 철퇴할 것.

4) 만일 조선인으로부터 습격을 받을 경우에 대비하여 각 개항장에 있는 일본인이나 거류지를 보호하기 위해 한성에 2중대, 부산에 1중대의 일병을 두나 단 1중대는 200명을 초과할 수 없고, 거류지 습격의 우려가 없어지면 점차 이를 철퇴할 것. 러시아도 또한 각지에 일본병원(兵員)수에 초과하지 않는 수의 위병을 둘 수 있으나 정밀( 조용)해 지는대로 철퇴할 것.<sup>14)</sup>

이 각서는 러시아가 차지한 승리가 명료하게 형식화 되어 일본에 유리한 아무런 특권의 흔적도 없는 협정이었다. 실제로 이 각서 중 1), 2)는 국왕이 러시아공사관의 보호하에 들어감으로써 조선 정부에 일어난 상태를 정상(正常)한 것이라고 상호적으로 인정할 것을 약속한 것이며 3), 4)는 일본에 양보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일본전신선의 수비와 일본인거류지의 수비를 위한 제한병원(兵員)의 주찰을 인정했으나 그 대신 러시아도 또한 일본병과 동수의 주병(駐兵)을 조선에 유지하도록 정했는데 이는 일본으로서는 당시 조선을 점

13) 日本外交文書, 第29卷, pp.746~8, 750~1(414, 415, 418, 419文書).

14) 日本外交文書, 第29卷, pp.789~792(458文書).

日本外務省編, 小村外交史(東京, 原書房, 1966), pp.88~9.

령하고 있는 모든 자국병력의 철퇴를 의미하고, 러시아로서는 새로운 주병권(駐兵權)을 얻게 된 것이며 각서에 외국군의 철퇴조건이 부시(附示)된 것은 당시의 조선정부의 지위로써 특히 러시아의 정치적 세력을 남기게 한 것이다.

### 3. Lobanov · 山縣협정

위의 Waeber · 小村각서에서 조선에 대한 러시아세력이 공인되었는데 러시아정부가 이 세력을 공고히 하고, 형식화하는데 어떠한 시도로 나올 것인가의 문제는 각서에서는 미해결로 되어 있었으므로 일본정부에서는 이 관계에 있어서 러시아로부터 어떠한 보장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일본정부는 러시아황제 Nicholas 2세의 대관식<sup>(1986. 5. 26)</sup>에 참렬할 특파전권대사로 일·러 제휴론자인 山縣有朋(육군대장)을 파견하게 되었다. Moskva에 도착한 山縣대사는 5월 24일 러시아외상 Lobanov와 비밀리에 교섭을 개시하여 수차의 회상(會商)을 거듭한 끝에 1896년 6월 9일 Lobanov · 山縣협정(조선문제에 관한 일·러간 의정서 *The Yamagata-Lobanov Agreement*)을 조인했는데<sup>15)</sup> 이 협정은 공개조항 4개조와 비밀조항 2개조로 되어있다.

#### 「※공개조항 4개조 내용

- 1) 조선의 재정문제에는 러·일 공동으로 그 구제, 권고, 원조에 임할 것(제1조).
- 2) 조선내의 질서유지를 위해 조선의 자력으로 군대·경찰을 유지시킬 것(제2조).
- 3) 일본이 조선에서 현재 점유하는 전신선을 계속 관리하고, 러시아도 또한 그 국경에 이르는 전신선을 가설할 권리를 보유할 것. 이들 전신선은 조선정부에 매수할 수 있는 방도가 생기는 대로 매수할 수 있을 것으로 한다(제3조).
- 4) 위의 원칙을 보다 정확·상세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후일 상의할 필요로 할 사항이 생겼을 때 일·러는 우의적으로 타협한다(제4조).

#### ※ 비밀조항 2개조 내용

- 1) 조선의 안녕·질서가 문란해 지던가 또는 문란해 질 위험이 있을

15) 日本外交文書, 第29卷, pp.807~818(470~478文書).

ベ・ア・ロマノフ著 山下義雄譯, 滿洲に於ける露國の利權外交史(東京, 鴨友堂書房, 1934(昭 9)), pp.194~6.

경우에는 러·일 양국민의 안녕·보호와 전신선 유지를 위한 군대외에 합의에 의해 다시 군대파견을 필요로 할 경우 그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양국군대의 사이에 점령하지 않는 공지(空地)를 두도록 용병(用兵) 지역을 확정할 것(제1조).

2) 조선이 스스로 군대를 조직하게 될 때까지 조선내에 일·러 동수의 군대를 둔다(제2조).<sup>16)</sup>

山縣의 당초의 의도는 북위 38도선으로써 조선을 분할하는데 있었다. 즉 남반은 한성을 포함하여 일본에, 북반은 러시아에 양여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러시아의상 Lobanov는 山縣의 「조선분할」 제의를 거절<sup>17)</sup>하고 양자간에 조선의 보전 및 독립의 원칙과 이 원칙을 지지함으로써 일·러양국의 균등적 이해(利害)를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다.

#### 4. 조·러 동맹밀약(密約)

이와 같이 조선문제에 관한 러·일의정서에 조인한 러시아의상 Lobanov는 한편으로 조선국왕이 Nicholas 2세의 대관식축하사절을 겸해 Moskva에 파견한 러시아 주재공사 閔泳煥이 제의한 원조요청에 대하여 회답형식으로 이른바 조·러밀약(密約) 다음의 5개조항을 약속했다.

##### 「조러밀약 5개조의 내용

1) 국왕은 러시아공사관에 체재중은 러시아 위병에 의해 호위된다. 국왕은 친히 필요하고 편의하다고 생각하는 한 러시아공사관 내에 체류할 수 있다. 만약 국왕이 환궁하게 될 경우에는 러시아정부는 국왕의 안전에 대해 도덕적 보증을 책임진다. 현재 공사관에 있는 러시아 군대는 러시아공사의 지휘에 따라 공사관에 상주(常駐)하며, 필요한 경

16) 日本外交文書, 第29卷, pp.815~819(478文書 別電(朝鮮問題ニ關スル莫斯科議定書). Paul H. Clyde, *The Far East*, (Prentice-Hall, INC., N.Y., 1958), pp.312~3.

17) Paul H. Clyde, *op cit*, pp.312~3.

Lobanov의상이 山縣의 「조선분할」 제의를 거절한 이유는 「러시아로서는 지리적 정치적 조건에 입각하여 장래 러시아제국(帝國)의 조성(組成) 지방으로 예정된 조선반도의 남반(南半)을 조약에 의해 일본에 양여한다고 하면 전략 및 해군 군사관계로 보아 조선의 가장 중요한 지방을 정식으로 영구히 포기하게 되어 러시아는 장래에 있어서의 자기행동을 스스로 속박하는 것이 된다」(ベ・ア・ロマノフ, 前掲書, pp.194~5)는 것이었다.

우에는 증원할 수 있다(제1조).

2) 군사교관문제의 해결을 위해 근일 한성에 경험있는 러시아 고급 장교를 파견하여 본건에 관해 조선정부와 상의케 한다. 파견된 장교는 우선 국왕의 친위병 편성문제에 종사시킨다. 이 외에 러시아는 재정에 경험있는 자를 파견하여 조선의 경제상태를 연구시키고 재무(財務)에 타당한 방법을 강구케한다(제2조).

3) 조선정부에 원조를 하게될 러시아고문의 파견문제는 전계(前掲) 제2조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한다. 군사 및 재정에 관한 전시(前示) 파견원은 러시아공사의 지도하에 조선정부의 고문으로 복무한다(제3조).

4) 조선정부가 행하는 차관약정은 조선의 경제상태와 정부의 필요여하가 판명되는대로 기도될 것이다(제4조).

5) 러시아정부는 러시아의 육상전선선을 조선의 전선선과 연락하는 것을 승낙하고 이에 관계하는 원조를 할 것(제5조).<sup>18)</sup>

원래 민영환이 가지고 간 조·러밀약안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 1) 동래 절영도의 앞바다는 러시아군함의 유계(留繫)에 맡기고 외국 의 침어(侵漁)는 러시아에 의해 방새(防塞)할 것.
- 2) 군량, 군비 각종 소모품들은 조선이 담당할 것.
- 3) 조선군병의 연습에는 러시아사관으로써 교련할 것.
- 4) 조선인부는 러시아에서 임의 사역할 수 있을 것.
- 5) 러시아 및 청국, 조선의 3국 공수(共守)동맹을 체결하고 중대사건은 합의할 것.
- 6) 각부 고문관에는 러시아인을 전빙(專聘)할 것.
- 7) 함경도의 개광(開鑛)은 임의 러시아의 개채(開採)에 맡길 것.
- 8) 함경·강원 양도의 벌목(伐木)은 러시아의 임의 경영에 맡길 것.
- 9) 함경·평안 양도에서 러시아의 군함은 임의 출입할 수 있을 것.
- 10) 조선 재무가 부족할 때는 러시아로부터 차입할 것.
- 11) 군기(軍器) 부족분은 러시아로부터 차입할 것.
- 12) 조선정치는 러시아의 행정조직에 의해 개혁할 것.
- 13) 각 항구 사무는 러시아 정부에 전행(專行)시킬 것.
- 14) 각국과 불미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러시아와 협의할 것.

18) 베·아·로마노프, 同書, pp.196~7.  
日本外務省編, 小村外交史, pp.94~5.

- 15) 함경·평안 양도에서 러시아의 병참(兵站)을 설치할 것.
- 16) 개광과 벌목권은 10년간으로 약정한다.
- 17) 연호(年號)를 개정할 것.

이외에 일자는 건양(建陽) 원년 11월 1일, 부서(副署)는 군부대신 민영환, 탁지부대신 심상훈, 외부대신 이완용, 내부대신 박정양으로 되어 있었다.<sup>19)</sup>

위의 조·러밀약 5개조항의 약속외에 Lobanov외상은 민영환공사에게 1896년 8월 1일(러력)자의 대요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냈다.

『7월 26일(러력) 귀국정부의 훈령에 의한 귀공사의 조회를 받았다. 조회에서 말하기를 조선은 러시아와 강토를 서로 접하며, 우목다년(友睦多年), 수시 상의(商議)하여 더욱더 교의(交誼)를 두터이 한다. 앞으로 조선이 만약 뜻하지 않는 사건이 생기면 러시아는 병력으로써 돕고, 또는 혹은 타국이 조선의 자주독립권을 저해하는 일이 있게 되면 러시아는 따로 공판(公辦)을 하여 추호도 훼손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 운운했다. 본 대신은 이 뜻을 주상(奏上)하여 여기 귀공사에게 지금 이후 양국 정부는 교정(交情)이 더욱더 밀접해져서 청(請)이 있게 되면 반드시 허락할 것이며, 조선이 만약 뜻하지 않는 사건이 있든가 또는 타국이 자유권을 저해하는 일이 있게 되면 러시아는 마땅히 공판(公辦) 방조하겠다는 것을 경고(敬告)할 칙운(勅允)을 얻었다. 귀공사는 귀국하여 이를 귀국정부에 알리고, 함께 이 신(信)을 지켜 길이 돈목(敦睦)을 갖도록 하자.』<sup>20)</sup>

이 내용으로 보아 조·러약속(밀약)은 일종의 방수(防守)동맹조약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었다.

##### 5. 러·청비밀조약(密約)

이와같이 러시아는 일본과는 「러일협약」(Lobanov·山縣협정)을 체결하면서 한편으로는 조선과 「조러동맹밀약」을 약속했고, 뿐만아니라 청국과도 「러청비밀조약」(密約)을 체결하여 Waeber·小村각서나 Lobanov·山縣협정도 한장의 사(死) 문서에 지나지 않게 했다. 1896년 6월 3일 조인한 이 러청밀약의

19) 菊池謙讓, 前掲書(下卷), pp.501~2.

20) 日本外務省編, 小村外交史, p.95.

내용은 다음 6개조이다.

『러청밀약 6개조 내용

1) 동아의 러시아령(領), 청국 또는 조선의 영토에 대하여 일본에 의해 행해지는 침략은 본 조약의 즉시 적용을 필요케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그럴 경우 양체약국은 일체의 육해군 병력으로써 상호 원조할 것(제1조).

2) 단독으로 강화하지 않을 것(제2조).

3) 군사행동중 필요할 때에는 일체의 청국항만은 러시아군함에 개방되며 청국관헌은 이에 대해 편의를 제공할 것(제3조).

※4) 청국정부는 러시아군대가 위협을 받은 지점에 도착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해 吉林·黑龍江 양성(省)을 경유하여 블라디보스톡에 도달하는 철도의 건설을 승인한다. 그러나 본 철도와 러시아 철도의 연락은 청국 영토에 대한 침략의 혹은 청제(淸帝)에 대한 침해의 구실로 되어서는 안된다. 이 철도의 건설 및 개발은 러·청은행에 맡길 것이고 협정은 러시아주재 청국공사와 러·청은행의 사이에 체결할 것(제4조).

5) 러시아는 전시·평시 모두 군대와 병참수송을 위해 자유로히 철도를 사용할 수 있을 것(제5조).

6) 본 조약이 제4조의 협정이 확인된 날부터 15개년간 효력을 가진다(제6조).<sup>21)</sup>

이와같이 하여 청·일개전과 동시에 일본이 독립으로 이른바 조선부조(扶助)의 대임(大任)을 맡을 것을 중의에 선명하고 실제로는 일본의 독점으로 되었던 조선의 정국(政局)은 드디어 러·일양국의 이해접촉의 초점으로 화하게 되어 일본은 지금 부득이 러시아의 협력을 빌어 조선에 약간의 연고를 부지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더욱이 국면의 추이는 일본은 러시아에 비해 조선에 대한 세력상의 균형을 잃고 있었으나 이 현상을 일본이 감수하

21) 베·아·로마노프原著, 러시아문제研究所譯, 露西亞帝國滿洲侵略史(東京, ナウカ社, 1934(昭9)), pp.116~118.

淸季外交史料, 光緒朝(4), p.338(專使李鴻章與俄外部大臣羅拔戶部大臣微德訂中俄密約).

外交時報社編, 支那及び滿洲關係條約及公文集(東京, 1936(昭11)), pp.446~7(露支同盟條約(李鴻章ロハノフ條約)).

지 않으면 러·일 충돌은 불가피하게 될뿐아니라 일본은 그 현유(現有)세력마저도 유지할 수 없는 정세에 있었으므로 어찌할 수 없이 러시아세력의 조선진출을 공인(公認)하고 일본은 명목상으로만 조선에서 러시아와 평등지위를 유지한다는 정도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 IV. 러시아세력의 조선진출

조·리모스크바밀약에 의거하여 러시아는 조선에 군사·재정상의 권세부식과 이권의 발전을 기도했다. 한성의 Waeber공사는 1896년 7월 조선정부에 군대훈련교관으로 러시아사관(士官)을 용병하도록 제의하여 Potiata소령등의 러시아사관 3명과 하사관 10명이 군대훈련을 위해 한성에 왔고, 총기와 탄약 등도 러시아로부터 원조를 받게 되었다. 또 이와 전후하여(동년 6월) 프랑스가 조선에 차관을 제의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러시아대장대신 Wite (Sergei Yulievich)는 조선에 재정고문의 파견을 서두르는 한편 러·청은행원 Pokotiloff(D.D.)등을 파견하여 조선의 재정실태를 조사케하는 동시에 러시아 재무관의 도착전에는 타국과 거액의 차관계약을 하지않도록 조선정부에 권고케 했다.<sup>22)</sup>

이해 8월 Pokotiloff가 한성에서 보고한데 의하면 (1) 국왕은 일본에 채무를 다하고 일본인에 의해 살해된 왕비의 대장(大葬)을 일본의 돈으로 치루는 것을 피하기 위해 300만 Rubl의 차관을 얻을 것을 제의했다. (2) 한성에는 이미 조선은행 개설의 의논이 진행되고 있어 그 상의차 香港·上海銀行의 대리인이 오기로 되어있다. 운운하여 혹은 영국인이 대자본을 가지고 이 조선은행에 참가하지나 않을까 의구하고 즉시 한성에 러·청은행 지점을 개설하여 차관을 공여하도록 할 것이며 차관은 조선의 관세수입으로 확실한 보증이 될 수 있다는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그러나 Wite는 조선의 재무행정과 재정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을 고집하여 차관을 지체시키고, 한편 영국인고문 Brown (J. McLeavy)은 러시아차관을 조선에 허용하지 않을 것을 근본방침으로 하여 조선정부로 하여금 일본차관을 국고금으로 반제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22) 信夫淳平, 韓半島(東京, 東京堂書店, 1901), p.506.

ベ・ア・ロマノフ, 前掲書, pp.201~2.

조선정부는 일본은행에 100만원(円)의 지출을 하게되고 같은 방법으로 1897년 가을까지 다시 100만원(円)을 반제한 것이 판명되었다.<sup>23)</sup>

한편 황제(고종)도 1897년 2월 20일(1896년 2월 11일 아관파천) 러시아공사관으로부터 경운궁(=명례궁=덕수궁)에 환어(1년 9일만에)하게 되고, 또 러시아정부와의 약정(조·러 Moskva밀약)이 기대에 어긋나게 된 것은 황제를 실망케 하여 이해 5월 황제는 독·불의 동시원조를 희망하여 이를 양국에 제의했으며, 특히 프랑스에 대해서는 육전대(陸戰隊)와 상시(常時)경비함(艦)의 인천파견을 요청하려고 했다.<sup>24)</sup>

이와같이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차관문제와 은행개설문제의 근본해결이 되지 않아 재정고문 문제도 잘 진척되지 않았으나 Wite는 이해 5월 한국정부의 재정고문으로 Karl Alexeieff를 파견하여 「한국세관에 있어서의 러시아세력의 확립을 도모할 것」을 제언했다. Alexeieff가 한성으로 떠남에 앞서 받은 훈령은 「...신중히 행동하여 한국의 재무행정과 경제상태를 충분히 이해하고, 한국에 러한은행을 설치하는 데에는 어떠한 조건에 의하면 가능할 것인지를 조사하고, 한국정부가 러시아 전신망과의 연락을 설정하도록 할 것이며 점차 관세재정을 완전히 러시아인의 손에 넣는 것을 목적으로 하도록 하라」는 것이었다.<sup>25)</sup>

러시아는 다시 1897년 9월 Speyer(Alexei de)를 러시아공사관 서기관에서 주한공사로 파견(Waeber는 Mexico로 전임)했고, 10월에는 러시아대장성이 한국정부의 탁지부총고문 겸 해관총판(總辦)으로 파견한 Karl Alexeieff도 한성에 도착하여 그 요직을 맡게 되었다. 10월말 황제가 재정고문 겸 총세무사(司)인 영국인 Brown이 수지(收支)에 엄정했고 특히 궁내비(宮內費)까지도 긴축한 데에 앙심을 품고, 그를 기피하는 기미를 이용하여 Speyer공사는 한국정부에

23) 베·아·로만노프, 上揭書, pp.202~8.

24) 베·아·로만노프, 同書, pp.208~9.

(1897년 1월 12일 국왕(고종)은 제위(帝位)에 올라 「황제」(皇帝)로 부르게 되고 1월 16일에는 국호(國號)를 「대한제국」(大韓帝國)으로 개칭하고 연호(年號)를 「광무」(光武)라 하여 「고종황제」(高宗皇帝)를 「광무제」(光武帝)라 했다. 이로써 「한국」(대한제국)은 독립국이 되고, 각국은 이를 인준했다. ※ 본 논문도 이때부터 「조선」을 「한국」으로 「국왕」을 「황제」로 표기했다.)

25) 베·아·로만노프, 同書, pp.213~4.

Brown을 파면하고 Alexeieff로 대체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10월 26일 주한영국총영사 J.N. Jordan에게 Brown의 해용(解傭)을 통고했다. 이는 한·러의 영국에 대한 일종의 도전이므로 Brown은 한국정부의 이 조치에 불응했을 뿐만 아니라 Jordan총영사도 이 통고에 강경히 항의했고, 영국정부는 동양함대에 명하여 군함 7척을 인천에 회항시켜 시위토록 했다. 이 시위를 눈앞에 본 한국정부는 크게 놀라 황급히 Brown의 해용취소를 발표하고 Alexeieff를 탁지부 재무고문에만 두게하여 시국을 일단 미봉했다.<sup>26)</sup>

1898년 봄 러시아는 절영도(絶影島)에 석탄고(庫) 부지로 파대한 토지를 선정하고, Speyer공사가 한국정부에 이 토지의 조차를 강요했으나 이를 거절하기로 결의한 외부대신 李道宰는 러시아가 선정한 그 지역은 각국조계(租界) 예정지의 태반을 차지하는 관계상 각국 使臣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공사에게 통고했다. 그러나 Speyer공사는 그 공문수취를 거부하고 즉시 황제를 내알(內謁)하여 외부대신의 조치를 비난하고 그의 면관(免官)을 요구했다. 황제도 부득이 李外部의 사표를 받게 했는데 Speyer공사의 이같은 태도에 분개한 독립협회(당초 러시아공사판의)에서는 다수회원의 연서(連署)로 외국의 내정간섭을 배척하는 上疏를 올렸다. 더우기 신임외부대신 閔種默이 Speyer공사의 의향대로 절영도문제를 使臣회의에 부의하는 안을 철회하게 되자 일반여론이 악화되고, 독립협회도 다시 閔外部의 배척운동에 착수했다. 때마침 러시아공사관 통역이던 金鴻陸의 피습사건(영국해병에 의해 부조됨)이 있었는데 이에 분노한 Speyer공사는 한국정부에 범인을 체포,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황제에게는 3일기한으로 범인을 체포하도록 경무사(警務使)에게 명하는 조칙을 내릴 것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황제를 공사관에 와서 사죄하라고 하고,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러시아공사는 한성을 철수한다고 위협했다.<sup>27)</sup>

당시 러시아가 일의 속성(速成)을 위해 한국정부의 상하(上下)를 압박하지 않고 서서히 회유수단으로 자국세력의 유지향상을 꾀했다더라면 한국에서의 러

26) 朴殷植著, 李章熙譯, 韓國痛史(서울, 博英社(博英文庫 5), 1974), pp.75~7.  
大韓帝國官報, 建陽 2年(光武元年), 8月·10月分.

27) 日本外務省編, 小村外交史, p.96.

시아세력은 그후도 수년간은 유지될 수 있었을 것이나 Speyer는 오로지 위협·공갈로 러시아의 욕망에 한국을 묵종시키려는 태도였으므로 지난날 일본이 조선정부에 대해 급진적개혁을 강제했을 때 치밀었던 한국인의 염의(厭意)와 같은 급전하여 러시아에 대한 혐오(厭惡) 심정으로 변해 드디어 배아(排俄) 격문을 가로에 첨부하는 자가 있게 되고 또한 독립협회, 종로네거리 등에서 강개비분의 배아연설을 하는 자도 있었다. 일부 대신들도 각신(閣臣) 탄핵의 上疏를 황제에게 올렸고, 미국당 일파도 독립협회와 제휴하여 이에 성원하는 등 1898년 2, 3월의 한성분위기는 「排俄一色」으로 화했었다. 당시 Speyer공사가 이 형세를 보고 얼마나 번민분노했는지는 그가 일본공사 加藤增雄과 회담했을 때 한국에 대해서는 다소 과격수단을 쓰지않으면 도저히 구치(敎治)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자기의 사견으로는 「한국은 도저히 독립할 수 없다, 한국은 러·일 양국이 분할보호하는 것이 좋다, 모스크바의정서는 특별한 효력이 없다」는 것등을 술회한 사실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다.<sup>28)</sup>

드디어 결의한 Speyer공사는 3월 7일(1898년) 한국정부에 「러시아가 군사교관과 재정고문을 한국정부에 보낸 것은 한국정부의 청을 받아들여 인방(隣邦) 자립을 담당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인데 지금 이 호의를 무시하는 조치는 참을 수 없다. 문노니 韓帝와 그의 정부는 러시아의 원조를 필요치 않다는 것인가. 과연 그렇다면 러시아는 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니 24시간내로 결답하라」는 요지의 강경한 조회를 보냈다.<sup>29)</sup>

이에 당황한 황제는 일본공사 加藤에게 은밀히 사람을 보내 대책을 물게했다. 加藤은 「한국으로서는 러시아의 기왕의 공로를 공손히 사례하고 러시아의 도움으로 다행히 군사·재정의 기초가 섰음으로 이 이상 러시아의 배려가 없어도 해 나갈 자신이 섰다는 이유로써 고문·교관의 방조를 정중히 사양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의견을 말했는데 한국정부는 이 의견에 따라 「러시아의 교관·고문을 해임하고 다시 다른 외국의 군사교관·재정고문도 폐지할 것」이라는 취지를 Speyer공사에게 회답했다.<sup>30)</sup>

28) 日本外務省編, 同書, pp.96~7.

29) 日本外務省編, 同書, p.97.

HNアレン著·櫻井義之譯, 朝鮮近代外交年表(東京, 淡路書房新社, 1961), p.101.

30) 日本外務省編, 上掲書, p.97.

바로 이때는 독일의 膠州灣사건이 있었고, 또 北淸문제가 점차 복잡해 지려는 때였으므로 이때를 러시아는 한반도보다도 오히려 旅順·大連의 경영에 전력을 경주하는 것이 급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한국정부의 회답을 호기로 하여 일시 退讓하기로 결정한듯 3월 1일 한성에 창설한 러한은행을 불과 개점 한달남짓해서 폐쇄하고, 러시아의 재정고문과 교련장교·하사도 잇달아 한국에서 철퇴했으며 Speyer도 Brazil공사로 진출하고 Matunine이 주한공사로 착임(4월 12일) 했다.<sup>31)</sup>

#### V. Rosen·西협정과 일본의 대한(韓) 재진출

이에 앞서 러시아정부 내부에서는 1898년 초 한국에 있어서의 러·일양국간의 장래의 갈등을 막기 위해 다시 어떠한 형식의 협정을 체결할 수 없을 것인가 하는 설(說)이 대두되어 주일 러시아공사 Rosen(Romanovich R.)으로 하여금 이 의도로써 일본정부의 의향을 타진케 했다. Rosen공사로부터 러시아의 의도를 들은 일본외상 西德二郎은 그의 사건으로서 러시아가 러시아장교로 한국병을 훈련시키고, 러시아인 재정고문으로 하여금 한국의 재정에 간여시키는 일은 일본의 감정을 크게 손상시켜 러·일 양국간의 협화(協和)의 장애로 되고 있으므로 이 장애를 제거하지 않는 한 만족한 타협은 바랄 수 없다는 것을 상세히 말한 바 있었다. 西외상은 그후 수차 러시아정부와 비공식접촉을 거듭했으나 타협에 이르지 못했다.<sup>32)</sup>

그러다가 마침 한성정국(政局)이 일변하여 러시아인의 훈련교관과 재무고문이 철퇴하게 되었으므로 러시아정부는 1898년 3월 17일 일본정부에 「러시아는 금일까지 한국에 관해 일본과 숨김없이 협상을 다할 수 없었던 사정도 있었으나 이제 견제받을 아무런 조건이 없으므로 기꺼히 일본과 완전한 협상을 할 수가 있다. 그 협상의 기초는 러·일 양국은 상호 한국의 독립을 확인하고 한국의 內政에 대해 일체 직접 간섭을 하지 않을 것이며, 최근 동양의 형

HN アレン著, 朝鮮近代外交年表, p.102.

31) 日本外務省編, 小村外交史, p.102.

32) 鹿島守之助, 日本外交史(6)(東京, 鹿島研究所出版會, 1970), pp.174~5.  
日本外務省編, 小村外交史, p.98.

세가 일변했기 때문에 러시아정부는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청국으로부터 旅順口와 大連灣의 대여를 받기로 결정했다」는 뜻을 전했다.<sup>33)</sup>

3월 19일 西외상은 Rosen공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러시아제외에 대한 회답 각서를 手交하고 「러시아가 滿洲의 항만(旅順·大連)을 획득하는 것만큼 일본은 조선에서 러시아와 평등한 지위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고, 또 장래 양국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도 쌍방간에 세력 범위를 설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이 취지도 본국정부에 전달할 것을 요청했다. 그 수교한 각서에서는 「일본정부는 러시아정부와 함께 자체적 협상, 즉 한국의 주권 및 독립을 확인하고 그 내정상 일체의 직접 간섭을 하지 않을 것을 상호 약정할 뜻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와 동시에 한국이 외국의 조언 및 조력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접양(接壤)관계 및 현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이(조언·조력)를 공여할 의무를 일본에 일임할 것, 만약 러시아정부가 이에 동의한다면 일본정부는 滿洲 및 그 沿岸을 일본의 이익 및 관계의 범위외에 있는 것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滿韓交換案』으로 전해진 것이 바로 이것이다.

4월 2일 西외상을 방문한 Rosen공사는 3월 19일의 일본각서에 대한 러시아정부의 회답을 낭독했는데 「러시아정부는 일본정부가 滿洲를 그 沿岸과 함께 일본이익의 범위외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요지의 성명을 최대한족으로써 인정한다. 그러나 러시아에 경접(境接)하는 일국(한국)의 운명에 관해 모든 관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러시아세력을 전연 제외한다면 주의(원칙)상 용인할 수 없는 바」라 하여 한국을 전적으로 일본에 맡기는 것에 러시아정부는 반대의 태도를 보였다.<sup>34)</sup>

이로써 러시아정부는 벌써 3월 19일의 일본정부의 제의, 이른바 「滿韓交換主義」를 도저히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양보하기로 했다. 4월 8일 西외상이 Rosen공사에게 수교한 각서는 1896년 Lobanov·山縣 협정의 제4조에 준거한 다음의 3개항의 약정안을 제의했다.

33) 日本外交文書, 第31卷, 第1冊, pp.153~4(141文書).

鹿島守之助, 日本外交史(6), p.175.

34) 日本外交文書, 第31卷, 第1冊, pp.177~8(157文書).

『1) 일·러 양국은 한국의 주권 및 완전한 독립을 확인하고 서로 동국(한국)의 내정에 대해 직접 간섭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

2) 일·러 양국은 장래에 오해를 가져올 우려를 피하기 위해 한국이 일본 또는 러시아에 대해 권고 및 보조를 요구할 때에는 먼저 양국이 그 사항에 관해 상호의 협상을 한 후가 아니면 연병교관 또는 재무고문관의 임명에 대해 하등의 처치를 하지 않을 것을 인정한다.

3) 러시아는 한국에 있어서의 상업, 공업 및 거류 일본인의 원수(員數)에서 일본의 우세를 인식한다. 따라서 러시아는 상기 이익의 증진에 대해 될수록 일본을 보조할 것.』<sup>35)</sup>

이 일본측의 제안에 대해 Rosen공사는 4월 12일 西외상에게 러시아정부의 회답으로 일본제안에 동의를 표명하고 동시에 제 3)항의 자구(字句)에 관해 수정을 제의하여 다소 논의가 있었다. 이어 14일 西외상은 Rosen공사와의 회답에서 그 제 3)항에 대해 「러시아는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의 상공업에 관한 기업이 크게 발달한 것과 거류일본인이 다수임을 인정함으로써 일·한 양국간에 있어서의 상공업상의 관계의 발달을 방해하지 않을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 Rosen공사는 이에 동의했다.<sup>36)</sup>

1898년 4월 25일 Rosen공사와 西외상은 Rosen·西협정(The Rosen-Nishi Protocol)에 조인하고 그 협정전문(全文)은 양국정부의 협의결과 5월 10일 공표했는데 전문 3개조로 되는 이 협정(의정서)내용은 다음과 같다.

#### 『Rosen-西협정 3개조

1) 일·러 양국정부는 한국의 주권 및 완전한 독립을 확인하고, 상호 동국의 내정상에는 일체 직접 간섭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함(제1조).

2) 장래에 오해를 가져올 우려를 회피하기 위해 러일 양국정부는 한국이 일본 또는 러시아에 대해 권고 및 조력을 요구할 때는 연병교관 또는 재무고문관의 임명에 대해서는 먼저 상호 그 협상을 한 후가 아니면 어떠한 처치를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제2조).

3) 러시아정부는 한국에 있어서 일본의 상업 및 공업에 관한 기업이 크게 발달한 것과 동국 거류 일본인의 다수임을 인정함으로써 일·한

35) 日本外交文書, 同書, pp.178~9(159文書).

36) 日本外交文書, 同書, pp.180~2(161, 162, 163文書).

양국간에 있어서의 상업상 및 공업상의 관계의 발달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약정함(제3조).』<sup>37)</sup>

일본은 을미사변이래 한동안 국제적인 비난과 공격을 면할 길이 없어 한국에서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이 러·일협약(*Russo-Japanese Agreement*)의 체결로 한국에 대한 러일 양국의 관계가 잠정적이거나 타협을 보게되고, 일본이 다시 한국에 진출하게 되어 경제적인 면에서 淸日戰爭 이전의 優位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게 되고, 또다시 다른 열강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러시아의 對韓方針은 변화되어 종래의 적극정책을 버리고 그 힘을 滿洲방면의 경영에 주력하게 되었다.

## VI. 3국간섭과 일본의 요동반도 還付

1895년 4월 23일 러·독·불 3국공사는 일본 외무차관 林 董을 방문하고 각 본국정부의 훈령에 따라 청일강화조약 중 遼東半島 할양의 1조(제2조)에 관한 이의를 제출했다. 주일 러시아공사 Hitrow가 제시한 각서는 『러시아 정부는 일본국이 청국에 요구한 강화조약을 사열했는데 遼東半島를 일본이 소유하는 것은 단지 淸國首府를 위태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동시에 조선국의 독립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장래 극동 영구의 평화에 대해 장애를 주는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므로 러시아정부는 일본정부에 대해 거듭 그 성실한 우의를 표시하기 위해 여기 일본정부에 遼東半島를 領有하는 것을 포기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이었고, 독·불 양국공사가 제시한 각서도 이와 대동소이한 것이었다.<sup>38)</sup>

廣島에서 林차관의 이 보고를 받은 伊藤(博文)수상은 개최된 廣島大本營의 御前회의에서 다음의 3策을 제의하고 이중 택일(擇一)하지고 했다.

『1) 가령 새로 적국을 만들더라도 단연 3국의 권고를 거절할 것인가.

37) 日本外交文書, 同書, pp.182~5(164文書).

國會圖書館立法調査局, 舊韓末條約彙纂, 中卷(서울, 大韓公論社, 1964), pp.186~190.

38) 日本外交文書, 第28卷, 第2冊, pp.14~8(671文書 附記, 672文書).

- 2) 열국회의를 초청하여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인가.  
 3) 3국의 권고를 전적으로 허용하고 청국에 대해 遼東半島를 은혜적으로 환부할 것인가.』

이중 1)책을 결행하려면 충분한 무력을 필요로 하나 육군은 장기간의 전투 후여서 피로가 극에 달했고, 해군은 黃海의 一戰에서 많은 손상을 입고 있어 3국연합의 해군은 고사하고 러시아함대와 만도 교전할 수 없는 상태인데다가 군수품마저 결핍하여 大敵을 상대할 힘이 없었다. 3)책은 국민을 실망시킬 뿐만 아니라 군인들의 불평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2)책으로써 영·미·이(伊) 제국의 의향을 물은바 영국은 일본에 두터운 우정을 느끼나 자국의 이해관계상 공공연히 원조할 수 없다고 했고, 미국은 局外中立의 정신과 모순되지 않는 한도에서 일본에 협력할 것이라 했으며, 이탈리아는 일본에 적극적인 동정을 표명했다.<sup>39)</sup>

따라서 열국회의는 도저히 일본에 유리하게 전개될 가망이 없었다. 더하여 下關係約의 비준교환 기일이 절박했으나 청국에서는 主戰派가 이에 격렬히 반대할 뿐만 아니라 그같은 조약을 체결한 李鴻章일파를 國賊으로써 배척하라고 주장하여 이론(異論)이 백출, 형세가 극히 혼돈한데다가 3국간섭은 더욱더 이를 강화시켜 조약의 운명은 예측할 수 없는 형세로 되어 寸刻도 유예할 수가 없게 되고 있었다.

일본정부는 4월 30일 러시아정부에 대해 下關係約의 비준교환을 하여 일본의 명예와 위엄을 다한후 별도 추가조약으로써 金州廳을 제외한 遼東半島 전부를 환부할 생각이라고 제의했으나 러시아정부는 일본이 旅順港을 領有하는 것에 이의를 제창하여 金州廳의 유보(留保)에 반대했고, 한편으로 청국정부를 교사하여 비준교환의 연기를 제의케 했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청국의 제의를 단호히 배제하고, 3국에는 5월 4일 『일본정부는 러·독·일 3국정부의 우의적인 충고에 기초하여 遼東半島를 영구히 所領하는 것을 포기함을 약속한다』는 각서를 러·독·불 주재 일본공사에게 훈령하여 각 임국정부에 제출케 했다. 5월 9일 주일 러·독·불 3국공사는 각각 본국정부의 훈령에 따라 일본 의무성을 방문하고 『자국정부는 일본정부로부터 遼東半島의 영구점령권을 포

39) 鹿島守之助, 日本外交史(4), pp.261~9.

窪田文三, 支那外交通史(東京, 三省堂, 1927(昭3)), pp.336~7.

기한다는 통고를 받았다. 일본정부가 이 조치로써 거듭 高見을 彰表한 것을 인정하고, 宇内の 평화를 위해 여기 그 축사를 하는 것』이라 하여 일본정부의 각서에 대해 만족의 뜻을 표명했다.<sup>40)</sup>

그후 일본정부는 러·독·불 3국의 요구에 따라 遼東半島 환부상금(償金) 3,000만兩을 지불후 3개월이내에 일본군 전부를 철병할 것을 성명했다. 이로써 일본은 3국의 위압에 굴하여 遼東半島를 토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때부터 일본은 그 3국간섭의 주도국인 러시아를 假想敵으로 하여 앞으로 있을 러일 전쟁에 대비했다.

## VII. 청국에서의 열강의 세력범위 확정

### 1. 배상차관과 장강(長江) 불할양

청국에 대한 열강의 제국주의 외교는 淸日戰爭 이래 특히 현저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작은 일본에 대한 노대(老大) 청국의 패전이 그와같은 형세를 초래하는 계기로 되었던 것은 물론이지만 이와 동시에 이 시대에 세계의 大勢로서 제국주의 외교의 체제가 형성된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었다. 즉 19세기 후반에 일·미·독·이(伊)의 제국이 모두 민족주의적 국가통일을 완성하고 영·불·오(奧)·러등의 제국과 어깨를 같이하게 됨으로써 국제 외교의 국면을 세계적인 것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이들의 제국이 세계적 규모의 무대에서 제국주의적 쟁패(爭霸)외교를 전개하는 새 시대가 시작되게 된 것이다. 이와같은 세계적 추세를 東北亞에 유치하는 도화선으로 된 것이 淸日戰爭에 있어서의 청국의 패배였다.

청일전쟁에 따른 청국의 대일채무(對日債務)는 군비배상금 2억兩 및 일본군의 威海衛 보증점령비의 4분의 1, 年額 5천만兩이었다. 이것은 전후(前後) 3회에 걸친 외국차관으로써 지불되었는데 제1차 차관 4억프랑(Franc)은 1895년 7월 6일 러불은행단이 인수했고, 제2차 차관 1천만파운드(Pound)는 1896

40) 鹿島守之助, 上掲書(4), pp.270~2.

王芸生著, 波多野乾一譯, 日支外交六十年史, 第3卷(東京, 建設社, 1933(昭 8)), pp.272~4.

년 3월 23일, 제3차 차관 1천6백만파운드는 1898년 3월 1일 공히 영독은행단이 인수했다.

이 차관은 그때까지의 청국의 외채(外債)에 비하여 단지 금액이 거액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인수가 정치적 의도하에 행해진 것으로 은행단간의 경쟁이 치열해져서 청국정부에 대하여 정치적 강제나 압력이 가해졌던 것이다. 즉 청국의 해관(海關)총세무사(司) Robert Hart가 구신(具申)한 차관공모의 방식을 청국정부가 변경한 것은 공모하게 되면 영국은행단의 인수로 되고, 그 결과 청국에 있어서의 영국의 경제세력이 증대하는 것을 겁낸 러시아의 항의에 의한 것이며, 또 제3차 차관의 인수에 즈음하여 大連의 개항이 조건으로 되고 있었던 것에 대해 러·불 양국은 무력으로써 청국을 협박하여 이를 일시 파약(破約)시켰다.

1898년 2월 2일 청국정부가 영독은행단이나 러불은행단으로부터도 전연 차관을 모집하지 않을 것을 성명하자 영국은 청국에 강박(強迫), 그 대상(代償)으로서 동년(1898년) 2월 11일 「揚子江 연안 불할양에 관한 선언」을, 또 2월 10일 및 13일에는 「총세무사(司)의 지위에 관한 선언」을 성명하도록 했다.<sup>41)</sup>

## 2. 러청동맹 밀약과 동청철도의 건설 운영

3국간섭에 대한 보수의 요구를 제일 먼저 한 자는 러시아였다. 당시 청국은 러시아에 심복(心服)해 있었으며 러시아가 얻은 보수의 첫째는 東淸철도였다. 이 철도의 계획에 대해서는 러시아측에서도 제 의견이 있었고 또 청국측에서도 국내의 철도자영(自營)을 주장하는 반대론도 있었으나 결국 1896년 6월 3일 조인한 「러청동맹밀약」 제4조(2)의 5(러청밀약 6개 조를 참조)에 의하여 그 부설권이 러시아에 허여되었다. 이 조약은 일본에 대한 러·청 양국간의 군사 상호원조 조항과 東淸철도부설 조항으로 되고 있는데 러시아의 주목적은 후자에 있었다.

이 철도는 철도운전 개시일부터 80년을 경과했을 때는 무상으로 청국정부에 인도할 것 및 동일하게 36년을 경과했을 때는 청국정부는 이를 유상으로

41) 外交時報社編, 前掲 條約及公文集, pp.315~6(揚子江沿岸不割讓ニ關スル宣言), pp. 272~4(總稅務司ノ地位ニ關スル淸國ノ宣言).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등의 조건이며 Chita와 Vladivostok를 연결하는 동청철도가 1903년 7월 1일 완성되었는데 러시아는 이 철도의 경영에 많은 특권을 향유했다.<sup>42)</sup>

### 3. 러시아의 旅大조차와 南滿洲철도

3국간섭의 보수로서 러시아가 다음으로 획득한 것은 旅順과 大連의 租借였다. 이 러시아의 旅·大租借는 영국의 威海衛조차를 촉진해 드디어 연쇄반응적으로 강행되게 된 열강의 中國分割의 실마리로 되게된 것이다.

旅順 大連의 조차에 대해서는 러시아 부내에서도 Wite(대장대신)는 반대였다. 3국간섭이나 「러청동맹밀약」에서 러시아가 주장한 바와 모순되며 또 중국인의 반감을 야기하여 東淸철도의 건설에도 악영향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결국은 旅·大 획득으로 방침이 결정되어 1897년 12월 18일 러시아의 극동함대는 旅順港에 입항했다. 청국에 대해서는 그 전(11월 14일) 膠州灣에 입항한 독일의 극동함대에 대해 청국을 保全한다고 하는 것이 그 명목이며 따라서 독일함대가 퇴거하면 러시아함대도 철퇴한다고 통고했다.

러시아는 한편 영독양국과도 교섭을 거듭한 후 1898년 3월 27일 청국정부와 「遼東半島조차조약」을, 동년 5월 7일 「遼東半島조차지 및 중립지대확정에 관한 추가협정」을 체결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의하여 러시아는 25년의 기한으로써 旅順, 大連을 중심으로 하는 遼東半島 남단의 땅 및 旅·大에 접속하는 水面을 청국으로부터 조차했다. 또한 租借地에 접속하여 그 북방에 중립지대를 설정하고 청국정부는 이 지역의 불할양 및 동지역에 있어서의 도로의 개통, 광산의 채굴 기타 상공업에 관한 러시아의 우선권을 인정했다.

또한 러시아는 東淸철도의 1驛 Harbin과 旅·大를 연결하는 「東淸철도 南滿洲지선」을 간선과 동일조건으로 건설·운영할 권리를 얻고, 이어 동년(1898년) 7월 6일 「東淸철도 南滿洲지선 건설 및 경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細目を 협정했다. 이 지선은 간선과 동시에 완성했다.<sup>43)</sup>

42) 外交時報社編, 上掲 條約及公文集, pp.446~450 (露支同盟條約·東支鐵道建設及經營ニ關スル契約).

43) 外交時報社編, 同書, pp.465~469(遼東半島租借條約·東支鐵道南滿洲支線建設及經

#### 4. 독일의 膠州灣조차

독일이 극동기지의 획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청일전쟁을 계기로 해서였다. 그것은 戰後에 있어서의 「中國分割」의 기운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와 일본이 3국의 간섭을 만약 거절할 경우의 사태에 대비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후보지에 관해서는 정부부내의 의견도 일치하지 않았고, 또 열강과의 이해충돌도 고려에 넣은 관계상 그의 선정이 지연되어 膠州灣으로 결정된 것은 1896년 11월 말이었다.

당시 膠州灣에 관해서는 각국 모두 조약상의 권리를 갖지 않았고, 단지 러시아가 투묘(投錨) 우선권을 주장했으나 러시아의 태도도 1897년 말에는 연화되게 되었다. 마침 동년(1897년) 10월 30일 漢口에서 독일군함기(旗)에 대한 청국민중의 투석사건, 이어 11월 1일 山東省에서 독일선교사의 살해사건이 일어났으므로 이를 구실로 하여 膠州灣점령을 결행하는 동시에 그의租借교섭을 개시했다.

이렇게 하여 독일은 1898년 3월 6일 청국정부와 「膠州灣委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膠州灣의 조차권, 山東省내의 철도부설권, 탄갱(炭坑), 광산의 채굴권 및 山東省에 관한 경제우선권을 획득했다.<sup>44)</sup>

#### 5. 프랑스의 廣州灣조차와 기타의 권익획득

프랑스의 청국에 대한 관심은 전위(前衛)지대를 강화하는 것 이상에는 나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 프랑스는 청국의 패전 후 1895년 6월 20일 청국정부와 「1887년 6월 26일의 추가통상조약의 보족조약」<sup>45)</sup>을 체결하여 雲南, 廣西, 廣東의 3省去 있어서의 채광우선권과 安南철도의 연장부설권을 획득했다.

이렇게 하여 프랑스는 서남중국 방면의 권익신장을 도모한 것인데 그 결과 영국과 권익의 충돌을 초래하게 되었으므로 1896년 1월 15일 영국과 「삼 및 상류메콩강사건과 雲南四川 2省去 있어서의 특권 및 이익의 공통에 관한 영불선언서」<sup>46)</sup>에 조인하여 이 2개省去 있어서의 권익의 획득에 대해서는 영

營ニ關スル契約), pp.479~481(遼東半島租借地及中立地帶確定ニ關スル追加協定).

44) 外交時報社編, 同書, pp.570~3(膠州灣委附ニ關スル條約).

45) 外交時報社編, 同書, pp.556~8(1887年 6月 26日ノ追加通商條約ノ補足條約).

46) 外交時報社編, 同書, p.226(暹羅及上流湄公河事件並雲南四川二省ニ於ケル特權及利

불평등의 입장을 지키기로 협정했다.

열강의 中國分割 형세가 진전됨에 따라 프랑스는 다시 1897년 3월 15일 청국정부와 「海南島 불할양에 관한 교환공문」에 조인하고 또 1898년 4월 10일 청국정부와 「東京인접諸省 불할양의 약속에 관한 교환공문」에 조인하여 함께 불령인도(佛領印度) 전위지대의 강화를 도모했다.<sup>47)</sup> 다시 프랑스는 이날 청국정부와 「東京·雲南府간 철도 廣州灣租借 및 프랑스인의 우편업무 참가에 관한 교환공문」에 조인하여 東京·雲南府간의 철도부설권과 그의 건설, 경영에 필요한 제특권, 廣州灣의 99년간의 조차권 및 청국우정장관의 추천권을 획득했다.<sup>48)</sup>

廣州灣의 조차는 이 교환공문에 기초하여 동년(1898년) 11월 16일 불청간에 조인된 「廣州灣租借에 관한 조약」에 의하여 실현된 것이다.<sup>49)</sup> 이것이 영국의 九龍半島租借를 촉진한 것은 물론이다.

## 6. 영국의 威海衛와 九龍半島

이와같은 정세에 직면하여 가장 긴절한 이해관계를 느낀 것은 영국이었다. 그리고 러시아의 旅·大조차에 대항해서는 威海衛의, 프랑스의 廣州灣조차에 대항해서는 九龍半島의 조차를 결심하게 되었다. 영국의 威海衛조차는 直隸灣에 있어서 러시아에 대항하는 의미에서 었던 것은 물론이지만 동시에 당시 威海衛를 보증점령 중이었던 일본군이 철퇴한 후는 러·불 양국의 승인을 얻어 독일이 이를 점령하려고 하는 형세에 있었던 때문이기도 했다.

그와같은 정세에 있었음으로 영국수상 Salisbury (Marquis of)는 1898년 3월 22일 러시아주재대사 O'Conner에 훈령하여 러시아가 旅順을 軍港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게했다. 러시아가 이 항의를 무시했기 때문에 威海衛 조차의 교섭을 훈령하는 동시에 3월 28일 러시아에 대하여 러시아가 영국의 항의를 무시했기 때문에 영국은 청국에서 행동의 자유를 留保한다는 취지를

益ノ共通ニ關スル英佛宣言書(第4條)).

47) 外交時報社編, 同書, pp.563~4(海南島不割讓ニ關スル交換公文)(東京隣接諸省不割讓ノ約束ニ關スル交換公文).

48) 外交時報社編, 同書, pp.564~5(海南雲南府間鐵道, 廣州灣租借及佛蘭西人ノ郵便業務參加ニ關スル交換公文).

49) 外交時報社編, 同書, pp.566~8(廣州灣租借ニ關スル條約).

통고했다. 한편 독일과의 사이에는 1898년 4월 20일 공문을 교환하여 영국은 威海衛를 조차하더라도 山東省내에 철도를 부설하거나 기타 독일의 우선권을 침해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약했다.<sup>50)</sup>

한편 영청교섭의 결과 1898년 7월 1일 「威海衛 조차조약」이 조인되어 영국은 러시아의 旅順·大連조차기간을 기한으로 하여 威海衛, 劉公島 및 威海衛灣내의 제도서를 조차했던 것이다.<sup>51)</sup>

프랑스의 廣州灣조차에 관해서는 영국은 香港(Hong Kong)에 대한 위협으로 느꼈다. 이와 동시에 영국은 전부터 홍콩 북경(北境)지대의 치안확보의 필요도 통감하고 있었으므로 청국이 廣州灣 조대(租賃)의 방침을 명백히 하는 것과 동시에 九龍半島 조차의 교섭을 개시하여 1898년 6월 9일 「香港지역확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99년의 기한으로 九龍半島 및 深圳灣, 大鵬灣의 수역(水域)을 조차했다.<sup>52)</sup>

#### 7. 日本에의 福建불할양 약속

일본은 청일전쟁의 결과 台灣을 영유(領有)했는데 이를 발판으로 中南中國의 관심을 높이고 있었다. 즉 台灣은 그 지리적 위치로 해서 대안(對岸) 福建省 및 그 근접하는 청국본토와 海域에 대한 일본의 유력한 거점으로 생각했다. 더구나 열강의 中國分割정책은 점차 이들 지방에도 파급되려는 형세에 있었다. 이같은 형세에 비추어 일본은 1898년 4월 22일 청국정부와 「福建불할양에 관한 교환공문」에 조인하여 福建省 및 그 연안 일대의 땅을 어떠한 국가에도 양여 또는 조대(租賃)하지 않을 취지를 청국에 약속시켰다.<sup>53)</sup>

이와같이 러시아는 滿洲, 독일은 山東省에, 프랑스는 西南中國에, 영국은 揚子江유역의 中部中國일대와 威海衛·九龍半島에, 그리고 일본은 福建省에 타국의 권익이 설정되는 것을 저지하고 자국이 이들 각지방에 있어서의 권익을 배타적으로 독점하려고 하는 태세를 확립했다. 세력범위(Sphere of Influence)라는 것을 「특정의 외국이 타국의 세력 혹은 영토획득을

50) 外交時報社編, 同書, p.227(英國威海衛占領ニ關スル英獨交換公文).

51) 外交時報社編, 同書, pp.317~8(威海衛租借條約).

52) 外交時報社編, 同書, pp.316~7(香港地域擴張ニ關スル條約).

53) 外交時報社編, 同書, pp.664~5(福建不割讓ニ關スル交換公文).

배제하는 권리를 유보하는 동시에 자국의 이 권리를 장래 확대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이들의 제국은 각각 상기(上記)의 지역을 자국의 세력범위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VIII. 맺은말

1890년대에 동북아에서 있는 가장 특기할 사건은 조선에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과 이 혁명을 도화선으로 하여 일어난 淸日戰爭을 들 수 있다. 이 전쟁에서 淸國이 日本에 패배한 결과는 동북아에 있어서의 기존체제와 국제관계 및 질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먼저 이 전쟁에서 청국이 패배한 결과 17세기 이후 지속되어온 「淸朝宗屬關係」가 종지부를 찍게 되었는데 이 「청조종속관계」가 국제문제화 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에서 있는 천주교박해사건(1866년)의 문죄(問罪)를 위해 프랑스가 조선원정(遠征)을 하기에 앞서 이른바 조선의 중주국인 청국에 그 책임을 물었을 때의 청국의 회답(信函)과 그리고 미국 商船 “General Shurman”호 사건(1866년)이 있던 후 미국이 이 상선의 행적(行跡)의 탐지 및 조선과의 修交를 위해 조선에 進發함에 앞서 조선국왕에게 보내는 편지(信函)를 청국에 이의 대체(代遞)를 요구했을 때의 청국의 회답(信函)에서 「淸朝宗屬關係」에 대한 청국의 기본태도를 공식으로 표명한 것에서 비롯된다.

『「淸朝宗屬關係」에 대한 淸國의 기본태도를 佛·美에 한 공식표명의 발취 부분』

「朝鮮雖係臣服中國，其本處一切政教禁令，概由該國自行專主，中國向不與聞」(故宮博物院刊，籌辦夷務始末(6)，同治朝(台北，國風出版社印行，1963)，pp.1847~8(卷之80，同治10年 壬子 總理各國事務恭親王等奏)』

즉 「조선은 中國의 屬邦이나 政教禁令 일체는 그의 自主에 맡긴다」는 것이다. 바로 이 표현으로 「淸朝宗屬關係」가 集約되고 있으며 또한 이것이 사실상 종래 조선에 대한 중국의 전통적인 屬邦관념이기도 했던 것이다.

한편 弱國에 대한 侵略主義를 內包하고 근대화한 日本이 그 침략의 제일보를 朝鮮에 돌리고, 조선을 독점지배할 野慾의 관철을 위한 한 구실로 이 佛·美에

한 「清朝宗屬關係」에 대한 淸國의 기본태도의 공식표명을 이용했다.

1876년 2월 일본은 朝鮮에 강요하여 「朝日修好條規」를 체결했는데 그 首條에 「朝鮮國自主之邦」 운운을 의도적으로 삽입하여 조선을 「自主國」으로 규정하고, 더우기 그 自主의 뜻을 일본은 「獨立」의 뜻으로 해석함으로써 이른바 「朝鮮屬邦論」을 위요한 淸日간의 분쟁을 조성해 놓았다.

이 「朝鮮屬邦論」을 에워싼 淸日간의 분쟁은 일본의 조선침략 야욕에 정비례하여 점증(漸增)해 갔는데 이것이 갑오동학농민혁명을 도화선으로 해 일어난 淸日戰爭에서의 日本의 승리로 종언을 고하게 되었다. 즉 약 30년간 근대 동북아국제관계에서 淸日간의 중요분쟁문제로 되어온 「清朝宗屬關係」의 存否를 건 一大決戰이 바로 淸日戰爭이었는데 日本의 군사상의 압도적인 우세는 淸國을 드디어 굴복케 하여 259년의 긴 역사를 가지는 「清朝宗屬關係」에 끝을 맺게 했다.

이에 따라 朝鮮은 淸屬의 지위로 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나 그 대신 멀지않는 장래에 日本帝國의 식민지로 전락될 悲運에 놓이게 된다. 日本은 언제나 「조선을 완전독립국으로 한다」라던가 「조선의 독립을 보장한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淸日戰爭후 朝鮮은 전쟁에서 승리한 日本의 강압과 그의 독점적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 러시아에 依支(引俄拒倭策) 하려 하자 日本은 乙未事變(1895년 10월)을 밀모(密謀), 야만적인 폭거를 자행(日本軍·민이 犯闕·閔妃를 弑害) 함으로써 세계로부터 국제적 범죄국으로 비난받게 되고, 朝鮮에 러시아세력의 진출을 公認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반대로 日本은 러시아세력에 밀려 朝鮮에서 물러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후 러시아의 극동정책의 변화로 그 세력을 滿洲방면으로 돌리게 되자 日本과의 타협을 기도(이른바 滿韓交換主義), 1898년 4월의 러일협상(The Rosen-Nishi Protocol)이 이루어져 러시아는 滿洲경영으로 방향을 돌리고, 日本은 韓國으로 다시 진출하게 되어 끝내 20세기 초(1910년 8월) 초지(初志)대로 韓國을 완전히 併呑하고야 만다. 이 韓國의 비운(悲運)이 바로 淸日戰爭으로 오게된 결과임은 물론이다.

다음으로 이 淸日戰爭에서의 패배로 약체를 드러낸 淸國이 열강(列強)들에 의해 中國分割의 서막을 열게 되었다는 일이다. 이 전쟁에서의 패배로 체결

된 下關係約(1895년 4월)으로 淸國은 遼東半島, 台灣, 澎湖列島등을 日本에 할양하게 되었는데 3국(러·독·불) 간섭으로 이중 遼東半島를 돌려 받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열강이 공여한 借款으로 전쟁배상금, 遼東半島 환부상금 및 日本軍의 威海衛 보증점령비등을 일본에 지불할 수 있게 됨으로써 淸國은 이들 열강의 은혜에 진심으로 心服했고 매은(賣恩)한 이들 열강의 요구가 그 무엇이든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下關係約이 체결된(1895년 4월) 후 1890년대 후반을 통하여 이들 열강은 淸國영토의 어떤 부분이든 자국의 權益을 위해 필요하면 淸國으로부터 租借함으로써 반영구적으로 배타적인 「利益範圍」, 「勢力範圍」를 획정했는데 이것이 淸國을 반식민지의 지위로 몰아간 결정적 요인이 되었고 그것이 끝내 열강에 의한 「中國分割」의 서막으로 되게 했다.

the 1990s, the number of people in the world who are under 15 years of age has increased from 1.1 billion to 1.5 billion. The number of people aged 65 and over has increased from 200 million to 400 million. The number of people aged 15-64 years has increased from 3.5 billion to 4.5 billion.

There are a number of reasons for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people in the world. One of the main reasons is the increase in life expectancy. People are living longer and longer, and this is increasing the number of people in the world. Another reason is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people who are having children. This is also increasing the number of people in the world.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people in the world is a major challenge for the world. It is a challenge for the world's resources, and it is a challenge for the world's environment. It is a challenge for the world's economy, and it is a challenge for the world's society. It is a challenge for the world's future.

The world's population is growing, and it is growing fast. The world's population is growing from 5 billion to 7 billion. The world's population is growing from 1 billion to 2 billion. The world's population is growing from 100 million to 200 million. The world's population is growing from 10 million to 20 million. The world's population is growing from 1 million to 2 million. The world's population is growing from 100,000 to 200,000. The world's population is growing from 10,000 to 20,000. The world's population is growing from 1,000 to 2,000. The world's population is growing from 100 to 200. The world's population is growing from 10 to 20. The world's population is growing from 1 to 2.

The world's population is growing, and it is growing fast. The world's population is growing from 5 billion to 7 billion. The world's population is growing from 1 billion to 2 billion. The world's population is growing from 100 million to 200 million. The world's population is growing from 10 million to 20 million. The world's population is growing from 1 million to 2 million. The world's population is growing from 100,000 to 200,000. The world's population is growing from 10,000 to 20,000. The world's population is growing from 1,000 to 2,000. The world's population is growing from 100 to 200. The world's population is growing from 10 to 20. The world's population is growing from 1 to 2.

The world's population is growing, and it is growing fast. The world's population is growing from 5 billion to 7 billion. The world's population is growing from 1 billion to 2 billion. The world's population is growing from 100 million to 200 million. The world's population is growing from 10 million to 20 million. The world's population is growing from 1 million to 2 million. The world's population is growing from 100,000 to 200,000. The world's population is growing from 10,000 to 20,000. The world's population is growing from 1,000 to 2,000. The world's population is growing from 100 to 200. The world's population is growing from 10 to 20. The world's population is growing from 1 to 2.

The world's population is growing, and it is growing fast. The world's population is growing from 5 billion to 7 billion. The world's population is growing from 1 billion to 2 billion. The world's population is growing from 100 million to 200 million. The world's population is growing from 10 million to 20 million. The world's population is growing from 1 million to 2 million. The world's population is growing from 100,000 to 200,000. The world's population is growing from 10,000 to 20,000. The world's population is growing from 1,000 to 2,000. The world's population is growing from 100 to 200. The world's population is growing from 10 to 20. The world's population is growing from 1 to 2.

The world's population is growing, and it is growing fast. The world's population is growing from 5 billion to 7 billion. The world's population is growing from 1 billion to 2 billion. The world's population is growing from 100 million to 200 million. The world's population is growing from 10 million to 20 million. The world's population is growing from 1 million to 2 million. The world's population is growing from 100,000 to 200,000. The world's population is growing from 10,000 to 20,000. The world's population is growing from 1,000 to 2,000. The world's population is growing from 100 to 200. The world's population is growing from 10 to 20. The world's population is growing from 1 to 2.

## 甲午 農民革命의 發生史的 背景

申國柱\*

I. 問題의 提起	IV. 東學革命의 發端과 그 展開
II. 東學運動의 發生原因	V. 東學革命에 대한 淸國의 出兵과 日本
III. 東學創建의 沿革	VI. 日本不法出兵과 內政干涉

### I. 問題의 提起

19세기말, 한국에서 창건된 東學의 발생 및 東學혁명의 원인은 외국세력의 침략에 반대하고 정부에 弊政을 요구하는 데 있었고, 또한 당시의 불안한 사회 속에서 생활고와 압정고에 시달리는 민중을 정신적으로 구제함이 그 목적이었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이권쟁탈을 둘러싼 청일양국은 東學軍을 진압한다는 구실하에 한국에 출병하여왔다. 특히 일본은 이 기회에 한국에서의 청국세력을 배제하고 독점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불법출병을 단행하여 東學軍진압과 한국내정에 간섭하여 우리 국권을 침해하고 청일전쟁을 유발하였다.

이와 같은 일본의 대한 간섭으로, 東學軍은 근대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에 의해 참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침략과정에서 우리의 민족의식은 더욱 고조되어 전국에서 이른침략에 반항하는 본격적인 항일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항일운동의 국권이 침범되자 항일구국운동으로 발전되었고, 의병운동을 거쳐 그 명맥은 3.1운동에 이어져 민족독립운동으로서 전개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東學」은 우리 근대정치사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종래의 국내외학자들에 의한 「東學運動」에 관한 평가는 상당한 견해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어 혼란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종래에 발표된 외국학자들의 「東學에 관한 견해와 평가」를 정리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제일 먼저 종래의 일본인학자들의 견해와 평가를 대표한 것이 巽來治郎의 견해이다. 巽內治郎은 「東學黨亂은 衣食에 궁핍한 惡漢 등이 附和雷同해서

\*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지방의 양민에 대하여 가옥을 불사르고 재산을 약탈한 폭도에 의한 民亂이다.<sup>1)</sup>라고 하였다. 또한 田保橋潔 교수는 「東學은 양반의 불평분자와 결탁해서 정치적 비밀결사를 형성하여 위정자에 반항한 匪亂<sup>2)</sup>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일본학자의 견해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불법출병의 구실 및 東學진압의 명분을 찾고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의 침략성을 감추기 위한 의식적 의도에서 발상된 논리라고 하겠다.

둘째로 종래의 중국인 학자들의 견해로서 王芸生은 「東學黨은 弊政 때문에 釀成된 일종의 亂民의 결합으로서 종교성을 띄고 다분히 배외성을 품은 중국의 義和團과 그 성질이 같다.<sup>3)</sup>라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도 역시 東學에 대한 성격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견해라 하겠다. 원래 「東學」이란 명칭은 있어도 「東學黨」이란 용어는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런데 일본 학자들은 「東學黨亂」이라고 일반적으로 통칭한다. 이것은 일본용어의 어감으로는 匪賊 또는 賊을 뜻하는 의미로서, 일본 관헌측의 사용하는 용어이다.<sup>4)</sup> 東學運動을 일종의 비적의 난으로 규정하여 일본군의 東學軍 진압을 합리화 하려는 의도라고 하겠다.

그런데 해방후 국내외에서 東學에 관한 사료가 속속 세상에 나타나고 東學運動과 東學사상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다만 북한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東學을 「甲午農民戰爭」이라고 통칭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성격도 구라파의 농민전쟁과 직결하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東學의 요지는 어디까지나 종교사상이고, 운동전개 과정에서 외국침략자에 대한 저항의식은 구국을 위한 항일 운동이었다는 것은 민족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서 「東學」을 「농민전쟁」으로서 규정할 수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나라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를 살펴 보기로 하자. 韓祐 卍 교수는 「東學 농민군의 제 2 차 봉기는 국토와 국민과 국권을 유린하는 일본군에 대한 민족적 항쟁이었다.」...「이것이 항일구국운동으로 전개되고 그 명맥이 그 후 의병의 항일항전으로 이어졌던 것이다.<sup>5)</sup>라고 지적하고, 朴奉

1) 巽來治郎, 日清戰後 外交史, p. 57.

2) 田保橋潔, 日清戰後 外交史의 研究, p.9.

3) 王芸生, 六十年來中國與日本(第二卷), p.16 同著(長野波多野譯)「日支外交六十年史」第二卷 p.66.

4) 旗田巍, 朝鮮의 歷史, p.175.

植 교수는 「東學 농민운동은 일본군의 침입과 부패한 지배층에 의하여 좌절 되었으나 양반지배체제에 저항한 反봉건성과 외국의 침투에 정면으로 대결한 침략극복의 정신은 역사상 큰 의의가 있으며 이것은 뒤에 일제에 대항하는 민족독립운동으로 이어졌다.」<sup>6)</sup>고 하였다. 또한 申福龍 교수는 「東學革命이 비록 민족운동의 결실을 보지 못하고 실패하였다고 하지만 근대적 민족운동으로서 새로운 기원을 이룩하였다.」<sup>7)</sup>라고 하고, 「東學亂이 東學이라는 표피 속에서 전개되었지만 그것이 전적으로 종교투쟁만은 아니요 민족주의 운동으로서의 농민혁명이라고 해석할 것이다.」<sup>8)</sup>라고 평가하고 있다. 필자가 전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요컨대 「東學」은 東學이 내건 스로우건에도 있는 바와 같이 東學 教旨인 인본주의로서 생활고와 압정고에 시달리는 민중을 정신적으로 구제하면서 「斥倭洋」으로서 외국의 침략세력을 배제하고 「輔國安民」으로써 철저한 弊政의 개혁을 정부에 요구하는데 있었다. 이러한 사상은 우리나라의 근대사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면 東學혁명에 대한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東學의 발생의 요인을 분석하고 다음 東學창건의 연혁과 東學혁명의 발단 및 그 전개과정을 살피고 이 東學혁명에 대한, 淸.日양국의 출병의도와 경위를 논하고 끝으로 일본이 한국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과 청일전쟁을 유발한 경과를 논급하려 한다.

## II. 東學運動의 發生原因

19세기 후반의 극동정세 및 세계정세는 자본주의 열강간의 해외식민지 약탈을 위한 쟁탈전이 크게 전개되어, 한국을 둘러싼 국제간의 갈등은 바야흐로 치열하였다. 이와 같은 국제정세하에 大阮君집정시에는 이러한 외압에 저항하여 외적의 침입으로 방지하였다. 그런데 1873년에 大阮君이 하야하고 민씨제도정치가 시작하면서 민씨정권의 자주성이 없는 개화정책에 의하여 한국이 근대산업자본주의 침략을 받아 대혼란에 휩쓸게 되었다.<sup>9)</sup> 즉, 1876년의 「江

5) 韓祐旻, 東學農民蜂起, p. 302.

6) 朴奉植, 東學運動과 甲午改革, 「韓國現代史」, pp.31-32.

7) 申福龍, 동학사상과 한국민족주의, p.140.

8) 申福龍, 全琮準의 生涯와 思想, p.113.

華朝日修好條約」 체결로부터 淸日開戰에 이르기까지 20년간의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정세는, 일청양국의 한국에서의 독점적 이권을 둘러싸고 한국정계에 깊이 관여하여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로 인하여 청일양국은 한국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에 관여하고 간섭하였다.<sup>10)</sup> 특히 「강화조약」 이후 일본의 對韓經濟進出은 눈부신 것이었다. 1885년부터 1887년의 3년간에 있어서 釜山, 仁川, 元山, 三港으로부터의 수입은 仁川에서 일본의 75%, 청국이 25%, 元山에서 일본이 81.7%, 청국이 18.3%, 釜山에서는 일본이 100%를 독점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일본의 경제적 진출에 자극되어, 청국은 지금까지의 한국에 대한 권위를 保持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간섭을 하였다. 경제면에서는 일본의 상인과 상품에 대항하여, 청국의 상인과 상품을 가지고 인천항을 토대로 해서 그 기반을 확보하였다. 그 결과, 1888년부터 1891년까지의 4년간에 있어서의 청일상인에 의한 수출입의 비교를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sup>11)</sup>

< 표 1 > 인천항에 있어서의 청,일 상인 수출입 비교표

년 도	한국에 수입		한국으로 부터의 수출	
	淸 國	日 本	淸 國	日 本
1888	609,910	916,560	300,010	724,226
1889	449,916	1,035,153	121,386	339,195
1890	568,329	1,320,716	188,076	1,565,979
1891	1,755,804	1,010,561	97,931	1,263,729

자료: 靑山好惠, 「仁川事情」에서 작성. 단위: 멕시코 弗

이 표에서와 같이 1891년의 수입에서는 확실히 청국은 일본을 추월하고 있으나, 수출에서는 훨씬 일본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치면에서는 청국이 우세한 지위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9) 申國柱, 韓國의 開國 -雲揚號事件을 中心으로- 「日本外交史研究」 日本國際政治學會編, p.124.

10) 李瑄根, 韓國史 「最近世編」, p.342.

11) 靑山好惠, 「仁川事情」에서 筆者가 作成하였다. 單位는 當時의 世界貿易은 墨西哥 弗로 환산하였다.

한국에 대한 경제적 진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청국은 한국정부를 원조하여 구미제국에의 개항을 권고하고, 동시에 열강과 한국과의 중개를 하는 것으로써, 종주국으로서의 입장을 회복하려고 착착 그 공작을 진행하였다.<sup>12)</sup> 이러한 상황에도 일본상인의 대한 경제적 진출은 강력히 推出되었다. 1885년에서 1892년 사이의 8년간에 있어서의 釜山, 仁川, 元山의 삼항의 청일상인의 수입통계를 검토해 보면, 인천에서는 일본상인이 75%, 청국 상인이 25%의 관계가 43.5% 대 56.5%로, 원산에서는 81.7% 대 18.3%, 43.1% 대 56.9%로 각각역전하였고, 일본 상인이 100%였던 부산에 있어서까지 97.2% 대 2.8%로 청국상인에게 許하고 있었다.<sup>13)</sup>

한국에 대한 이와 같은 청·일 양국의 경제적 침략과 이에 따르는 양국의 정치적 간섭으로 인하여 한국정계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舊來의 朋黨과 戚族의 상쟁이 변형해서 양국의 세력에 아부되어 수구파(親淸派)와 개화파(親日派)로 분열하여 한국의 정계는 복잡하고 또 심각한 대립을 빚어내었다. 그리고 이 양파의 상쟁은 드디어 壬午軍亂(1882)으로 化하여 폭발했으며, 이와 같은 정세하에서 가장 고난을 당한 것은 한국대중의 생활이었다. 외국자본주의의 경제적 진출에다가 위정자의 실정은 더욱더 국민의 생활을 가난한 상태에 陷入시켰다. 또한 정계의 지도자의 분열은 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 게다가 壬午軍亂後, 청·일 양국의 군대가 서울에 주둔하여 서로 대치하면서 한국고관을 선동하고 있어, 그 대항의 형세는 언제 戰端이 발발할는지 몰라 불안한 공기는 滿城憂懼(만성우구)의 念에 덮여있었다.<sup>14)</sup> 이와 같은 긴박한 정세는 드디어 1884년 일본은 親日派와 결탁하여 甲申政變을 유발하였던 것이다. 甲申政變으로 親日정권이 수립되었으나 한일 양군에 의한 반격으로 3日天下로서 끝났다. 이 정치적 음모사건으로 친일파 金玉均 등은 일본에 망명되고 국내의 친일파는 일소되었다. 이 정변으로 한국의 배일감정은 일층 강해지자. 일본은 이 사변의 始末로서 청일 양국간에 天津條約(1885)을 체결케 하고 이에 의하여 청·일 양국군은 한국에서 조인일로 부터 4개월 이내에

12) 旗田巍, 朝鮮史, p.172.

13) 大藏省, 日本人의 海外活動에 關한 歷史的調查, 通卷 第 2 冊, p.120.

14) 朝鮮史學會, 朝鮮史大系「最近世史」, p.109.

철명하게 되었다.<sup>15)</sup>

청·일 양국에 군대가 철퇴한 이후 한국에는 일시 평화와 진보가 깃들었다. 1885년부터 1894년까지의 10년간, 청·일 양국의 세력이 한국에서 후퇴하였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한국은 歐洲의 문명을 수입하기 시작하였던 것이었다. 더욱 선진한 서양문명을 인지하기 위해서 우선, 1884년에는 관립학교를 창립하고, 또, 譯官의 양성을 위해서 1891년에는 러시아어 학교와 불어학교를 각각 개설하여, 직접 관계국에서 교원을 초빙하였다.<sup>16)</sup> 일본어학교도 개설되었다. 1892년에는 淸國語학교, 1894년에는 英語학교도 개설되었다. 그 외에도 1885년에는 미국인 알렌(H.N. Allen)의 제언에 의하여 서울에 한국에서 최초의 병원을 창설하였고, 구미제국의 선교사도 포교의 자유를 얻어 서울에 들어와 기독교(개신교)의 예배당을 건립하였던 것이다.<sup>17)</sup>

이와 같이 하여 청·일 양국의 외압과 간섭에서 벗어난 한국은 구미제국으로부터 문화·산업·종교 등이 수입되었으나, 한국의 평화는 그리 길게 지속되지 못했다. 청·일 양국의 세력이 한국에서 후퇴한 틈을 타서, 북방에 위치한 러시아가 한국에 진출하여 왔다. 즉, 러시아는 한국 진출의 전초전으로서 함경남도 영흥만의 사용권을 요구하여 왔다. 이것이 소위 제 1차 「韓·러通商條約」(1884)이다.<sup>18)</sup>

이 조약은 몹시 불평등한 것으로 한국은 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성립으로 그쳤지만, 이러한 북방으로 부터의 러시아의 진출에 대항해서, 영국이 남방으로 부터 침략하는 형세이었다. 당시, 러시아와 영국은 세계 2대강국으로서 歐洲로 부터 近東·中東·極東에 걸쳐 대립하고 있었다. 그런데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에 대항하여 1885년에 들인 한국 남해에 있는 巨文島를 점령하였다. 이 巨文島事件(1885년)은 러시아를 놀라게 하였다. 이 巨文島는 러시아 동양함대의 요로인 한국해협인 문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국점령의 보도는 러시아로 하여금 커다란 충격이었다.<sup>19)</sup> 영국이 이 같은 행동으로 나온 것은 시베리아 방면에서 한국으로 남하하려고 계획하는 러시아의 세력을 방지할

15) 姜志元, 近代朝鮮政治史, pp.197-198. 『日本外交年表(?)主要文書』(卷上), p.103.

16) 露國大藏省, 韓國誌, p.470; 信夫淳平, 韓半島, p.960.

17) 信夫淳平, 前援書, p.691.

18) 東邦協會, 朝鮮彙報, pp.4-16.

19) 旗田巍, 前掲書, p.176.

목적이었으나 이와 같은 영·러의 대립은 청국에게 활동의 기회를 주었다. 청국은 이 巨文島사건을 교묘히 이용해서, 영·러의 중개에 나서 우선 러시아로 하여금, 「장래 한국의 여하한 부분도 점령함이 없을 것임」이라는 선언을 하게 하고, 이것을 보증으로서, 영국의 巨文島 放棄(방기)를 요구해서, 드디어 이에 성공하였다. 그 결과 1887년 2월에 英國 東洋艦隊 司令官은 「영국이 巨文島를 방기하는 이상, 러시아도 여하한 사정하에서도 한국의 영토를 점령하지 않음」이라는 보증을 얻고 同島를 철퇴하였다.<sup>20)</sup>

영·러 양국이 한국에서 손을 떼는 데에 역할을 한 청국은 일본과 한국문제를 타협하기 위해 한국의 영도자인 大阮君(高宗의 생부)을 청국으로 강제연행하여 保定府에 억류하였던 것을 석방하여 한국으로 귀환시켜 한국에 대한 러·일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1885년 10월에 서울로 귀환시켰다.<sup>21)</sup> 더욱 한국에서의 경제권을 장악하기 위해, 청국 세관에 있던 메릴(H.F. Merrill)을 한국의 세관장으로 추천하였다. 외교면에서는 청국의 總稅務司이었던 로버트·하트(Robert.Hart)를 겸임시켰다. 이로 인하여 甲申政變이후 東學運動이 발발한 1994년 까지의 한국해관의 세관은 청국의 배치한 상무원이 감독하여 왔다. 이것은 당시의 「中國海關冊」부록에 기재된 조선해관의 보고에서도 여실히 알 수 있다.

또 군사면에서는 壬午軍亂이후 서울에 상주하고 있던 袁世凱를 淸國駐劄代表(청국주차대표)로서 陳樹棠(진수당)과 교대시켰다. 이에 앞서 청국이 추천하여 한국에 파견하고 있던 외교고문 뮐렌도르프(Von Möellendorff)를, 청국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한국을 돕고 있다 하여 이것은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즉시 면직 시킬 것을 한국에 요구하여, 그를 해직시켰다.<sup>22)</sup> 그 대신에 새로운 고문으로서 청국은 미국인 데니(O.N. Denny)를 추천하였다. 또한 청국은 仁川, 釜山, 元山의 삼개항에 청국 상무원을 배치하여 세관을 감독시키고, 한국에 들어가는 세관 수입까지 억눌렀다.<sup>23)</sup>

20) 菊池謙讓, 朝鮮王國, p.395; 信夫淳平, 前掲書, p.495.

21) 李瑄根, 韓國史「最近世史編」, p.808; 朝鮮史學會, 朝鮮史大系--「最近世史」, p.112.

22) 齋藤良衛, 近世東洋外交史序說, pp.294-295. 뮐렌도르프는 韓國獨立의 安全을 保持하는 計策으로서 野心있는 淸日 兩國을 牽制하기 위해, 러시아의 후원을 얻는 것이 得策이라고 韓國政府에 進言하고, 韓 露陸路條約의 仲介役을 하였다.

23) 「朝鮮史」第 6 編 第4卷 p.78.

그러나 미국인 데니는 청국의 기대에 반하여 한국의 자주독립을 위해서 힘쓰고, 청국의 간섭을 경계하였다. 그는 1886년에 고종의 승인을 얻어 위베르(C. Waeber) 러시아공사와 교섭하여, 1888년 8월 8일의 「한-러육로 통상조약」 체결에 진력하였다.<sup>24)</sup> 더욱 동년 데니는 「China and Korea」(淸韓論)<sup>25)</sup>이란 책을 저술해서 청국의 한국에 대한 전횡을 폭로하였다. 데니가 그 저서의 一節에서 「淸國은 마침내 한국정부 및 한국을 점령하기에 이를 것이다」<sup>26)</sup>라고 말한 바와 같이 청국은 한국의 일철의 내정과 외교에도 노골적으로 간섭하였다.

또한 경제면에서는 일본이 절대적으로 우위를 보였기 때문에, 청국은 「韓淸水陸貿易章程」을 이용해서 일본을 누르고 한국의 경제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었다. 그결과, 1892년에는 한국의 수입무역에서 청국은 일본과 비등하게 되었다. 그리고 1885년부터 1892년까지의 元山, 仁川, 釜山港으로 부터 청·일 상인에 의하여 한국에 수입된 무역수입액은 다음 <표 2>에서도 보임과 같이 일본과 청국은 격심하게 경쟁하고 있다.<sup>27)</sup> 특히 천진조약(1885)이후, 일본은 갖은 수단을 다하여 한국에의 경제적진출을 기도하였다. 이에 앞서, 1878년에 일본은 이미 第一銀行支店을 부산에 설치하였으며 이를 발판으로 해서 元山, 仁川, 木浦 등에는 지점망까지 설치했다.

그리고 일본정부는 이들 은행에 조성금 등에 특혜를 주어 금융적 진출을 원조하였는데 당시 한국에서의 근대적 금융기관인 은행인 대부분을 일본인이 경영하였다. 또한 일본정부는 한국항로에 보조금을 주고, 對外 및 沿岸 航路의 실권도 일본업자가 장악하게 하였다.<sup>28)</sup> 이와 같은 일본의 강력한 대한경제 진출로서 청국은 한국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우월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일본

李瑄根, 前掲書, p.816.

Griffis, *Corea: the Hermit Nation*, p.470.

24) 菊池謙讓, 朝鮮王國, p.396.

東邦協會, 前掲書, pp.43-53.

25) O.N. Denny, *China and Korea*, (서울:1888), 1890년에 紫山尙則에 의해 「淸韓論」이란 題目으로 日本文譯本도 나와 있다.

26) 데니(紫山譯), 淸韓論, p.69.

27) 百分比는 北川修, 歷史科學, 第1卷 第1號 (日淸戰爭까지의 朝鮮貿易에서)

28) 大藏省, 日本人의 海外活動에 關한 歷史的 調查(朝鮮編 第1冊分), p.129.

李清源(川久保吳共譯), 朝鮮近代史, pp.96-97.

의 산업자본주의에 대해서 한국에 있어서의 시장쟁탈전에서는 승산이 없었다.<sup>29)</sup>

< 표 2 > 仁川, 元山, 釜山港, 淸,日 상인 수입액 비교표  
단위:멕시코 弗

년 도	청국에서의 수입액	일본에서의 수입액	淸 國	日本(백분율)
1885	313,342	1,377,392	19 %	81 %
1886	455,015	2,064,353	17 %	83 %
1887	742,661	2,080,787	26 %	74 %
1888	860,328	2,196,115	28 %	72 %
1889	1,101,584	2,299,116	32 %	68 %
1890	1,659,542	3,086,897	32 %	68 %
1891	2,048,294	3,226,468	40 %	60 %
1892	2,055,555	2,555,675	45 %	55 %

監川一太郎, 朝鮮通商事情, pp.57--67에서 필자가 인천, 원산, 부산 항구의 수입액을 합계하여 작성하였음.

특히 일본산업자본으로서, 한국은 수출시장으로서만이 아니고, 米, 大豆 등 곡물의 수입지로, 즉 食糧資源地로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

29) 當時 日本과 淸國의 對韓貿易에 있어서 그 本質的인 差異가 있었다. 淸國은 主로 外國産物의 中繼貿易과 家內手工業製品이었음에 대해서 日本은 初期에는 外國産物의 中繼를 했으나, 점차로 自國産物品을 輸出하였다.

&lt; 표 3 &gt; 한국에서의 청,일에 수출된 무역액 비교표(仁川, 元山, 부산항 합계)

단위: 멕시코 弗

국별 년도	청국에의 수출액	일본에의 수출액	비교 백분율	
			淸國	日本
1885	5,479	377,775	3 %	97 %
1887	18,873	783,792	2 %	98 %
1889	109,798	1,122,279	9 %	91 %
1891	136,464	3,298,892	4 %	96 %
1892	194,861	3,711,918	6 %	94 %

監川一太郎, 朝鮮通商事情, pp.63--65에서 필자가 인천, 원산, 부산 항구의 수출액을 합계하여 작성하였다.

당시 한국의 삼대항에서 청,일 양국으로 향해서 수출된 무역액은 상기 < 표 3 >에서 보인 바와 같이 거의 전부 일본이 독점하고 있었다.<sup>30)</sup> 더구나 이 수출품목을 분석하여 보면 청국수출품은 인삼, 砂金이 대부분인데 대해서, 일본에는 米, 麥(보리), 大豆 등의 곡물이 압도적이었다. 일본자본주의의 성장을 위해서 식량공급지로서의 한국이 필요하였다. 더욱 일본은 1889년 가을 쌀의 대홍작, 1890년 여름의 보리(麥)의 대홍작은 일본 각지에서 이른바 쌀 소동을 폭발시켰다. 그리하여 外米수입은 보다 필요하게 되어, 일본 정부는 이 쌀 수입처를 태국과 한국으로 향하였다. 그러나 태국은 거리가 멀고, 게다가 품질도 알랑米로 나쁘기 때문에 良質米요, 염가인 한국쌀을 매입할 방침을 세웠다.

이에 일본 상인은 일본 정부의 지원하에 한국의 產地까지 나아가, 영세농민의 궁핍기에 자금을 전대(前貸)해서 秋收米를 가져온다는, 전형적인 고리채 상업자본의 농민약탈을 하여왔다. 이와 같은 일본상인에 의한 대량적인 米大豆의 매입은 한국에 있어서의 식량부족을 가져왔다. 이에 1899년 가을, 함경도관찰사 趙秉式은 在朝鮮國 日本人民 通商章程 第37條의 규정을 적용해서,

30) 三港口(仁川, 元山, 釜山)의 輸出額의 統計數字로서 「中國海關冊」에서 인용한 것으로 比較的 正確한 數字이다.

31) 「防穀令」을 발동하여 일본상인에 대한 곡물의 판매와 移搬(이반)과 수출 등을 금하였다.<sup>32)</sup>

일본 정부는 즉각 한국정부를 威嚇해서, 다음해 봄까지의 방곡령 해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이 부당한 요구에 쉽사리 굴복하지 아니하였다. 일본 정부는 近藤眞鋤 駐韓公使를 梶山鼎助와 교체시켜 한국정부와의 교섭에 임하였으나, 한국측은 이러한 일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일본 정부는 梶山공사를 그만두게 하고 민간 論客이었던 大石正己를 駐韓公使로 기용하고, 육군중장 川上撤六 이하 수명의 군인을 동반시켰다.

大石공사 일행은 1899년 5월에 외교관 의례를 무시하고, 직접 왕궁에 들어가 高宗을 협박하고, 「만일 日本의 요구에 應하지 않는다면, 戰爭을 呼訴한다.」는 뜻을 시사하였다. 이에 이르러 당시 일본의 침략을 방위할 만한 군비력이 없는 한국 정부는 일본의 협박에 13萬圓의 「배상」을 지불하고 「防穀令」을 해제하였다. 이와 같은 일본상인에 의한 한국쌀의 염가 매입, 일본 상품과 곡물의 不等價交換의 무역은 결국 한국의 농촌경제를 파괴시켰다. 일본 상인은 한국 농민에게 상품이나 화폐를 前貸의 형식으로 주고 고리에 의한 착취를 당하여, 토지 가옥등이 저당에 넘어가 일본인 소유로 돌아가는 것이 많아졌다.<sup>33)</sup>

上術함과 같이, 외국인의 경제적 침략에 의해서 한국 민중의 생활은 극도로 황폐하고, 또한 외국의 정치적 간섭과 압력에 의해서 한국정계는 극히 불안과 동요와 혼란에 빠졌다. 더욱 권력을 쥔 양반이나 고관은 내부의 당쟁에 여념이 없고, 그 당쟁도 서로 경쟁하는 청·일 양세력과 결탁하여 복잡하고도 심각한 대립을 계속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민정을 돌볼 틈조차 없었다. 여기에 정부는 통치에 필요한 경비외에 외국에서의 무기구입, 해외사절단

31) 日本外務省, 舊條約彙纂 第3卷(朝鮮琉球), pp.27- 47. 朝鮮國에서의 日本人民貿易의 規則 37條를 參照.

32) 服部喜太郎, 朝鮮事件 日清開戰記, p.24; 朝鮮史編修會, 朝鮮史, 第6編 第4권, p.1033.

33) 信夫淳平, 韓半島, pp.48-50 日本 商人이 淸國 商人에 比하여 特히 優勢라고 認定하는 商業은 典當舖質屋이다. 域內 市中 典當舖看板은 줄지어 있어 귀찮을 程度로 눈에 띈다. 그리하여 그 顧客은 누구나 韓人이다. 金利는 높기에 놀랄만하니, 가장 普通인 것이 月一割이다. 旗田巍, 前掲書, p.179.

의 파견, 배상금등 새로운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에게서 가지가지 명목의 세납을 징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한국민중은 이 이중, 삼중의 부담에 견딜 길이 없었다. 여기서 국민들은 외국세력에 대한 반항과 증오의 용솨음치고, 또한 이러한 外壓을 방지못한 정부에 대한 불평불만이 폭발하였다. 그러나 이를 호소할 곳도 없고, 정신적인 위안을 구할 곳도 없었다. 이와 같은 생활고와 압정고에 시달리고 있는 민중을, 정신적으로 구제하려고 輔國安民策을 염원하여 發會한 것이 즉 「東學」 창건이었다.<sup>34)</sup> 東學의 발생은 원인은 실로 여기에 있었다.

### III. 東學創建의 沿革

東學의 敎祖는 崔濟愚로 그는 1824년 10월 28일, 慶尙北道 慶州郡 柯亭里에서 탄생, 兒名을 「福述」이라 한다. 그의 부 崔鏞은 新羅末葉의 유명한 문호 崔致遠의 28대 孫으로서, 대대로 유가의 명문으로 당시 경상도 일대에서는 文章道德家로서 일반에게 알려진 인물이었다.<sup>35)</sup> 家系로 보아, 그도 당시 지배계급인 양반계급에 속하였다고 할 수 있다. 崔濟愚는 6세 때에 어머니를 여의고, 16세로서 아버지와도 사별하여 퍽 고생하였다. 그는 영명한 기질을 타고났으나 항상 당시의 세상에 대하여 불평을 가지고, 家道를 닦는 것을 짓혀 놓고 집을 나와 팔도명산을 歷遊하면서, 유교, 불교, 仙敎, 기독교 등에 대해 공부하였다. 그러난 그가 만족할 만한 종교는 없었고, 그는 「宗教를 위하여 人間이 사는 것이 아니고, 人間이 살기 위한 宗教를 구한다.」<sup>36)</sup>는 眞諦(진체)를 결심하였다. 그가 慶尙道 梁山郡 千聖山에 들어가 단을 세우고 공부를 거듭하기 무릇 20년, 마침 1860년 5월 25일 (哲宗 11년 庚申 4월 5일) 새벽에 天主가 홀연히 그의 초당에 강림하여, 불사의 仙藥 및 呪文을 주고, 天主를 대신해서 교를 펴서, 인민을 구제할 것을 명하였다고 한다. 이 영감을 받은 崔

34) 「東學」이라고 명칭을 붙인 것은 西學(天主教)과의 對稱으로서, 이를 信仰하는 것을 「天道」라고 이를 배우는 것을 「東學」이라고 稱한다. 韓國에서 布敎하고 있는 天道敎侍天敎의 宗이다.

35) 朴寅浩, 天道敎서, p.1; 李敦化, 天道敎創建史, p.1; 白世明, 東學思想과 天道敎, pp.1-3.

36) 吳知泳, 東學史, p.9.

濟愚는 공부를 거듭하여 새로이 一道를 창건하였다.<sup>37)</sup> 이것이 後天開闢의 새로운 원리인 天道 즉, 「東學」이다. 「東學」 관계자는 이 해를 布德元年이라 칭한다.

崔濟愚는 신교 창시에 즈음하여, 내외의 경전을 충분히 연구해서 儒敎.佛敎.仙敎 삼교의 장점을 도입하고, 여기에 기독교의 天主觀을 참고하고, 또 한국의 재래의 민속간에 깊은 뿌리를 박고 있는 Shamanism에 기초를 두어, 인간에게 誠敬.信 三事를 貫悟시키는 것을 요체로 삼았다.<sup>38)</sup> 즉, 東學은 인간주의.인문주의 관념이 그 敎旨이었다. 이 東學이 포교를 시작하자, 現狀에 불평을 가진 모든 사회층이 東學의 신도가 되어, 그 수는 급속히 증가하였다.<sup>39)</sup> 마침내 전국 각지에 東學의 세력이 확대되어갔다.

당시의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신흥종교가 발전하는 것은 봉건체제의 물질적, 정신적 기반에의 침식작용을促하는 것이라 해서, 좋아하지 않는 바였다. 이에 정부 당국에서는 이 東學의 행동을 주목하고, 각도 관찰사에게 명하여 그 동향을 조사시켰다. 이 때에 崔濟愚는 布德文을 발표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古俗舊慣을 파괴하는 天主敎를 유폐하는 것은 나라를 잃고 민족을 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쇠퇴한 유교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따라서 스스로 이에 當하는 바이다.»<sup>40)</sup>라고 선포하였다. 이 포덕문은 정부를 자극시켜, 진작 유교를 국교로 삼아 인심을 지배해온 정부는, 자칫하면 東學이 유교에 대체되리라는 형세를 우려해서, 東學에 대해서 「무지한 愚民을 惑亂하는 邪敎」라 하여 금지령을 발하고,경상도 관찰사 徐憲淳에 명하여 교주 崔濟愚를 체포하게 해서 「左道惑民罪」로 대구에서 사형에 처하였다.<sup>41)</sup>

敎祖 崔濟愚의 처형은 東學에 큰 타격을 주어 일시 그 재기조차 의심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박해를 가함에 따라서 現世에 불만을 품었던 민중들이 東

37) 李敦化, 前掲書, pp.12-14. 朴演浩, 前掲書, p.6.

38) 東學은 「敬天」으로써 天主를 삼고, 恒常 「至氣今至順爲大降」의 八字呪文을 불러, 이를 信仰하는 것이 天道라고 한다.

39) 旗田巍, 朝鮮史, p.181.

40) 李敦化, 前掲書, 附「東經大典」, 布德文 參照.

41) 朝鮮史編修會, 朝鮮史, 第6編 第4卷, p.13. 李太王 元年 3月 2日條, 東學首魁 崔濟愚 梟首, 罪人姜元滿. 崔自元絶烏定配, 罪人 李乃謙外 7名 遠地定配云云.

學에 모여 그 신도수는 급속히 증가되어 갔다. 특히 제2교주가 된 崔時亨은 東學의 경전인「東經大典」(1880년)을 출간해서 각지에 이를 전하며 비밀히 전도를 하였기 때문에 그 세력은 모든 사회층에 깊이 뿌리를 뻗었다.<sup>42)</sup>

제 2교주 崔時亨은 崔濟愚의 同族으로서, 그 나이 20세경에 東學에 입교하여, 1861년 敎祖를 따라 처음으로 가르침을 받아 그 純正한 인격과 열렬한 신앙심에 의해서 30세경에는 일선 포교사로 醴泉·尙州·聞慶 방면에서 다수의 신도를 얻었다.<sup>43)</sup> 그 人望을 인정한 敎祖 崔濟愚는 大邱 捕廳에 체포됨에 앞서, 「瀉瓶傳授」의 秘法을 崔時亨에게만 授法하여 敎祖 순교 후 교의가 쇠망함에 대비한 것이었다. 崔時亨도 이 유명을 받아 敎祖의 유지를 잘 계승하여 가진 곤란을 참고 관헌의 감시를 피하여 慶尙·충청·전라 삼도에 轉轉 潛行하며 거처를 바꾸면서 고난에 찬 비밀전도를 계속하였다. 그래서 1883년에는 「龍譚遺詞」가 간행되고,<sup>44)</sup> 1884년에는 金演局·孫秉熙·孫天民·朴寅浩 등 저명한 인물이 속속 來謁하여 東學으로는 一大光彩의 시대였다.<sup>45)</sup> 이 때 東學의 내부조직도 짜여지고, 各職名도 布德降書에 의해서 「敎長·敎授·都執·執綱·大正·中正」의 6부서로 정하여졌다.<sup>46)</sup>

이리하여 東學은 민간 종교단체로서 명실공히 조직화되었다. 그러나 東學에 대한 관헌의 탄압은 변함 없이 계속되고, 특히 東學에 모이는 자들이 현세를 통탄하고, 관인의 부정과 외국의 압박에 불만을 가지고 시사를 논함에 이르러니, 나날이 그 탄압은 우심(尤甚)해졌다. 당시 유교·불교·仙敎의 삼종교가 함께 頹廢(퇴폐)해서, 민중의 정신적인 위안처로서는 東學밖에 없었기 때문에, 東學徒의 수는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갔다. 이에 다다라 조정은 東學의 세력을 두려워한 나머지, 1885년에 충청도 관찰사 沈相薰에게 명하여 다시금 東學에 대한 금지령을 내리었다. 이에 격분한 東學은 天主教의 포교가 이미 허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東學만을 엄금함은 부당하다고 지탄하고, 제2교주 崔時亨에게 청해서, 敎祖 崔濟愚의 伸冤運動을 호소하였다. 崔時亨도 이

42) 國史編纂委員會, 東學亂記錄(下), p.2.

43) 菊池謙護, 近代朝鮮史(下卷), p.200-201.

44) 田保橋潔, 近代日支鮮關係의 研究, p.46.

45) 吳知泳, 前掲書, p.60; 李敦化, 前掲書, 第二編 第二章 布德降書, p.31.

46) 朴寅浩, 天道敎書, p.78. 敎長·質實望厚人. 敎授·誠心修道 可以傳授人·都執·有風力 明紀綱智境界人. 執綱·明是非 可執紀緯人·大正·持公平 勤厚人. 中正·能直言剛 直人.

東學徒의 요망에 좇아서, 드디어 이 운동을 일으키는 데 동의 하였다. 이리하여 1892년 12월, 제2교주 崔時亨은 孫天民에게 명하여 격문을 草하게 해서 이를 각도의 東學徒에게 통보하였다. 따라서 각지의 接主는 東學 각 包內의 東學徒에게 전하여, 이 운동에 참가하도록 호소하고, 그 집회를 전라도 參禮 都會所에서 열기로 하였다.

삼례 도회소에 參集한 東學徒는, 敎祖 崔濟愚의 신원운동과 東學에 대한 지방관청의 탄압 중지를 결의하고, 이를 충청도 관찰사 趙秉式과 전라도 관찰사 李耕植에게 陳情하였다.<sup>47)</sup> 전라도 관찰사 李耕植은 이 진정서를 수리하였으나, 「東學은 조정에서 금하였기 때문에 이 異端에 附和해서 범죄를 범하지 말고, 곧 退去해서 다시 미혹되지 말라.」고 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sup>48)</sup> 이 返答에 대해 東學徒는 몹시 분격하였다. 그래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12월 25일 全州集會를 개최하고, 관찰사에게 재차 진정서를 내고, 각지에서 東學徒의 재산을 몰수해서 私服한 관헌이나 군대의 단속을 요구하고, 또한 敎祖의 伸冤과 함께, 東學을 이단자로 규정한 이유를 追究하였다. 이 東學徒의 요구에 대해 관찰사는 조정의 방침이 이미 東學을 이단종교로 규정하고 있고, 조정의 지시에 의하여 東學을 금지할 뜻을 분명히 하였다. 거기에서 전주에 모인 東學徒는, 지방의 관헌으로서는 해결되지 못함을 認得하고, 직접 정부에 上疏하기로 결정하고, 그 집회를 해산하였다.<sup>49)</sup>

1893년 1월 교주 崔時亨은 조정에 상소하는 진정서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忠淸道 報恩郡 帳內에 각지의 東學徒를 소집하였다. 이 보은집회에는 전국에서 수천명의 교도가 모였다. 이 全東學徒의 이름으로 각 지방에 있어서의 東學徒의 박해와 또한 敎祖의 신원에 대해 진정하였다. 그러나 조정은 이 진정도 일축하고 각지의 관헌에게 명하여 다시 東學의 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하였다. 여기에서 東學은 직접 高宗에게 하소하기로 결정하고, 동년 3월에 朴光浩를 단장으로 孫天民을 副使로 한 일행 40명의 진정단을 편성해서 서울로 향하게 하였다. 서울에 도착한 진정단은 3월 29일 왕국 앞에 俯伏하여 고종

47) 李敦化, 前掲書, p.46; 吳知泳, 東學史, p.71.

48) 吳知泳, 前掲書, p.73; 田保橋潔, 近代日支鮮 關係의 研究, p.49. 同著에 全羅道 觀察使 「李耕植」이라고 있음은 「李耕植」의 誤謬임.

49) 田保橋潔, 前掲書, p.51.

게 東學에 대한 지방관헌의 박해 중지를 청원하였다.<sup>50)</sup>

高宗은 이 伏閣上疏는 격식에 反한 까닭으로써 각하하고, 교지를 내려 「汝 등은 각기 집에 들어가 各業에 安着한다면 곧 願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施行 하리라.」라는 뜻으로 東學을 慰撫하셨다. 이와 같이 일행의 伏閣上疏는 성공을 보지 못했으나, 敎祖의 신원이라는 종교적 표식을 갖고서, 지방관헌의 횡포를 직접 국왕께 하소할 수가 있었다는 것은 큰 성공이었다. 또한 이 伏閣上疏는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의 민심을 동요시키고, 각성의 동기를 준 데에도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한편, 이 상소의 실패는 지방관헌의 압박의 구실로 되어, 각지에서 동학도에 대한 탄압이 보다 격심해졌다. 당시 서울 駐在大石公使로 부터 陸奧外相에의 전신에 의하면, 4월 14일에 국왕은 敎諭를 내리시어 「內外官廳으로 하여금 本學(東學의 뜻)의 首領을 捕獲하여 嚴罰에 處하고 殘徒는 曉誘 解散하게 하라는 명이 있는 以來 左右捕廳은 물론, 각 지방관도 銳意 이를 拿捕하기에 從事하고 있음.」<sup>51)</sup>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東學에 대한 탄압은 東學을 더욱 격분시켰다. 東學은 4월 25일을 기해 각도 接主에게 통문을 발하여 報恩郡 帳內에 집결토록 전달하였다. 이 통문이 전해지자 각도에서 모이는 자는 끊임이 없어, 5월 5일경에는 2만여명에 달했다. 그들은 앞서 參禮.全州.報恩의 각 집회와 伏閣上疏의 경험에 비추어 東學 내의 조직을 강화하고, 정치적.종교적 결속도 굳히었으므로, 장기저항의 태세를 갖추었다. 또한 최초의 敎祖 伸冤의 종교적 표식을 放棄하고, 정치적 요구로 슬로우건을 바꾸어 명확히 「掃破倭洋」과 「除暴救民」을 唱導했다.<sup>52)</sup> 그리고 보은군에 결집한 민중은 조직적으로 정연히 大接主의 통솔하에 규율있는 행동을 취하여, 錢穀을 모아 성곽을 쌓고 各包마다 「斥倭洋倡義」라고 쓴 표식의 기치를 세워 「心告」<sup>53)</sup>와 주문을 念唱하며 만인의 행동이 一人과 같이 不亂하고 엄숙하게 지켜져 체류하기 수 10일간 大聲으로 당시의 時事를 논하며, 외국의 침략에 분개하고 국내의 부패한 정치를 개탄하였다.

이 報에 접한 충청도 관찰사 趙秉式은 이 집회의 해산을 명했으나, 이를 무

50) 田保橋潔, 近代日鮮關係의 研究(下卷), p.217.

51) 伊藤博文, 朝鮮交涉資料(下卷), p.67. 東學黨動靜 參照.

52) 姜在彦, 朝鮮에 있어서의 封建體制의 解體와 農民戰爭『歷史學研究』(173號).

53) 心告: 「天主와 敎祖의 本志」를 몸받아. 「保國安民」布德天下廣濟蒼生하여 我家庭이 永遠히 幸福하게 되는 地上天國을 建設합니다.」

시하고 각도에서 東學徒는 接主의 인솔하에 속속히 집회에 결집하였다. 이 一報가 서울에 達하자 조정은 이 형세에 경악하였다. 조정은 즉각 兩湖巡撫使 魚允中을 파견하여 弊政의 시정과 東學徒나 人民을 학대한 수명의 탐관오리를 처벌할 것을 약속하고, 그 집회의 해산을 간청하였다. 그러나 東學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書狀으로 「斥倭斥洋」의 義를 陳情하였다. 그 文狀에 가로되, 「渠輩의 志直同心하는 바는 斥倭斥洋으로서 국가를 위해 忠을 效함에 있습니다. 方伯과 관리들이 接함에 匪類로사 하고, 侵掠虐待하고, 紀極이 있으면서도 없습니다. 지금 만일 急遽히 스스로 退散하면 인민은 반드시 짐작하되 匪類라 할 것입니다. 오직 바라건대 이 下請을 조정에 上達하여 明旨를 降하여 認許사시사 赤字로 삼음을 입을 수 있사오면, 삼가 마땅히 退散하여 業에 安着할 것이외다.」라고 말하고 있다. 魚允中은 이에 답하여 「汝輩의 聚黨意思是 攘夷에 있다. ……그리하여 狀中에 倭洋이 吾君을 위협한다고 한 것은 傳聞의 浮訛로서 이미 曉諭가 있었다. 마땅히 此等의 辭綠으로써 具申啓聞하여 上達의 길이 있게 할 것이다. 汝等도 또한 退去하여 業에 安着하라.」라고 慰撫하였다.<sup>54)</sup>

東學이 이와 같이 「斥倭斥洋」을 내세운 것은 前節에서 말한 바와 같이 「江華條規」 이래 일본의 침략, 청국의 간섭, 거기에 영.러의 압박등에 의해서, 「壬午軍亂」, 「甲申政變」 등 불상사가 연발하고 이에 의해서 국위가 땅에 떨어지고, 加霜으로 內政이 紊亂해져 그때문에 인민이 도탄의 難苦에 떨어진 현상에 분개한 때문이었다. 그러나 조정은 이 요구를 시기상조라 불응하고, 무력적 탄압에 호소하게 되었다. 즉 東學이 배외주의를 부르짖은 데에 대해, 서울의 외국 외교관들은 이에 주목하여 활발한 움직임을 하고 있었다. 조정도 중대한 외교문제를 야기할 것을 우려하여 병력으로써 무력해산시키기로 결정하고, 京軍 600명을 현지 충청도에 파견하고 재차 魚允中을 宣撫使로 임명하여, 淸州牧의 兵員 100명을 동원해서 報恩郡 帳內의 東學집회에 임하여 高宗의 教旨를 전하고, 3일내에 해산하도록 명하였다.

東學측은 이에 대해 침략세력의 배제 지방관의 탐관오리 처벌, 東學徒를 탄압한 전 충청도 관찰사 趙秉式, 전 宮將 尹泳璣 등의 처형을 요구했는데, 魚允中은 이를 전부받아 들였기 때문에, 1893년 5월 18일 보은군 집회는 아무

54) 朝鮮史編修會, 朝鮮史, 第 6 編 第 4 卷. 李太王 30 年 3 月 26 日 條.

런 희생도 없이 해산하였다.<sup>55)</sup> 이리하여 보은군의 집회는 해산하였으나 東學의 금후의 동향은 비상하게 주목되었다. 전술과 같이 東學은 參禮 . 全州 . 報恩의 각 집회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비약하여 그 슬로우건도 종교적인 것보다 정치적인 것으로 바뀌고, 또한 이 東學의 잠재력은 당시 朝鮮社會에 큰 세력권을 형성하여, 정부의 힘으로도 용이하게 탄압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한 것이다. 과연 그 다음해인 1894년 東學은 드디은 古阜에서 무력, 봉기로서 폭발하였다.

#### IV. 東學革命의 發端과 그 展開

보은군 집회로 부터 일년도 경과되지 않은 1894년 2월 全羅道 古阜에서 농민 소동이 폭발하였다. 이것이 「東學蜂起」의 발단이다. 이 봉기는 東學徒 古阜 接主 全琫準의 지도에 의하여 농민운동으로서 전개되어졌다. 이 古阜民亂의 직접적 원인은 지방관리의 苛斂誅求였다. 이에 소동의 도화선이 된 古阜水稅米 濫捧 事件에 관하여 여기에 약간 말해 두고자 한다.

농촌에 있어서의 관개시설의 설비는 그 농사에 가장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古阜郡 北面에 있는 「萬石狀」(狀=堤防)와 「八旺里狀」의 개수 및 防禦에는 幾萬人的 주민이 古阜郡에서 동원되어, 민중의 노역에 의해서 관개시설을 보수한 것이었다. 그런데 古阜郡守 趙秉甲은 水利稅를 마련하여, 농민에게 畓(水田)每斗落到租 三斗씩<sup>56)</sup>의 糧物을 지불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수입을 자기의 주머니에 넣었다.<sup>57)</sup> 그뿐 아니라, 그는 古阜郡에 부임한 이래 비행을 공공연히 행하였다. 부농의 불효, 淫行 등을 탐지해서 죄명을 씌워 錢二萬餘兩을 橫奪하기도 하고, 또한 생부의 碑閣 건립금으로서 壹千餘兩의 대금을 誅求하며, 大同米를 민간으로 부터 징수함에 精白米 16斗當으로 대금을 징수하고, 上納米에는 惡米를 매입해서 이와 바꿔쳐서, 그차액을 착복하기도 하여, 그 비행은 실로 대단하였다. 「萬石狀」의 水稅만으로도 총액 700여석을 私服하였다고 한다.<sup>58)</sup>

55) 朝鮮史編修會, 前掲書, p.1020. 李太王 30年 4月 3日條.

56) 國史編纂委員會, 東學亂記錄(下卷) 全琫準 供草. 畓(水田)으로 一斗의 씨를 뿌리는 土地面積(一斗落)에 대해서 秋收期에는 三斗의 穀物을 納穀한다.

57) 吳知詠, 前掲書, p.102; 李清源(川久保吳共譯), 朝鮮近代史, p.109; 東學亂記錄(下卷)(全琫準供草), p.522.

58) 田保橋潔, 「日清戰後外交史の 研究」, p.66.

이와 같은 군수의 비행은 농민의 困苦를 가중시켜, 농민의 분노는 그 극에 달하였다. 그래서 古阜郡 16면 수백 동리의 민중은 1893년 12월 23일 全彰赫 金道三 鄭一瑞의 삼인을 대표로 선출해서 趙秉甲 군수에게 진정을 하였다. 군수는 이것을不容하고 오히려 亂民이라고 낙인을 찍어 전라감영에 통고하고, 그 대표를 체포 투옥하고 그 단장격인 金彰赫을 苦列에 의하여 瘦死시켰다.<sup>59)</sup> 郡民은 이에 분노하여 일대소동을 일으켰다. 이것이 古阜의 民亂이요, 東學봉기의 발화점이다. 그리고 이 소동에 즈음하여 全琿準 孫和中 金開南 등의 東學 간부는 連統로 倡義文<sup>60)</sup> 을 각지에 급송하여, 東學徒 및 전농민에 호소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 倡 義 文

世上에서 人間의 存在가 尊貴함은 人倫이 잇기 때문이다. 君臣父子는 人倫의 가장 큰 者이다. 故로 國王은 人民을 慈愛하고 臣下도 賢良方正으로 國王에 翼贊하는 곳에 좋은 政治가 생기고 文化도 繁榮한다. 그러나 今日을 보매 官憲輩는 公私에 分別하지 않고 賣官賣職에 餘念이 없어 충실한 志士를 中傷하고 正直한 者조차 匪徒로 다스리기 때문에 輔國을 위하는 人材가 없고, 民衆을 虐待하는 官吏만이 많다. 따라서 民苦는 갈수록 甚해지고 일할 職場도 없고, 生活의 方途도 없다. 게다가 虐政官들은 國家의 安危를 생각하지 않고, 國庫金까지 私腹에 채워 萬人은 塗炭의 奈落에 빠져 있다. 이것을 누가 救하라. 百姓은 國家의 根本이다. 根本이 말라 衰해 버리면 國家도 반드시 亡한다. 輔國安民의 方針을 專念하지 않고, 自己 一個人만 생각하여, 나라의 俸祿을 먹는 것만이 어찌 올바른 일이리오. 우리는 草野逸民이라 할지라도 君土에서 만나, 君依를 입고 있다. 어찌 國家의 危機와 滅亡을 보고 있을 수 있으리오. 全國의 人民은 團結해서 滿場一致로 여기에 正義의 旗를 올려 輔國安民을 위해 死生の 盟誓로 대신한다. 今日의 光景에 놀라지 말고, 昇平聖化와 함께 들어가 살아보기를 바라노라.

甲午年 正月

59) 吳知泳, 前揭書, p.103-104; 菊池謙護, 近代朝鮮史(下卷), p.214. 또한 全彰赫은 東學亂의 指導者 全琿準의 生父이다.

60) 吳知泳, 前揭書, p.108.

湖南 倡義所 全琫準 孫和中 金開南 等

이 倡義文이 한번 세상에 전달되자 군민은 敢然, 쫓기하였다. 1894년 2월 15일 밤 수천명의 군민은, 全琫準의 처소에 모여 폭동을 계획하였다. 그 다음날, 全琫準을 선두로 東學徒와 농민은 「萬石狀」의 南方 古阜郡 水內面에 집합하여 즉각 행동을 개시하여 古阜邑內에 들어가 郡衙를 습격하여 郡吏를 살해하고 병기고를 점령하였다. 亂民은 다시 옥문을 열고 죄없이 갇힌 인민을 석방하고 창고를 파괴하여 부당하게 징수한 稅穀을 원소유자에게 返濟하였다.<sup>61)</sup>

古阜 郡守 趙秉甲은 難幸이 이 亂中을 벗어나 전주에 도피해 와서 전라도 관찰사 金文鉉에 이 변란을 보고하였다. 金文鉉은 즉시 관리를 古阜郡에 파견해서 조사한 결과 亂民側의 제출한 弊政條目은 趙秉甲 및 郡吏의 부정을 의심할 나위 없이 증명되었다. 이에 趙秉甲을 체포 被罷하고, 이 사건을 정부에 上達해서 弊政의 시정을 약속하였기 때문에 이 民亂은 별고없이 해산하였다. 이상의 경과로 하여, 이 古阜의 民亂은 純然한 農民一撥이지 꼭 東學徒만이 움직인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그들은 金文鉉의 弊政 시정에 납득되어 해산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정은 金文鉉의 보고를 받고 동년 3월 21일 古阜 郡守 趙秉甲을 유입시키고 長興副使 李容泰를 按察使로 임명하여 古阜에 파견하였다.<sup>62)</sup> 그런데 古阜에 着任한 李容泰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태에 있는 당시의 사태를 的確히 파악하지 못하고, 古阜 民亂 查辦에 當하여 일절의 죄를 東學徒에게 돌려, 東學徒의 명부를 작성해서 이를 일일히 구금하고, 그 주거를 燒破하고 소재 불명자에는 체포령을 내려, 그 처자를 살해하는 등 난폭한 查辦을 강행하였다.<sup>63)</sup> 이와 같은 부당한 查辦은 民亂을 재폭발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1894년 4월말 全琫準, 金道三等은 이 按察使의 부당한 행위에 분격하여 다음과 같은 檄文을 각지방의 接主 및 군민에 발송하였다.

61) 吳知詠, 東學史, p.111.

62) 「李太王朝史」, p.1045. 甲午 李太王 31年 2月 15日條.

63) 古阜蜂起 動機에 대해서 말기를 「散落後 因何事 更起包乎. 供 其後 長興府使 李容泰 以按察使 來本邑 起包人民 通稱以東學 列名指捉 燒灰其家舍 無當者 則捕其妻子 而行殺戮 故更爲起包.」

檄 文

우리가 義를 드세워 此에 至함은 그 本意가 斷然 他에 있지 아니하고 蒼生을 塗炭中에서 건지고 國家를 盤石위에 두고자 함이다. 안으로 貪虐한 官吏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 橫暴한 強敵들을 驅逐하자 함이다. 兩班과 富豪의 앞에 苦痛을 당한 民衆과 方伯 과 守令 밑에서 屈辱을 받은 小吏들은, 우리와 같이 怨恨이 깊은 者이다. 조금도 躊躇함이 없이 즉각 奮起하라. 萬一에 機會를 놓치면 後悔하여도 마지 못하리라.64)

甲午 正月  
湖南 倡義大將所

이 격문이 전해지자 이제까지 착취와 악정에 신음하던 민중은 각지에서 물러왔다. 불과 4일간에 그 수는 3,000여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이에 봉기군을 편성하여 全琫準이 總大將, 孫和中和 金開南이 補佐指揮官이 되어 다시 古阜郡衙를 습격하여 병기고를 타파하고 그 무기를 탈취하여 무장하고, 郡倉庫가 있는 白山을 향해 진격하고, 白山창고에 있던 4,000석의 白米를 부근의 기아에 허덕이는 민중에게 분배하여 주었다.65) 이 소문이 전국에 퍼지자, 이제까지 불만을 품고 있던 東學徒와 농민, 그리고 유생과 지방관리 등이 續續 봉기군에 가담하여 그 세력은 날로날로 증대하여졌다.

이에 전라도 관찰사 金文鉉은 사태의 증대화에 놀라. 이 봉기군 진압을 위하여 領兵官 李庚鎬에게 명하여, 全州營兵 1,000여명과 新募兵 1,000여명 합계 2,000여명의 병사로 된 토벌대를 편성해서 古阜郡 白山으로 향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1894년 5월 11일 古阜郡의 험준한 黃土峴에서 봉기군과 정부군 사이에 최초의 전투가 벌어졌으나, 정부군은 이 일전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퇴각함에 이르렀다. 東學軍은 퇴각하는 정부군을 추격해서 井邑, 咸平을 거쳐 5월 26일에는 長城을 점령하였다. 이 사이에 각지에서도 이 東學軍에 호응하여 소요가 일어나 특히 전라, 충청, 경상 삼도는 완전히 봉기군의 세력하에 있

64) 吳知泳, 前揭書, p.112.

李清源, 前揭書, p.110.

65) 朝鮮歷史編纂委員會, 朝鮮民族解放鬪爭史, p.106.

어 정부의 명령은 이 지방에서는 행하여지지 않게 되었다. 이 지역에서는 이미 東學徒는 執綱所를 창립하고, 모든 제도를 개혁하여, 실로 幾百年의 弊政을 일소하고, 행정사무를 관장하기에 이르렀다.<sup>66)</sup>

조정은 이 보고를 접하고 洪啓薰을 兩湖招討使에 임명하여 京軍 800명을 기선 2척과 청국군함 1척에 각각 分乘시켜 군산포에 向發시켜 전주 방위에 當하게 하였다. 東學軍은 그 사이에 泰仁, 金溝를 거쳐 全州로 향하였다.<sup>67)</sup> 그래서 5월 31일에는 全琫準이 인솔한 수천의 東學軍은 全州府外에 도착해서 성외의 完山七峰을 점령하고, 관병한테서 얻은 野砲로 성내에 포격을 개시하였다. 전주전에서도 정부군은 패하여 관찰사 金文鉉과 中宮將 朴泰斗는 성외로 도망하고, 全琫準이 인솔하는 東學軍은 6월 1일에 전라도의 수도 전주에 입성하였다.<sup>68)</sup> 이 전주점령에 의하여 각지의 수만의 東學徒도 전주에 모였다. 『五十年의 回顧』의 저자 朴榮喆은 동서에서 당시의 양상을 「우리집도 약 30명의 東學兵의 숙사로 충당되었으나, 그들은 모두가 淳朴한 百姓이었다.」라고 술회하고 있다.<sup>69)</sup>

남한의 요지인 전주가 함락된 것은 정부를 당황하게 하였다. 高宗은 즉시 최강의 정예인 江華鎗隊 400명, 서울 및 平壤監營兵 2,000명을 징발해서 嚴世永을 三南招討使로 임명하고 전주에 급파해서 兩湖招討使 洪啓薰과 협력하여 東學軍과 담판하고 휴전하도록 위임하였다. 嚴世永은 전주에 도착하자 東學軍의 감정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관찰사를 巨濟島로 유배하고, 古阜郡守 趙秉甲을 牢獄에 넣고, 金鶴鎭을 새로 전라도 관찰사로 임명해서 東學軍과의 화해를 교섭하였다. 거기서 東學軍이 요구하는 12개조를 무조건 수락하고 이른바 「全州和約」을 맺어 6월 11일 東學軍은 전주를 정부군에 인도하였다.<sup>70)</sup> 정부가 이와 같은 작전으로 나온 것은 우선 最盛期の 봉기군을 일단 누르려는 수법이었다.

이에 앞서 정부는 5월 31일에 閣議를 열고, 이 東學亂을 신속히 진압하기 위해서 「壬午.甲申」의 變에 청국의 병력에 의하여 진압한 예를 들어 청국에

66) 李敦化, 天道敎創建史, p.59.

67) 朴榮喆, 五十年의 回顧, p.57. 兩湖招討담(?)錄.

68) 松方芳夫, 日清戰爭前後(近代日本歷史講座), p.50.

69) 朴榮喆, 前掲書, p.58.

70) 信夫清郎, 陸奧外交, pp.35-36.

원병을 요청할 방침을 결정하고, 6월 1일 兵曹判書 閔泳駿은 국왕의 內命을 받아 주한청국대표 袁世凱와 상담을 하여 그 동의를 얻고 6월 3일에는 청국에 대해서 「東學亂의 鎮壓과 國內 秩序의 안정을 위하여 軍事援助」를 要請하였다.<sup>71)</sup>

## V. 東學革命에 대한 淸國의 出兵과 日本

東學봉기를 진압할 목적으로 청·일 양국의 군대가 6월 중순 한국에 상륙하기 수일전, 東學軍은 이미「全州和約」에 의하여 전주를 정부군에 양도하고, 전라도 각지로 분산하였다. 그러나 청·일 양국으로서는 天津條約 이후 한국에의 출병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은밀히 내란의 발발을 嚮望하고 있었던 판이었다. 즉, 청국은 東學亂이 발생하자 그 동향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한국 주재 袁世凱 대표를 통해서 내밀히 성원하고 출병의 기회를 꾀하고 있었다. 또한 甲申政變 이래 오랫동안 한국정계에 내몰렸던 일본도 청국 이상으로 한국진출의 기회를 노리었다. 근대산업의 성장에 의하여 시장의 확대를 절대 필요로 한 일본은 한국지배의 의욕에 있어서는 청국보다도 훨씬 절실했었다.<sup>72)</sup>

이와 같이 청·일 양국이 함께 한국에 야심을 가지고 노리고 있던 판에 6월 4일 한국정부에서 정식으로 원병의 요청이 청국에 들어오자. 李鴻章은 「好機가 이에 이르렀다.」라고 즉각 直隸提督 葉志超에 명하여, 北洋海軍의 정예를 招商局 소유의 기선 「圖南·海晏·海定」의 三隻에 태워, 한국의 牙山港을 향하여 출발시켰다.<sup>73)</sup> 또한 水師提督 丁汝昌에게 電訓해서 군함 「濟遠·揚威」를 파견하여 한국근해의 육군수송선 호위의 任에 當하게 하였다. 그와 동시에 駐日公使 汪鳳藻에 훈령해서 「朝鮮政府의 請願에 따라 匪徒討伐을 위하여 陸軍의 일부를 朝鮮에 派遣한다.」는 뜻을 「天津條約」에 의하여 일본에 통고하게 하였다.<sup>74)</sup>

71) 光緒朝日中交涉史料(卷 13), p.9530.

72) 旗田巍, 前掲書, p.185.

73) 參謀本部, 明治 278年日清戰爭史(第1卷), p.77.

74) 王芸生(長野波多野 共譯), 日支外交六十年史(第2卷), p.70; 田保橋濤, 日清戰後外交史의 研究, p.92.

6월 6일과 7일 양일 山海關을 출발한 聶士城이 거느리는 청국의 선발대는 6월 10일에 牙山港에 상륙하고, 이어 葉志超가 거느리는 본대도 12일에 牙山에 상륙하였다. 이로써 大沽 및 산해관을 떠난 청국 출정부대의 兵員 2,465명, 山砲 4문, 臼砲 4문을 장비한 제일차 파견병의 한국상륙이 완료되었다.<sup>75)</sup> 또한 葉志超가 山海關을 출발할 때 신청한 蘆台 주둔부대의 續發도 허가되어 이 練軍馬隊 약 400명도 6월 25일에 아산에 상륙해서, 아산 일대에 집결한 청국 육군은 약 2,800명에 달하였다.

청국이 이와 같이 신속하게 육군을 동원하여 출병행동으로 나온 것은, 마침 5월 중순에 北洋艦隊를 중심으로 하는 海陸연합의 대연습이 있던 때문이었다. 그리고 대연습은, 北洋大臣 直隸總提督 李鴻章이 光緒 初年에 華北 防衛에 착수한 지 바로 10년째이었으므로, 그 기념대연습을 행한 때이다. 이 10년간 北洋海軍을 創立하고, 黃海 연안 各港 (大連, 旅順, 大沽, 威海衛, 膠州灣)에 築港工事도 거의 예정과 같이 완성됨을 기회로 청국으로서는 이를 기념할 空前의 대연습이었다. 이 대연습에는 北洋軍提督 丁汝昌의 艦艇은 물론, 福建水師, 廣東水師의 정예도 이에 참가해서 연합함대를 편성하고 육군에서는 盛京, 直隸, 山東 등 三省에 주둔하는 신식군대가 모두 이에 참가하고 영국의 청국함대 사령관 프림만틀을 비롯해서 列國의 해군이 주시하는 앞에서 거행되었다. 이와 같은 대규모의 연습이 끝났을 때이었으므로, 청국의 한국출병은 이상적인 적기에 놓여 있었다.

이보다 앞서 청국은, 6월 7일 駐日 청국공사 汪鳳藻에게 訓令하여, 「清國은 朝鮮의 要請에 應하여 내란을 진압하기 위해 一時的으로 出兵하지만, 내란 진압과 더불어 철수할 것을 일본 정부에 通告」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의 陸奧외상은 「疆土 接近과 貿易의 主要性を 고려함에 있어, 또한 조선국에 대한 帝國의 이해는 甚히 緊切重大하므로 朝鮮內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참상과 悲況을 拱視傍觀함을 堪耐하지 못하겠다。」라고 清國側에 회답하고,<sup>76)</sup> 일본의 출병을 시사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일본은 이 기회에 청국의 세력을 한국에서 완전히 驅逐하고, 일거에 한국에서의 지배권을 독점하려고 결심하였다.

당시 일본국내 사회정세는 몹시 불안하였다. 이것이 드디어 衆議院에도 반

75) 參謀本部, 前掲書, p.84; 田保橋潔, 近代日支鮮關係의 研究, p.84.

76) 日本外務省, 日清交際史提要(第20號), 清國出兵通告에 대한 陸奧外務大臣의 回答.

영되어 衆議院과 정부와의 격렬한 충돌을 야기하였다. 특히 1893년 3월의 第 4 議會에는 절정에 달하여 自由黨과 改進黨의 반정부 공동전선인 「民黨」은 「民力休養」, 「政費節減」의 슬로우건을 들어 정부공격을 계속해서 마침내 伊藤內각을 궁지에 빠뜨렸다. 이에 일본정부는 이 사회적 불평을 「대외문제」로 돌리기 위해, 국권확장 . 부국강병 . 침략전쟁으로 이끌기 시작하였다. 이 국내여론을 대외강경으로 이끌어 올리기 위해서 퇴역 장군 谷干城 . 三浦梧標 . 陸羯南등이 중심이 되어, 국권주의를 선전하기 위해 신문 「日本」을 창간하여 언론계에 세력을 점유하였다. 그러나 이 사회적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드디어 정부와 중의원은 대립해서 1893년 12월에는 일본 정부는 第 5 議會를 해산시키고 말았다.

당시 이와 같은 국내 불안을 대외문제로 돌리기 위하여, 어떻게 전쟁의 외교적 구실을 찾고 있었던가를 陸奧의상으로 부터 青木公使에게 보낸 書狀에서 그 사정을 알 수 있다.<sup>77)</sup>

「內閣의 形勢는 하루하루 切迫하여, 정부에서 무엇인지 人目を 놀랄 정도의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 소란한 인심을 진정할 수 없고, 그렇다고 이유 없는 전쟁할 수 없고, 그렇다고 이유 없는 戰爭을 일으킬 수도 없는 일이므로, 유일의 목표는 條約 改正의 一事이다. 內政의 干涉에서 外交의 성공을 促求함은 本末顛倒의 감이 없지도 않으나, 時勢가 時勢이니 만큼 실로 부득이한 事勢이다.」라고 침략전쟁을 일으킬 구실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국내의 정치적 불안을 대외로 돌리기 위해서, 1894년 4월 2일에는 陸奧外務大臣은 관저로 川上참모차장과 林董 외무장관을 맞아, 陸奧의상은 한국출병에 대하여 협의를 시작하고 있었다. 당시 외무장관 林董의 『回想錄』<sup>78)</sup>에 의하면, 「그 相談의 主旨는 明治 15년과 17년의 京城事變에서는 淸國에게 機先을 빼앗기어 우리의 실패로 끝났다. 이번에는 꼭 淸國을 制先하여 전년도의 손실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는 在韓 支那兵 以上の 兵員으로써 이에 臨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各處를 고수하는 수비병을 합하여 7,8,000의 병력을 동원함을 요한다. 我兵이 경성에 들어감을 들으면 앞서의 승리에 눌리었던 淸兵은 반드시 들어와서 京城의 我兵을 공격

77) 小松綠, 明治史實外交秘話, p.86, 1894年 3月 27日 附 私信.

78) 林董, 뒤는 옛날 이야기(後は昔の話), pp.209-210.

할 것이다. 이 때에 이를 擊破하면 李鴻章 휘하의 進軍 40,000이라고 칭하는 중에서 2.3만을 파견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역시 이에 응할 兵員을 내어 평양근방에서 一戰하여 승리하면 거기서 강화하고 조선을 우리 세력하에 두면 이로써 일단락을 이룰 것이다. 세상에서는 이 출병의 예비상담을 對外交渉을 위한 議院해산의 상담이라고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은 한국 출병방침은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참모본부는 5월 20일 陸軍少佐 伊地知幸介 일행에게 중대사명을 주어 부산에 파견시켰다. 또한 참모총장의 이름으로 내각에다 「東學蜂起를 계기로 삼아 兵力으로써 朝鮮政府의 改造를 단행하고 甲申政變후 부진한 日本勢力을 회복하기 위해 兵員을 낼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서 출병을 요청하였다.<sup>79)</sup> 이와 동시에 참모본부는 극비리에 병력동원 준비에 착수하여 참모본부 제1국장 陸軍大佐 寺內正毅를 主任으로 육군 수송 사무를 담당시키고, 또한 동일 陸海軍장교에 의한 통신부도 개설하였다. 마침 그때 第6 議會가 소집되었는데, 衆議院의 야당은 5월 31일 정부의 外交失政을 공격하여 伊藤內閣 彈劾 上奏를 제출해서 139대 153으로 可決시켰다.<sup>80)</sup> 이에 伊藤內각은 절대절명의 궁지에 빠져 의회 해산을 결의하고, 6월 2일 관저에서 臨時閣議를 소집하였다. 거기서 陸奧외상은 해군대신 西郷從道, 육군참모차장 川上操六 등과 협의하여, 이 각의에 출병문제를 걸기로 의결하였다.

때마침 杉村 駐韓 임시대리공사의 급전이 외무성에 到來하였다. 이 전문은 朝鮮이 비공식으로 청국에 대하여 東學亂 진압을 위해 원병을 청원한 정보가 있다는 보고였다. 陸奧외상은 이 전문을 가지고 각의에 임하여 이를 보고하고, 「만일 淸國으로서 하등의 각의를 불문하고 조선에 군대를 派出하는 사실이 있을 때는 我國에서도 相當의 軍隊를 同國에 파견하여서 不慮의 變에 대비하고, 淸 . 日 兩國이 朝鮮에 대한 權力의 균등을 유지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의견을 진술하였다고 「蹇蹇錄」에서는 말하고 있으나, 이것은 陸奧외상의 착각인지 혹은 거짓말 같다. 日本國會圖書館 憲政資料室 소장의 陸奧문서

79) 參謀本部, 明治 278年 日淸戰史(第1卷), pp.94-95; 參謀本部, 元帥寺內伯爵傳, p. 190; 田保橋潔, 日淸戰後外交史의 研究, p.99.

80) 信夫淸三郎, 現代政治史年表, pp.68-69.  
德富猪一郎, 公爵 山縣有朋傳(下卷), p.120.

중에 있는 大島圭介 駐韓公使로 부터 陸奧의상에게 보내는 5월 20일附 書簡에 의하면, 출병의 제의는 大島駐韓公使가 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書簡 내용의 요지는, 「日本廣島에서 出兵하는 것과 淸國 天津으로 부터 出兵하는 것과는 天津으로 부터의 派兵이 훨씬 地理的으로 有利하므로, 우리는 이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時急히 出兵準備에 着手할 必要가 있고, 또한 韓國에는 兵士를 收容할 宿舎가 不足하오니 幕舎의 準備와 交通도 不便하므로 馬匹을 장만할 必要가 있다.」고 상세히 요청하고 있다. 그것은 별문제하고, 이리하여 일본 閣議는 한국출병을 결정하고, 伊藤博文 총리는 즉시 참모총장 및 川上참모차장 등의 軍首腦部를 同 閣議에 招致해서 합동특별회의를 열고,

- (1) 公使館 및 居留民 保護의 명의로 韓國에 出兵할 것을 議決하고, 그 兵力은 軍部の 주장에 따라서 混成 一旅團으로 정하였다.
- (2) 또한 閣議는 第 6 議會의 解散을 決定하였다.

이와 같은 결정을 마친 伊藤總理는 곧 宮內에 參內해서 明治天皇에게 한국 출병 및 중의원해산을 보고하고 재가를 얻었다.<sup>81)</sup> 따라서 내각은 山縣 . 川上 . 西郷을 중심으로 한 軍統帥部와 임전회의를 열고, 山縣가 주장하는 「對淸主戰論」에 의거해서 작전계획을 작성하고, 西郷從道 海相은 곧장 日本常備艦隊司令官 伊東祐享 中將에게 電訓해서 그 주력을 釜山 . 仁川에 결집할 것을 명하였다.<sup>82)</sup> 또한 6월 4일에는 陸軍省은 파견부대를 수송하기 위해서 日本郵船會社 船艇 20척을 계약하였다.<sup>83)</sup>

이와 같이 착착 그 준비를 진행하고 있던 때, 駐韓 杉村대리공사로 부터 제 2 전보가 외무성에 들어왔다. 즉, 「京城 現地에서 袁世凱에게서 확인한 정보에 의하면, 한국정부는 援兵을 淸國에 정식으로 요청하였다.」는 보고였다.<sup>84)</sup>

일본은 조속히 6월 5일에 大本營<sup>85)</sup>을 설치하고, 大本營도 곧 동일부로 在京

81) 陸奧宗光, 蹇蹇錄, pp.4-5; 參謀本部, 前掲書, p.95; 德富猪一郎, 前掲書(下卷), pp.121-128.

82) 田保橋潔, 日淸戰後外交史의 研究, p.103.

83) 參謀本部, 前掲書(第1卷), p.196.

84) 杉村濬, 明治 278年 在韓苦心錄, pp.5-6.

85) 德富猪一郎, 前掲書, p.121. 大本營의 構成은 參謀總長 陸軍大將 織仁親主을 中心으로 陸軍 參謀部次長 陸軍中將 川上操六, 海軍參謀 海軍司令官 中牟倉之助, 陸

中の駐韓大島公使에 대해 海軍陸戰隊를 인솔하고 橫須賀에서 서울로 향하여 출발할 것을 명하였다. 또한 당일 육해군에 동원령을 내려, 廣島의 제5사단을 한국에 출발하도록 명하였다. 이어 6월 7일부로 육군성수 제9호, 해군성수 제3호를 공시하고, 일본국내의 일제의 신문에 대해 당분간 군대의 진퇴 및 軍略에 관한 일제의 기사를 지상에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였다.<sup>86)</sup> 또한 6월 8일에는 제9여단장 大島義昌 소장을 혼성여단장에 임명하고, 9일 宇品를 출발해서 仁川으로 향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의 출병준비가 빨리된 것은 1884년의 한국에 있어서의 청일 충돌 이래, 조만간 부닥칠 청일전쟁의 준비를 하며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이요, 1879년에 참모본부가 독립한 것도, 東亞의 패권을 다투려는 전쟁을 가까운 장래에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sup>87)</sup> 그것은 어쨌든, 大本營의 방침에 따라, 陸奧의상은 在韓 임시 대리공사 杉村濬에 대하여 「6월 7일 我兵 派韓의事は 淸國政府에 通知한 바와 같이, 明治 15년 濟物浦條約에 따라 護衛兵을 파견한다는 뜻을 朝鮮政府에 通知하라. 단, 兵數만은 숨겨두라.」<sup>88)</sup>라고 훈령하였다. 이리하여 정치무대는 한국으로 옮겨졌다.

## VI. 日本不法出兵과 內政干涉

陸奧의상의 훈령에 따라서 주한 杉村 임시공사는 한국정부에 출병을 통고하여 왔으나 한국정부는 이 일본출병에 강경히 반대하였다. 한국정부는 6월 8일 駐日 辨理大臣 金恩轍에게 電令해서 일본 정부에 파병 중지를 요청하였다. 그 사이 大島 공사는 해군육전대를 군함에 적재하고, 6월 9일 인천에 도착하였다. 한국정부는 그 입경을 극력 제지하려고 하였으나, 大島 공사는 이에 불응하고, 육전대 429명과 野戰砲 4문을 장비하고, 6월 10일 서울에 입경하였다.<sup>89)</sup> 한국정부는 다음날 大島공사를 불러 재차 항의하고, 東學徒의 亂도 兩招討使의 보고로 평정되었음을 통고하며, 일본병의 상륙을 완강히 거부하

軍大臣大山巖, 海軍大臣 西郷從道이다. 參謀本部, 前掲書(第 1卷), pp.95-96.

86) 明治 27年 6月7日附 『時事新報』.

87) 井上靖, 日本の 帝國主義, p.175.

88) 杉村濬, 前掲書, p.7.

89) 織田純一郎, 日淸韓交涉錄, pp.14-16; 杉村濬, 前掲書, p.89.

였다. 이때 파견된 大島 혼성여단의 일부는 이미 인천상륙을 시작하였다. 大島공사는 조선측의 강경한 태도에 대하여 일시 일본병의 상륙을 중지하려고 渡邊陸軍大尉에게 친서를 휴대시켜 大島여단장에게 보내어, 외교사정을 설명하고 당분간 인천에서 대기하도록 요망하였다. 그러나 長岡참모는 이를 거부하고, 6월 12일 아침 전원을 인솔하고 서울에 입경하였다.<sup>90)</sup>

이어 大島소장이 거느린 제1차 파견부대 약 8,000명의 전원도 6월 15일 인천에 입항 翌 16일에는 인천에 상륙하여 여단사령부를 인천 水津旅館에 설치하였다.<sup>91)</sup> 이리하여 일본군은 淸軍에 뒤늦기 겨우 4일만에 청군의 數倍나 되는 병력을 한국에 상륙한 셈이다. 이와 같은 신속한 일본의 군사행동에 의하여, 大島공사는 외교상 난처한 입장에 놓였으므로, 일본 정부에 대하여 그 處置에 관한 훈령을 仰請하였다. 이에 대해서 陸奧의상은 加藤서기관에게 下記와 같은 일본 정부의 방침을 授與하여 서울로 파견하였다.

「今日の 形勢로서는 趨勢上 開戰은 不可避하다. 따라서 曲을 우리에게 지우지 않는 한 여하한 수단이라도 취하여, 개전의 구실을 만들라. 如斯한 일은 훈령으로 서면에 쓰기는 어려우므로, 특히 加藤를 파견하는 것이다.<sup>92)</sup>」라고 하여, 여하한 수단도 좋으니 開戰의 구실을 만들도록 주한 大島공사에게 지시하였다. 더욱 구실의 방법으로 下記 三個條의 훈령을 지시하고, 그것을 한국정부에 제출해서 강력한 수단을 취하도록 명하였다. 이에 加藤 서기관이 띠고 온 훈령 및 內訓에 따라, 大島 주한공사는 大島여단장과 상담한 결과 6월 26일 직접 국왕을 방문하고, 이 훈령 三個條를 제시하고, 그 회답을 삼일 이내, 즉 6월 29일까지 回示하도록 촉구하기로 하였다.

#### 訓 令

- (1) 朝鮮은 日本의 勸告를 받아들여 改革을 斷行할 것인가, 아닌가.
- (2) 韓國政府는 「保護屬國」의 四字를 認定하는가, 아니하는가.<sup>93)</sup>

더욱 陸奧의상은 당연히 한국정부에서 반대할 것을 예상하고, 內訓을 주어

90) 杉村濤, 前掲書, pp.10-11; 田保橋潔, 前掲書, p.121.

91) 海軍司令部, 明治 278年 海戰史(上卷), p.57.

92) 杉村濤, 前掲書, p.24.

93) 山崎有信, 大島圭介傳, pp.250-21.

한국측의 태도가 여러 가지 있을 경우를 열거해서, 그 취할 바 조처를 大要 下記와 같이 지시하였다.

### 內 訓

朝鮮政府가 만일 我國은 自主獨立國으로서 淸國의 屬邦이 아니고 회답하였을 때에는, 우리가 韓國政府에 向해서는 지금 淸兵이 保護 屬邦이라 칭하고 貴境에 들어옴은 貴國의 獨立을 侵害한 것이다. 이를 逐出해야 한다. 만약 韓國의 힘으로 不可能하다면 우리의 兵力으로써 貴國을 援助해서 이를 逐出한다고 促迫하고, 또한 만일 韓國政府는 淸國의 屬邦에 틀림없다는 回答을 하였을 때에는 우리는 일단 外務督辦에 面會하여, 그 利害를 說明하고 公文을 撤回시켜야 한다. 그가 만약 우리의 說에 不服할 때에는 公公히 韓國政府에 向하여, 그가 「修好條規」 第一款에 基하여, 또한 訂約 已來 17年間 우리를 欺瞞한 罪를 責하며, 兵力으로써 이에 促迫하여, 그로 하여금 謝罪의 實을 擧하게 해서 우리에게 滿足한 補償을 取해야 한다.<sup>94)</sup>

이 內訓으로써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은 무엇인가 구실을 만들어, 이에 따라서 전쟁을 일으킬 의도 밖에는 없었다. 이 사이에 먼저 상륙한 청군은, 충청·전라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에 분산해 있던 東學軍과 싸우고 있었다. 그런데 먼저 大島 공사로 부터 한국정부에 제안된 2개조에 대하여 6월 30일에 이르러도 한국정부로 부터 회답이 없었으므로, 大島 공사는 朝鮮外務督辦에 면회를 요청하여, 이 회답을 촉하여 왔다. 韓國外務督辦은 이에 대하여 「朝鮮은 처음부터 自立의 邦國이다. 淸國이 우리를 가리켜 무엇이라 稱하여도, 이는 淸國이 제 마음대로 부른 것으로서, 우리의 關係할 바 아니다. 청병이 我國內에 駐屯하는 것은 진작 우리 依賴에 따라서 온 것이므로, 이를 逐還할 수는 없다.」<sup>95)</sup>라고 회답하여, 일본의 2조건을 모두 거부하였다.

大島 공사는 한국측의 회답에 대해서 하등의 구실을 볼일 수 없었기 때문에, 福島中佐·本野參謀事官을 본국에 파견하여, 「今日の 形勢로는 하루라도 速히 戰端을 벌이는 것이 우리에게 利가 있다. 더구나 開戰의 구실은 朝鮮의

94) 杉村濤, 前掲書, pp.25-26.

95) 杉村濤, 前掲書, p.28.

自主問題를 除하고는, 他에 없을 것이다.」<sup>96)</sup> 라고 의견서를 上申하였다. 그런데 일본은 이미 결정한 「朝鮮內政改革」을 大島 공사에게 훈령하였다. 6월 26일 주한 大島 공사는 大島훈성여단장과 협의하여, 내정개혁안을 조선 정부에 제출하고, 일본의 의견을 용납해서 내정개혁을 단행하도록 條理의 許하는 한 恐嚇 수단으로 臨하여 왔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 요구를 강경히 반대하였다. 이에 大島 공사나 서울에 주둔하는 일본군 수뇌는 무력으로써 한국정부를 顛覆할 방침을 결정해서, 최후의 공문을 한국정부에 보내어 왔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 (1) 韓國은 淸軍을 撤退 시키라는 要求이요.
- (2) 韓國이 從來 締結한 韓·淸間의 諸條約(韓淸商民水陸貿易章程·中 江通商章程·吉林貿易章程 等)을 破棄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리고 이 요구에 대한 회답을 7월 22일 오후 12시까지 作定해서 통고해 달라는 것이었다. 물론 이 일본측의 요구를 한국정부로서 일본측이 만족할 만한 회답을 하리라고는 예측하지 않았다. 어떠한 회답을 하여 오더라도, 또는 기한을 넘기든, 회답을 하지 않든간에, 한가지로 事端을 일으킬 계획을 세웠다.<sup>97)</sup>

7월 22일 오후 12시가 박도하여도 한국정부에서는 회답이 없었으므로, 예정과 같이 서울에 주둔하는 일본군은 그 다음날 아침 23일 오전 3시 서울 시내의 성문이 열리는 것을 기다려서 군사 행동을 개시하여, 서대문으로 부터 침입해서 행군하여 왕궁에 밀어 닥쳐 왕궁을 포위해서 한국의 왕궁수비대와 격전을 벌여, 이 수비병을 성외로 퇴각시키고, 왕궁은 일본군에 의해 점령되고 康會樓에 본부를 설치한 일본군은 서대문을 경비하고, 한국정부를 顛倒해서, 왕궁을 일본의 완전한 지배하에 넣었다. 이에 大島 공사는 岡本柳之助·田中賢造등과 계약하고, 친일정권을 수립하기 위하여 雲峴宮에 引退하고 있던 大阮君을 강제로 왕궁으로 맞이하고 金弘集을 총리대신으로 한 친일정권을 수립해 낸 것은 23일 오전 11시였다.

96) 杉村島, 前掲書, p.29.

97) 信夫淸三郎, 明治政治史, pp.65-66.

이리하여 한국정부 전복에 성공한 일본은 7월 25일 이 新정권의 명의로, 한 . 청간의 모든 조약의 폐기 및 청군의 철병을 선언기키고, 또한 牙山 주둔의 청군이 만일 철퇴요구에 불응할 때에는 일본이 위임을 맡기로 결정하였다.<sup>98)</sup> 이와 같이 하여 일본은 淸國과의 開戰의 명분을 만들었으므로, 서울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은 청군의 토벌을 위해 牙山으로 향하였다. 7월 25일, 일본 연합함대는 豊島 앞바다에서 청병을 滿載한 운송선을 격침해서 청일해전의 불투명이 열렸다. 다시 7월 29일에는 일본군에 의해서 아산과 成歎은 일본군의 점령지가 되고 말았다.

이와 같이 청일전쟁은 선전포고에 앞서 개전된 전쟁이었다. 청국의 李鴻章은 7월 27일 청일 海戰의 보고에 접하고, 駐淸 각국공사를 초청하여 「청 . 일 양국은 현재 아직 선전 하지 않은 바, 일본군은 돌연 我艦을 공격하였으니, 실로 公法에 반한다.」<sup>99)</sup> 는 성명을 통달하고, 동월 29일에는 주일 汪公使에게 귀국을 명하고, 7월 30일에는 李鴻章은 재차 주청 각국공사에게 「淸日開戰의 全責任은 日本에 있다.」<sup>100)</sup> 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31일 청국은 小村 臨時 駐淸 日本公使에 대해서 국교단절을 통고하고 그 다음 8월 1일에는 청 . 일 양국은 각각 선전포고를 발표하였다.

이에 일본은 우선 한국국내의 혼란을 평정할 필요가 있었다. 1894년 9월, 일본군은 한국군과 공동으로 南三道의 東學軍에 대하여 전면적인 군사행동을 개시하였다. 東學軍은 정부군을 격파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았으나, 정부군과 청국군과의 장기에 걸친 전투로 약화되고, 여기에 다시 신예의 일본군까지 가담한 전투에는 승리를 얻을 가능성이 없었다. 각지에 분산해 있던 東學軍은, 당초 이 정부군과 청국군에 대해서 중대한 손해를 끼침에는 성공했으나, 최신식 무기로 무장하고, 근대전술로 훈련된 일본군과 싸우는 것은 극히 불리하였다. 1894년 10월 全瑋準이 거느린 동학군은, 공주에서 일본군과 정부군에 대해서 최후적 전투를 시도하였지만, 일본군의 포격앞에 드디어 패배하고 말았다. 그 후 東學軍은 江景방면에서의 원군 1,000여명을 모아, 東學徒 厲山 接主 崔蘭善의 지휘하에, 진격해 오는 일본군과 정부군을 黃華台의 高地에서

98) 山崎有信, 大島圭介傳, pp.252-253.

99) 『光緒朝中日交渉史料』(卷17), p.124.

100) 『光緒朝中日交渉史料』(卷15), p.126.

저지하려고 필사의 방어진지를 축조해서 방어에 노력하였으나, 정부군의 삼면공격과 일본군 森尾大隊의 정면공격에 의해서 완패하였다.<sup>101)</sup> 이리하여 東學軍은 참패당하고, 그 지도자는 처형되었다. 특히 총지도자 全琫準은 1894년 12월 전라도에서 체포되어, 일본군에 의해서 서울로 압송되어, 이듬해 2월 사형에 처하여지고, 또한 막료이었던 金開南 . 孫和中 . 崔斗善 등도 동시에 교수형에 처하여 졌다. 그러나 각지에 분산한 東學잔존부대들은 일본군에 저항하고 이것이 反日義兵運動으로 전개되었다.

이에 앞서, 청 . 일 출병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청 . 일 양국에 철병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청국은 이에 동의하고, 일본과의 공동철병을 주창하고, 李鴻章은 일본군의 철병 알선을 5월 20일 北京 駐在 러시아 공사 카시니에 의뢰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이내 東京 주재 러시아 공사 히도로우오에 훈령해서, 일본정부에 대해서 「청.일 양국의 紛議가 平和스럽게 그 結局을 맺어 開戰에 이르지 않을 것을 희망하는 趣意」를 통고하고, 「清國이 徹兵할 때에는 日本政府도 또한 그 兵力을 撤回할 것을 勸告」<sup>102)</sup>하였다. 또한 영국도 일본에 대해서, 7월 3일 「만일 日本政府가 固執해서 清.日 兩國 開戰에 이르르면, 그 結果에 대해서 日本政府는 그 責任을 질 밖에 없다고 宣言」<sup>103)</sup>하고, 미국도 東京 주재 미국공사를 통해서 「韓國의 亂이 鎮壓하였음에도 不拘하고, 日本政府가 清國과 均等하게 그 軍隊를 該國에서 철회할 것을 거부하고, 또한 該國 내정에 대해서 急激한 改革을 실시하려고 함은 美國政府로서는 깊이 遺憾으로 여기는 바이다」<sup>104)</sup>라고 日本政府에 경고하였다.

이와 같이 英 . 러 . 美 諸國은 일본의 한국에 있어서의 독점적 지배를 두려워해서 철병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英 . 러의 세계적 대립에 따라 열국의 간섭은 일본에 대해서 무력적 진압을 수반할 정도로 강경한 것은 아니었다. 이와 같은 국제적 대립의 간극을 타서, 일본은 이 기회에 한국에 대해 강력한 지배권을 획득하려고 결심하고, 이들 諸國의 권고에 귀를 기

101) 菊池謙讓, 近代朝鮮史(下卷), pp.241-248.

102) 日本外務省, 『日清交際史提要』 第20編 1610號. 「日本外交文書」 第27卷 第2冊(629), p. 282; 陸奧宗光, 蹇蹇錄, p.61. 「日本外交文書」 第 27卷 第2冊(633), p.284.

103) 織田純一郎, 日清韓交涉錄, pp.60-62; 日本外交文書 第27卷(613), p.269.

104) 「日本外交文書」 第27卷 第2책(652) p.196.

旗田巍, 前掲書, p.186.

울이지 않고 드디어 청국과 일전을 벌이기에 이르렀다. 이 청일전쟁은 한국의 독점적 지배권을 圍繞한 老大清國과 신흥 일본이 운명을 건 일전이었으나, 결국 일본군의 압도적 勝利裡에 전개되어, 동년 9월 평양함락과 黃海해전을 거쳐, 일본은 한국에서 청국군을 驅逐하고, 더욱 遼東 . 山東을 석권하여 北京 . 天津을 위협하였다. 이에 열국은 청국의 倒壞를 두려워해서, 서로 뒤이어 강화를 권고하였으므로, 이듬해 1895년 3월 일본은 청국과 「下關係約」을 체결하고, 이에 의해서 한국에서 청국 세력을 일소하여<sup>105)</sup> 한국에서의 독점지위를 획득하고, 그로부터 10년 후의 「러 . 日戰爭」을 거쳐, 이른바 「韓日合併」에 이른 것이다.

일본의 對韓侵略政策의 기초는 언제나 한국내정에 깊이 간섭하여 왔다. 이에 韓國官民들의 심한 반발과 저항에 부딪치면 일본은 군사력을 배경으로 왕궁을 점령, 그리고 한국 군무장해제와 반일정권의 전복, 친일정권의 수립을 기도하여온 것이 상피수단이었다. 이러한 일본의 일관된 對韓侵略戰爭은 東學軍을 진압한다는 구실하에서, 소위 「甲午內政改革」(1894)이란 명목하에 「內政干涉」을 단행하여 한국에 출병한 일본군의 駐留의 명분을 만들고, 對淸전쟁의 구실을 찾았다.<sup>106)</sup> 그리고 청일전쟁 직후에는 一舉, 한국지배를 기도하여, 반일적인 大院君을 추방하고, 왕궁에 침입하여 閔王妃와 대신등을 살해하는(1895) 등, 국제정치사상에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만행을 행하였다.<sup>107)</sup> 이러한 일본의 침략적 내정간섭에 저항하여 전국적으로 반일운동이 전개되었고, 특히 각지에 분산하였던 의병 東學軍 殘存部隊를 중심으로 반일의병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1896). 이 반일운동은 구국운동으로 반전되고 한일 합병후에는 민족독립운동으로서 그 명맥은 3 . 1운동을 이어왔다.<sup>108)</sup>

105) 陸奧宗光, 蹇蹇錄, pp.64-65; 旗田巍, 前掲書, p.186.

106) 申國柱, 甲午內政改革에 관한 研究, 『行政論條』 第12輯, p.149.

107) 申國柱, 閔王妃殺害事變에 관한 研究, 『東國史學』 第17輯, p.81.

108) 3 . 1運動의 主動的인 指導者로서 孫秉熙, 崔麟 등 東學, 天道教 關係者이었다.

the first 1000 cases were included in the study. The study was approved by the ethics committee of the University of Toronto.

Patients were recruited from the following sources: (1) patients who were referred to the study by their general practitioners; (2) patients who were referred to the study by their family physicians; (3) patients who were referred to the study by their dentists; (4) patients who were referred to the study by their orthodontists; (5) patients who were referred to the study by their otolaryngologists; (6) patients who were referred to the study by their allergists; (7) patients who were referred to the study by their allergists; (8) patients who were referred to the study by their allergists; (9) patients who were referred to the study by their allergists; (10) patients who were referred to the study by their allergists.

The study was conducted in a private, multi-specialty, allergy clinic in Toronto, Ontario, Canada. The study was conducted in a private, multi-specialty, allergy clinic in Toronto, Ontario, Canada.

The study was conducted in a private, multi-specialty, allergy clinic in Toronto, Ontario, Canada. The study was conducted in a private, multi-specialty, allergy clinic in Toronto, Ontario, Canada.

The study was conducted in a private, multi-specialty, allergy clinic in Toronto, Ontario, Canada. The study was conducted in a private, multi-specialty, allergy clinic in Toronto, Ontario, Canada.

The study was conducted in a private, multi-specialty, allergy clinic in Toronto, Ontario, Canada. The study was conducted in a private, multi-specialty, allergy clinic in Toronto, Ontario, Canada.

The study was conducted in a private, multi-specialty, allergy clinic in Toronto, Ontario, Canada. The study was conducted in a private, multi-specialty, allergy clinic in Toronto, Ontario, Canada.

The study was conducted in a private, multi-specialty, allergy clinic in Toronto, Ontario, Canada. The study was conducted in a private, multi-specialty, allergy clinic in Toronto, Ontario, Canada.

The study was conducted in a private, multi-specialty, allergy clinic in Toronto, Ontario, Canada. The study was conducted in a private, multi-specialty, allergy clinic in Toronto, Ontario, Canada.

The study was conducted in a private, multi-specialty, allergy clinic in Toronto, Ontario, Canada. The study was conducted in a private, multi-specialty, allergy clinic in Toronto, Ontario, Canada.

The study was conducted in a private, multi-specialty, allergy clinic in Toronto, Ontario, Canada. The study was conducted in a private, multi-specialty, allergy clinic in Toronto, Ontario, Canada.

The study was conducted in a private, multi-specialty, allergy clinic in Toronto, Ontario, Canada. The study was conducted in a private, multi-specialty, allergy clinic in Toronto, Ontario, Canada.

The study was conducted in a private, multi-specialty, allergy clinic in Toronto, Ontario, Canada. The study was conducted in a private, multi-specialty, allergy clinic in Toronto, Ontario, Canada.

The study was conducted in a private, multi-specialty, allergy clinic in Toronto, Ontario, Canada. The study was conducted in a private, multi-specialty, allergy clinic in Toronto, Ontario, Canada.

The study was conducted in a private, multi-specialty, allergy clinic in Toronto, Ontario, Canada. The study was conducted in a private, multi-specialty, allergy clinic in Toronto, Ontario, Canada.

The study was conducted in a private, multi-specialty, allergy clinic in Toronto, Ontario, Canada. The study was conducted in a private, multi-specialty, allergy clinic in Toronto, Ontario, Canada.

## 東學農民戰爭과 淸日兩國의 外交

### 英國의 極東外交政策을 中心으로

박 일 근\*

I. 序論	VII. 第2次絶交書와 李鴻章의 妥協案
II. 共同撤兵과 英國의 不介入政策	VIII. 淸日陸海軍의 實相과 戰力比較
III. 李鴻章의 聯露策과 露國의 反應	IX. 李鴻章의 備戰과 日本의 決戰
IV. 內政改革案과 陸奧의 開戰外交	X. 카시나의 英露協力과 오코노의 役割
V. 李鴻章의 聯英策과 日露密約說	XI. 高陞號被擊과 英國의 中立宣言
VI. 三國會議와 列強五國會議	XII. 結論

### I. 序論

百年前 東學農民戰爭은 政府軍이 自力으로 鎮壓하지 못하고 6월 1일 內務協辦 閔永駿의 원병요청으로 袁世凱가 이날 李鴻章에게 이 사실을 打電하자 이 정보를 입수한 日本政府도 재빨리 派兵을 단행함으로써 마침내 淸日간의 紛爭으로 확대되었다. 袁世凱로부터 出兵要請 電文을 받은 李鴻章은 6월 2일 旅順의 丁汝昌 提督麾下 巡洋艦 濟遠·揚威의 仁川파견 준비를 명령하고 이를 總理各國事務衙門에 보고한 뒤 6월 3일 朝鮮의 出兵要請 公文을 받자 즉 각 山海關의 直隸提督 葉志超 소속부대와 北洋병력 일부의 출정준비 명령을 내렸다. 반면 朝鮮公館으로 부터 이 정보를 입수한 日本은 6월 2일 公館警備와 居住民保護를 내세워 閣議에서 朝鮮派兵을 決定하고 6월 5일 駐北京 代理公使 小村壽太郎의 淸兵派遣 電文을 입수하자 이 날로 東京에 설치한 大本營에 大島義昌小將의 混成旅團의 出兵을 명령하였다. 淸國의 出兵은 駐日公使 汪鳳藻를 통해 日本에 밝혔듯이 “朝鮮政府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屬邦을 보호한다”는 요지였다.

그러나 당시 日本國內의 政治的 사정은 伊藤博文 內閣이 野黨과의 軍備擴

---

\* 부산대학교 교수

張, 法權과 關稅自主權의 회복을 골자로 한 英國과의 條約改正交涉등을 둘러싸고 빚어진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外事로 耳目을 돌려 이를 終熄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陸奧宗光 外相은 駐朝代理公使 杉村濬과 小村으로 하여금 朝鮮과 淸國에 각각 日本의 出兵을 通告하도록 지시하고, 특히 汪公使에게 “日本의 派兵은 天津條約 제3항에 의한 것이며 또한 日本은 여지껏 朝鮮이 中國의 屬邦임을 인정한 적이 없음”을 밝히는 동시에 駐天津領事 荒川玉次로 하여금 李鴻章에게 出兵通告를 지시하여 兩國의 派兵은 戰爭의 위기를 조성하게 되었다.

이 논문은 淸日의 派兵으로 야기된 開戰의 위기를 맞아 李鴻章이 共同撤兵을 위해 英·露와 전개한 避戰外交過程과 이에 맞서 대응한 陸奧의 開戰外交, 그리고 淸日 陸海軍의 實相等을 중심으로 駐北京 英國公使 오코너(Nicolas.R.O'coner)의 調停을 비롯한 英國의 對極東外交政策과 관련된 문제들을 論究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II 共同撤兵과 英國의 不介入政策

6월 7일 領事 荒川으로 부터 陸奧外相의 出兵을 通告받은 李鴻章은 “청나라의 派兵은 전적으로 內地土匪(東學軍)를 토벌하는데 있고 서울이나 각 通商港口에 파견하는 것이 아니므로 日本의 불필요한 派兵은 오히려 朝鮮人을 크게 놀라게 할것 같다”고 말하자 領事は “兵力이 이미 파견되었지만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말하지 않았다”고 대답하니 李鴻章은 “만약 이미 公館과 상인보호로 파견되었다면 절대로 많은 숫자가 되어서는 안되며 또한 朝鮮이 派兵을 要請하지 않은 이상 淸日 兩軍이 만나 紛爭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나 병력이 절대로 內地에 들어가서는 안된다”<sup>1)</sup>고 경고하였다.

그때까지 李鴻章은 日本이 어떤 야심을 갖고 있는지 알수 없어 일단 그들의 出兵에 항의만 하고 가능한 한 日本 병력의 서울 진입저지를 急先務로 판단했기 때문에 다음날 總理衙門도 北京駐在 代理公使 小村에게 政府와 李鴻章의 이러한 뜻을 그들 政府에 보고해 주도록 要請하였다<sup>2)</sup>.

1) 李文公全集, 電稿, 卷15, 中日交涉史料 第13卷, 第961, P.35.

2) 中日交涉史料, 第13卷, 第963.

특히 16년 이상 朝鮮政事에 관여해온 李鴻章은 무엇보다 極東지역에서 가장 상업적 이해관계가 많고 또한 1885년 英國艦隊의 巨文島占領事件을 계기로 이듬해 러시아의 朝鮮不侵略保障을 받을수 있게한 英國<sup>3)</sup>을 끌어들이려 현안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종래 알려진 것과는 달리 李鴻章의 요청으로 6월 9일 아침 天津에서 北京駐在 英國公使 오코너와 會談을 가진 자리에서 李鴻章은 청나라 병사 2천명의 派兵경위와 향후 撤收계획을 밝히고 日本領事로부터 들은 派兵目的등을 전하면서 公使가 東京駐在 英國대표를 통해 日本군의 서울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日本駐在 公使에게 이를 打電해 줄것을 요청하였다<sup>4)</sup>.

그러나 오코너는 이미 本國政府의 킴블리(Earl of Kimberley)外相의 지시로 東京駐在 公使 파켓트(Ralph S.Paget)로 부터 日本兵의 朝鮮派遣사실을 通告받고<sup>5)</sup> 또한 本國政府는 朝鮮에 대해 향후 日本이 어떤 행동을 취할것인가 注視하고 있었기<sup>6)</sup> 때문에 임의로 李鴻章의 요청을 받아 들일수 없었다. 이에 오코너는 “단지 朝鮮에 대한 淸日間의 紛爭을 저지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本國 政府의 「不變의 政策」이며.....더욱 駐日公使에게 이를 직접 打電하는 것은 자신의 領域과 權限을 벗어나는 것이다.....강대국이 朝鮮內政에 적게 介入할수록 極東의 평화를 위해 더욱 좋다. 만약 本國政府가 한쪽 입장에서 干涉한다면 다른 강대국은 청나라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介入하게 될것이라”고 하여 李鴻章의 介入요청을 拒絕한 뒤 “기회가 되면 淸日간의 좋은 관계유지를 지향하는 政策을 위해 자신이 가진 어떠한 영향력이라도 행사할 것”<sup>7)</sup>을 다짐하였다.

그러나 英國政府는 파켓트公使로 부터 “정확한 派兵숫자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우나 日本이 이번 紛爭에 적극 介入하기 위해 사태를 무력으로 해결

3) 拙稿, 李鴻章의 對朝政策 (英艦의 거문도점령사건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1982, 9, PP.1-26.

4) Park il-keun ed., Anglo-American and Chinese Diplomatic Materials Relating to Korea, 1887-1897 (Pusan National University, 1983), No.128. Confidential, Mr.O'coner to the Earl of Kimberley, Tien-tsin, June 9. 1894.

5) *Ibid*, No.14.Tel., Mr.Paget to the Earl of Kimberly, Tokio, June 7. 1894.

6) *Ibid*, No.12. Tel., The Earl of Kimberley to Mr.Paget, Foreign Office, June 8. 1894.

7) *Ibid*, No.128 및 中日交渉史料, 第13, 第1005.

하려고 하며 또한 이러한 행동은 朝鮮에서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있다“<sup>8)</sup>는 보고와 오코너로부터 李鴻章이 日本군의 서울진입 저지를 위해 英國의 영향력행사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자기는 淸日 兩國이 紛爭저지를 요청하지 않는 한 政府도 拒絕해야 된다”<sup>9)</sup>고 하여 政府가 中立的 立場에서 紛爭을 조정해 달라는 건의받았다.

한편 6월 7일 杉村으로부터 出兵通告를 받은 朝鮮政府는 다음날 駐日公使 金思轍을 통해 日本에 派兵을 항의하고<sup>10)</sup>, 또한 李鴻章이 6월 9일 袁世凱로부터 日本의 出兵이 타의가 있을 것이라는 보고를 받자 그는 袁世凱에게 朝鮮駐在 각국 대표를 동원하여 日本의 派兵을 問責토록 지시함에 따라 袁世凱는 外務督辦 趙秉稷으로 하여금 杉村에게 出兵중지를 요청하도록 勸告하는 동시에 서울 駐在 外交使節團을 움직여 日本의 撤兵을 관철시키고자 하였다<sup>11)</sup>.

그러나 러시아 대표 웨버(Karl.I.Waerber)는 휴가중 청나라에 출장중이었고 불란스 대표 또한 通譯官들만 사무를 대신하고 있었으며 獨逸과 英國은 모두 領事의 신분이 아닌데다가 美國의 새로 온 公使 실(J.M.B.Sill)은 너무 나이가 많아 이들 외국대표들을 규합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sup>12)</sup>. 그리하여 朝鮮은 政府고문 美國인 러젠드러(Charles W.Le Gendre)와 外務參議 李采淵 등을 仁川에 보내 日本병의 서울진입을 저지했으나 大鳥義昌公使가 이미 陸戰隊 488명과 순사 20명 그리고 野戰砲 4門을 이끌고 서울로 떠나버려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sup>13)</sup>.

이날 공교롭게도 청나라 葉提督 휘하부대 1,200명의 병력도 招商局所有 汽船 圖南, 海晏 및 海定등 3척에 탑승하여 牙山灣에 입항하고 다음날 牙山에 주둔하였다. 그리하여 袁世凱와 大鳥는 상호 兩軍의 파견을 확인하고 내란이 진압되었기에 병력을 상륙시키지 말고 共同撤兵문제를 協議했지만<sup>14)</sup> 李鴻章

8) *Ibid*, No.15, Tel., Mr.Paget to the Earl of Kimberley, Tokio, June 10, 1894.

9) *Ibid*, No.22, Mr. O'Coner to the Earl of Kimberley, Peking, June 12, 1894.

10) 中日交渉史料 第3卷, 第967.974.

11) 전게서, 第969 및 電稿 第15.

12) 전게서, 13卷, 第975, 李全集, 電稿, p.36.

13) 朴宗根, 청일전쟁과 조선, 일조각, 1989, pp.16-17

14) 中日交渉史料, 제13권, 제988. 信夫淸三郎, 陸奧外交, 叢文閣, 昭和10년, pp.20-25.

으로 부터 적극 撤兵문제를 관철하도록 지시받은 袁世凱와는 달리 大鳥의 協商태도는 政府의 훈령이나 政策에 따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혀 만족스럽게 진전될수 없었다.

특히 日本은 6월 12일 일찍 淸나라와 李鴻章의 出兵반대와 日本병의 서울진입 자제를 요청한 것에 대하여 小村 代理公使를 통해 “日本은 아직껏 朝鮮이 淸國의 屬邦임을 인정한바 없고 이번 派兵은 濟物浦條約과 天津條約에 의한 것으로 朝鮮에 軍隊의 多少 派兵과 進退여부는 하등 中國의 지지를 받을 이유가 없다”<sup>15)</sup>는 요지를 總理衙門에 通告하여 오히려 그들의 派兵을 합법화 하였다.

6월 15일 陸奧는 大鳥에게 袁世凱와의 共同撤兵교섭중지와 出兵에 따른 새로운 강경책(內政改革)을 시달한 뒤 다음 날 步兵기마대 300명과 砲兵등 日本군 2천명이 다시 仁川에 상륙하고, 杉村이 仁川에서 돌아와 大鳥旅團長이 大兵을 서울에 진입할 뜻을 밝힘으로써<sup>16)</sup> 그들의 침략의도를 분명히 드러내었다. 이에 駐朝鮮 러시아 臨時代理公使 켈버거(Pavel de Kehrberg)와 獨逸 副領事 크라인(M.Krein), 美國公使 실(J.M.B.Sill)등은 大鳥公使를 만나 日本의 增兵과 日本의 仁川 外人居留地 점거에 대해 항의했으나 英國領事代理 가드너(G.T. Gardner)만은 적극 참여하지 않았다<sup>17)</sup>.

그러나 英國 海軍교관 칼웰(Calwell)대위와 부인이 日本병에 의해 봉변을 당한 사건을 계기로 가드너는 비로소 仁川駐在 副領事 윌킨슨(W.H.Wilkinson)을 통해 日本측에 英國인의 生命과 財産에 위협을 가하는 행동에 강력히 항의하고 그들의 解明을 要求하게 되었다<sup>18)</sup>.

6월 16일 陸奧는 汪公使를 외무성에 초치하고 그에게 수상 伊藤博文의 提議에 따라 각의에서 決定하여 그 자신이 말한 것처럼 “淸日간의 난국을 조정하고자 제출한 하나의 政策”이라고 말한 이른바 「朝鮮의 共同內政改革決議」

15) 新夫淸三郎, 전게서, pp.187-88.

16) 朴宗根, 전게서, pp.29-37. *Op Cit.*, inclosure in NO. 316, Acting-Consul-General Gardner to Mr.O'Coner, Seoul, June 19, 1894.

17) *Ibid*, Inclosure 9 in No.316, Acting Vice Consul Wilkinson to Acting Consul General Gardner, Chemulpo, June 18, 1894 및 Inclosure 12 in No.316, Mr.Nosse to Acting Vice-Consul Wilkinson, Imperial Japanese Consulate, Chemulpo, June 17. 1894.

18) *Ibid*.

를 제시하고 “朝鮮의 현재 정세를 미루어 봐서 日本은 결코 朝鮮駐屯軍隊를 撤收할수 없다”는 입장을밝혔다. 그리하여 그는 지금껏 李鴻章의 撤兵要求를 받아들이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主動者의 立場으로 변화되어 淸日紛爭해결에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sup>19)</sup>.

다음날 陸奧는 汪公使에게 朝鮮內政改革을 설명한 구체안을 제시하고 “朝鮮의 財政, 警備, 및 行政制度를 개혁할 兩國의 상설위원 약간명을 임명하여 파견한다”는 공문을 전하는 동시에 小村 代理公使와 荒川 領事로 하여금 각각 總理衙門과 總督 李鴻章에게 이같은 日本의 共同內政改革案을 알리도록 打電하였다<sup>20)</sup>

荒川은 6월 17일 李鴻章을 만나 陸奧의 提案을 전달하고 總督이 總理衙門에 종용하여 신속히 이에 同意해 주도록 요청하자 그때까지도 李鴻章은 日本政府가 共同撤兵提議 대신 共同內政改革案 提議를 그들이 朝鮮의 각 분야에서 利權을 챙기고 戰爭을 도발하려는 의도로 간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領事에게 “첫째, 東學賊은 이미 평정되어 우리가 들어가 토벌할 필요가 없고 日本이 또한 반드시 이를 소멸시킬 이유는 없으며, 둘째, 1885년 伊藤과 본인이 체결한 天津條約에 따라 撤收한다. 日本은 朝鮮을 자주국으로 인정하고 있어 內政干涉할 권한이 없으므로 별도로 방법을 강구하기가 어렵다”<sup>21)</sup>고 하여 日本의 內政改革提議를 拒絕하고 오히려 자기가 처음부터 주장한 共同撤兵提議를 받아들여도록 설득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6월 9일 오코너에게 부탁한 英國의 조정介入에 대해 아무튼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지만 英國이 極東에서 북으로는 러시아의 南下政策과 남으로는 佛蘭西의 北進政策에 대해 청나라의 독립을 보호하고 이를 완충지로 삼고 있고 또한 러시아와의 적대관계를 고려하여 英國이 介入할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달리 1893년 英國이 청나라에 대해 佛蘭西의 사임(Siam)에 대한 침략저지를 보장하는 條約締結提議를 갖고 접근한 바가 있고 또한 수개월뒤 다시 파밀(Pamirs)지역에 대한 러시아와의 協商과 관련하여 北京政府와의 協定을 提議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청나

19) 王信忠, 中日甲午戰爭之外交背景, 臺北, 文海, 1964, p.177

20) 상동, pp.240-42.

21) 李全集, 電稿, 15卷, p.44.

라와 더불어 露佛兩國을 견제하려고 시도한바 있지만 이러한 英國의 두차례에 걸친 提案은 淸國政府에 의해 拒絕되었다. 그러므로 만약 그렇지 않고 英淸동맹이 성립되어 英國艦隊가 청나라를 지원할수 있었다면 日本은 감히 朝鮮派兵을 감행하지 못했을 것이다<sup>22)</sup>는 것이다.

더우기 이때 외무성관리 규빈(J.H.Guhbins)이 제출한 備忘錄에 "갑신정변 이후 청나라의 對朝鮮政策이 屬邦강화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日本의 조야에서 朝鮮에 대한 伊藤의 온건노선보다 대담한 강경책을 바라는 여론이 비등하였으며 특히 많은 日本정치인 가운데 러시아의 南下政策을 견제하기 위해 朝鮮에 안정된 政府가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으나 청나라는 이 問提의 討議마저 拒絕하고 있다<sup>23)</sup>는 요지의 報告는 英國政府에 마치 日本의 朝鮮派兵이 制露策의 일환으로 취해진 정당한 조치임에도 청나라가 전혀 이를 고려조차 하지 않는 것같은 인상을 심어 주었으므로 두차례에 걸친 청나라의 비협조적 태도와 규빈의 備忘錄은 英國의 對淸外交政策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하여 김블리 外相은 日本公使 靑木을 불러 "청나라는 英國이 日本政府의 派兵저지를 위해 양항력을 행사해 주도록 바라고 있음"을 알리자 靑木은 "日本軍이 이미 서울을 점령했으며 本國政府에 外相이 이야기한 청나라 政府의 뜻을 通告하겠다<sup>24)</sup>고 약속하였다. 이같은 靑木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김블리 外相이 淸日의 동시撤兵協商은 전혀 만족스럽게 진전되지 못하고 수일 전 日本이 다시 4천명의 병력을 仁川에 상륙시켰다<sup>25)</sup>는 電文을 받은 다음날 靑木 公使는 英國외무성을 방문하고 "아직 반란이 진압되지 않고 오히려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 만약 현재의 混亂이 平和的으로 終熄된다면 장래 朝鮮에서 平和와 질서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청나라와 利害를 같이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sup>26)</sup>는 朝鮮사태를 과장한 공문을 전달하여 日本은 이미 청나라와 朝鮮에 「朝鮮內政改革案」제출 사실을 언급하

22) Jones, F.C. Foreign Diplomacy in Korea, Harvard University, 1935, P.538.

23) *Op cit.*, No.8, Memorandum by Mr.Guhbins, Foreign Office, June 16.1894.

24) *Ibid*, No.19. The Earl of Kimberley to Mr.Paget, Foreign Office, June 18. 1894. Communication by Japanese Minister, June 20. 1894.

25) *Ibid*, No.25. Tel., Mr.O'Coner to the Earl of Kimberley, Peking, June 19. 1894.

26) *Ibid*, No.60. The Earl of Kimberley to Mr.Paget, Foreign Office, June 20. 1894.

지 않고 새로운 提案을 提議할 뜻을 비추었다.

그러나 이때 總理衙門이 小村 代理公使로 부터 朝鮮內政改革안에 대한 회답을 독촉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오코너는 무엇보다 日本의 提議에 대한 淸國政府의 태도를 타진하기 위해 이틀간 總理衙門大臣들과 가진 會談에서 大臣들은 “李鴻章이 天津條約에 따라 派兵했으나 日本은 충분한 이유도 없이 仁川과 서울에 派兵하였고 이러한 日本의 행동은 외면할수 없는 위협이며 도전이다”는 견해를 밝혀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오코너는 “어떤 강대국에도 干涉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淸日兩國의 이익이므로 兩國이 이 難題를 友好的으로 해결하도록 勸告”하면서 “友好的인 諮問이나 忠告가 효력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英國은 淸日紛爭에 「不干涉政策」(a policy of non-interference)을 고수할 것이다”는 本國政府의 입장을 밝혀 李鴻章의 조정 介入요청을 간접으로 拒絕하였다.

이날 오코너는 天津領事 브리스토(H.B.Bristow)에게 李鴻章을 방문하고 자신의 편지를 전하도록 지시하였다. 總督을 만난 領事は “本國 외무성이 英國 駐在 日本公使를 시켜 그들 政府에게 전달토록 부탁한 일(서울 進入禁止)은 日本이 公使의 勸告를 들어 줄지 모르겠다”<sup>27)</sup>는 매우 소극적인 내용이 담긴 公使의 편지를 전달하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자국의 국력을 잘 알고 있는 李鴻章으로서는 이러한 英國의 不干涉政策과 오코너公使의 消極的인 調整태도에 크게 실망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매마침 北京駐在 러시아 公使 카시니(A.P.Cassini)가 6월 11일 公館 業務를 수일전 서울에 도착한 왜버(Karl I.Waerber)朝鮮駐在 러시아대표에게 맡기고<sup>28)</sup> 휴가차 귀국길에 오르면서 이날 (6월 20일) 天津에 들러 인사하러 왔기 때문에 英國의 調整이 拒絕당한 시점에서 그의 방문은 李鴻章에게 러시아의 介入에 의한 共同撤兵에 대해 해결의 실마리를 안겨 주었다.

27) 蔣廷黻編, 中國近代外交史資料輯要, 中卷, 臺北, 商務, 1959, p.501. 中日交涉史料, 전게서, 제1005 및 李全集, 電稿, 15권, p.48 「...日本英領事持歐函來告已露其外部屬駐英日使轉致, 未知聽勸否...」라는 기록으로 알 수 있다.

28) *Op cit.*, No.176. Secret, Mr.O'Coner to the Earl of Kimberley, Peking, July. 1894.

### III. 李鴻章의 聯露策과 露國의 反應

이날 天津稅關長과 稅關監督官 데트링(M.Detring)이 同席한 자리에서 李鴻章은 카시니에게 “전임 러시아公使 래디젠스키(Ladygensky)와의 會議에서 서로 朝鮮영토를 침범하지 않는다”는 條約<sup>29)</sup>(1886 淸露의 朝鮮불가침條約)을 체결한 바가 있다.... 이번 日本이 병력을 너무 많이 파견하여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 러시아는 朝鮮과 가까운 이웃인데 어찌 감히 이를 무시할수 있겠는가? 조속히 러시아 外務성으로 하여금 駐日公使에게 打電하여 兩國이 동시에 撤兵하여 후환을 면해주도록” 부탁하자 카시니는 “금일내로 곧 打電하겠으며 外務성 또한 이러한 의견을 같이 할것이다”고 하여 李鴻章의 介入요청을 쾌히 승낙한 뒤 本國政府에 李鴻章과의 會談결과를 700여자에 달하는 내용의 電文을 보내었다<sup>30)</sup>.

다음날 李鴻章은 카시니의 숙소여관을 답방하여 가진 제2차 비밀會談에서 “日本이 대병력으로 위협하고 사실상 朝鮮內政을 干涉하려는 것은 朝鮮을 侵奪하고자 하는 음모이므로 청나라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자 카시니는 이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자기가 이곳에 公使로 온 이후 유일하게 이번 교섭은 러시아와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여 반드시 淸露兩國이 마음을 합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자”고 提議하면서 “수일간 이곳에 머물면서 本國政府의 回電을 기다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같은 카시니의 확고한 태도에 매우 감명을 받은 李鴻章은 러시아의 적극介入을 유도하기 위해 “英國이 조정을 맡아 주기를 원하고 있다”고 과장해 말하고 특히 袁世凱로 부터 입수한 朝鮮에서 露佛 兩國대표가 호의적 반응이라는 정보를 제공한 후 會談을 마쳤다.

그리하여 6월 22일 카시니는 本國政府에 淸國政府의 명의로 “朝鮮에서 日本의 撤收를 강요하도록 러시아의 仲裁를 요청했고 英國은 李鴻章에게 이러한 편의제공을 提議했으나 청나라는 러시아의 특별한 입장과 仲裁할 특권을

29) 1885년 영국군함이 거문도를 점령한 사건이 발생한 후 영국이 청나라에 이후 러시아의 不侵보장을 요구한 결과 4차회담을 거쳐 다음해 10월 9일 해결된 비밀조약을 말한다.

30) 中日交涉史料, 13卷, 第1005, 1007. 李全集, 電稿, 15卷, p.48.

인정하여 이를 拒絶한 사실”을 알리면서 이러한 청나라의 仲裁요청을 신속히 승낙해 주는 동시에 東京駐在 公使로 하여금 日本政府에 撤兵을 勸告해 주도록 打電하였다<sup>31)</sup>.

이날 저녁 天津 海軍衙門에서 카시니를 위해 열린 만찬회 석상에서 李鴻章은 “朝鮮에 混亂이 있었기에 청나라는 이를 진압하고자 派兵하였다”고 하여 청나라의 派兵背景을 설명하자 자기를 위한 만찬에 30분이나 늦게 도착한 카시니는 “오! 정말 그래요? 그러면 朝鮮이 청나라에 속해야 합니까?”하고 조롱하듯 대꾸하여 李鴻章의 心氣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통역이 대신한 李鴻章의 인사말에서 카시니를 브란가리(Vlangaly), 부조(Butzow) 및 코메리(Coumery)등 유명인사의 후계자로 치켜 세운뒤 兩國의 友誼關係維持를 강조하자 “朝鮮을 위해 兩國간의 우호적인 결속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겠다”<sup>32)</sup>고 카시니가 다짐함으로써 同席한 英國領事 브리스토로 하여금 李鴻章과 카시니의 秘密接觸과 관련하여 이들간에 어떤 정치적 默契說이 결코 浪說이 아니라는 心中을 갖게 만들었다.

카시니의 電文을 받은 러시아外相 기엘스(D.E. Giers)는 英國에게 승기를 뺏기지 않을까 염려해 즉각(6월 24일) “당분간 天津에 머물면서 李鴻章과 접촉하여 淸日교섭사건을 協商하라. 여하히 協商할까는 다시 訓示하겠다”고 通告하는 반면 駐日公使 히트로프(Mikhail Hitrov)로 하여금 日本政府에 러시아 政府의 撤兵요청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sup>33)</sup>.

이러한 本國政府의 電文을 받아 본 카시니는 대단히 기쁘하면서 다음날 파브로프(A.F.Pavlov) 참사를 李鴻章에게 보내 “러시아 皇帝가 이미 駐日公使에게 打電하여 그로 하여금 日本政府에 청나라와 同時撤兵을 協商토록 명령하였으니 撤兵을 기다린후 다시 善後처리방법을 의논하고 만약 日本이 打電내용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러시아政府는 반드시 강압의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本國 아주국장과 카시니公使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며.... 만약 日인이 소관을 피우면 淸露는 좌시해서는 않된다”라는 카시니의 뜻을 전달하였다<sup>34)</sup>.

31) The Most Devoted Note of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June 22.1894(Ibid.,pp.493-4).

32) *Op.cit.*, Inclosure in No.318, Consul Bristow to Mr. O'Coner, Tien-tsin, June 23. 1894.

33) 中日交渉史料, 3卷 제1017.

이에 李鴻章은 자기도 카시니의 무력사용불가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면서 “이 점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sup>35)</sup>.

그러나 日本이 派兵을 단행한 직후 駐日 러시아公使 히트로프는 이미 陸奧外相으로 부터 日本의 派兵이 거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특히 청나라의 對朝鮮干涉政策에 그 원인이 있다는 설명을 들은 바가 있기때문에<sup>36)</sup> 6월 25일 외무성을 방문한 자리에서 그는 陸奧에게 淸國政府의 紛爭조정요청으로 방문한 사실을 밝힌뒤 “만약 청나라가 撤兵한다면 日本도 撤兵에 同意할 것인지”를 묻는 요지의 通牒공문을 전달하면서 청나라에 提議한 共同內政改革안의 의의에 對해 설명을 要求하였다.

이에 陸奧는 “청나라가 항상 음흉한 수단으로 朝鮮내치를 干涉하여 表裏反覆의 기술로 兩國의 사건을 기만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금일 兩國이 撤兵을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出兵하여 朝鮮의 自主獨立을 무시할 것이다. 청나라의 出兵은 불과 13시간을 소비하나 日本의 出兵은 반드시 40시간 이상을 소비해야 하므로 日本은 부득이 신중히 고려해야 겠다”고 설명한 뒤 “이른바 共同內政改革은 朝鮮왕국의 안전을 위해 제출되었으나 청나라가 이를 拒絶하여 日本은 청나라와 무관하게 朝鮮政府에 이를 勸告하고 있다”고 하여 청나라측이 拒絶하면 그들은 단독으로 內政改革을 강행할 뜻을 비추면서 만약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撤收하겠다고 對答하였다.

즉 첫째, 淸國政府가 淸日共同으로 朝鮮內政改革을 완성하는데 同意하거나 둘째, 淸國政府가 만약 朝鮮內政改革에 日本과 協力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이든 간에 日本이 단독으로 실행하는데 對해 청나라는 직접 간접으로 반대해서는 안된다”. 이어서 그는 朝鮮의 獨立과 自治를 희망하는 이외에 타의가 없고 장래에 청나라가 어떠한 거동을 하더라도 日本은 絶對 공격적인 挑發을 하지않겠고, 만약 불행하게도 戰爭이 일어나면 日本은 피하지 않겠다<sup>37)</sup>고 하여 朝鮮內政改革을 위해서는 戰爭도 不辭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34) 상동, 제1025.

35) 상동.

36) Jones, Ibid., p.535.

37) *Op cit.*, Inclosure in No.302, Preas of an Interview held at Guaimusho(외무성), June 25.1894. Between his Excellencies the Minister of Russia and the Minister for Foreign Affair.

그리하여 히트로프는 本國政府에 이 會談결과를 보고하면서 “日本の 국내 여론이 비등하여 결코 撤兵이 즉각 이루어 질수 없지만 또한 그들이 戰爭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것은 믿을수 있을 것같다. 때문에 만약 第三國의 干涉이 없다면 淸日兩國의 충돌 또한 피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같다. 무엇보다 주의해야 할 것은 어떤 국가가 우리로 하여금 極東의 紛爭외중에 끌어 넣기를 바라고 있다”<sup>38)</sup>는 戰爭의 위험성이 없다는 매우 낙관적인 견해를 打電하면서 本國政府의 介入을 적극 反對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李鴻章이 지난 6월 16일 陸奧가 提議한 共同內政改革提案을 카시니에게 비밀로 해 숨겼고 또한 李鴻章은 袁世凱에게 카시니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러시아의 仲裁를 약속한 것으로 알리는 등 李鴻章의 表裏外交行脚을 비난하면서 “英國이 李鴻章總督에게 조정을 의뢰했다는 그의 주장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李鴻章의 英國仲裁提議說은 러시아를 끌어들이려는 術策에 불과하니 本國政府는 英國을 의식해서라도 청나라의 仲裁요청에 신중을 기해 주도록 建議하였다<sup>39)</sup>. 이와 같이 특히 그가 보낸 2차 電文에서 “日本이 外交的 성공을 거둔다면 이 문제를 戰爭에까지 밀어 부치지 않을 것이다”<sup>40)</sup>라고 보고하면서 日本의 開戰을 부인하며 李鴻章의 聯露策에 새기를 박았다.

이와 같이 日本이 朝鮮을 自主國으로 인정하여 전혀 정치적 野心이 없는데도 청나라의 朝鮮干涉政策이 오히려 淸日紛爭의 원인이므로 李鴻章의 요청에 의한 紛爭介入은 英國의 의심과 敵對感만을 增大시켜 오직 청나라에 利로울 뿐 러시아에는 이익이 될수 없다는 히트로프의 보고는 天津에서 보낸 카시니의 것과는 너무나 상반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李鴻章과 카시니가 淸露協力체제로서 日本을 견제하여 撤兵을 관철시키려는 노력에 決定적인 타격을 줄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기에르 外相은 적극介入政策에서 한발짝 물러서서 카시니와 히트로프에게 “러시아의 仲裁는 오직 양측에 의해 요청될때만 받아들여 朝鮮에서 共同撤收를 실행한다”<sup>41)</sup>는 조건을 붙여 사실상 카시니의 介入요청을 拒絶하

38) *Ibid.*, p.498.

39) Jones, *Ibid.*, p.540.

40) Chinese Social and Political Science Review, Vol.17, Part3, pp.497-8.

였다.

#### IV. 內政改革案과 陸奧의 開戰外交

한편 日本政府는 그들이 예상한대로 朝鮮內政改革提議에 對해 李鴻章의 의견처럼 汪公使를 통해 日本政府에 세가지 이유를 들어 拒絕通牒을 전달하자 本國政府의 훈령을 받은 小村 代理公使는 재빨리 淸日紛爭해결에 진력하고 있는 오코너를 방문하고 “日本の 중요 목적이 淸國政府로 하여금 현재와 같은 소요나 반란이 장차 일어나면 朝鮮이 러시아의 야심적인 계획의 희생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청나라에게 朝鮮의 主權完整과 독립을 共同보장 하도록 참여시키고 있다”<sup>42)</sup>고 설명하여 마치 朝鮮內政改革이 곧 制露策에 있는 것처럼 그 필요성을 설득하였다.

이와 같은 小村의 적극적인 접근책은 그 자신이 누구보다 淸日紛爭에서 露佛의 支持를 얻고 싶지만 이것은 불가능하며 그런 경우에는 日本이 가장 두려워 하는 국가인 英國의 목인이나 支持를 얻어야 한다는 인식때문이었다<sup>43)</sup>.

그러나 청나라의 拒絕通牒을 받은 日本政府는 伊藤 수상의 저택에서 참모 총장 有柄川宮, 차장 川上 육군중장, 군사령부장 中矣田 海軍중장이 임시會議를 가진데 이어 다음날 6월 22일 明治天皇의 참석하에 伊藤 首相이하 閣僚, 樞密院 議長 山縣有朋, 慘議議長 有柄川宮 등은 朝鮮內政의 單獨改革을 決定한 뒤 汪公使에게 이를 通告하면서 이른바 「第1次 絶交書」를 傳達하고 日本은 결코 撤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뒤 單獨介入을 다짐하였다.

이어 日本은 外務省 文書課長 加藤增雄을 朝鮮에 派遣하고 大鳥公使에게 朝鮮政府에 제출한 內政改革要求에 對한 政府의 방침을 通告하도록 指示하는 동시에 混成旅團 第2次 輸送部隊의 탑승과 仁川주둔의 第1次 混成旅團의 서울진입을 命令하였다<sup>44)</sup>.

이러한 日本의 병력증강과 仁川병력의 서울진입에 對抗하기 위해 袁世凱는

41) Tel. of the Secretary of the Legation at Seoul, June 28. 1894(Ibid., pp.498-9).

42) *Op.cit.*, No.144, Secret, Mr.O'Coner to the Earl of Kimberley, Peking, June 23. 1894.

43) *Ibid*, Inclosure 2 in No.313, Memorandum by Mr.Drummond.

44) 信夫淸三郎, 전게서, 제1권, pp.282-4. 王信忠, 전게서, pp.112-5

增兵을 要請하지<sup>45)</sup> 大鳥公使는 오히려 朝鮮이 獨立富強해야 한다<sup>46)</sup>고 말하면서도 23일에는 武力으로 大院君의 執政을 成功시킨후<sup>47)</sup> 國王 高宗에게 內政改革案을 提出하고 26일까지 內政改革委員을 任命하여 이를 協議하도록 要求하였다.

그러나 朝鮮政府는 日本의 撤兵을 선결문제로 삼아 內政改革은 자주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 그들의 內政干涉행위를 비난하는 동시에 外務督辦 趙秉稷은 서울駐在 열강사절단에게 지금 淸日兩軍이 주둔할 필요가 없는 상태이며 撤兵을 拒絶하고 있는 실정을 호소하여 이들 代表들이 우호적인 알선으로 淸日撤兵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요청하였다<sup>48)</sup>.

그리하여 朝鮮駐在 러시아公使 켈버거(Paul De Kehrberg), 美國代表 실(J.M.B.Sill), 불란스代表 레페브르(G.Lefevre) 및 英國代表 가드너(C.T.Gardner)는 그들의 명의로 袁世凱와 大鳥公使에게 淸日兩軍의 동시撤兵이 곧 현 難題의 해결임을 通告하면서 그들의 同時撤收요청서를 전달하였다<sup>49)</sup>. 그러나 袁世凱는 다음날 “日本이 撤兵을 拒絶한다면 淸國군은 撤收하기가 편하지 않다고 하여 日本의 태도에 따라 撤兵한다”는 입장을 알렸으나<sup>50)</sup> 大鳥는 단지 本國政府에 그들의 공문을 전달하겠다고만 밝혀 撤兵에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이같은 淸日兩國의 군사력증강은 분명히 戰爭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판단한 오코너는 즉각 本國政府에 “만약 日本이 청나라의 要求를 절반만이라도 들어준다면 우호적 해결은 가능할 것이다.....日本의 목적은 청나라로 부터

45) 中日交涉史料, 第1014.

46) 上同, 第1019.

47) 朴宗根, 전게서, pp.56-70.

48) Op.Cit., Inclosure 2 in No.332. Cho Pyongchik, President of the Foreign Office, to the Foreign Representative of the United States, Russia, England, Germany, and France.

49) *Ibid*, Inclosure 3 in NO.332, The Foreign Representative to the Chinese and Japanese Representative, Seoul, June 25. 1894.

50) *Ibid*, Inclosure 5 in NO. 332, The Chinese Resident to the Foreign Representative, June 26. 1898.

51) *Ibid*, Inclosure 4 in No. 332, The Japanese Minister to the Foreign Representatives, the Imperial Japanese Majesty's Legation, Seoul, June 25. 1894.

제2의 위치에서 벗어나 朝鮮영토에 대한 共同보장인의 지위를 확보하는데 있다<sup>52)</sup>고 하여 日本의 모든 군사적 행동이 朝鮮에서 청나라와 같은 특권 획득이라는 그들의 政治的 野心을 실현시키는데 있음을 알렸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英國의무성은 駐華亞細亞艦隊 부사령관 후리멘탈(L.E.Fremantle)경이 현지에서 "日本의 행동이 심상치 않으며 약 5천명의 병력이 증파되고...大規模 원정군과 全軍의 절반이 동원된다는 말이 있다. 東學亂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구실일 뿐이다. 신뢰할 만한 정보는 신문보도의 제한으로 얻기 어렵고 日本政府는 인기를 끌기 위해 국민들에게 현 사태로 빚어진 정치상황을 開戰의식으로 부추기고 있다"<sup>53)</sup>는 내용과 다시 "淸日戰爭은 極東해상에서 우리들의 상업적 손실을 주기 때문에 介入해야 할뿐만 아니라 또한 러시아가 그들의 국경을 확장시킬 구실을 줄수있다...日本은 戰爭을 강행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부리고 있다"<sup>54)</sup>고 하여 英國의 介入을 촉구하는 현지 보고를 접수하였다.

이에 김브리 外相은 어떤 형태로든 英國의 介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이날 즉시 靑木公使를 불러 日本의 증병과 관련하여 本國政府로 부터 정보를 입수했는지를 묻자 그는 "日本은 청나라에 현재의 반란을 共同진압하고 동시에 안정된 政府체계를 설치하기 위해 「朝鮮內政改革과 再組織」에 對한 共同조치를 취하자고 提議했으나 청나라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병력을 大舉 파견하려고 한다"<sup>55)</sup>는 요지의 本國政府가 보낸 電文을 제시하며 오히려 청나라가 사태를 開戰의 방향으로 몰아 가고 있는 듯한 인식을 심어주었다.

이에 外相은 "만약 淸日병력의 충돌이 일어나면 兩國간의 戰爭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니 무력에 호소하는 것은 쌍방에 이롭지 못하며 그 결과는 러시아의 干涉을 초래할 것임"을 경고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公使는 "북쪽으로 부터 위협하는 위협으로 부터 朝鮮을 안전하게 구제하기 위해 朝鮮政府의 행정

52) *Ibid*, No.26, Secret, Mr.O'coner to the Earl of Kimberley, Peking, June 22. 1894.

53) *Ibid*, Tel., Inclosure in No.14, Vice-Admiral Sir E. Fremantle to Admiralty, Yokohama, June 22 1894.

54) *Ibid*, Inclosure in No.177, Vice-Admiral sir E.Fremantle to Admiralty, "Centurion" at Yokohama, June 21. 1894.

55) *Ibid*, No.40, Mr.Mutsu to Viscount Aoki, July 6. 1894.

을 광범하게 개혁하는 것이 긴급히 필요하다. 청나라는 러시아에 저항할 만큼 강력하지 못하며 만약 朝鮮이 러시아의 수중에 들어간다면 日本은 朝鮮海岸의 방위를 위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고 하여 마치 朝鮮內政改革은 日本이 국력이 약한 청나라를 대신해 러시아의 朝鮮侵略을 사전에 저지하는데 있다고 하여 朝鮮內政改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김브리外相은 ”日本에 의한 朝鮮半島의 새로운 內政改革이 소망스럽지만 청나라와의 戰爭은 문제를 해결하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며 日本의 內政改革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무력에 의한 해결책에 단호히 反對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公使가 本國政府에 그러한 紛爭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바라는 본인의 진지한 勸告를 전해주길“ 거듭 부탁한 뒤 會談을 마쳤다.

그러나 다음날 오코너는 本國政府에 청나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日本이 朝鮮軍을 비롯한 內政改革 특히 財政을 日本制度에 따라 재개편하며 共同군사점령을 계속하고자 하는 동시에 大鳥公使는 國王에게 청나라의 宗主權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묻고 國王의 알현을 요청하는 등 日本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國王에게 內政改革안을 받아 들이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음을 打電한데<sup>56)</sup> 이어 파케트公使도 ”日本은 朝鮮內政改革에 對한 어떤 좋은 조치가 있기 전에는 撤兵하지 않을 것임<sup>57)</sup>을 보고하며 日本은 청나라가 주장하는 共同撤兵보다는 共同內政改革문제를 갖고 청나라와의 決戰여부를 決定짓고자 한다는 현지의 사정을 보고하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오코너公使는 브리스토領事로 부터 總督 李鴻章이 러시아의 仲裁를 요청한 사실과 “만약 日本이 撤兵을 拒絕하여 戰爭이 일어난다면 英國은 청나라의 개항지에서 貿易의 어떤 방해라도 막아야 할것이다”는 건의를 받자 그는 즉각 本國政府에 “만약 이 일이 성사되면 러시아는 日本에 가한 압력의 代價를 청나라政府로 부터 받드시 얻어 낼것이다”<sup>58)</sup>고 하여 李鴻章의 聯露策에 對한 러시아의 이익획득 가능성을 보고하였다.

56) *Ibid*, No.27, Mr.O'Coner to the Earl of Kimberley, Peking, June 24. 1894.

57) *Ibid*, No.19, Mr.Paget to the Earl of Kimberley, Tokio, June 25. 1894.

58) *Ibid*, No.30, Confidential, Mr.O'Coner to the Earl of Kimberley, Peking, June 28. 1894.

이에 김브리外相은 파케트公使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로 하여금 日本政府에 “현재 日本의 태도는 매우 重大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이 결과는 오직 러시아만이 그 이익을 차지할 것임”<sup>59)</sup>을 강력히 경고하도록 지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날 靑木公使를 외무성에 불러 總督 李鴻章이 러시아의 仲裁을 요청한 사실을 알리고 “러시아에게 朝鮮문제에 介入토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重大한 결과를 야기할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일찍 이러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지적한 뒤 “淸日간의 戰爭은 비단 朝鮮뿐만 아니고 淸日의 이익을 저해하고 나아가서는 英國을 비롯한 歐洲列強들의 商業上 손실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英國政府는 日本政府가 청나라와의 異見을 戰爭행위로까지 밀어 붙이지 말고 우호적인 協商으로 타결하고 또한 朝鮮內政改革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되길 바란다”<sup>60)</sup>는 자신의 간곡한 조언을 本國政府에 전해주도록 부탁하였다.

더우기 이러한 重大한 시기에 英國의무성은 英國駐在 日本公館의 시에볼트(Baron Con Siebold)가 朝鮮에서 발생한 정치적 상황변화를 極東에서 英國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淸日露 三國의 입장과 관련시켜 보고한 비망록을 입수했는데 그 내용은 淸日紛爭의 원인은 청나라의 對朝鮮屬邦政策強化에 있고 東學農民戰爭 또한 朝鮮政府의 壓政과 관리들의 부패로 일어났으므로 日本의 朝鮮內政改革은 잘못된 朝鮮의 政治制度를 고쳐 향후 러시아의 朝鮮侵略을 저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려고 한다. 그럼에도 청나라는 이를 거부하고 있으며 오히려 러시아에게 朝鮮領土占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만약 시베리아철도등 모든 교통수송망이 완성된다면 러시아의 南下政策에는 束手無策이기 때문에 日本은 지금 이를 방치할수 없으며, 또한 러시아가 朝鮮의 永興灣을 점령하거나 청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인도지나와 越南처럼 朝鮮을 포기한다면 이것은 결코 日本과 英國의 이익이 될수 없다. 그러므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日本이 청나라 대신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야말로 이 지역에서 英國의 商業上 이익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며 또한 英國과 對立關係에 있는 러시아의 朝鮮領土占領을 사전에 견제하려는 것이야 말

59) *Ibid*, No.15, The Earl of Kimberley to Mr.Paget, Foreign Office, June 28. 1894.

60) *Ibid*, No.61, A.The Earl of Kimberley to Mr.Paget, Foreign Office, June 28, 1894.

로 곧 英國의 이익인데도 불구하고 英國은 이러한 日本의 노력에 支持나 동조를 못할망정 왜 청나라의 입장만을 고려하느냐는 요지였다<sup>61)</sup>.

이같은 비망록의 내용은 일찍 靑木이 김브리外相에게 직접 설득한 것과 大同小異한 논지였기 때문에 英國이 淸日紛爭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신축성을 보이지 않는 청나라보다는 적극적인 日本에 접근하여 현실에 입각한 自國의 立場과 향후 極東지역에서의 파수꾼 役割을 납득시키는 日本쪽으로 기울어지게 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한편 日本이 제출한 제1차 절교서를 계기로 大鳥는 6월 28일 內政改革과 宗屬의 두 문제에 對한 朝鮮政府의 회답을 29일까지 要求하게 되자<sup>62)</sup> 朝鮮政府로부터 淸日의 共同撤收要求를 本國政府에 通報해 주도록 요청받는 朝鮮駐在 러시아 켈버기 참사는 이날 (6월 28일) 本國政府에 朝鮮政府가 동학란이 이미 평정되었기에 朝鮮駐在 各國代表들로 하여금 각각 本國政府에 極東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國王이 淸日共同撤兵을 要求해 주도록 요청한 사실을 打電하였다<sup>63)</sup>.

이에 러시아政府는 즉각 北京과 東京公使에게 朝鮮政府의 共同撤兵의 뜻을 駐在國家에게 알리도록 훈령하는 가운데서 키에프外相은 히트로프에게 “日本政府로 하여금 이해시키도록 할것은 만약 日本이 朝鮮에서 共同撤兵을 방해할 때는 日本은 스스로 중대한 責任을 져야 할것이다”<sup>64)</sup>라는 내용으로 시달하였다.

이때 히트로프는 本國政府의 외무성 아세아국장 카니스트(Count Kapnist)가 보낸 훈령가운데 먼저 朝鮮內政을 개혁한 이후 撤兵을 주장한 원인을 해석할때 “日本이 중대한 책임을 진다”는 문구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本國政府의 뜻을 받들어 強壓의인 手段으로 日本의 撤兵을 주장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61) *Ibid*, No.332, The Chinese Resident to the Foreign Representatives, June 26. 1894.

62) 朴宗根, 전계서, p.40.

63) *Op cit*, Inclosure 4 in No. 332, The Japanese Minister to the Foreign Representative, His Imperial Japanese Majesty's Legation, Seoul, June 25. 1894.

64) *Ibid*, Tel. of the Secretary of the Legation at Seoul, June 28. 1894.

그리하여 다음날 히트로프는 陸奧外相을 방문하고 "朝鮮政府가 列強使節團에게 반란이 진압되고 그들에게 淸日의 동시撤兵을 함에 협조를 요청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려왔음"을 말하고 "만약 日本이 淸日동시撤兵을 방해한다면 중대한 責任을 져야 할것이다"<sup>65)</sup>는 러시아皇帝의 이름으로 공문을 전달하였다.

이같은 러시아의 강력한 항의공문을 받은 陸奧는 이것이 분명 러시아의 武力介入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대단히 놀라는 표정을 지어면서 "사안이 중대한 만큼 최종회답을 하기전 內閣과 상의해야 된다"고 하여 회답을 회피한후 그는 伊藤총리의 사저를 방문하고 두 사람은 현재 상황에 朝鮮에서 撤兵할수 없고 더욱 앞으로 사태는 두 사람이 책임을 진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다음날 陸奧는 곧 러시아駐在 日本公使 西德三郎에게 "러시아의 勸告에 어떻게 회답할지 아직 閣議를 거치지 않았으나 나와 伊藤伯은 오늘 러시아의 指教에 응해 朝鮮에서 우리軍隊를 撤收해야할 시기가 아니라는 의견이다"고 打電하는 동시에 駐英公使 青木에게 그가 英國政府에 日本의 러시아撤兵要求 拒絶사실을 通報하도록 지시한 뒤 "日本은 청나라에 朝鮮독립과 內政改革을 선결조건으로하여 새로운 提案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나라가 이를 拒絶하고 있음"을 通告하면서 "향후 英國으로 러시아를 견제하려면 公使가 主動的으로 英國에 러시아의 南下說을 주입시키면서 우리의 의향을 빠짐없이 알리는 것이 매우 艱요함"을 다시 인지시켰다<sup>66)</sup>.

그러나 駐日 러시아公使 히트로프로 부터 "日本이 撤兵하지 않으려고 하나 먼저 도발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했다는 電文을 받은 카시니는 7월 1일 本國政府에 "李鴻章은 청나라가 朝鮮의 內政改革을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또한 이 개혁의 문제는 서울이나 天津에서 露淸日 代表들이 참석한 會議에서 검토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sup>67)</sup>고 李鴻章이 三國會議를 提議한 것처럼 本國政府에 보고하고 또한 本國政府의 적극적인 介入을 요청하였다.

65) *Opacit.*, pp.499-500. 王忠信, 전게서, p.202.

66) 信夫淸三郎, 전게서, p.327.

67) *Opacit.*, Tel. of the Minister at Peking to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June 31(Ibid., pp.501-2.p.505).

물론 三國會議은 카시니의 구상으로 李鴻章과 어느 정도 깊이 있게 논의하였는지는 알수 없지만 만약 本國政府가 三國委員의 구성에 同意하면 日本이 이에 응하지 않을수 없고 이로 인해 戰爭은 피할수 있고 나아가서는 이를 계기로 러시아의 朝鮮에서의 이해관계가 어떤 방법으로든 淸日의 것과 동등하게 인정될수 있다는 카시니의 계산에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이러한 電文을 보낸 뒤 카시니公使는 자기의 三國會議提議에 對한 李鴻章의 答復을 얻기 위해서 참사 파브로프(A.F.Paulov)와 領事를 李鴻章에게 보내 히트로프公使가 外相을 만났더니 "日本은 撤兵않겠다. 만약 별다른 사연이 없으면 日本군이 먼저 開戰하지 않을 것을 확인했고 다른 말은 없었다"는 사실을 전하였다. 이에 매우 실망한 李鴻章은 카시니가 전에는 "러시아皇帝가 電文으로 撤兵을 강력히 지시했다"고 해놓고서 지금 와서 다른 말을 한다고 지적하면서 "만약 撤兵않으면 러시아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러시아政府의 의사는 어떤지"를 반문하자 참사는 "駐日公使가 반드시 보고하거나 혹은 외무성이 이미 회전하여 지금 오고 있는 중이다. 카시니가 오늘 또 本國에 打電하여 재통지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가 本國에 打電한 540자의 말은 헛된 것이 아니며 駐日公使 히트로프에게도 日本이 增兵하도록 打電한 것을 알린 뒤 "總督과 논의한 三國會議에서 先後策은 本國의 의사와는 달리 카시니 개인이 提議한 것이다"고 해명하여 그가 임의로 本國政府에 李鴻章의 요청으로 三國會議를 건의한 사실을 解明하였다<sup>68)</sup>.

이에 李鴻章은 카시니가 진실한 마음으로 러시아의 介入을 바라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는 실제로 이를 決定하거나 해결할 權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일단 기다려 보되 다시 聯英策으로 현안을 타개해볼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이때 러시아政府는 러시아駐在 英國公使 라셀레스(Frank Lascelles)가 6월 30일 러시아외무성 아세아국장 카프니스트(Count Kapnist)를 방문하고 "英國政府는 억지로 介入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카시니가 李鴻章의 요청을 받아 히트로프公使로 하여금 日本政府에 "만약 日本이 兪望의 勸告를 거부한다면 兪望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通告해 주도록 부탁한 사실마저 해명하여<sup>69)</sup> 카프니스트국장은 카시니와 李鴻章이 러시

68) 李全集, 電稿, 15卷, p.57. 中日交涉史料, 제1048.

69) Chinese Social and Political Science Review, Vol.17, Part 3, pp. 500-1. Jones,

아를 淸日紛爭에 끌어들이어 共同撤兵을 관철하려는 張本人들임을 確認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카시니의 三國會議 提議를 받아들이지는 어렵게 되었다.

### V. 李鴻章의 聯英策과 日露密約說

7월 1일 아침 오코너公使의 편지를 갖고 李鴻章을 방문한 天津領事 보리스 토우(H. B. Bristow)는 그에게 公使가 여러차례 本國外務省과 駐英日本公使에게 撤兵과 先後策(內政改革)을 再論議하도록 打電하고 또한 駐日英公使에게 打電해 말했으나 日本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알린뒤 “어떤 일개 西歐 국가 단독의 독자적인 介入은 淸日이나 朝鮮을 위해서도 불리한 성격의 混亂을 조장할것 같으니 朝鮮國王이 그들의 영토에서 外國軍隊의 撤收를 共同으로 干涉해 주도록 호소하는 方法대로 강대국들을 끌어 들이는 것이 최선의 政策이다”<sup>70)</sup>는 요지의 親書를 전달하여 오코너는 李鴻章의 聯英策이든 카시니의 三國會議든 모두 극력 反對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이날도 전과 같이 天津稅關長과 데트링(M. Detring)세관고문이 동석한 자리에서 어제 포르프참사로 부터 러시아의 강경한 항의에도 日本이 撤兵을 拒絕한 사실을 通告 받은 사실때문에 李鴻章은 領事에게 “日本이 병력 萬名을 다 시 증파한 이상 戰爭을 할수 밖에 별 도리가 없다. 설득은 소용없다. 英國이 日本軍을 강제로 撤收 시켜야 한다. 시간낭비일 뿐이다. 프리맨탈(Fremantle)提督이 艦隊를 인솔해 橫濱港에 가서 日本군의 撤收를 주장해 주시오. 英國은 강력한 海軍을 보유하고 있으니 日本은 감히 對抗하지 못할 것이오. 英國은 수중에 강력한 무기를 갖고 왜 사용하지 않소. 英國은 무력을 사용해야 되오. 좋은 기회요. 英國의 貿易과 이해에 치명상이 되어 戰爭은 불가피하오. 만약 英國이 이같은 방법으로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戰爭은 불가피하오”라고 거듭 英國海軍의 무력介入으로 日本군의 撤收를 要求하였다.

이에 領事は “李鴻章이 생각하는 道義의 힘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라고 대답하자 그는 계속 토의의 전제조건으로 共同撤收를 고집하면서 “英國은 貿易

*Ibid.*, pp.541-2.

70) *op.cit.*, Confidential No.162, Mr O'Coner to the Earl of Kimberley, Peking, July 3. 1894.

을 보호하기 위해 그의 군사력을 사용함으로써 日本으로 하여금 撤兵하도록 하지 않으면 어떠한 協商도 불필요하다"고 거듭 武力介入을 촉구하니 領事は 말머리를 돌려 "여러 곳으로 부터 카시니公使가 仲裁나서기 위해 本國政府에 打電하여 同意를 얻었다"는 풍문을 들었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를 물어 자신이 그를 방문한 궁극적인 목적을 털어 놓았다.

그러나 李鴻章은 그가 세번이나 묻는 데도 확답을 피하면서 "오코너公使는 외국의 協力을 요청하는 것을 어리석은 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여 간접적으로 카시니公使에게 조정을 요청한 사실을 시인한 후 "러시아公使가 그의 영향력을 사용하였으나 단지 설득한 것에 불과하여 별 효력이 없었다"고 하여 처음으로 카시니의 仲裁說이 실패했음을 시인하였다. 會談이 끝날 무렵 李鴻章은 재삼 領事가 오코너公使에게 요청하여 아세이艦隊 부사령관 프리맨탈提督 휘하艦隊를 이끌고 가서 日本군의 撤收를 주장하기 위해 海軍시위요청을 打電해 줄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領事は "그러한 방침은 채택될수 없을 것 같으며 어떤 경우이든 本國政府와 먼저 상의해야 된다. 각하의 이야기를 곧 보고하여 가능한 빨리 회답을 요청하겠다"<sup>71)</sup>고 대답한 후 會談을 마쳤다.

이 會談을 통해 領事は 李鴻章이 다소 허세를 부리지만 이는 愛國心에서 우리나라는 말인것으로 받아들였으나 그가 무엇을 믿고 함부로 戰爭운운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을수 밖에 없었다.

어쨌든 러시아의 介入이 決定되지 못한 시점에서 李鴻章이 英國海軍의 무력시위로 日本군의 撤收를 실현시킬려면 오히려 英國의 協力을 간곡히 요청할 것이지 이미 淸國의 실상을 파악하고 있는 노련한 오코너와 같은外交官에게 英國의 힘을 빌리기 위한 手段으로써 日本과의 戰爭을 함부로 말하는 위선적 態度와 虛勢는 自助와 自強을 원리로 하는 냉혹한 國際社會에서는 오히려 자국의 취약성과 자신의 外交力量의 限界를 노출시켰을뿐 英國의 군사적

71) *Ibid*, Confidential, Inclosure in No.322, Consul Bristow to Mr.O'coner Tien-tsin, July 1. 1894. 中日交渉史料, 제1053. 중국측 자료는 영국 해군제독으로 하여금 10여척의 폐속정을 이끌고 橫濱만에 가서 시위하라고 요청하고 또한 李鴻章이 러시아가 비록 조선의 가까운 이웃나라이나 아직 아무 이유없이 육군을 동원하겠는가 하고 반문한 뒤 영국의 젊은 해병은 천하를 지배할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내가 전에 煙臺에서 영국의 大철갑선을 보았는데 실로 동양제일이었다"고 기록이 다소 자국과 자신의 입장을 고려하여 과장해 기술되고 있다.

지원을 획득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될수 없었다.

그리하여 오코너는 本國政府에 “李鴻章이 러시아를 통해 기도한 日本軍의 撤收가 실패했기 때문에 英國으로 하여금 海軍示威로 日本의 撤兵을 관철해 주도록 강력히 要求하고 있다”고 정확히 보고하면서 현상황으로 보아서 청나라에 의해 宣戰될 것이니 더 이상 協商은 필요없다...駐北京 이해당사국가들은 만약 英國이 開港地에 어떤 공격도 금지하도록 宣布한다면 이를 支持할 것이며 또한 日本도 이에 응할 것이다<sup>72)</sup>고 하여 李鴻章의 開戰으로 야기될 그들의 개항지에 대한 戰爭금지조치를 취해 주도록 건의하였다.

會談직후 李鴻章은 그 나름대로 聯英策을 성사시키기 위해 總理衙門에 오코너와 天津세관사 英國인 하트(Robert Hart)가 접촉하도록 요청하면서 “만약 英國이 궁극적으로 힘을 과시하여 이후 會議을 한다면...勝算도 있을것 같다<sup>73)</sup>고 하며 하트와 오코너의 접촉을 적극 지원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오코너는 다음날 總理衙門을 방문하고 李鴻章이 요청한 英國海軍의 武力示威에 대한 淸國政府의 입장을 타진하는 자리에서 “솔직히 李鴻章이 英國政府의 적극적인 支持와 海軍의 介入을 얻고자 무슨 말을 하든간에 무력으로 결단을 내리려고 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청나라海軍과 육군의 자원은 완벽하게 훈련받고 또한 정확한 武器를 공급하고 있는 日本과 같은 국가와 戰爭을 하기에는 한심할 정도로 불충분하고 또한 준비되어 있지 않고 있다”고 하며 日本과의 군사력에서 청나라의 劣勢를 지적하여 李鴻章의 開戰意思에 적극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大臣들은 “단지 日本에 대한 英國海軍시위의 필요성만을 인정한다”고 전제하고 淸國政府로써 다시 公使의 협조를 요청하였지만 그로부터 이에 대한 어떠한 언질도 받지 못한채 會談을 마쳤다<sup>74)</sup>. 이와 같이 李鴻章과 淸國政府가 英國의 海軍력을 이용하여 英國의 주도하에 日本의 撤兵을 관철시키려던 그들의 聯英策은 오코너의 拒絶로 처음부터 난관에 봉착될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淸國政府는 閣議에서 日本의 內政改革이 청나라의 국위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반대하지만 協商을 공개한다는 조건으로 朝鮮의 主權完整에

72) *Ibid*, Confidential No.31, Mr.O'Coner to the Earl of Kimberley, July 1. 1894.

73) 李全集, 電稿, 15卷, p.58. 中日交涉史料, 第 1053.

74) *Op.cit.*, Confidential No.162, Same to Same.

대한 共同保障과 朝鮮內政改革을 受容한다는 쪽으로 일단 물러서다가 다시 “兩國의 同時撤兵은 성공시킬 가망이 없다”<sup>75)</sup>는 이유로 先撤兵 後改革의 종전방침으로 후퇴하였다.

이같은 總理衙門의 태도를 확인한 오코너는 小村 代理公使를 만나 總理衙門과 즉각 우호적으로 協商을 재개하도록 설득한 뒤 本國政府에 “아마 러시아는 朝鮮이 外交적으로 協力해 달라고 요청한 4개국(獨,英,佛,美)과도 접촉을 가질 것이며 이는 곧 日本에 큰 타격을 줄것이다”<sup>76)</sup>고 하여 朝鮮이 주도하여 요청한 열강 5개국의 共同介入요청에 의한 撤兵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日本政府는 7월 2일부 히트로프公使에게 “아직 朝鮮事變을 조성한 근본적 원인이 제거되지 않아 撤兵 못하고 있고 또한 日本은 朝鮮領土를 침략할 뜻이 없다”는 점을 밝히면서 “러시아의 우의에 찬 勸告에 사의를 표시한다”<sup>77)</sup>는 등 매우 부드럽고 공손한 말로 러시아의 撤兵勸告를 완곡하게 拒絕하여 사실상 李鴻章의 聯露策에 의한 撤兵은 실패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이날 7월 2일 카시니는 參事 파트로프를 李鴻章에게 보내 히트로프로 부터 “陸奧外相은 반드시 청나라가 먼저 三國會議를 許可하여 朝鮮內政改革을 해야만 비로소 撤兵할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議員들에게 할 말이 없다”는 電文을 전하면서 三國會議에 대하여 淸國政府가 어떤 방침을 취할 것인지를 타진하였다. 이에 李鴻章은 일전 “三國會議를 이미 철회했고 그 논의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러시아가 조정하고자 전면에 나서므로 청나라는 단지 이 會議를 허가할수 있다고 하여 비로소 러시아가 이를 수락한다면 同意한다”는 뜻을 밝힌뒤 “어떤 방법으로 토의하느냐”는 “반드시 先共同撤兵을 해야 된다”는 종래의 입장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웠다.

이에 參事도 “日本이 撤兵후 청나라가 체재하면 여전히 協議가 이루어 지지않는다”고 하면서 “청나라가 朝鮮에 內政改革을 반드시 勸告할 것을 허락하고 露日이 함께 協力할수 있는지 여부와 三國會議에 의견을 서로 같이 하느냐를 기다려 決定할 문제이다”고 대답하여 청나라가 內政改革에 協力해 주

75) *Ibid*, Tel. No.32. Mr.O'Coner to the Earl of Kimberley, Peking, July 2. 1894.

76) *Ibid*, Confidential No.34, Same to Same, Peking, July 3. 1894.

77) 信夫清三郎, 전게서, pp.328-9.

도록 要求하자 李鴻章은 “朝鮮內政은 항상 자주로 해왔고 그들이 개혁을 고려한다면 청나라는 朝鮮이 처리하도록 勸告할수 있고, 露日과 같은 이웃나라도 도와서 朝鮮에 勸告할수 있다. 러시아는 처음 주장한 대로 先撤兵을 실행한 후 다시 각자 대표를 파견하여 會議에 응해야 한다”고 하여 러시아의 참여를 전제로 內政改革을 勸告할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參事는 “청나라의 입장을 적극 支持한다”<sup>78)</sup>고 하여 會談을 마쳤다.

어쨌든 오코너가 이미 李鴻章의 聯露策이 실패한 것을 확인하고 어떤 형태로든 러시아 주도하의 列強國의 共同介入마저 적극 반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李鴻章이 다시 러시아參事 파로프를 만나 淸日露 三國會議를 재론하여 승인한 것은 오코너가 本國政府로 하여금 日本政府에게 청나라와의 協商제개의 압력을 가하도록 하는데 도움은 줄수 있었지만 끝내 李鴻章이 英國이 한사코 반대하는 러시아를 끌어들여 현안을 타결하려 했다는 사실에서 오코너로 하여금 원칙없는 淸國의 外交路線에 강한 不信感을 갖게한 것 또한 李鴻章의 失策이라고 볼수 있겠다.

日本政府가 러시아의 撤兵要求를 거부했다는 보고를 받은 김브리外相은 즉각 파케트公使를 통해 日本이 지체없이 청나라와 우호적 協商을 재개하지 않으면 러시아에 의해 歐洲列強의 共同介入이 要求될 것임을 경고하면서 淸日紛爭 해결妥協案으로 日本이 주장하는 朝鮮을 독립국으로 할 경우 淸日 모두 朝鮮을 지배하고 보호할 힘이 감소되어 오히려 이것은 第3國의 介入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하면서 첫째, 淸日 兩國은 朝鮮의 屬邦문제를 거론하지 말고 兩國의 共同보장하에 朝鮮內政改革을 조건으로 하여 평화적 協商을 조속히 시작하고 둘째, 朝鮮에서 兩國병력의 동시撤兵도 이 協商의 진전에 따라 점진적으로 실행하며 셋째, 淸日兩國의 朝鮮주권보장하에 당사자간에 직접 協商을 개최하는 것 만이 향후 혼란을 막을수 있다<sup>79)</sup>는 기본 방침을 제시하여 이러한 本國政府의 기본타협방침을 駐在國에 通報하도록 훈령하였다.

그리하여 파케트公使는 本國政府에 日本이 “히트로프公使가 淸日兩國의 동

78) 李全集, 總暑致李電, pp.60-1. 中日交涉史料, 제 1056.

79) *Op cit.*, Tel. No.18, The Earl of Kimberley to Mr.Paget, Foreign office, July 3. 1894.

시撤兵要求를 거부했기 때문에 러시아는 朝鮮이 駐在外交사절단의 協力을 요청한 빌미로 다시 구주열강의 介入을 要求할 위험이 있지만<sup>80)</sup> 결과적으로 朝鮮政府가 열강의 介入을 요청하지 않는 한 청나라나 기타 어떤 강대국이 撤兵을 주장하더라도 日本은 이를 받아 들일수가 없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럼에도 오코너公使는 그 나름대로 總理衙門에 제三國의 介入반대를 설득하고자 小村 代理公使가 衙門을 방문시 십분 이를 참작하여 淸日 兩國이 직접 協商하도록 勸告하는 동시에 7월 3일 브르스토 領事를 다시 李鴻章에게 보내 李鴻章이 일전에 부탁한 英國海軍력의 시위요청은 받아 들일수 없다는 本國政府의 입장을 전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날 領事를 접견하는 李鴻章의 태도는 전과는 크게 달랐다. 이 자리에서 그는 "日本의 행동이 자기를 강요하지 않는 한 開戰할 마음이 없음을 천명" 하자 領事는 "그가 요청한 海軍시위는 日本도 청나라와 마찬가지로 大帝國의 友邦임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兩國이 合意하도록 바라는 것이 本國政府의 희망"을 밝히면서 "列強國의 共同행동이 한 국가의 행동보다 낮고 또한 향후 복잡성도 줄어진다"는 오코너의 의견을 전달하여 다시 英國이 러시아의 干涉이나 카시니의 三國會議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였다. 이에 李鴻章은 "어느 국가보다 英國이 단독으로 이번 일을 처리해 주면 더 좋겠다"고 말하면서 「聯露策」에 대한 자신의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음을 시인하면서 "朝鮮國王의 拘禁과 袁世凱의 追放은 충분한 開戰의 理由가 된다"<sup>81)</sup>는 점을 강조한 뒤 會談을 마쳤다.

이날 會議後 領事는 다시 "朝鮮에서 日本의 행동은 러시아에 의해 고무되었다. 만약 日本이 朝鮮을 점령할 경우 러시아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러시아가 極東에서 군사작전기지로써 造船所나 兵器庫를 설치할 朝鮮의 일부 利益讓步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대해 이미 日露間에 諒解가 이루어졌다"<sup>82)</sup>는 이른바 日露密約정보를 오코너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三國會議가 流布되는 가운데 李鴻章이 領事로 부터 英國의 海軍시위 拒

80) *Ibid*, Tel. No.22, Mr.Paget to the Earl of Kimberley, Tokio, July 3. 1894.

81) *Ibid*, Confidential. Inclosure in No.329, Consul Bristow to Mr. O'Coner, Tien-tsin, July 3. 1894.

82) Same to Same, No.330.

絶通報를 받는 자리에서 그가 다시 英國의 介入을 요청한 것은 자신의 外交 입지를 크게 약화시켰고 이같은 이유로 李鴻章측은 領事와의 會談직후 고의로 日露密約說에 의한 러시아의 朝鮮이권 획득 정보를 흘렸는데 이것이 분명히 약화된 李鴻章의 입지를 만회하면서 끝내 英國을 끌어들이기 위한 低段數의 術數였다는 것은 이 日露密約說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서 알수 있겠다.

## VI. 三國會議와 列強五國會議

領事로부터 李鴻章이 三國會議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지만 日本의 撤兵拒否가 러시아와의 어떤 默契에 의해 이루어 졌을 것이라는 정보를 받은 오코너는 7월 4일 우선 總理衙門을 방문하고 “李鴻章이 최근 카시니를 만나 豫備會談을 하는 것은 助言을 잘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兩國의 利害關係로 봐서 朝鮮問題는 淸日간에만 해결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하며 카시니와 李鴻章과의 접촉에 불만을 토로하고 淸日兩國의 직접協商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三國會議에 대한 衙門大臣들의 반응을 타진하자 大臣들은 “總督이 최근 취한 조처를 승인하지 않았다”<sup>83)</sup>고 하여 오코너의 日本과의 直接協商에 同感을 표시하였다.

이와 같이 이 三國會議를 둘러싸고 李鴻章과 總理衙門大臣들간의 의견이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코너는 本國政府에 李鴻章을 둘러싼 天津稅關長과 이 稅關顧問 데트링(Detring) 같은 사람들이 朝鮮문제가 러시아의 介入으로 해결되길 원하고 있고 특히 러시아는 介入의 代價로 승가리(Sungari)江의 航海權과 朝露國境條約의 修正 또는 朝鮮의 永興灣을 獲得할 것이라는 그 나름대로의 豫測과 함께 “改革을 받아들이지 않고 叛亂이 진압된다면 失政의 舊惡이 再現될 것이다”고 하며 日本이 主張한 朝鮮內政改革案의 妥當性을 報告하였다.

이날 小村 代理公使가 總理衙門을 방문하고 “朝鮮일은 兩國이 서로 協議해야지 第三國의 干涉을 바라지 않는다”<sup>84)</sup>고 하여 자기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83) *Op cit.*, No.176, Secret, Mr. O'Coner to the Earl of Kimberley, Peking, July 6. 1894. 中日交涉史料, 14卷, 第1062.

는 것은 이미 오코너와 小村간에는 기본적으로 朝鮮의 內政改革의 필요성에 대해 認識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日英協力關係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그리하여 오코너는 다시 總理衙門을 방문하고 本國政府가 시달한 基本妥協세가지 方針과 日本政府가 小村 代理公使에게 訓令한 妥協案을 土臺로 하여 이들 大臣들을 설득한 끝에 첫째, 朝鮮의 朝貢地位問題를 提起하지 않고 둘째, 協商을 시작함에 따라 兵力撤收 問題를 다루지만 日本은 청나라처럼 朝鮮에서 政治上, 商業上 同等한 權利와 特權을 享有한다는 두가지 점에 原則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衙門의 同意를 받았다<sup>85)</sup>.

이같은 사실을 보고받은 김브리外相은 즉각 파케트를 통해 日本政府에게 지체없이 協商을 재개하되 만약 日本이 朝鮮문제에 「구주열강의 介入위협」을 피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즉각 행동에 옮겨야 한다<sup>86)</sup>는 사실을 알리도록 지시하였다. 英國政府의 열강共同 干涉案은 淸日兩國의 聯露策이나 카시니의 三國會議를 저지하고 자신들의 주도하에 추진한 淸日직접교섭안에 의한 日本의 政治上 商業上의 特權과 內政改革案을 골자로 共同撤收를 점진적으로 성사시키려는 戰略이었다.

다음날 김브리外相이 青木公使를 통해 입수한 陸奧外相의 電文에는 "日本은 英國이 바라는 대로 만약 청나라가 朝鮮의 內政改革을 共同保障下에 추진한다는 두번째 조건에 同意한다면 청나라는 朝鮮독립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日本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고 또한 兵力撤收문제도 協商再開時 調整될수 있다는 신축성있는 태도를 보였다<sup>87)</sup>.

그러나 7월 5일 카시니의 부탁으로 朝鮮駐在 러시아대표 왜버(Waerber)가 李鴻章이 실제 朝鮮문제처리에 全權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三國會議에 대한 청나라의 반응을 타진하고자 總理衙門을 방문하고 "자기가 朝鮮에 즉시 歸任

84) *Ibid*, Confidential, Inclosure in No.330, Consul Bristow to Mr.O'coner,Tien-tsin, July 3. 1894.

85) *Ibid*, Tel.No.35, Mr.O'Coner to the Earl of Kimberley, Peking, July 5. 1894. 및 Inclosure 2 in No.326, Mr.Mutsu to Mr.Kamura, Tokio, July 3.1894.

86) *Ibid*, No.19, The Earl of Kimberley to Mr. Paget, Foreign Office, July 5. 1894.

87) *Ibid*, No.40, Mr.Mutsu to Viscount Aoki (Communicated to the Earl of Kimberley by viscount Aoki, July 6).

하는 것은 日朝간의 문제를 전념하기 위한 것이다. 러시아는 이번 일에 대해 아직 손을 떼지 않았다. 朝鮮에 돌아가면 袁世凱를 만나 協議할 말이 있으니 조금 기다려야 될것 같다”고 하며 카시나의 三國會議를 포기하지 않고 은밀히 이를 지원하고 있는 듯한 여운을 남겼다.

그러나 衙門大臣들은 이미 오코너와 小村 代理公使로 부터 英日兩國이 三國會議를 반대하고 當事國간의 直接協商을 바라고 있고 또한 汪公使로 부터 “三國會議는 카시나公使가 제기한 말이다”<sup>88)</sup>는 通告를 받은바 있기 때문에 “袁世凱에게 駐朝鮮 日本公使와 妥協的 態度를 갖고 協商하도록 지시한바 있다”<sup>89)</sup>고 하여 三國會議에 대해 전혀 언급을 회피해 버렸다. 이와 같이 總理 衙門大臣들이 三國會議에 대해 부인하는 태도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미묘한 시기에 왜버의 總理衙門방문을 수상히 여긴 오코너는 本國政府에 “카시나가 李鴻章에게 淸日露 三國 隣接國家의 會議를 받아 들이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왜버의 衙門방문을 확대 보고하면서 “만약 5個 強大國이 聯合하여 干涉한다면 월등히 좋을 것이며 자기와 總理衙門은 이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음<sup>90)</sup>을 타전하여 李鴻章과 카시나의 三國會議 沮止策으로 5개 強大國의 共同干涉案을 건의하여 사실상 李鴻章을 衙門으로 부터 고립시키고자 하였다.

더우기 7월 6일 日本政府가 히트로프에게 “日本은 절대로 朝鮮영토를 併할 의도는 없고 또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 한해 행동을 국한하며 日本軍은 朝鮮에서 평화가 회복되어 새로운 騷擾가 일어나지 않으면 撤兵할 것이다”라고 한 通告는 러시아政府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기에프外相도 이미 提議된 三國會議에 共同內政改革委員에 참가해야 된다는 李鴻章의 提議를 拒絕하고 말았다<sup>91)</sup>.

그럼에도 駐英國 青木公使는 마치 히트로프公使가 日本政府에 압력을 가하여 정치적 協定을 체결하고 대신 日本이 바라는 어떤 通商條約을 提議하여 條約改正을 가능하게 했다고 과장해 보고하면서 청나라의 朝鮮에 대해 日本

88) 中日交渉史料, 14卷, 第1087.

89) 蔣廷黻編, 전계서, 515.

90) *Op cit.*, No.36. Confidential, Mr.O'Coner to the Earl of Kimberley, Peking, July 6. 1894.

91) *Ibid*

보다는 러시아와의 어떤 諒解가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정보를 제공한 뒤 “英國을 배제하고 淸露간이나 이들 兩國과 日本간의 어떤 協定이 있을 경우 英國은 자국의 이익을 고려하고 또한 이러한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sup>92)</sup>는 日本의 입장을 밝혀 淸露密約說이 사실인 것처럼 더욱 확대시켰다.

이에 김브리外相은 즉각 東京 및 北京駐在 英國公使들로 하여금 當地政府에 “만약 英國을 제외하고 日露간 혹은 淸露간 혹은 이들 三國간에 朝鮮에 대한 어떤 協定도 英國政府에 의해 무관심하게 보아 넘길수 없다”<sup>93)</sup>는 단호한 입장을 通報하도록 訓令하고 동시에 駐파리 듀프린 (Dufferin)公使에게도 불란스政府가 淸日紛爭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共同干涉에 참여할 것인지 확인하도록 지시하였다.<sup>94)</sup>

그러나 카시니公使는 이날 히트로프로 부터 日本政府가 러시아의 勸告를 拒絶하여 이젠 “평화적 방법은 절망적”이란 電文을 받자 곧 本國政府에 “日本이...淸露를 배척하는 것은 그들이 단독으로 朝鮮을 통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日本이 朝鮮半島에서 獨占勢力樹立을 좌시하는 것은... 결코 러시아의 福이 아니므로 신속히 이 큰 계획을 決定해 주도록 요청하였으나<sup>95)</sup> 러시아政府는 기술한 바와 같이 “淸日분규의 渦中에 휩쓸리기를 원하지 않고 日本의 撤兵勸告를 우의적인 성격에 국한시켰음”을 알리면서 오히려 카시니의 注意를<sup>96)</sup> 환기시켰던 것이다.

그런데 오코너와 總理衙門大臣들의 5개 列強國의 共同干涉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확인한 李鴻章은 7월 8일 자신의 심복인 天津稅關長을 英國領事 브리스토우에게 보내 “카시니가 사실상 인접국 淸日露에 의한 朝鮮의 難題解決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이를 極秘에 붙여 주도록 당부하면서 “英國은 단지 商業方面에만 利害關係가 있을 뿐이지만 이들 三國은 정치적 利

92) *Ibid*, No.45, Memorandum by Mr. Bertie, p.24.

93) *Ibid*, Tel., No.50, The Earl of Kimberley to Mr.O'Coner, Foreign office, July 7. 1894. Tel., No.20, The Earl of Kimberley to Mr.Paget, Foreign Office, July 7. 1894.

94) *Ibid*, No.49, The Earl of Kimberley to Marquis of Dufferin.

95) 王信忠, 전게서, p.205.

96) *Opacit.*, Tel. of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to the Minister at Peking, No. 40 & 48(Ibid., p.510, p.514).

害關係도 있다...이 總督은 카시니의 말을 많이 들었으나 우리는 오히려 모든 열강이 이 문제에 참여하기를 좋아한다. 불란스, 美國 또한 그러하기를 원하고 있다. 朝鮮國王에게 이들 列強國家들의 介入을 呼訴하도록 電文을 보냈으니 우리는 英國이 主導權을 잡고 이들 列強國이 행동해 주도록 要求하길 바란다<sup>97)</sup>고 하여 처음으로 李鴻章과 카시니의 三國會議에 대한 秘密接觸說을 실토하고 오코너를 통해 英國政府에 5개 列強國의 介入을 요청해 주도록 부탁하였다.

그러나 오코너는 마침 이날 小村으로 부터 陸奧外相과 林次官이 어떤 열강의 仲裁도 받아들이거나 적어도 러시아의 介入만은 받아들이지 않고 또한 日本도 第三國의 干涉없이 當事者간에 직접 交渉한다는 사실을 재확인<sup>98)</sup>하였기 때문에 다음날 오전(7월 9일) 總理衙門을 방문하고 慶親王과 大臣들과의 2시간에 걸친 會談에서 第三國의 介入없이 淸日간의 直接 交渉으로 朝鮮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이에 따른 利點과 得策을 설명하여 만약 청나라가 屬邦問題를 제기하지 않으면 日本도 이를 제기하지 않고 朝鮮의 主權完整을 위한 共同委員會의 임명문제는 朝鮮內政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한 관계않는다는 確答을 받아내었다.

會談末尾에 오코너는 “러시아公使가 總督 李鴻章에게 淸日露 세 隣接國의 會議에서 문제해결을 提議했다”는 말을 다시 꺼내어 “이러한 三國의 조정은 日本이나 淸國의 이익이 될수 없다”는 것이 자기가 아닌 英國政府의 崇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자 大臣들은 “淸國이 러시아의 仲裁를 요청하지 않았고 또한 카시니公使가 提議한 三國會議도 사실상 李鴻章이 수락하지 않았다”<sup>99)</sup>고 해명하였다.

會談후 오코너의 요청으로 이날 오후 總理衙門을 방문한 小村 代理公使는 “지금 이 시점에서 撤兵을 허가하면 러시아에게도 곤란하다”고 전제하고 “日本은 全的으로 청나라와 協商하며 제3국의 介入을 원하지 않고 또한 카시니

97) *Ibid*, Confidential, Inclosure in No.362, Consul Bristow to Mr. O'Coner, Tien-tsin, July 8. 1894.

98) *Ibid*, Tel. No.37, Mr. O'Coner to the Earl of Kimberley, Peking, July 8. 1894. 中日交渉史料 14卷, 第1063.

99) *Ibid*, Confidential No.181, Mr.O'Coner to the Earl of Kemberley, Peking, July 10. 1894.

의 三國會議를 승낙한 적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하였다. 그러나 總理衙門大臣들은 小村에게 “日本은 청나라와 동등한 권리를 거론않았으나 오코너에게 약속한 內政改革의 共同위원 임명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撤兵날짜만 決定되면 撤兵完了를 기다린후 다시 다른 것을 논하자”고 하여 撤收문제를 거론한 뒤 다른 문제를 논의하자고 고집함으로써 會談은 原點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런데 문제는 衙門이 오전에 오코너에게 李鴻章과 카시나의 三國會議를 강력히 부인한 시점에서 이날 오후 會談에서 衙門大臣들이 小村 代理公使에게 이 三國會議를 다시 거론하면서 撤兵을 協商재개의 선결조건으로 주장한 것은 결과적으로 오코너와 小村으로 하여금 이 會談에 의한 「清露密約說」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할 오해의 여지를 충분히 남겼다.

그런데 雪上加霜으로 이날 카시나마저 파로프 參事를 李鴻章에게 보내 “비록 러시아政府는 日本이 무리인줄 알고 있으나 단지 우의로써 日本의 撤兵과 청나라와의 善後策을 다시 協商하도록 勸告할수 있지만 병력을 사용해 日本人을 강요할수 없다. 朝鮮內政이 반드시 改革해야 한다는 여부에 대해 러시아는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러시아政府의 입장을 전달하자 다시 한번 크게 실망한 李鴻章은 “지난 6월 28일 카시나가 당신을 보내 러시아政府가 강제로 日本으로 하여금 撤兵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하고 만약 日本人이 듣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전후가 맞지 않는 말을 한다”고 카시나의 실언을 따졌다.

이에 파로프 참사는 “우리들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러시아政府가 아마 이미 다른 사람이 저지하는 말을 우리들도 별 도리가 없고 카시나도 앞으로 淸日會議에 간여하지 않을 것임”<sup>100)</sup>을 알려 李鴻章과 카시나의 三國會議開催는 사실상 실패하고 말았다.

이러한 가운데 김벌리 外相은 7월 7일 駐英獨逸公使 하쯔펠트(Count Hatzfeldt)를 만나 淸日간의 合意를 얻어내기 위해 獨逸, 불란스, 美國 러시아 共同干涉案을 각 政府에 提議했음을 알리고 특히 英國과 獨逸 兩國은 이 지역에서 많은 貿易을 하고 있어 淸日간의 戰爭으로 야기될 商業上의 심각한 손해를 막는 것이 우리의 共同利益이기 때문에 獨逸도 英國과 함께 참여해 주기를 요청하였다<sup>101)</sup>.

100) 中日交涉史料, 14권, 제1110.

그러나 天津稅關長을 통해 李鴻章과 카시나의 秘密接觸과 衙門의 三國會議 否認에도 불구하고 小村 公使로 부터 衙門의 先撤兵 後內政改革 방침을 전해 들은 오코너 公使는 브리스토 領事를 다시 李鴻章에게 보내 淸日간의 직접 교섭을 설득하도록 지시하였다.

7월 11일 오전 10시 領事와의 면담에서 李鴻章은 자기는 카시나의 勸告로 병력을 더 파견하지 않고 있는데 日本이 왜 天津條約을 파괴하는지? 日本이 나쁘고 청나라는 옳으니가 英國은 우리를 도와야 한다“. 오코너와 英國政府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協力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고 말하면서 李鴻章은 “본인은 러시아의 협조보다 英國이 이 문제를 신속히 만족하게 해결해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피력하면서 “英國이 日本에 매우 우호적이며 또한 이번 紛爭에서 그나라에 쏠리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은근히 英日간의 協力에 불만을 토로하였다.

이에 領事는 “英國은 청나라와 마찬가지로 日本에도 매우 친밀하다“고 대답하여 日本과의 친밀한 관계를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會談에서 李鴻章은 의식적으로 러시아와 불란스가 매우 친밀하여 佛公使가 카시니를 만나고자 天津에 올것이라고 말해 英國의 介入을 적극적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만약 실패하면 李鴻章은 不得不 러시아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강력한 인상을 받았다<sup>102)</sup>.

그리하여 淸國政府나 李鴻章이 아직껏 聯露策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오코너公使는 그 다음날 7월 12일 淸日간의 교섭의 결렬을 막기위해 本國政府가 구상하는 5개국 共同干涉안을 갖고 總理衙門을 방문하여 장장 4시간 동안 會談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코너와 慶親王은 開戰이 淸日兩國에 無益하다는 認識을 같이하였으나 淸國政府가 아직껏 방법을 정하지 않는 것은 러시아의 調停結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오코너公使가 묻자 慶親王은 “그런 일이 없다“고 否認하였다.

101) *Opcit.*, No.140, Confidential, Mr. Howard to the Barel of Kimberley, St. Petersburg, July 5. 1894.

102) *Ibid*, Confidential. Inclosure in No.365, Consul Bristow to Mr.O'Coner, Tien-Tsin, July 11. 1894.

이에 오코너公使는 다시 淸日露 三國會議說의 真相을 묻자 慶親王은 “러시아와 朝鮮은 가까운 이웃이고 日本이 撤兵하지 않을려고 하기때문에 會談하고자 한다. 다른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오코너公使는 “日本이 撤收하지 않더라도 本國政府는 歐洲 각국과 協力하여 日本의 撤兵을 제촉할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자 慶親王은 “이 방법은 좋으나 朝鮮의 소요를 막기위해 반드시 먼저 서울의 병력을 撤收시켜야 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다시 되풀이한후 “만약 公使가 中國政治人이라면 어떻게 助言할 것인가?”고 반문하였다. 이에 오코너公使는 “자기가 벌써 수차례에 걸쳐 얘기하였듯이 원칙적으로 日本의 提議를 받아들여 필요하다면 日本과 함께 朝鮮內政改革의 참여에 관심을 가지겠다”고 솔직히 대답하자 慶親王은 그 책임을 小村公使가 아직 회신을 주지않는데 전가시킨후 “체면을 세우기 위한 방법으로 중국으로서는 열강의 조정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公使는 다시 “天津에서 진행되고 있는 協商의 方針과 責任이 總理衙門에 있는지 혹은 지금 분명히 러시아公使와 교섭진행중인 李鴻章에게 있는지 여부를 묻자 慶親王은 “직접 朝鮮에 관계되기 때문에 일부는 總督에게 일부는 衙門에 있지만 李鴻章과 總理衙門大臣들은 자유롭게 의사를 교환하고 있다”고 대답하여 李鴻章과 總理衙門大臣간의 책임소재와 문제해결의 最終決定權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하지 않았다.

이에 오코너公使는 “總理衙門이 朝鮮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시니가 提議한 淸日露 三國會議를 비밀에 붙여 말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자 慶親王은 “자기들도 전번에 公使가 처음 말했을때는 몰랐고 또한 황제자신도 이 일이 있는지 삼일동안 알지 못했다”<sup>103)</sup>고 변명해 버렸다.

이 會談을 통해 오코너公使는 자기나름대로 5個國 共同干涉案을 제시하여 衙門과 李鴻章의 同意를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과 같은 긴박한 상황하에서도 朝鮮問題의 最終決定權이 분명히 누구에게 속하는지조차 알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앞으로 5個列強國의 介入問題에 대한 해답도 결코 쉽게 얻을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103) *Ibid*, No.193, Confidential, Mr.O'Coner to the Earl of Kimberley, Peking, July 13. 1894.

## VII. 第2次 絶交書와 李鴻章의 妥協案

이와 같은 오코너公使의 끈질긴 仲裁노력에도 불구하고 7월 14일 小村公使는 總理衙門에 게 “청나라가 여전히 日本軍의 撤兵만을 주장하고 內政改革을 할 뜻이 전혀 없으니 이후 예상하지 않는 사변이 일어난다면 日本政府는 그 책임을 지지않는다”<sup>104)</sup>는 요지의 제2차 절교서를 전달하여 「開戰의 口實」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淸國政府는 軍機處를 통해 李鴻章에게 이 사실을 通告하면서 신속히 「進兵之策」을 준비하여 戰爭준비를 명령함<sup>105)</sup>에 따라 李鴻章은 다음날 宋慶소속의 東三省 練軍과 左寶貴 소속병력 및 葉志超 一軍의 신속한 파견준비와 軍火력, 기계 및 식량보급 등을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자신의 복안을 보고하여 開戰에 대비한 준비를 서둘렀다<sup>106)</sup>.

이와 때를 같이하여 淸日兩軍이 朝鮮에서 撤兵에 同意할 희망이 거의 없다고 판단한 英國政府는 이날 저녁 青木公使를 통해 日本의 제2차 절교서의 電文을 전해받자<sup>107)</sup> 즉시 오코너와 파케트 公使에게 “淸日兩軍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日本은 남쪽에 淸國은 북쪽에 각각 멀리 격리시키되 다시 한번 시간을 주어 兩國이 協商을 하는 것이 上策임”을 訓令<sup>108)</sup>하였다.

그리하여 오코너公使는 다음날(7월 15일) 급히 領事館의 코크번(Henry Cockburn)을 재삼 李鴻章에게 보내 그의 의견을 타진하였다. 이 자리에서 전과는 조금 다른 태도이지만 李鴻章은 제2차 절교서가 곧 皇帝와 政府에 대한 侮辱이며 日本과의 開戰도 不辭하겠다는 단호한 태도로 撤兵을 고집하자 코커번도 “日本의 침략은 러시아의 朝鮮併합이 우려되고 더욱이 日本이 러시아의 撤兵을 拒絶한 입장에서 內政改革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 없이 撤兵하겠느냐”, “日本軍보다 청나라의 陸海軍이 강력한지 그 實相을 알고서 戰爭을 결심

104) 信夫淸三郎, 전게서, pp.405-6. *Op.cit.*, Confidential Inclosure in No.368. Japanese Government to Chinese Government.

105) 中日交涉史料, 14권, 제 1183과 1147.

106) 李鴻章全集, 電稿, 16卷, p.19 및 蔣廷黻編, 전게서, p.528.

107) *Ibid.*, Tel. Inclosure in No.76, Mr.Mutsu to Viscount Aoki, Received July 14. 1894 evening.

108) No.55, The Earl of Kimberley to Mr. O'Coner, Foreign Office, July 14. 1894. No.70, The Earl of Kimberley to Mr. Paget, Foreign Office, July 14. 1894.

하고 이를 말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설득함으로써 두 사람은 日本의 提議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끝에 처음으로 다음과 같은 청나라측의 修正妥協案을 만들어 내었다:

즉 첫째, 內政改革을 비롯한 兵制의 財政改革을 이행하기 위해 共同委員會와 共同위원회에 대해 淸日朝 三國에서 각각 2명의 共同委員을 두고 이들이 朝鮮의 전반 사정을 조사한 뒤 보고한다. 그러나 청나라만은 동위원의 提議에 따라 朝鮮國王에 조언할수 있으나 이를 강요할수 없고 둘째, 日本이 朝鮮에서 청나라와 동일하게 政治上 및 商業上 권리를 향유해야 한다는 日本의 提案에 「政治上」이란 말을 절대로 기입하지 않으며 셋째, 協商을 시작함으로써 병력을 撤收할 것이라는 조항은 지금 協商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撤兵은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sup>109</sup>).

會談末尾에 李鴻章과 코커번은 이 修正案을 누가 總理衙門에 通告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한참 논란한 끝에 李鴻章의 要求대로 결국 오코너가 總理衙門의 同意를 얻기로 하되 日本側과의 再協商會談은 北京보다는 天津에서 開催한다는데 合意하였다. 이와같이 두 사람이 이러한 修正妥協案에 원칙적으로 同意하고 구체적으로 天津에서 日本側과 이를 協商하기를 合意하기에 이르기까지 코커번은 여러 차례 李鴻章에게 淸日 兩國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좋으나 만약 그것이 실패하면 列強諸國의 共同干涉이 「次善策」임을 밝혀 英國政府는 그의 聯露策을 분명히 거둬 반대함으로써 두시간의 會談을 마쳤다<sup>110</sup>).

會談후 李鴻章은 즉각 駐英公使에게 김브리외상이 日本軍은 南쪽으로 淸國軍은 北쪽으로 각각 후퇴하여 당분간 撤收를 연기한후 內政改革協商을 再開한다는 提案을 수락한다는 사실을 通告함에 따라 公館의 마카트니(Sir Haliday Macartney)는 英國政府에 이 사실을 通告하는 자리에서 駐朝鮮 日本公使가 이미 國王에게 25개조의 行政改革具體案을 제시하여 10일 이내에

109) 일본측은 첫째, 변란의 진정 둘째, 상기한 첫째의 내용이지만 淸日朝 삼국에서 공동위원 각 2명이란 말이 없으며 셋째, 상기한 둘째의 내용과 같으나 철병의 내용이나 회담장소 등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있다. 信夫淸三郎, 전제서, p.436.

110) *Op cit*, Confidential, Inclosure in No.369, Mr.Cockburn to Mr.O'coner, Tien-tsin, July 16. 1894. No.50, Mr.O'Coner to the Earl of Kimberley, Peking, July 18. 1894.

이에 대한 답변을 강요하고 있음을 알리면서<sup>111)</sup> 歐美諸國이 介入하여 日本의 朝鮮撤收를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희망하고 있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淸國政府도 協商재개를 준비할수 있다<sup>112)</sup>는 사실을 전하자 김브리외相은 “協商이 시작되면 먼저 撤收의 시간과 방법의 해결부터 토의하는 순서임”을 알리면서 그에게 우선 協商을 재개토록 勸告하였다.

오코너公使로부터 淸國이 英國의 5개列強國 干涉안과 英國의 妥協案에 同意했다는 電文을 받은<sup>113)</sup> 김브리외相은 즉각 靑木公使를 불러 이 사실을 알리는 동시에 파케트公使로 하여금 日本政府에 이를 알려 그가 제시한 日兵力은 朝鮮半島의 南端을, 淸國兵力은 北端을 점거하고 朝鮮內政改革協商을 재개한다는 英國案에 대해 청나라와의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代案을 제시해 주도록 訓令하였다<sup>114)</sup>.

오코너公使로 부터 李鴻章이 양보한 英國조정의 修正案과 김브리외相의 訓令을 받은 파케트公使는 7월 19일 日外務次官을 방문하여 同 修正案을 전달한 뒤 淸日兩國이 당분간 남북지역에 각각 주둔하고 列強國의 보장하에 撤兵문제를 協議하기를 바란다”는 英國政府의 뜻을 전하고 20일 까지 日本政府의 입장을 밝혀주지 않으면 淸國政府는 增兵하겠다는 뜻을 알렸다<sup>115)</sup>.

이때 日本政府는 朝鮮에 最後通牒을 보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英國의 調停誠意와 努力을 외면할 수 없어 이 기간 淸國政府의 兵力增派는 日本에 대한 敵意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히면서 다음과 같은 條件을 제시하여 5일 이내 回答을 줄것을 要求하였다:

첫째, 現下 朝鮮의 상황은 日本의 提案을 淸國에 提議하였을때 오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朝鮮內政改革에 대한 淸國委員의 共同協力은 未來에만 限定되어야만 하고 또한 日本이 이미 단독으로 착수한 사항은 干涉하지 않는다... 兩國政府는 최선을 다해 朝鮮國王이 內政改革을 받아들일도록 약속한다. 둘

111) *Ibid*, No.152, The Earl of Kimberley to Mr.O'Coner, Foreign Office, July 16. 1894.

112) *Ibid*, No.151 A. The Earl of Kimberley to Mr. O'Coner, foreign Office, July 14. 1894.

113) *Ibid*, No.48, Mr.O'Coner to the Earl of Kimberley, July 18. 1894.

114) *Ibid*, No.23, Earl of Kimberley to Mr.Paget, Foreign Office, July 18. 1894.

115) *Ibid*, No.50, Mr.O'Coner to the Earl of Kimberley, Peking, July 18. 1894.

째, 朝鮮에서 淸國과 同等한 權利를 享有한다는 日本의 要求에 대해 「政治上」이란 말은 반드시 기입한다<sup>116)</sup>. 이와같이 日本은 淸國의 增兵과 朝鮮內政干涉의 淸國參與마저 차단하여 버렸다

파케트公使로 부터 日本이 實行不可能한 무리한 조건을 提議했다는 電文을 받은 英國政府는 다음날 즉각 公使로 하여금 日本政府에 “日本政府의 이번 淸國에 대한 要求는 그들이 일찍 協商하고자 하는 조건과는 맞지않고 또한 日本은 淸國에 전달하여 提案한 協商의 기초보다는 보다 광범위하게 要求하고 있다. 日本政府가 이미 단독으로 이 문제를 착수함으로써 淸國을 배제하려고 하는 것은 1884년 「天津條約의 精神」을 위배한 행동임으로 만약 그와같은 고압적인 성격의 政策을 고집하여 淸國과의 戰爭을 초래한다면 日本政府는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sup>117)</sup>고 강력히 항의하도록 打電하였다.

### VIII. 淸日 陸海軍의 實相과 戰力比較

日本의 제2차 絶交書提議를 계기로 淸日간의 再協商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한 킴브리외相은 7월 16일 海軍省 情報國이 淸日陸海軍의 戰力을 비교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는데<sup>118)</sup> 軍事情報局長 브리지(Cyprian A.G. Bridge)의 報告書에는 淸國軍의 陸軍은 60만으로 步兵 47만, 騎馬兵 10만, 砲兵 3만명 합계 60만이며 그외에 民兵數를 합치면 100만에 달하는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淸國의 무기는 歐洲에서 구입한 다소 낡은 종류의 소총, 활공총, 전장총, 개조한 전장총, 호커스리(Hotchkiss-Lee)와 상당한 수의 윈체스터(Winchester)연발총과 같은 현대모형의 소총을 소유하고 있으며 무기와 함께 구입한 탄약은 대체로 오래되어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많은 화기를 수입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淸國陸軍은 오늘날까지 거의 화승총으로 무장하고 있어 政府당국은 수입무기를 각 부대에 분배하지

116) Ibid, No.36, Mr.Paget to the Earl of Kimberley , Tokio, July 19. 1894.

117) Ibid, Tel., No.25. The Earl of Kimberley to Mr. Paget, Foreign Office, July 20. 1894.

118) *Op.cit.* Admiralty to Foreign Office, Intelligence Division, Admiralty, July 16. 1894.

않고 있는 것 같고 砲兵은 상당한 양의 오래전에 제조된 크럽(Krupp) 야전포 및 다종의 포를 구비하고 있고, 騎兵은 작은 타타르(Tatar) 조랑말을 타고 현대 칼빈총과 일부는 화승총과 활, 및 화살로 무장하고 있다. 淸國軍은 組織된 運輸, 運送體制나 醫療奉仕施設도 없는 것 같고 특히 戰爭勃發시 자신의 직업에 대한 두드러진 의욕을 갖도록 기대할 수는 없다... 이러한 淸國 兵士들은 현재의 조건과 淸國軍 장교하에서는 쿠리(coolie)수준보다 나은 것이 없는 불결하고 게으르고 훈련조차 받지 못한 상태로 이들은 군복무의 기본적인 이념마저 없다<sup>119)</sup>.

그러나 이에 비하여 日本은 1878년 參謀局을 陸軍省에서 분리하고 天皇直屬下에 참모본부를 둔<sup>120)</sup> 이후 이들 陸軍은 모든 면에서 잘 組織되고 훌륭한 장비와 완벽한 훈련, 그리고 東洋人에게 있어서 가장 보기 드물게도 값싸고 정직하게 관리하고 있어 매우 칭찬할 만한 軍隊이다라고 말한 英國인 바로우(E.G.Barrow) 中領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문자 그대로 완벽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비록 平和時에 日本軍의 數는 7만 5천에 불과하여 이를 동원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戰爭時 25만까지 擴大, 充員할 것으로 추산된다.

뿐만 아니라 각 師團, 旅團, 및 聯隊는 그의 특정지역과 규정된 지역에서 신병을 모집할 수 있고 고정된 본부를 갖고 있다. 앞서 말한 7만 5천명, 砲兵이 6천명, 騎兵이 4천명, 기타 軍務兵力이 1만명으로 합계 7만 5천으로 이들 가운데 步兵은 대단히 훌륭하고 砲兵 또한 뛰어 났으며 騎兵만은 평범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더우기 步兵이 소지한 무기는 東京 조병창에서 만든 수동식 연발총이며 大阪 조병창에서는 大砲가 만들어 졌고 또한 탄피도 주조하고 있다. 野戰軍은 약 240문의 大砲를 갖고 있으며 이 대포는 그리프 체계를 조금 수정해서 만든 것이다. 육군의 장교들은 대부분의 경우 日本帝國의 軍官學校에 합격한 사람들로써 英國 獨逸의 軍事顧問으로 부터 엄격한 훈련을 받은 자들이다.

요약하면 淸國陸軍은 숫자는 많으나 모든 면에서 훈련이 부족하고 組織이

119) *Ibid* Confidential Inclosure in No.91. Memorandum on the Relative Values of the Armies of China and Japan, Chinese Army.

120) 이러한 淸國육군의 실상은 일찍 日本의 참의 江藤新平이 지적한 바와 같이 “人愚兵弱, 武器不整, 戰術不精”이란 말로 표현될 수 있겠다. 大久保利謙, 近代史料, pp.213-5.

불안정하며, 지휘자가 전적으로 적으며, 특히 부패한 淸國政府官吏의 官僚體制에 대한 잠재적인 불만이 강한 조건하에 戰爭은 거의 상상할 수 없었다(121).

이와 달리 日本육군은 20만 이상을 동원할수 있는 체제하에 잘 정비되고 組織되어 戰爭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을뿐 아니라 또한 신속하게 행동하고 자발적으로 복종하며 열광적인 愛國心을 갖고 있다. 더우기 이들의 輸送과 醫療施設은 잘 組織되고 정비되어 있으며, 또한 이러한 훌륭한 조건하에 그들의 무기마저 좋으므로 모든 분야에서 비교해 볼때 日本의 陸軍과 淸國의 陸軍은 19세기의 軍隊와 중세기 軍隊로 비유할수 있다. 淸國이 日本과의 戰爭에서 성공할수 있을 것이라는 유일한 희망은 방위면에서 영토본토를 위협하는 공격에 대해 2-3년 기간이상 軍事作戰을 무한히 연장하여 持久戰을 펼쳐 나갈수 있는 것 이외에 별 도리가 없으며 오직 모든 노력을 다해 歐洲軍隊模型으로 再組織하는 방법뿐이다(122).

兩國海軍의 실상을 본다면 淸國의 海軍은 1875년 「海防整備命令」에 의해 李鴻章과 沈 (보)楨이 각각 南北洋 海防을 맡은 이래 10여년간 南洋, 北洋, 上海(南洋은 長江을 제외하고 江蘇 浙江 福建 廣東의 4성을, 北洋은 奉天 直隸 山東의 3省을 관할함) 등 3대지구의 海軍을 육성하여 사실상 政治 外交 海防의 책임을 한 몸에 지녔다. 1879년 日本이 琉球를 併合하자 英國人 天津稅關使 하트(Robert Hart)가 總理衙門에 海防章程을 제출했으나 "하트가 利權을 갖고 있는데 또 兵權마저 잡고자 한다"는 반대로 總海防司 설치의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1884년 越南문제로 인해 급히 海軍衙門설치를 고려하다 1885년 淸佛戰爭時 마니(馬尼)해전에서 福建 海軍所屬 艦隊 兵船 7척이 불란스 戰艦에 의해 일거에 전멸당한후 海軍衙門을 정식으로 설치하고(123) 1888년 北洋海軍이 정식으로 組織되어 大蓮 大沽 旅順 威海衛 膠州灣 등에 基地를 만들어 일정한 作戰과 防衛能力을 갖추었다.

그리하여 1894년 이전 北洋 南洋 및 廣東艦隊는 각종 軍艦 78척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중 외국으로 부터 구입한 선박은 30척 이상에 달하였다(124).

121) *Op cit.*, Inclosure in No.91, Japanese Army.

122) *Ibid*, Japanese Army.

123) 王家儉, 中國近代海軍史論集, 臺北, 文史哲出版社, 1984, pp.200-211.

특히 北洋海軍의 주력艦隊 7척은 獨逸과 英國에서 구입한 것으로 그 전력을 보면 1881년 제조된 7천 4백톤의 丁汝昌 提督산하 旗艦 定遠 戰艦을 주력으로 1882년 提督 맥스핀(Mcsiffin) 함장이 이끄는 2급 전함의 鎮遠은 거대한 철갑선이나 定遠艦은 威海衛에서 鎮遠艦은 大連港에서 수리중에 있는 상태였다.

武裝 巡洋艦으로 1887년제 2천9백톤의 廣乙 南洋艦隊 소속의 선박이나 식수가 없어 항상 稅關船舶으로 수병에게 식수를 공급할 정도로 낡았고 2천톤의 來遠艦은 해안방어선으로 1888년 福州造船所에서 제조한 것이며 平遠艦 또한 南洋艦隊 소속의 非武裝 3급 巡洋艦이며, 1883년제 2천 3백 10톤의 泰遠艦, 1886년제 2천 3백 10톤의 泰遠艦과 동급의 經遠艦, 그리고 帆船으로 포를 장비한 1881년제 3백 50톤의 超勇과 揚威정도이며 이들 선박에 고용한 외국인은 무려 445명에 달하여 南洋 福建 및 廣東艦隊의 船舶數는 월등히 많으나 모두 오래되고 낡고 또한 遠洋을 순항하지 못한 선체들 뿐이었다<sup>125)</sup>.

그러므로 이러한 淸國海軍의 실상을 일찍 兵部左侍郎 黃體芳은 “海軍은 淸國沿海의 海軍이 아니라 여전히 直隸 天津의 海軍이며, 海軍衙門의 海軍이 아니라 李鴻章의 海軍이다”라고 海軍中央化의 실패<sup>126)</sup>를 혹평한 것처럼 李鴻章은 자신이 관할한 淮軍의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인력과 물력을 동원해 北洋海軍을 만들어 이를 곧 자기 개인의 政治的 地位를 공고히 하는 정치적 기반으로 삼았다<sup>127)</sup>.

더우기 중앙政府가 재정상 일정한 海軍예산을 갖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北洋艦隊 전체의 活動과 訓練은 보잘것 없었고 開戰시 이들 艦隊가 얼마나 버터 나갈수 있을지가 의문이었다. 특히 1888년에서 1894년 까지 6년간 단지 3년마다 거행되는 海軍대사열, 특히 北洋海軍提督 丁汝昌 휘하의 함정을 중심으로 福建水師 廣東水師의 정예를 선발해 聯合艦隊를 편성하고 육상은 盛京 直隸 山東의 3성에 주둔하는 신식 軍隊가 참가하는 대 규모의 육해聯合의 대 훈련이 있었으나 해병들의 실제 사격훈련도 1890년과 1892년 두차례 뿐이었

124) 張仁善, 簡析近代中國海防實踐失敗的原因, 中國歷史哲學, 1993, 第3期, pp.8-9.

125) *Op cit.*, Inclosure in No.89, Comparative Ststerment of the Chinese and Japanese Navies, July 16. 1894.

126) 王家儉, 전게서, p.224.

127) 張仁善, 전게서, p.9.

고 北洋海軍을 중심으로 탄약군수품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었다<sup>128)</sup>.

더우기 최고지휘관 丁汝昌提督은 근대海軍이 필요로 하는 科學技術 戰略思想 및 遠洋作戰을 지휘하는 智識과 經驗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실권은 일찌기 臺灣省 巡撫를 겸임한바 있는 기함장겸 참모장인 北洋海軍 右翼總兵 劉銘傳이 갖고 있었다. 또한 그는 左翼總兵인 鎮遠함장에 同鄉出身을 기용하여 자기중심의 인사행정을 하였으며 이외에 各艦部長과 海軍部내에도 자기 인물을 임명하여 그가 사실상 實勢를 점하였다<sup>129)</sup>.

더우기 이들 海軍장교들은 너무 부유하여 戰爭할 마음조차 없었으며 丁汝昌을 정점으로 해서 아래 사병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마작놀음을 하거나 또는 일부 장교는 水兵들과 아편마저 피워 이러한 것들이 곧 이들 수병들을 타락시켰고 軍紀마저 파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들은 近代 西洋의 國家一體나 民族主義概念마저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만약 전시에는 지위계통과 편대의 混亂惹起는 물론 혼신을 다해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明若觀火일 수 밖에 없었다<sup>130)</sup>. 특히 해병이라기 보다 기마대 領官出身인 丁汝昌 提督은 비록 개인적으로는 강직한 武人이었으나 복잡한 新式海軍의 지식이 부족하여 능률적인 사령관의 의무를 수행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朝鮮에서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어야 마땅할 劉銘傳도 사실상 심한 아편흡연자이었으며 이로 인해 失明에 가까운 상태였다<sup>131)</sup>.

이에 비해 日本의 海軍은 순진한 皇帝의軍隊로서 그들의 組織도 서양의 海軍組織의 원형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고 日本艦隊의 모든 乘務員과 대부분의 장교들도 西洋海軍의 방법에 따라 육성되어 사실상 다른 것은 모르는 상태였다. 日本艦隊의 함정은 원양을 순항하며 이들 함장들도 이 함정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운영할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淸國의 艦의 톤수나 포문의 수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日本

128) 程鎮芳, 從北洋艦隊的平時訓練與素質看甲午海戰失利的原因, 方伯謙研究, 1993, 安徽史學, 第2期, pp.55-56. 王雲生, 전개서, 제2권, pp.3-13.

129) John L. Rawlinson, *China's Struggle for Naval Development 1839-1895*,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1968, pp.250-7.

130) *Op.cit.*, Inclosure 2 in No.147, Memorandum. No.205, Confidential, Mr. O'Coner to the Earl of Kimberley, Peking, July 20. 1894.

131) *Ibid.*, No.205, Confidential, Mr. O'Coner to the Earl of Kimberley, Peking, July 20. 1894. Inclosure 2 in No.407, Memorandum.

海軍의 組織, 軍기, 훈련 등은 월등히 뛰어났고 그들 국가와 민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졌기때문에 日本은 사실상 군사적이나 정신적인 면에서 해양의 강대국으로 간주해도 무방하였다<sup>132)</sup>.

이와 같은 淸日陸海軍의 戰力과 組織面 그리고 精神的인 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日本政府는 1893년 3월 淸國과의 開戰을 가상하고 참모본부 차장 川上 육군중령일행 5명을 朝鮮, 天津, 北京 및 南京 등지에 파견하여 군사부서, 무기장비, 기후, 지형 등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조사하여 정보를 수집하였다. 더우기 이이러니할 한 것은 開戰 수개월전 이들 일행은 天津에서 李鴻章의 환대를 받고 天津機器局의 총, 포, 화약의 제조과정을 참관하고 天津武備學堂(군사학교)을 방문해 淸國軍의 步兵과 砲兵의 훈련과정마저 참관하는 등 친히 淸國軍의 실상과 그들의 실력을 보았기 때문에 “淸國은 결코 겁낼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淸國과 戰爭을 不辭한다는 侵略的 野心을 품게 되었다<sup>133)</sup>.

이처럼 淸日陸海軍의 戰力이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한 淸國政府內에서는 兩國의 紛爭을 에워싸고 和戰과 開戰의 격론이 벌어졌다. 즉 7월 12일 翰林院 待讀學士 文廷式, 御使 張仲 등은 日本을 견제하기 위해 대군을 파견한 李鴻章이 수십년간 洋務처리를 알면서도 英國 러시아와 같은 서양인에 의존한 外交의 잘못을 공격하는 것을 시발로 하여 14일 張秀直이 日本과의 開戰을 15일 禮部右侍郎 志銳가 北洋陸海軍 사령관 葉志超와 丁汝昌提督을 인신공격하면서 開戰의 의견과 함께 進兵의 策을, 18일 給事中 余聯元 등은 東京을 공격한 다음 海口를 지키면서 日本과 일전을, 또한 廷臣 戶部上書 翁同수는 일면 備戰, 일면 協商이란 타협적 태도로 수습책을 주장하였고, 19일 翰林院 會廣均은 主戰論을 상주한데 이어, 20일 龐鴻書가 또한 開戰을 선포할 것을 저마다 주장하는 등<sup>134)</sup> 사실상 國論이 통일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132) *Ibid*, Inclosure in No.89.

133) 鄭瑞俠, 전계문, p.70.

134) 中日交涉史料, 제14, 1130, 1132, 1169, 1172, 1177, 1194호

## XI. 李鴻章의 備戰과 日本의 決戰

한편 오코너公使는 7월 20일 淸日紛爭의 해결에 대해 西太后로 부터 이미 全權을 부여받은 李鴻章에게 급히 코커번을 다시 보내 淸國의 修正案에 대한 日本이 제시한 조건을 協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날 오후 5시가 지난 후 만난 李鴻章의 표정은 지난 會談때와는 달리 우울하고 아픈 것같이 보였다.

이 자리에서 코커번은 日本이 제시한 조건에 대한 오코너公使나 英國政府의 견해를 말하지 않고 단지 日本政府가 말한 조건을 알리면서 “이 기간(淸國이 日本에게 회답하기 전) 淸國의 兵力增派는 脅迫으로 看做한다”고 한 公文과 日本이 절대 政治上의 말을 기입토록 주장한 修正案의 조건문서를 전달하자 의외로 李鴻章은 두번이나 “나는 이 조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衙門에 回答을 하도록”라고 말하였다. 이에 코커번은 “이 수정조건은 總督이 日本의 提案을 직접 받아들인 修正案에 대한 日本의 조건임”을 말하면서 “오코너公使는 總督이 어느 정도까지 이를 수락할 것인지를 알려달라는 것이다”라고 부언하여 설명하자 李鴻章은 “만약 日本이 이같은 불가능한 수정조건을 제시한다면 자기는 더 이상 協商을 拒絶해야겠다. 문제는 사실상 總理衙門에게 있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으며 이 이상 더 干涉하지 않고 이 문제를 衙門에 맡기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여 그동안 政府內 고위관리들이 淸日兩國의 紛爭을 둘러싼 和戰輿論에 대한 자신의 불편한 심기를 들어내었다.

이에 코커번은 “總理衙門의 大臣들보다 日本의 要求에 대해 각하의 해박한 경험으로 철저한 判斷力을 갖고 어느 정도 日本의 조건을 고려해 주도록” 간곡히 說得하였으나 李鴻章은 끝내 이 문제를 더 이상 다루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후 “日本이 계속 增兵을 하여 派遣하면서도 淸國軍의 增兵을 敵意로 看做한다는 것은 日本의 오만이며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이다.... 진심으로 평화를 갈망한다”는 말을 몇번이나 되풀이 하면서 “日本의 조건이 淸國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고 명예로우며 평화적인 해결이 나도록 바란다”는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거듭 표명하였다. 이어 그는 “皇帝께서도 朝鮮問題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계속 要求하고 있음”을 전하면서 “자신도 이 문제가 중국의 체면과 명예에 걸맞는 조건으로 반드시 해결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戰爭을

하는 것이 낫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몇번이고 때리면 그냥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반문한 뒤 “당신들은 日本을 좋아하고 또한 매일 小村日本公使를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이나”고 물었다.

이에 코커번은 확실히 최근에는 그를 자주 만났다는 것을 시인하자 李鴻章은 “왜 그러면 당신들은 小村公使에게 좀더 영향력을 행사하여 더 좋은 평화의 기회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 지” 불만을 토로하였다. 이러한 李鴻章의 투정섞인 항의에 코커번은 “小村公使뿐만 아니라 日本政府도 확실히 淸國이 패자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각하의 의향에만 따를 것이다”<sup>135)</sup>라고 대답하여 李鴻章의 최종적인 태도가 문제해결의 핵심임을 상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확답을 주지않았다.

그러나 李鴻章이 日本의 조건에 대해 명확한 태도표명을 유보한 것은 그가 7월 14일 日本의 절교서가 전달된 전후로 해서 러시아의 지원을 기대할수 없다<sup>136)</sup>고 하나 그 나름대로 끝까지 러시아의 支持를 기대하고 또한 開戰을 대비하여 兵力增派를 위해 17일 英國의 인도지나 기선회사(Indo-China Steam Navigation Company) 소속 선박의 上海代理商 怡和商行(Messrs, Jardine, Mathem \$ Co.)과 1353톤 철갑상선인 高陞號의 용선계약을 체결하고<sup>137)</sup> 英國國籍인 이 배로써 牙山까지 淸國병력 수송준비를 완료하여 開戰을 결심한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李鴻章으로부터 日本의 再修正提案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했다는 코커번의 보고를 받은 오코너公使는 이날 總理衙門을 방문한 자리에서 慶親王과 大臣들이 이상할 정도로 李鴻章의 의견이나 干涉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 大臣들은 日本의 조건들을 토의하는 과정에서 “政治上”이란 말이 빠져야 한다고 하더라도 日本이 朝鮮에서 淸國과 같은 동등한 政治的 및 商業的 권리항유 條項을 수락할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다가 “日本은 朝鮮內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타국

135) *Op.Cit.*, No.48. Mr.O'coner to the Earl of Kimberley, Peking, July 18. 1894. 및 No.215, Inclosure in No.409, Mr.Cockburn to Mr.O'coner, Tien-tsin, July 21. 1894.

136) I am only thinking that a weeker or so ago the Viceroy appeared to be relying on Russian support while lately he has never reffered to it 라는 기록으로 알수 있다.

137) No.254, Inclosure 4, In No.470, Consul Bristow to Mr. O'coner, Tien-tsin, July 31. 1894. Charter-Party.

과 같이 동등한 정치적, 상업적 권리를 향유할 것이다”<sup>138</sup>)라는 말로 조금 수정하여 同意하겠다고 양보하였다.

그러나 이날(7월 22일) 日本政府는 파케트公使를 통해 “이번 淸國에 대한 要求에 대해 日本政府의 의견으로는 일찍 日本이 淸國에 전달한 協商의 기초 범위를 앞서거나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淸國의 提案이 이미 提議한 기초정신과는 상당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淸國측에 그 책임을 뒤집혀 쉰 후

첫째, 朝鮮政府에 대한 단순한 勸告, 提言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비록 勸告를 하는 日本과는 표면상으로는 共同 協力을 하는 것같이 보일지라도 朝鮮의 執權派는 淸國이 비밀히 朝鮮國王으로 하여금 提議한 개혁을 拒絕하도록 권유할수 있을만큼 淸國의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 駐朝鮮 淸國代表는 특권을 향유하고 있고 또한 이 때문에 日本의 이익에 배치되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때문에 駐朝鮮 日本代表에게도 동등한 대우가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애초에 淸國政府의 共同協力拒絕로 日本政府는 朝鮮政府에 단독 內政改革提議를 하게 되었고 또한 만약 淸國이 이미 朝鮮의 同意를 얻었던 이러한 提案을 승인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와서 맨 처음의 입장으로 돌아갈수 없다. 條約締結 당사자들은 朝鮮문제에 대해 派兵을 하게된 1885년 天津條約때문에 相互協議를 구속해서는 안된다<sup>139</sup>)고 하며 天津條約을 준수하지 않을 뜻을 밝혀 英國의 天津條約의 精神違背란 抗議를 간접으로 반박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때 袁世凱를 代理한 唐紹儀는 大鳥公使가 朝鮮政府에 淸國政府文書에 屬邦이라는 문구를 따지고 朝鮮이 日本과 평등권을 갖는다는 江華島條約에 따라 淸朝水陸貿易章程과 기타 陸路條約의 폐기를 강요하고 있다고 보고하여 日本政府가 朝鮮에서도 예외없이 淸國軍을 물러가게 하려는 고압적인 政策을 단행하고 있음을 알렸다<sup>140</sup>).

日本이 제시한 조건이 근본적으로 非妥協的인 것이며 또한 이러한 日本의

139) *Op cit.*, No. 214, Mr. O'Coner to the Earl of Kimberley, Peking, July 24. 1894.

140) *Ibid*, NO. 39, Tel., Mr. Paget to the Earl of Kimberley, Tokio, July 23. 1894.

141) 中日交渉史料, 15권, 제1207.

일방적인 태도로 봐서 淸日간의 戰爭은 不可避하다고 판단한 英國政府는 다음 날(7월 23일) 駐東京, 駐北京公使로 하여금 각각 當地政府에 英國이 極東 商業關係의 중심지인 上海와 그 부근에 대한 戰爭作戰을 금지하고 또한 上海 港口와 그 부근을 封鎖할 것임을 通告하도록 訓令<sup>141)</sup>하였는데 이같은 英國의 훈령은 淸日兩國의 紛爭을 조정할 수 없어 포기한다는 공식적인 政府의 입장 표명으로 봐도 무방하겠다.

이에 대해 日本政府는 이날 즉각 파케트公使에게 上海港口나 그 부근에 대해 군사작전을 기도하지 않는다는 誓約文書를 修交하여<sup>142)</sup> 이미 결전의 뜻을 간접으로 전달하자 英國政府는 日本政府가 英國政府의 要求에 신속하게 同意해준데 대해 감사를 표시<sup>143)</sup>함으로써 英國 또한 日本의 開戰을 默認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本國政府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通告받은 오코너公使는 사태의 긴박성을 감지하고 다음날 (7월 24일) 總理衙門을 방문하고 本國政府에 이들 大臣들과 會談한 결과를 보고하는 電文에서 “淸國과 같이 政治的 商業的 권리를 동등하게 향유한다는 말을 他國과 함께”라는 말로 대치한다면 日本이 再協商에 임할 것임“을 알리고 “駐英國公使 青木の 조언이 本國政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小村代理公使의 말과 이틀전 9천명의 淸國군이 파견된 사실을 通告하였다<sup>144)</sup>.

특히 이날 慶親王과 大臣을 만난 자리에서 그들은 한결같이 日本이 이번에 提議한 조건들은 분명히 평화적 協商을 원하고 있지 않고 있기때문에 그들이 이를 받아들일수 없다. 日本은 1만 5천명 이상의 軍隊를 파견하고도 淸國군의 朝鮮增兵派遣을 협박으로 간주하고 또한 5일 이내 淸國이 결심하도록 要求하고 있는데에 대해 몹시 실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이러한 衙門 大臣들의 불만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들 大臣들에 계속해 戰爭을 도

142) *Op.cit.*, No. 29, Tel., The Earl of Kimberley to Mr. Paget, Foreign Office, July 23. 1894. 및 No.70, Tel., The Earl of Kimberley to Mr. O'Coner, Foreign Office, July 23. 1894.

143) *Ibid*, Tel., No.41, Mr. Paget to the Earl of Kimberley, Tokio, July 23. 1894.

144) *Ibid*, Tel., No. 29, Mr. Earl of Kimberley to Mr. O'Coner, Foreign Office, July 23. 1894.

145) *Ibid*, Tel., No.55., Mr. O'Coner to the Earl of Kimberley, Peking, July 24. 1894.

발할 어떠한 행동마저도 회피하여 주도록 勸告하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기를 원치않는다”<sup>145)</sup>고 밝혀 開戰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 자신의 조정역할이 거의 끝난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파케트公使는 이날 陸奧外相이 靑木公使를 통해 英國이 提議한 朝鮮에 대한 分轄保護領(Seperate Protectorte)설치에 대한 계획을 수락할 뜻을 밝혔으나 이 「分轄保護領」이 담는 정확한 뜻에 대해 다소 의문을 갖고 있다<sup>146)</sup>고 하여 日本政府는 끝내 英國政府의 提議에 성의를 다하는 것처럼 처신하였다.

### X. 카시니의 英露協力과 오코너의 役割

이와 같이 英國政府가 中日紛爭의 調停을 포기한 상태에서 이틀전까지 만해도 파트로프參事를 통해 러시아海軍의 動員可能性을 비쳤는 이날 오후 급히 코커번을 만나자는 전갈을 보냈다.

두 사람이 면담하는 자리에서 카시니公使는 솔직하게 러시아政府가 淸日紛爭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또한 本國外務長官 기애로(M.De. Giers)도 평화를 갈망하고 있음을 전하고 자기는 李鴻章이 이 문제를 처리하는 전권을 전적으로 위임받은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고 말하자 코커번은 이 문제가 전적으로 李鴻章에 있다거나 또는 李鴻章이 總理衙門과 어떤 支持없이 혼자 책임을 질지 여부에 다소 懷疑的이라는 것을 암시하면서도 그간 李鴻章과의 수차례 면담한 會議內容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카시니는 일찍 왜버가 北京을 떠나기 전 總理衙門으로 부터 분명히 李鴻章 總督이 全權을 갖고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껏 天津에 체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자기가 그를 만나고자 한 것은 이 점을 말하기 위해서였다고 실토한 후 자기는 받금 “本國政府로부터 교섭중인 淸日兩軍의 계속적인 임시 점령과 兩軍이 격리토록 한 協定에 淸國政府에 설득함으로써 同意할 것을 예상하여 오코너씨의 의견을 들어라”는 훈령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러시아어로 된 電文을 보이고 자기는 러시아公館에 타전할 사람이 없

146) *Ibid*, No.215, Mr.O'Coner to the Earl of Kimberley, Peking, July 24. 1894.

147) *Ibid*, Tel., No.43, Mr. Paget to the Earl of Kimberley, Tokio, July 24. 1894.

으니 코커번이 비밀히 오코너公使에게 이 사실을 타전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특히 카시니는 淸軍의 援兵이 이미 牙山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開戰이 임박하였으며 지금의 상황으로 보아 淸日兩軍을 격리시킬 시간이 없지만 히트로프 駐日公使에게도 자기가 접수한 本國의 훈령내용을 타전하고 그에게 日本政府가 이를 수락하도록 압력을 가해줄 것을 요청하였다<sup>147)</sup>는 사실마저 털어 놓았다. 이와 같은 카시니의 행동은 자신이 李鴻章에게 임의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탓으로 最後로 英國의 協力을 얻어 淸日紛爭의 해결에 노력했다는 자신과 러시아의 체면을 세우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그리하여 다음날 오코너公使는 다시 總理衙門을 방문하고 재삼 淸日간의 平和를 보존하기 위해 英國政府가 러시아 불란스 獨逸 美國政府들의 支持를 얻고자 새롭게 노력하고 있음을 알리고 특히 本國政府의 훈령으로 러시아公使와 자신이 日本政府에 충돌의 위험을 제거하고 앞으로 協商을 가능케할 朝鮮의 임시점령에 관한 英國의 提案을 수락토록 설득하자 慶親王과 大臣들은 “英國政府의 提案을 수락할 것임을 거듭 천명하고 淸國의 국가위신에 어울리는 합리적인 協定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大英帝國과 러시아같은 두 강대국의 진정한 協力만이 반드시 이 목적을 틀림없이 성공시킬수 있을 것이다<sup>148)</sup>고 하여 英露의 調停에 크나큰 희망을 걸었다.

그리하여 오코너公使는 코커번을 통해 즉각 카시니公使에게 平和유지를 위한 진실한 우리의 共同努力에 만족을 표하면서 總理衙門도 이미 淸日兩國중 어느 나라도 서울을 점령하지 않음으로써 英國의 提案인 臨時占領案에 同意하였다는 사실과 동시에 李鴻章이 바라는 兩軍의 정확한 주둔장소를 알려달라고 타전<sup>149)</sup>함에 따라 다음날 카시니公使를 만난 코커번은 그로부터 “他列強國의 支持하에 英露의 日本에 대한 압력만이 만족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英露兩國의 말을 듣지않고 누구의 말을 들겠느냐?”라는 자신에 찬 이야기와 “李鴻章이 朝鮮內政改革을 토의할 장소로는 天津을 바라지만 日本이 이에 同意하지 않을 것임으로 서울을 유일하게 적합한 장소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148) *Ibid.*, Inclosure 1. In No.417, Mr. Cockburn to Mr.O'Coner, Tien-tsin, July 24. 1894.

149) *Ibid.*, No.217, Mr.O'Coner to the Earl of Kimberley, Peking, July 25. 1894.

150) *Ibid.*, NO.225, Confidential, Mr. O'Coner to the Earl of Kimberley, Peking, July 27. 1894.

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자리에서 카시니公使는 日本의 25만 군사력이 막강하며 日本군이 전략, 전술면에 있어서 대단히 강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해상에서 淸國海軍이 日本海軍보다 선량이나 선박운영면에 있어서 우수하며 淸國이 日本海軍의 결함을 이용할 것으로 보는 생각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만약 淸國이 패배한다면 국내에 심각한 紛爭이 일어나고 나아가 왕족의 멸망을 초래할 가능성과 淸國政府내의 분위기로는 慶親王은 主戰論者이고, 西太后는 主和論者로 李鴻章은 西太后의 支持를 받고있다는 사실마저 밝혔다<sup>150)</sup>.

이 會談을 마친 코커번은 “자기가 만난 카시니公使는 진심으로 평화를 갈망하고 있지만 淸日兩國의 충돌가능성에 매우 불안해 하고 있으며 또한 러시아는 淸國에 支持를 약속했고 日本은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이 좋은 약속을 하고서도 아무것도 얻을수 없게되어 러시아는 지금 평화를 위해 힘을 기울임으로서 지금 그들이 한 약속에서 벗어나고자 한다”고하여 카시니公使의 입장을 보다 정확하게 보고하였다<sup>151)</sup>. 이같은 보고를 받은 오코너公使는 駐北京佛 獨 外交代表를 만나 그들의 支持를 약속받는다<sup>152)</sup> 동시에 本國政府에 淸國이 만약 日本이 釜山을 받아 들인다면 臨時 軍隊占領期間中 淸軍의 駐屯地로 平壤을 받아 들이고 또한 카시니公使도 駐日러시아公使에게 이를 通告하여 日本이 이 提案을 수락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으니 킴브리외相도 青木公使에게 이 잠정적 妥協案을 받아 들이도록 압력을 가해 주기를 요청하였다<sup>153)</sup>.

그러나 日本政府는 이날 현재형태의 토대로서 교섭하자는 淸國妥協案을 받아들이기를 拒絶하고 다음과 같은 逆修正案을 받아들인다면 고려해 보겠다고 通告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內政改革事業은 이미 단독으로 착수하였기에 日本政府에게 동개혁목적과 의도를 설명하는 기회를 주기위하여 兩國은 즉각 위원을 임명하고 상면한다. 그러나 장소는 서울은 안되며,

151) Inclosure 2 in No.417, Mr. Cockburn to Mr. O'Coner, Tien-tsin, July 25. 1894.

152) *Ibid*

153) *Ibid*, No. 225, Confidential, Mr. O'Coner to the Earl of Kimberley, Peking, July 27.1894

154) *Ibid*, No. 59, Mr.O'Coner to the Earl of Kimberley, Peking, July 26. 1894.

둘째, 朝鮮國王으로 하여금 主權과 自主權(Proprio motu)을 행사토록 하기 위해 淸日兩國고문으로 구성된 共同위원회를 소집하고 개혁계획을 설명토록 권유토록 하며 또한 국왕으로 하여금 兩國이 勸告한 改革이행을 착수하도록 우호적인 압력을 가한다.

세째, 日本政府는 淸國이 반대한 「政治上」이란 어구를 사용하는 大臣 日本이 원하는 「同等한 待遇」의 요구로 淸國의 참여를 배제한 일방적인 타협안을 제시하였다.<sup>154)</sup>

### XI. 高陞號被擊과 英國의 中立宣言

더욱이 이때 朝鮮에서는 7월 23일 日本군이 이미 무력으로 王宮을 점령하고 또한 淸國公館을 급습하여 모든 本國과의 電文등 서류를 압수해 가버린<sup>155)</sup>것을 계기로 閔氏派를 제외한 大院君의 支持勢力과 日本이 지원한 金嘉鎮과 兪吉濬이 각각 外務協辦과 參義에, 安동壽와 趙義淵이 右浦將과 將衛使로 입각하여 大院君政府가 수립되었다<sup>156)</sup>.

이같은 상황하에 大鳥公使는 25일 저녁 國王 高宗을 謁見하고 朝淸간의 역사적 관계를 파기하는 약정서에 서명을 비롯한 朝鮮이 淸國에 대해 宣戰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은갖 압력을 가하고 다음날 26일 국왕 高宗에게 改革案을 제출함에 따라 袁世凱를 代理한 唐紹儀가 부득불 이날 오후 그들 公館의 國旗를 내리고 출발전에 英國 總領事 가드너에게 華僑들의 안전을 맡긴후 27일 아침 公館一行과 함께 서울을 撤收<sup>157)</sup>함으로써 朝淸간의 역사적 朝貢關係는 그 幕을 내리고 말았다.

이때 英國政府는 오코너公使로부터 朝鮮國王을 포로로 하고 日本軍이 王宮을 점령하여 淸國은 日本의 이러한 행동이 우호적인 해결의 모든 기회를

155) Ibid, No. 44, Mr. Paget to the Earl of Kimberley, Tokio, July 26.1894.

156) Ibid, Mr. Gardner to Mr. O'Coner, Seoul, July 23. 1894.

157) Same to Same, Seoul, July 26. 1894.

158) The Chinese Residency flag was hauled down between five and six p.m.on the 26 the instant that Mr.Tang the Acting Resident and his suite left this on the morning of 27th and before going asked me to protect the Chinese in Korea and the same day I notified the Corean government of the fact 의 기록으로 알수 있다. Same to Same, Seoul, July 30. 1894.

파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英國의 臨時軍事占領案에 대한 日本의 회답을 기다리고 있다<sup>158)</sup>는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英露兩國이 淸日兩國으로 하여금 朝鮮에 증병하지 못하도록 하고 兩軍이 각각 釜山과 平壤에 격리시켜 임시 점령토록 하자는 그들의 妥協案은 성사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다음날 다시 오코너公使로부터 日本戰艦이 淸國과 備船契約을 맺고 淸軍 1500명을 싣고 英國旗를 게양하고 아산으로 향하던 高陞號를 예고없이 침몰시켰다는 놀라운 電文과 함께 政府가 조속히 러시아와 함께 日本의 난폭한 불법적인 행동에 제동을 걸어주도록 요청하는 급전<sup>159)</sup>을 받게 됨에 따라 그들의 타협안이 무산된 것으로 단정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미 淸日兩國이 交戰狀態에 돌입했다고 판단한 英國政府는 이날 외무성을 방문한 淸國公使에게 "英國政府는 日本政府에게 이러한 위협을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또 본인은 다른 列強國들이 英國의 提案에 共同으로 참여할 것으로 믿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첫째, 淸日간의 紛爭으로 일어난 중대한 결과와 日本이 카시니公使가 提議한 특별한 조정에 同意하지 않아 우리들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日本에 通告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둘째, 釜山은 朝鮮의 極南端에 있지만 平壤은 서울에 가까워 兩軍隊가 상가지점으로 撤收해야 한다는 淸國의 提案은 지도를 조사해본 결과 일방적인 조정에 불과하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 놓은 후 李鴻章이 제시한 妥協案을 정식으로 拒絕한다는 英國政府의 입장을 전달<sup>160)</sup>함으로써 英國政府는 淸日兩國紛爭의 조정을 포기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日本軍艦 吉野, 浪速 및 秋津洲등 세척이 기술한 바와 같이 청나라 兵士 1100명과 선원 67명, 선장과 유럽인 8명, 여객 1명을 싣고 무방비상태하에서 牙山灣으로 향해하던 英國國籍의 高陞號에 일방적으로 발포하여 이를 격침시키는 중대한 교전사건이 발생했음<sup>161)</sup>에도 불구하고 日本政府는 青木公使를 통해 英國政府에 단지 日本전함 세척과 淸國海軍간에 豊島부근에서 교전이 일어나서 병력을 실은 淸國輸送船 한척이 침몰되고 淸國

159) Ibid., No.60, Mr. O'coner to the Earl of Kimberley, Peking, July 26. 1894.

160) Tel., No.61, Mr. O'coner to the Earl of Kimberley, Peking, July 27. 1894.

161) Ibid., No.167, The Earl of Kimberley, Foreign office, July 28. 1894.

162) Ibid, Inclosure 2 in No.439, Statement by Mr. Tamplin.

艦艇 操江號를 拿捕했다<sup>162</sup>)고만 하여 격침된 高陞號의 국적이 英國선박임을 고의로 은폐시켰고 나아가서는 日本외무성마저 파케트公使에게 淸日軍艦간의 교전을 알리는 자리에서도 淸國이 먼저 발포했다<sup>163</sup>)고 하여 완전히 조작된 거짓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리하여 李鴻章이 英國國籍 高陞號를 빌려 淸國병사를 朝鮮에 수송하는 도중에서 야기될 이번과 같은 사태에 대비하여 기대했던 英國의 軍事介入<sup>164</sup>)은 日本政府가 신속히 파케트公使를 통해 英國政府에 그들의 英國國籍 선박에 대한 과오를 순순히 인정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賠償金支拂을 確約<sup>165</sup>)하는등 외교역량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무산되었다. 뿐만 아니라 또한 英國政府는 日本의 일방적인 군사행동이 戰爭宣布前에 일어난 國際法上 위배되는 행동으로 규정하여 政府의 적극적인 介入과 즉각적인 보복조치를 요청한 런던의 인도지나 기선회사본부의 要求<sup>166</sup>)마저 묵살해 버려 그들의 外交目的이 곧 國益의 極大化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淸國政府는 日本의 高陞號 擊沈行動이 列強國의 조정에 의해 평화적 해결을 기대한 한가닥의 희망까지 앗아가는 난폭한 불법적인 행위요 또한 淸國의 權威와 自尊心을 짓밟는 야만적인 戰爭도발로 단정하고 駐日汪사를 소환하는 동시에 8월 1일 그들은 日本이 條約을 준수하지 않고 적대적 행동을 개시했으나 寬容과 忍耐로 참아 왔음을 밝히고 세계에 제국의 영광을 선양하기 위해 부득불 戰爭을 선포한다는 皇帝의 勅令<sup>167</sup>)을 발표하자 日本도와 동시에 天皇의 이름으로 淸國에 선전포고를 발표<sup>168</sup>)하였다. 이에 開戰을 기다렸다는듯이 英國政府도 이날부로 駐北京과 駐東京公使를 통해 淸日兩國政府에 中立을 선언함으로써 2개월간 英露를 主軸으로한 각국들의 調停

163) *Ibid.*, Tel., No.72, The Earl of Kimberley to Mr. O'coner, Foreign Office, July 28. 1894.

164) *Ibid.*, No.45, Mr. Paget to the Earl of Kimberley, Tokio, July 29. 1894.

165) *Ibid.*, Secret and Confidential, Inclosure 2 in No.427, Consul Bristow to Mr. O'coner, Tien-tsin, July 27. 1894.

166) *Ibid.*, Tel., No.46, Mr. Paget to the Earl of Kimberley, Tokio, July 31. 1894.

167) *Ibid.*, No.19, Indo-China Steam Navigation Company to the Earl of Kimberley, Cornhill, London, July 28. 1894.

168) *Ibid.*, Inclosure in No.432, Imperial Decree.

169) *Ibid.*, No. 210, Inclosure in No.210, Telegram from Mutsu to Viscount Aoki.

은 아무런 보람도 없이 淸日戰爭은 시작되고 말았다.<sup>169)</sup>

## XII. 結論

이상에서 論究한 바와같이 淸日兩國이 派兵을 단행한 계기로 英露를 상대로 전개한 李鴻章의 避戰外交가 英露間 敵對關係를 利用하는 「以夷制夷」政略을 추구하면서 天津條約같은 國際公約을 충실히 준수하는 1인의 소극적인 道德外交( Negative and Moral Diplomacy)이며 遠交近攻外交의 실패작이라면 陸奧宗光의 開戰外交는 「以英制露」政略을 利用해 上記 條約같은 國際公約을 一方的으로 破棄하는 다수인의 적극적인 힘의 外交(Positive and Power Diplomacy)로써 遠交近攻外交의 成功事例라고 할수 있겠다. 李鴻章은 日本의 군사력을 잘 알고 있지는 못했지만 自國이 사실상 戰爭준비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관계로 가능한 한 淸日紛爭의 懸案을 外交로 타결하고자 하였다.

우선 그는 英國을 이용하여 日本군의 서울진입을 저지하려다 拒絶당하자 英國의 지원을 과장하여 카시니公使의 러시아介入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駐日 露公使의 부정적인 보고는 러시아의 介入을 물리쳤고 日本의 제1차 絶交書가 전달되자 李鴻章은 共同撤兵과 內政改革案을 관철하기 위하여 다시 英國의 極東海軍力을 이용하고자 시도하였지만 그의 노력은 英國의 전통적인 反露政策과 당사국간의 直接協商方針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그는 英國의 介入을 끝까지 끌어내기 위해 「日露密約說」을 퍼트렸고 三國會議 대신 5개列強國의 共同介入案을 수락하는가 하면 英國國籍 高陞號를 이용하여 英國의 정당한 武力介入마저 기대하였다. 그러나 英國은 外交와 軍事방면에서 자체의 정보와 淸日軍事力에 대한 일선外交官의 現地情勢報告를 바탕으로 淸日兩國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또한 日本이 軍力으로 朝鮮에서 親日政權을 앞세워 淸國을 구축하려는 그들의 정치적 야심을 간파하였기 때문에 자력의 기반이 취약한 李鴻章의 表裏外交

170) *Ibid.*, Tel., No.34, The Earl of Kimberley to Mr. Paget, Foreign Office, August 1. 1894. Tel., No.90, The Earl of Kimberley to Mr. O'coner Foreign Office, August 1. 1894.

(Double-Dealing Diplomacy)를 지원하지 않아 그의 避戰外交는 실패할수 밖에 없었다.

제2차 絶交書인 最後通牒이 전달된 이후 전권을 위임받은 李鴻章이 그의 오랜 外交協商의 경험을 살려 日本측에 朝鮮에서 「政治上」이 아닌 「商業上」 특권과 이익의 공유를 양보하여 처음으로 協商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淸國政府가 아무런 대안없이 이 協商案을 거부한 것은 크나큰 실책이었다. 淸國政府內에서 國家危機管理의 最高責任者와 最高 決策者가 누군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은 권한과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밝힐 수 없다는 사실에서 淸國政治體系內의 構造上 그리고 機能上 근원적인 缺陷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李鴻章이 처음부터 英露간의 적대관계를 이용하여 朝貢關係를 維持하고 自國의 安全마저 圖謀하려는 「以夷制夷」政略을 拋棄하고 차라리 이들 兩國의 協力を 구하여 카시니公使가 마지막 시도한 英露 兩國간의 共同介入이나 英國의 分轄保護領案 혹은 5個列強國의 共同干涉案을 적극 수용하는 등 積極的 外交를 추진했다면 日本의 러시아撤兵要求거부나 혹은 英國의 仲裁중단이나 중립선언과 같은 최악의 사태만은 방지할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에 비해 陸奧宗光은 英國撤兵要求를 거부하기에 앞서 러시아公使 히트로프에게 淸國의 對朝鮮干涉政策에 대한 횡포와 피해를 설명하여 그의 동정을 얻고 朝鮮의 共同內政改革案을 제출하여 紛爭의 주도권을 잡자 러시아公使에게 日本이 朝鮮의 독립과 영토를 침략않을 것임을 확약함으로써 李鴻章의 聯露策과 李鴻章과 카시니의 三國會議案에 썩기를 박을수 있었다.

그가 淸國에 제1차 絶交書를 제출한후 駐英公使 青木을 통해 英國 킴브리외相에게 직접 상기 朝鮮內政改革案의 목적이 러시아의 南下政策과 그들의 朝鮮領土 併合阻止에 있는 것처럼 內政改革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반면 駐北京公使 小村을 통해 英國公使 오코너에 접근하여 日本의 單獨內政改革은 淸國의 횡포를 막고 러시아를 견제하는데 있으며 또한 英國의 당사국간의 直接協商方針을 적극 支持한다고 하여 對英國外交를 軸으로해 露國을 견제함으로써 英國의 환심을 사는 「以夷制夷」정략을 절묘히 이용하였다. 뿐만아니라 陸奧를 정점으로 青木 小村 등이 국내의 통일된 開戰의 여론을 등에 업고 內政改革에 대한 이론으로 무장하여 組織的으로 開戰의 명분축적을 위한 外交

活動을 전개한 것이 陸奧의 開戰外交가 英國의 공감을 얻을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더우기 英國의 外交와 軍事分野의 정보는 淸國의 對朝鮮屬邦政策強化가 곧 淸日紛爭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또한 日本의 朝鮮內政改革이 러시아의 朝鮮侵略을 저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위한 개혁으로 報告되고 완벽한 陸海軍力을 보유한 日本의 러시아견제가 곧 極東에서 英國의 商業上 이익을 보호할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英國은 日本의 軍事挑發行爲와 內政改革要求가 朝鮮의 主權을 침해하고 內政을 干涉하며 나아가서는 天津條約의 精神에 違背되는 불법적인 행동으로 단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축성이 없는 완고한 淸國이나 親露態度를 보인 李鴻章보다는 확실히 英國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警察役을 자임한 日本側으로 기울어 지지 않을수 없었다.

더우기 日本이 朝鮮에서 英國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領海에서마저 그들 국적의 배를 침몰시켜 英國의 人命과 財産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도 淸國측이 먼저 발포하여 교전이 일어난 것처럼 거짓으로 報告하고 그들이 약속한 淸英妥決協商案마저 거부하면서까지 淸國과 동등한 대우를 명문화할 것과 單獨 內政改革을 강요하는 등 온갖 開戰의 구실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英國이 日本을 적극 制裁하지 않았던 것은 日本이 신속히 그들의 과오를 시인하고 英國人의 生命과 財産損害에 대한 충분한 賠償金을 確約하는 등 발빠른 적극적인 外交活動을 전개함으로써 陸奧의 開戰外交를 성공시킬 수 있었다.

그러므로 英國 으로서는 戰爭이 발발되더라도 日本의 勝利가 예측되고 또한 日本이 러시아의 견제를 위한 파수군의 역할을 자칭한 마당에서 다른 대안이 없는 한 구태어 日本을 견제하거나 兩國의 紛爭에 介入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중립을 선언하여 굴러 들어오는 이익을 챙기는 것이 그들의 國益을 極大化하는 가장 현명한 極東外交政策이었을 것이다.

the 1990s, the number of people in the UK who are aged 65 and over has increased from 10.5 million to 13.5 million, and the number of people aged 75 and over has increased from 4.5 million to 6.5 million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00).

There is a growing awareness of the need to address the needs of older people, and the need to ensure that the health care system is able to meet the needs of older people. The Department of Health (2000) has published a strategy for older people, which sets out the government's commitment to improve the health and well-being of older people, and to ensure that the health care system is able to meet the needs of older people.

The strategy for older people is based on the following principles: (1) to improve the health and well-being of older people; (2) to ensure that the health care system is able to meet the needs of older people; (3) to ensure that older people are able to live independently; (4) to ensure that older people are able to participate in society; (5) to ensure that older people are able to live in their own homes; (6) to ensure that older people are able to live in their own communities.

The strategy for older people is based on the following principles: (1) to improve the health and well-being of older people; (2) to ensure that the health care system is able to meet the needs of older people; (3) to ensure that older people are able to live independently; (4) to ensure that older people are able to participate in society; (5) to ensure that older people are able to live in their own homes; (6) to ensure that older people are able to live in their own communities.

The strategy for older people is based on the following principles: (1) to improve the health and well-being of older people; (2) to ensure that the health care system is able to meet the needs of older people; (3) to ensure that older people are able to live independently; (4) to ensure that older people are able to participate in society; (5) to ensure that older people are able to live in their own homes; (6) to ensure that older people are able to live in their own communities.

The strategy for older people is based on the following principles: (1) to improve the health and well-being of older people; (2) to ensure that the health care system is able to meet the needs of older people; (3) to ensure that older people are able to live independently; (4) to ensure that older people are able to participate in society; (5) to ensure that older people are able to live in their own homes; (6) to ensure that older people are able to live in their own communities.

The strategy for older people is based on the following principles: (1) to improve the health and well-being of older people; (2) to ensure that the health care system is able to meet the needs of older people; (3) to ensure that older people are able to live independently; (4) to ensure that older people are able to participate in society; (5) to ensure that older people are able to live in their own homes; (6) to ensure that older people are able to live in their own communities.

The strategy for older people is based on the following principles: (1) to improve the health and well-being of older people; (2) to ensure that the health care system is able to meet the needs of older people; (3) to ensure that older people are able to live independently; (4) to ensure that older people are able to participate in society; (5) to ensure that older people are able to live in their own homes; (6) to ensure that older people are able to live in their own communities.

## 북한학계의 동학농민혁명 평가

조민\*

I. 서론	III. 동학농민혁명의 연구성과 및 평가
II. 북한 역사학의 전개과정	1. 제1기: 민족민주혁명과 '농민전쟁'의 교훈
1. 유물사관 수용과 식민사관 수용기	2. 제2기: 근대민족운동과 '갑오농민전쟁'
2. 유물사관 형성기	3. 제3기: '갑오농민전쟁'의 '역사적 의의'
3. 주체사관 확립기	
	IV. 결론

### I. 서론

북한 역사학의 연구방향과 전개과정은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수립 및 발전 그리고 변화의 과정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해방후 초기 사회주의체제의 건설과정으로부터 전쟁과 전후복구 시기를 거쳐 196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북한 역사학계는 활발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일정한 발전단계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유일사상체제와 개인숭배에 기반한 주체사상의 확립단계에 이르러서는 역사학을 비롯한 민족 문화 전반에 대한 연구와 서술방향이 크게 훼손되는 현상을 맞이하게 되었다.

북한 역사학의 흐름을 살펴보는 데는 무엇보다도 먼저 북한사회에서 역사학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역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주의국가 일반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역사학, 철학, 문학, 법학 등의 모든 학문은 정치적 과제와 불가분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북한사회에서 과학자의 임무는 인민정권을 강화하는 문제와 사회 전반에 당 정책의 본

\*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원

질을 인식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역사학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이룩된 연구성과들이 인민들의 계급교양사업과 애국주의 교양에 적극 복무하는 방향에 기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sup>1)</sup>

북한 역사학의 연구방법의 변화과정과 사관의 문제는 맑스-레닌주의와 김일성주의 또는 주체사상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왔는가 하는 데에서 부터 비롯된다. 일반적으로 양자의 관계와 역사학 연구방향의 단계적 변화과정은 김일성체제의 구축과정과 더불어 세 단계로 구분된다.

첫 단계로는 맑스-레닌주의의 소개·수용을 통한 유물사관에 기반하여 역사의 보편적 법칙을 강조한 시기로서 해방후부터 1955-56년 무렵까지, 둘째 단계는 1967년 무렵까지로 설정할 수 있으며, 세제 단계를 그후 부터 현재까지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 역사학의 연구방향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수립·발전의 과정과 그에 수반되는 정치구조의 성격과 관련한 예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조선역사학계가 걸어온 길」을 회고하는 보고논문에서 뚜렷이 드러나고 있듯이 북한학계가 일정한 연구성과를 달성하게 된 배경으로, 그동안 당이 학계를 정확한 방향으로 인도하고 학계에서 제기되는 주요한 문제들을 직접 해결해 주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sup>2)</sup> 이 보고에서 당과 학계, 정치와 학문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북한학계의 동학농민혁명의 연구성과와 평가에 대한 분석을 북한 역사학의 전개과정 속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북한 역사학의 변화과정을 유물사관의 수용단계로부터 점차 유일사관이 형성되는 과정을 거쳐 마침내 주체사관이 확립된 단계에 이른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변화과정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관심이 제기된 시기로부터 본격적인 연구활동이 전개되는 과정을 주요한 논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 II. 북한 역사학의 전개과정

- 
- 1) 「과학자 대회에서 진술한 연설」(一九五二年 四月 二十七日), 『김일성선집』 4 (조선로동당출판사 제2판, 1953.7.31), pp. 137-138 참조.
  - 2) 학계소식: 8·15 해방 15주년기념 사회과학부문 학술보고회, 「8·15 해방후 조선역사학계가 걸어온 길」, 『력사과학』 1960년 제6호, 참조.

### 1. 유물사관 수용과 식민사관 극복기

북한 역사학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는 해방후부터 1950년대 말까지의 기간으로, 전쟁과 전후 복구시기를 경과하면서 사회주의체제 수립 및 건설과정과 더불어 역사학 분야에서도 연구와 대중교육의 기본방향을 마련하였다. 남북한이 분할된 상태에서 북한지역에서의 민주기지 창설 및 강화 노선에 따라 인민교육체계의 확립과 민족문화의 발전 등에 걸쳐 과학·문화정책의 기본방침들이 제시되면서,<sup>3)</sup> 역사학 분야에서는 맑스-레닌주의의 원칙 아래 소련 역사학계의 연구성과를 우선적으로 소개·수용하는 것과 동시에 민족사의 연구방향을 모색해 나갔다.

북한은 1947년 2월 7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내에 25명으로 구성되는 조선역사편찬위원회를 조직하여 역사연구를 과학적으로 체계화하는 연구기지를 창설하였다. 곧이어 1948년 10월 2일 내각 제4차회의를 통해 「조선역사편찬위원회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하고, 이 결정에 따라 당시 교육상인 백남운을 위원장으로 한 역사편찬위원회는 월북학자들인 홍명희, 이기영, 박시형, 김석형, 김광진 등을 중심으로 사료수집과 함께 역사편찬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1949년 1월 14일자 '내각지시 제8호'를 통해 역사편찬위원회의 기본과제가 천명되었는데, 이 기본과제로는 식민사관의 극복과 유물사관에 의한 역사법칙으로 서술한다는 원칙을 밝히면서 "최근세사에 대한 개괄을 1949년 3월까지 끝내고 1949년 12월에 그 편찬을 완료한다"고 결정했다. 이 사업의 결실로 『최근세사』와 『조선통사』를 편찬하였고, 조선력사편찬위원회의 기관잡지인 『력사 제문제』가 발행되었으며 『조선민족해방투쟁사』와 『조선력사연구논문집』을 발간하였다. 『력사 제문제』는 일제 식민정책을 폭로한 논문들, 항일투쟁에 관한 논문들, 일제시대의 미공개자료들을 게재하면서 전쟁 직전까지 정상적으로 발행되었다.<sup>4)</sup> 이 시기에 당 중앙위원회의 기관잡지인 『근로자』도

3) 「1947년 인민경제발전계획에 관하여」(1947년 2월 19일)의 '교육, 문화사업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선집』 1 (제2판, 1960.4), pp. 309-311) ; 「북조선 도, 시, 군인민위원회를 결속하면서」(1947년 2월 20일)의 '교육과 민족문화 문제에 관하여' (앞의 책, pp. 329-330) 참조.

4) 『력사 제문제』는 1948년 8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전쟁직전의 1950년 5월 10일 제

초기에는 역사관계 논문들을 수록하고 있다.<sup>5)</sup>

이 시기 북한 역사학계는 근세 이후의 민족해방투쟁사에 대한 관심이 제기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연구업적으로 '49년도와 '58년도의 2회에 걸친 『민족해방투쟁사』의 출간을 보았으며 이와 함께 일제 식민지 정책에 대한 폭로와 일제에 반대한 투쟁업적에 관한 논문들과 일제시기에 공개되지 못했던 자료들을 발굴하고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해방후 북한의 역사학계는 “쏘련을 향하여 배우라”는 당 방침아래 마르크스-레닌주의 고전들을 학습하고 소련학계의 이론들을 적극 수용·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국역사에 대한 교과서 내용은 대부분 소련 교과서에 의거하여 편찬되었다.

이 처럼 북한 역사학계는 해방과 함께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이념틀 속에서 식민사관의 극복과 사회주의국가 수립의 역사적 정당성의 기초를 마련하는 초보적 단계의 작업을 추진하는 도중에 한국전쟁을 맞이하게 되었다. 전쟁 기간 중에서도 역사연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52년 3월 27일 내각결정 제 57호를 채택하여 역사편찬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조선역사연구소를 창립하여 연구소 산하에 시대별 전문연구실을 두고 역사연구를 심화시켜 나갔다. 그리고 전쟁기간에 과학 연구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과학자대회를 계기로 과학원을 설치하여 1952년 12월 과학원을 개원하게 되었다. 과학원 산하에 역사연구소와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를 포함한 9개의 연구소가 설치되었고, 조선역사편찬위원회 사업을 인계한 역사연구소는 3개의 연구실을 두고 1955년 1월부터 월간잡지(1956년부터는 격월간) 『력사과학』을 발행하였다.<sup>6)</sup>

그후 전후복구와 발전노선을 둘러싸고 1955년 12월의 '주체' 확립 문제가

---

18집으로 중단되었다. '48년도 4회 발간, '49년도 10회 발간, '50년도 4회 발간 하였다. 이 가운데 동학농민혁명을 다룬 논문으로는 리청원의 「갑오농민전쟁의 성격과 그 역사적 의의」(제3집, 1948년 11월 5일)가 게재되어 있다. (창간호로부터 창간호까지의 목차는 『역사비평』 1989년 여름호에 수록되었음)

5) 『근로자』는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는 기치아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로서 현재까지 발행되고 있다. 1946년 9월 1일 북조선공산당 기관지 『政路』와 신민당 기관지 『前進』을 통합한 『로동신문』이 창간되었으며, 이와 함께 당이론지로 『근로자』가 창간되면서 소련 공산당 역사연구자료를 게재하는 등 사회주의적 역사이론의 소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창간호부터 제12호까지의 목차는 『역사비평』 1989년 여름호에 수록되었음)

6) '8·15 해방후 조선 역사학계가 걸어온길, 『력사과학』 1960년 제6호, 참조.

처음으로 제기되면서 향후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발전노선과 이념적 지표의 변화를 예고하는 방향전환의 단초가 나타나게 되었다.<sup>7)</sup> 이러한 사정 속에서 1956년 제3차 당대회를 계기로 대소관계의 변화를 동반하게 되면서 국내정치 구조의 역학관계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초래되었다. 북한정치의 권력구조면에서 김일성 중심의 유일지도체계가 형성되는 과정은 당내에서 수차례에 걸친 권력갈등의 과정을 통해 당 구조의 변화를 동반하면서 진행되어 왔다. 이 가운데 1956년 8월의 이른바 ‘반종파투쟁’은 김일성 중심의 단일지도체계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권력갈등 현상이었으며, 이 와중 속에 북한 역사학 계도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여기서 잠시 당내 권력갈등 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보면, 이는 당 건설 초기 다양한 분파의 정치연합 속에서 출발한 조선노동당의 당내 정치세력의 구조적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당 건설의 다양한 주체 세력들로서는 국내공산주의 출신인 국내파, 김일성을 중심으로 만주와 조·중 국경지방에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항일유격대 출신으로 ‘만주파’ 혹은 ‘갑산파’로 불리우는 세력과, 소련계 한인들로 구성된 소련파 그리고 연안 독립동맹계열 출신들인 연안파 등의 4대 세력의 정치연합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전쟁기간 중에 이미 남로당계의 국내파의 몰락과 연안파, 소련파의 중심인물의 숙청을 통해 도전세력의 구심점이 제거된 상태에서 1956년 즈음에는 이미 김일성 중심의 지도체계가 거의 굳혀진 상태였다고 평가된다. 그런데 이 시기에 김일성 계열의 헤게모니와 개인숭배 경향은 마침 1956년 2월에 개최된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에서 천명된 평화공존노선과 특히 스탈린 개인숭배의 비판을 통한 집체적 지도원칙과 맞물리면서 당내 권력갈등의 계기를 유발하는 진통을 겪게 되었다.

1956년 4월에 조선노동당 제3차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 소련공산당은 브레즈네프를 축하사절의 대표로 파견하여 개인숭배 문제에 대한 소련의 비판적인 입장을 전달하였다. 당시 전후복구건설에 대한 소련의 경제적 지원

7)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 당선 전 선동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55.12.28). 이는 발표 당시의 『조선중앙연감』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문건으로, 『김일성선집』 3 (국립출판사 제2판, 1963)에 처음 등장한다.

이 상당한 수준에 달하고 있는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측의 희망과는 달리 당내에서 어느 누구도 김일성 헤게모니에 대항하여 개인숭배를 비판하거나 집체적 지도노선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소련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관철되지 못했음을 말해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3차 당대회는 김일성 중심의 권력구조가 이미 정착되었음을 보여주는 계기이기도 했다.

그러나 전후복구건설노선을 둘러싼 갈등과 김일성중심체제로 부터 배제되었던 반대파에 의한 반대운동이 김일성이 소련과 동구사회주의국가들을 방문한 사이에 결집되기 시작하였으며 공개적인 도전이 이해 8월에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권력갈등은 결국 반김일성세력의 패배로 끝나고 말았으며, 그 결과 중앙위 전원회의는 이들의 도전을 '반당종파행위'로 규정하면서 연안계와 소련계 일부가 연합한 반김일성세력을 제거하였다. 북한에서는 이를 '8월 종파사건'으로 매도하면서 '반당 반종파투쟁'의 귀감으로 삼게 된다. 이후 반김일성 잠복세력에 대한 색출을 통한 철저한 진압을 완료한 토대 위에서 1958년 3월 제1차 당대표자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반종파투쟁'을 일단 마무리하였다. 이러한 '반종파투쟁'의 소용들이 속에서 북한 역사학계의 지도적 학자인 리청원 등은 반역사주의적 태도, 교조주의적 편향의 수정주의로 매도되어 숙청당하게 되면서 북한학계는 점차 김일성의 활동과 사상을 중심으로 서술방향을 바꾸게 된다.<sup>8)</sup>

## 2. 유일사관 형성기

북한 사학계의 변화의 둘째 단계는 당내 권력구조가 김일성중심체제로 안정적으로 자리잡는 것과 함께 유일사상이 체계화되는 '67년도 무렵까지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단계는 김일성의 절대화가 급격히 고조되면서 유일혁명사상이 강조되는 시기로 보인다.

조선노동당은 일련의 '반종파투쟁'을 전개하면서 반김일성세력을 제거하는

8) 1957년 초까지의 리청원의 학문적 활동상을 짐작할 수 있는 것으로는 『력사과학』 1957년 제1호에 실린 「학계소식: 리청원 저 <조선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를 위한 투쟁>에 대한 합평회/편집부」라는 글이 있다. 이후 『력사과학』 1960년 제6호의 「8·15 해방후 조선 력사학계가 걸어온 길」이라는 논문에서는 리청원을 “‘역사가’의 탈을 쓴 반당·반혁명 종파분자”로 매도하고 있다.

한편, 이를 사상투쟁과 경제건설사업에 연계시켜 전사회적, 전인민적 차원으로 확산시켜 나갔다. 이리하여 개인승배 움직임들이 다시 고조되기 시작하면서 1960년대 초부터 유일지도체계의 사상·문화적 기반을 본격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대중학습이 광범하게 조직되었다. 대중학습은 이 시기 부터 비공식적으로 '수령'으로 불리기 시작한 김일성의 이미지를 인민대중 속에 직접 삼투시켜 수령에 대한 무비판적이고 무조건적인 충실성과 경외감을 주된 담화로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갔다. 당시 대중학습의 교재로는 『항일빨치산참가자들의 회상기』<sup>9)</sup>와 김일성저작들이었으며, 세 책으로 간행된 이 회상기들과 문예작품들은 인민대중들에게 반제항일투쟁사를 김일성을 위시한 공산주의자들의 혁명투쟁운동의 역사로 가닥을 잡는데 이용했다. 그리고 제1차 당대표자대회에서 제시되었던 과업에 기초하여 1959년 초에 작성한 역사분야의 연구방향의 기본방침들은, (1)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사회주의 건설에 관한 연구 (2)조선인민의 혁명전통 및 애국전통에 관한 연구 (3)우리나라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에 관한 연구 (4)민족문화에 관한 연구 등으로 기본방향을 마련했다.<sup>10)</sup>

1960년대에 들어 위와 같은 연구의 기본방향에 부합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으로 먼저 혁명전통의 수립이라는 문제가 급선무로 부각되었다. 이에 부응하여 1930년대 김일성 중심의 항일유격대활동 회상기를 중심으로 전당 전인민적으로 대중학습이 체계적으로 전개되는 것과 동시에 김일성저작이 본격적으로 학습되기 시작하면서 역사학 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애국전통과 민족문화에 대한 연구는 고대사로 부터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연구대상 시기를 망라하고 있으나 북한 역사학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지 일관된 연구주제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그런데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북한 역사학계의 연구와 관련하여 이 시기에 주목할만한 연구업적으로는 근세사 부분에 대한 활발한 연구활동을 들 수 있다. 근세사에 대한 연구는 두 갈래의 연구토픽에 대한 논쟁과 토론에서 비롯되었다.<sup>11)</sup> 우선 근세사 시기구분에 대한 문제가 1957년 5월 과학원 역사연구

9) 1956년 3월, 10월, 그리고 1960년 6월에 걸쳐 세 책이 간행되었다.

10) 『력사과학』 1960년 제6호, 참조.

11) 현대사에 대한 연구논쟁으로는 해방후 북한지역의 사회주의 건설노선을 둘러싼

소 주최 아래 첫 학술토론이 열린 이후 10여회에 걸쳐 『력사과학』과 『교원신문』을 매개로 적극적인 지상토론들이 전개되었다.<sup>12)</sup> 그리하여 1962년도에 근세사 시기구분 문제에 대한 합의에 다다르기까지<sup>13)</sup> 여러 분야에서 학문적 논쟁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북한 역사학계의 르네상스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근세사 시대구분 문제와도 깊은 연관성을 가진 주제로 부르조아 민족운동 전반에 걸친 문제에 대해서도 10여 차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근세사 연구와 관련하여 부르조아 민족운동 연구의 총체적 귀결은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자본주의가 형성되기 전단계의 반침략·반봉건 투쟁은 본질적으로 부르조아 민족운동의 단계에 해당한다는 보편사적 구분을 적용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이 단계에서 시도되었던 ‘위로부터의 개혁’을 강조하는 부르조아 민족운동사에 연구방향을 설정한 이래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sup>14)</sup> 이러한 연구방법에 따르면 ‘아래로부터’의 반봉건·반외세 투쟁인 동학농민혁명이 부르조아 민족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제한적인 것으로

이른바 ‘과도기유형논쟁’이 제기된 바 있다. 송예정,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경제적 발전의 역사적 제조건과 맑스-레닌주의 이론의 몇가지 명제들에 대하여」, 『인민』(1956년 제11호); 최동화,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비자본주의적 발전 노정에 관하여」, 『경제연구』(1956년 제2호); 리석채,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경제적 발전의 역사적 제조건과 맑스-레닌주의 이론의 몇가지 명제들에 대하여」(『인민』, 1956년 제11호)에 대한 몇가지 의견, 『근로자』(1957년 제1호) 등의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송예정은 반당·반혁명 종파분자로 몰려 임해, 정일룡 등의 경제학자들과 함께 숙청당하였다. 이 사실은 「해방후 15년간의 경제학계의 발전」(『경제연구』, 1960년 제3호) 이라는 보고논문에 밝혀져 있다.

- 12) 근세사 시기구분에 대해 『력사과학』에 게재된 논문들로는, 리나영, 「조선근세사 시기구분에 대하여」(1957년 제4호); 박린형, 「조선근세사 시기구분에 관한 몇가지 의견」(1957년 제4호); 장문선, 「조선근세사 시기구분에 관하여」(1957년 제6호). 『력사과학』 1960년 제3호는 ‘토론: 조선근세사의 시기구분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제1부 김사익·김희일, 제2부 최기환, 제3부 김맹모, 제4부 박춘성·전석담의 논문들을 수록하고 있다. 그리고 김희일은 1962년 제1호와 '62년 제6호에서 다시 이 문제를 재론하였다.
- 13) 근세 및 최근세사 연구실, 「조선근세사 시기구분에 문제에 관한 학술토론 총화」, 『력사과학』 1962년 제6호.
- 14) 근세사를 ‘위로부터의’ 부르조아 민족운동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경향은 주체사관이 확립된 시기에 와서는 더욱 분명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의 북한의 연구에서는 ‘1884년(갑신)부르조아개혁운동’에 이어 ‘1894년(갑오)부르조아개혁’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농민전쟁을 일단 갑오개혁의 추동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부르조아 민족운동의 주체를 개화파로 설정하고 있다. 리종현, 『조선부르조아민족운동사』(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참조.

규정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맑스-레닌주의와 관련하여 1960년대의 북한사학계의 연구경향은 1960년대 중반까지는 소련을 수정주의로 규정하고 조선로동당 노선이 정통 맑스-레닌주의라고 천명하였기 때문에 역사학 연구분야를 비롯한 교과서와 대중학습용 교재에서도 맑스-레닌주의를 자연스럽게 표방할 수 있었다. 그후 중국은 모택동사상을 유일지도사상으로 받들면서 북한을 비난하는 등 문화혁명의 여파로 조·중간의 갈등이 고조되자 북한도 '우리당의 혁명사상'을 주장하면서 자주노선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다.<sup>15)</sup> 이 결과 사회·문화 및 사상분야에서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내용이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1967년을 분기점으로 맑스-레닌주의의 교양학습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1967년은 북한사회 전반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긋는 시기로 평가된다. 이미 6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김일성 절대화가 급격히 고조되고 '유일혁명사상'이 강조되면서 1967년 5월 4-8일에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제4기 15차 전원회의에서 다시한번 숙청바람이 휘몰아쳤다. 김일성 유일지도체계의 확립에 소극적인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한 마지막 작업으로, 이를 계기로 일인절대권력체계가 전사회적으로 구조화되고 개인숭배구조가 정착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

바로 이 시기에 역사학계의 주목할만한 현상은 『력사과학』의 발행이 정지되었고<sup>16)</sup>, 리나영을 비롯한 근대사연구의 중심인물들이 사라졌으며<sup>17)</sup> 민족사의 주요인물교양과 문화전통에 대한 강조도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어쨌든 북한의 60년대는 대소·대중관계에서 자주노선을 선택적으로 이용하면서 김일성 개인숭배 분위기가 북한사회의 전영역에 자리잡아 가던 시기로, 김일성주의가 체계화되어 가는 과정에 맑스-레닌주의적 언표도 함께 동반되었다. 다시말해 김일성주의야말로 정통 맑스-레닌주의의 구현이라는 주장 속에 한 동안 양자의 동거가 가능했던 시기였다고 하겠다.

15) 1966년 8월 12일자 『로동신문』 사설은 <자주성을 옹호하자> 라는 제목아래 소련과 중국을 비판하고 있다.

16) 『력사과학』은 1967년 제6호를 마지막으로 장기간 정간되었다가 1979년 주체사관의 확립과 함께 재발행되었다.

17) 이나영은 『조선민족해방투쟁사』(평양 1958)의 저자로 일찍이 근대사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가 정치범으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사실은 우연히 신상옥의 북한탈출기(『신동아』 1987년 11월호)에 나타나 있다.

### 3. 주체사관 확립기

북한 사학은 주체사관의 확립과 더불어 역사서술의 궤절단계가 시작된다. 북한사학계는 주체의 방법론에 기초한 『조선전사』 전 33권<sup>18)</sup>의 편찬사업을 완성함으로써 우리역사에 대한 전면적인 체계화작업을 마무리하였음을 밝히고 있다.<sup>19)</sup> 주체사관은 1980년대 이래 주체사상의 형성에 따른 ‘우리식 사회주의’의 기치 아래 역사학 분야에서도 이른바 ‘근로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역사관’을 확립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에 의하면 주체사관은 사회역사에 작용하는 물질세계의 일반적 합법칙성인 유물사관의 원리들을 시인하면서 역사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적 운동, 혁명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밝혀주는 인민대중의 사회역사관이라고 주장한다.<sup>20)</sup> 주체사관은 정신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과의 관계에 기초를 삼은 선행한 모든 사회역사관들인 관념론적 역사관이나 유물사관 등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사회적 운동에서 주체는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존재만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는 자주성이 사람의 생명을 이룬다는 이해에 기초하여 인류역사는 곧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규정한다.<sup>21)</sup>

주체사관과 마르크스주의와의 차이점을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에 의하면 생산력과 생산관계 발전의 합법칙성, 토대와 상부구조의 호상관계와 상부구조의 능동적, 결정적 역할, 사회적존재와 사회의식의 호상관계와 사상의식의 역할 등에 관한 리론들이 사람위주의 관점에서 새롭게 제기되고 심오히 해명”<sup>22)</sup> 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상부구조의 능동적, 결정적 역할의 강조는 분

18) 『조선전사』는 1975년 12월 12일 당시 김정일의 지시아래 집필편찬 작업이 이루어졌다. 1979년 제1권(원서편)이 출간되었고 1982년 김일성 70세 기념해에 맞춰 전권의 출간이 완료되었다.

19) 전영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나라 역사를 주체적으로 체계화하는데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 『력사과학』 1981년 제4호(특집100호).

20)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2, 『주체사상의사회력사 원리』(사회과학출판사, 1985), pp. 8-15.

21) 앞의 책, pp. 21-22.

명 유물사관의 기본명제와 배치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바로 이 점에서 주체사관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즉,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는 궁극적으로 역사발전과 노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과 그 후계자가 차지하는 절대적인 지위와 결정적인 역할에 관한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과학적인 해명을 준다”<sup>23)</sup> 는 결론을 도출하면서, 역사발전의 전과정을 수령과 그 후계자의 사상과 영도가 실현되어나가는 과정으로 본다는 수령중심사관을 확립하게 된다.

1980년대에 와서 역사분야에서 이룩된 연구성과들은 근로자들의 애국주의 교양과 계급교양에 적극 복무하고 있으며 민족성을 높이고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교양하는데 기여하고 있다<sup>24)</sup> 고 하는 한편, 연구성과를 크게 혁명역사연구분야와 민족사연구분야의 업적을 들고 있다.<sup>25)</sup> 『항일무장투쟁사』(전10권)와 『조선전사』 현대편(16-33)에 해당하는 혁명역사연구분야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교양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교과서”<sup>26)</sup>라고 자평하고 있다. 그리고 민족사연구분야의 업적으로는 인종기원문제, 노예소유자국가형성문제, 봉건사회발전의 합법칙성문제, 자본주의적관계의 발생발전의 문제, 근대부르조아개혁운동문제 그리고 현대사의 본질과 특성에 관한 문제 등을 우선적 과제로 삼았다고 한다.<sup>27)</sup> 이와 함께 민족고전연구사업으로 『리조실록』 번역본을 1989년 10월 331책으로 출간한 성과와 『팔만대장경』 해제본 25책을 1987년 2월에 출간하고 최근 번역본을 내게된 것을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역사학계의 큰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주체사관이 확립된 시기에 이르러 북한학계의 연구방향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 모든 연구는 김일성 교시를 연구방침으로 내세우면서, 현대사

22) 앞의 책, p. 26.

23) 앞의 책, p. 26.

24) 전영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력사과학이 걸어온 자랑찬 40년」, 『력사과학』 1988년 제3호.

25) 리영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1980년대에 력사과학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 『력사과학』 1990년 제1호.

26) 『조선전사』 16-33권 출판에 즈음하여,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승리해온 우리 인민의 자랑찬 투쟁과 창조적 력사총서」, 『력사과학』 1982년 제2호.

27) 양형섭, 「력사연구에서 주체를 더욱 철저히 세우는것은 력사과학을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담보」, 『력사과학』 1991년 제2호.

에 큰 비중을 두고 김일성과 그의 가계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리하여 역사는 사실에 토대를 둔 해석이라기 보다는 정치사회적인 체제목적에 부합 되도록 도구화되었다.

주체사관에 와서 민족사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말았다. 더욱이 북한의 역사 서술 부분에서 특히, 현대사는 우리학계의 연구방향과 거의 동떨어진 것으로 나타나며 역사적 사실의 불일치와 왜곡이 더욱 심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민족사 연구분야에서 남북한 역사학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영역은 폭넓게 존재한다. 우리 역사의 근대사 부분까지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대에 대한 북한학계의 연구는 충분한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 이런 점에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북한학계의 연구업적에 대한 검토는 민족사에 대한 남북한 역사인식의 공통성을 발견할 수 있는 영역일 뿐만 아니라 민족의식을 일깨울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무척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하겠다.

### III. 동학농민혁명의 연구성과 및 평가

#### 1. 제 1기: 민족민주혁명과 '농민전쟁'의 교훈

해방 공간의 정치적 혼돈 속에서 자주독립과 민주개혁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사에 대한 관심은 당연한 현실인식의 문제로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성격규정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일찍이 박헌영은 유물사관과 계급투쟁에 입각하여 동학농민혁명을 분석하면서, '동학농민란'을 '3·1운동' 그리고 '10월 인민항쟁'과 함께 한민족으로서 길이 자랑할 만한 3대 민족투쟁으로 꼽았다.<sup>28)</sup>

박헌영은 「동학농민란과 그 교훈」이라는 논문에서 먼저 19세기 후반의 조선봉건사회의 정치사회적 상황의 분석을 시도하면서, 당시 봉건전제를 청산

28) 박헌영은 「十月人民抗爭」(1946년 11월 13일), 「三一運動의 意義와 그 敎訓」(1947년 2월 24일), 「東學農民亂과 그 敎訓」(1947년 4월 22일)의 세 논문을 집필했다. 이 세편의 논문은 『東學農民亂과 그 敎訓』이라는 제목으로 解放社에 의해 출간되었으나 출간년도가 밝혀져 있지 않다. (김남식·심지연 편저, 「제3장 박헌영의 역사인식과 대미관」, 『박헌영노선비판』(세계, 1986) 참조)

하고 부르조아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할 만한 진보적인 혁명세력 즉, 부르조아 계급이 독립된 계급으로 출현할 만한 정도의 경제적 발전이 아직 없었던 사실을 전제한다.<sup>29)</sup> 계속하여 그는 당시 가장 큰 전국적인 범위의 '인민 반란'이 '동학란'으로, 이는 동학교도들이 투쟁의 선두에 섰기 때문에 '동학란'이라고 부르게 되었으나 이에 참가한 농민을 '동학농민군' 또는 '혁명군'으로 불렀다고 하면서, 이를 사실은 일종의 '농민전쟁'이라고 주장했다.<sup>30)</sup> 나아가 농민전쟁 실패의 원인을 네가지로 분석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농민전쟁을 지도한 전위가 진정한 혁명당이 아니라 종교단체였다는 점을 들었으며, 전봉준을 위시한 지도자들이 지배계급의 횡포에 반대하여 투쟁했지만 충군애국을 주장한 군주주의자였다는 데서 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sup>31)</sup>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박헌영의 분석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1894년의 일대 사건'의 성격규정을 이른바 '농민전쟁'으로 파악했다는 사실이다. 이와 함께 종교단체의 한계 즉, 종교적 성격이 민중투쟁의 성격을 왜곡시킨다는 점을 지적한 점은 이후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북한사학계의 문제제기와 연구방향 설정에 비해 시기적으로 상당히 앞서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sup>32)</sup> 그런데 농민전쟁론이 북한사학계의 정설로 자리잡았다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평가와 실패교훈 등의 지적은 전석담의 논리와도 일맥 상통한다.

전석담은 '동학농민란'을 '이조 봉건사회의 총결'로 규정했다.<sup>33)</sup>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이 연구는 당시의 연구수준을 한층 끌어올려 본격적인 연구의 길을 열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50년대 이후 북한학계의 연구방향의 틀을 마

29) 『東學農民亂과 그 敎訓』(解放社), p. 7.

30) 앞의 책, p. 8.

31) 앞의 책, pp. 14-18.

32) 농민전쟁론이나 반봉건투쟁에서 종교적 성격의 한계에 대한 분석은 박헌영의 독창적인 시각이라기 보다는 맑스-엔겔스의 연구방법에 따른 유물사관의 일반적인 접근틀의 적용으로 이해된다.

33) 전석담, 『조선경제사』(박문출판사, 1948년 12월 1일) 참조. 『조선경제사』는 방법론적 모색과 사적 접근을 시도한 전3부로 구성되었다. 제1부에서는 조선경제사 연구의 기초적 제문제와 방법론적 고찰을 검토한 다음, 제2부에서는 조선봉건사회에 대한 예비적 분석을 거친후 곧장 봉건모순의 총체적 귀결점인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마지막 제3부에서는 일제하 조선사회경제사를 검토하면서 3·1운동에 대한 분석으로 마무리한다. 이 연구에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사와 민중운동을 연계시켜 접근한 점에서 주목되는 연구업적으로 평가된다.

련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동학농민란의 역사적 전제로서 당시의 국내외정세를 분석한 바탕 위에서 동학농민란의 경과를 살펴보고 있다. 이 가운데 執綱所의 설치와 활동에 대한 언급은 주목할만하다.

그는 동학군이 일종의 民政機關으로서 집강소를 설치했다고 보았다.<sup>34)</sup> 민정기관으로 규정한 집강소의 성격에 대해서 지적하기를, 구래의 지배기구를 철저히 파괴하고 그 위에 세워진 새로운 인민적 정권형태가 못되고, 재래의 지배기구를 거의 그대로 답습하여 수령 대신에 집강이 들어선데 불과하였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그 발전성을 내포한 인민적, 민주주의적 정권의 맹아였다고 본다면 지나친 평가라고 하면서 집강소의 혁명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sup>35)</sup>

한편 동학농민혁명의 실패이유를 주객관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주관적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지도하는 전위가 진정한 혁명적 당으로 나서지 못했으며 동학당은 혁명당이 아니라 종교적 인생관과 정치적 불평과 미신적 관습으로 교도를 끌었던 종교단체에 불과했다고 지적하면서 동학농민란은 독립적 진보적 역할을 하는 진보적 계급의 지도와 원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다고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남북접의 활동과 정치적 성격에 대한 지적은 지도층의 역할과 관련하여 동학당의 내부구성의 차별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레닌의 이론을 적용하여 조직문제와 전략·전술적 차원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실패이유를 지적하는 것과 더불어 토지혁명의 구호와 민주정부 수립과 정치적 자유 등의 요구를 볼 수 없었다는 점에서도 비판하였다. 이와 같은 비판적 지적은 1894년 당시의 농민운동의 발전 수준에 비취볼 때 어느 면에서는 혁명이론의 최대강령을 적용하여 분석한 방법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동학농민혁명의 실패원인을 이처럼 비판적으로 분석한 전석담의 입장은 당시 해방후의 당면한 자주독립과 민주개혁의 과제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교훈을 도출하고자한 의도로 이해된다.

다음으로 실패의 객관적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반봉건적 민주주의 운동의

34) 앞의 책, p. 194.

35) 앞의 책, pp. 195-196.

지도적 계급세력이 성장할 만한 경제적 정치적 발전이 아직 미약하다는 사실에서 찾고 있다. 나아가 농민폭동은 프롤레타리아 혹은 기타 혁명계급의 원조와 지도없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 철칙임을 확인시킨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은 이른바 '종교적 外飾(外皮)'에도 불구하고 봉건 제도를 반대한 농민폭동으로 민주개혁을 위한 대중투쟁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였다.<sup>36)</sup>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박헌영의 논문과 전석담의 연구는 그후 이 분야에 대한 북한학계의 연구방향에 큰 가닥을 잡아 놓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이미 '동학란'의 성격규정 문제에서 '농민전쟁'으로 접근하는 입장, 집강소의 정치적 의미의 강조 그리고 종교로서의 동학과 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종교적 외식'의 문제 여기에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평가와 실패교훈 등은 더욱 구체적으로 해명되어야 할 주요한 연구과제로 부각되었다.

## 2. 제 2기: 근대민족운동과 '갑오농민전쟁'

북한사회주의체제가 전후복구 과정을 거쳐 정치적 안정기를 맞이하는 시기에 즈음하여 학문·예술 분야에서도 민족사와 민족문화 창달에 대한 창의적인 관심들이 나타났다. 이 시기에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연구와 관심은 역사학술지인 『역사과학』을 통한 활발한 연구활동을 비롯하여 본격적인 관심이 대두되었다.<sup>37)</sup> 이와 함께 단행본인 『조선근대혁명운동사』, 대중학습과 교양을 위해 간행한 『조선의 명인』 그리고 『역사사전』의 편찬 등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여기서는 학술지인 『역사과학』을 매개로 제기된 논쟁점을 통해 동학농

36) 앞의 책, pp. 203-208.

37) 『역사과학』에 발표된 논문과 토론을 통한 연구성과들을 발표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토론: 갑오농민전쟁과 동학/오길보」, (1959년 제3호) ② 「토론: 갑오농민전쟁과 동학에 대하여, 집강소에 대하여/오길보」, (동년 제5호) ③ 「토론: 1894(갑오)농민전쟁사 연구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김사익」, (동년 제5호) ④ 「토론: 갑오농민전쟁과 동학과의 관계에 대하여/김중식」, (동년 제5호) ⑤ 「학계 소식: 갑오농민전쟁에 관한 과학 토론회」, (동년 제5호) ⑥ 「갑오농민군의 군사예술/오길보」, (1960년 제3호) ⑦ 「1894-1895년 (갑오)농민전쟁의 성격에 대하여/오길보」, (1964년 제3호) 그리고 주체사관이 확립된 시기에 와서는 ⑧ 「1893년 보은집회투쟁의 성격에 대하여/정창규」, (1984년 제3호) 등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민혁명에 대한 북한학계의 연구방향을 살펴보도록 하자.

### ‘농민전쟁’론 및 ‘종교적 외피’설

1894년을 전후한 일대사건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 역사적 사건의 성격을 규정짓는 문제와 관련된다. 북한학계는 이를 처음부터 ‘갑오농민전쟁’ 또는 ‘1894(갑오)농민전쟁’으로 명명하였다. 즉, 년대를 干支式 또는 서기년도로 표현하는 것은 1894년을 전후한 일대사건에 대한 ‘동학’의 의의와 역할을 일단 탈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런 점에서 바로 농민전쟁과 동학과의 관계에 대한 논쟁과 토론이 가장 먼저 제기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지적해야 할 사항은 ‘농민혁명’으로 접근하는 시각 보다는 일반적으로 ‘농민전쟁’으로 파악하는 데 모두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농민전쟁론은 어떠한 이론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는가에 대해 약간의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농민전쟁’의 이론적 근거는 전자본제사회에서 발생한 반봉건 농민 폭동의 최후의 형태로서 독일농민봉기를 연구한 F. 엥겔스의 연구방법을 수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엥겔스는 그의 연구에서 16세기 독일의 반봉건 농민봉기를 역사발전의 단계에서 부르조아혁명으로 규정하였다. 이 시기의 농민봉기가 비록 반자본주의적인 목표와 행동동기 및 정서가 완전히 불식된 상태에서 전개된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농민봉기를 일단 반봉건투쟁의 맥락에서 파악하였다. 이와 함께 엥겔스는 16세기 독일의 농민봉기·농민반란을 혁명의 전통 속에서 파악하여, 이 시기의 농민봉기의 성격을 ‘혁명’으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농민전쟁’이라는 용어는 엥겔스가 근대 독일의 혁명적 전통을 부각시키기 위해 16세기 독일의 농민봉기에 대한 연구를 유물사관의 입장에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 가운데 그동안 신문에 발표한 일련의 논문을 출간한 데서 비롯된다. 이때 당시 독일사학계의 농민반란에 대한 연구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던 ‘농민전쟁’이라는 용어를 차용하여 『독일농민전쟁』이라는 표제로 출간하였다.<sup>38)</sup> 이후 유물사관의 계승적 입장에서는 반봉건 농민봉

38) F. 엥겔스가 독일의 농민봉기를 연구하게 된 동기는 ‘독일민족의 혁명적 전통’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임을 이 분야의 논문을 처음 게재한 「신라인신문」 *Neue Rheinische Zeitung* (Hamburg 1850)의 첫머리에서 밝히고 있다. 그리고 『독일

기·농민반란을 역사발전의 단계에서 부르조아혁명으로 파악하는 한편 이를 '농민전쟁' *Peasant war*으로 명명하는 것이 전통적인 접근법으로 되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전제한다면 1894년의 반봉건 농민봉기를 일찍이 유물사관의 입장에서 파악한 박헌영의 논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학계에서 처음부터 '농민전쟁'으로 규정한 점에 대해서 아무런 의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업적을 남긴 오길보는 「갑오농민전쟁과 동학」이라는 토론논문에서 핵심적인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그후에도 이 분야에 대해 꾸준한 연구성과를 제출하였다. 그는 먼저 자기의 입론에 대한 평가를 비판하는 논문에서 동학과 관련하여 '갑오농민전쟁'을 추동한 사상과 조직의 문제를 다시한번 짚었다.

갑오농민전쟁이 동학도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보는 견해에 비판을 전개하였다. 즉 동학사상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면서 마치 동학사상이 농민봉기의 사상적 기치와 같이 되었다는 견해와 동학의 조직이 갑오농민전쟁을 확대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조직체로 되었다는 견해들에 대한 비판을 하였다.<sup>39)</sup>

그리하여 그는 '갑오농민전쟁'을 동학과의 관련을 부정하면서 19세기 후반 이래 끊임없이 일어난 인민봉기의 계속이며 발전으로 보았다.<sup>40)</sup> 그리고 농민군지도자 전봉준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전봉준을 동학의 접주로 보는 기왕의 견해에 대해 그를 접주로 볼 만한 확고한 근거가 없는 까닭에 동학도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종교적 외피' 문제와 관련하여 '갑오농민전쟁'을 기계적으로 종교적 외피를 썼다고 하는 것은 교조주의적 견해라고 비판하면서 종교적 외피설을 거부하였다.<sup>41)</sup> 오길보의 연구는 농민전쟁의 사

농민전쟁』 *Der deutsche BauernKrieg* 의 서문에서는 '농민전쟁'이라는 용어는 19세기 독일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용어로서 농민반란과 토마스 뮌쯔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W. 칩머만의 『대농민전쟁사개설』 *Allgemeine Geschichte der grossen BauernKrieges* (1841-43년, 3 Vols.)에서 차용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MEW., Vol. 7/『독일농민전쟁』, 허교진 역, 소나무 1988)

39) 『역사과학』 1959년 제3호에 게재한 토론논문의 요지를 제5호에 요약하고 있다.

40) 이러한 입장은 1980년대 이래 우리학계의 연구방향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상과 조직의 측면에서 동학과 관련성의 문제, 지도부의 동학관련설 그리고 반봉건 농민봉기에 덧씌워지는 종교적 외피설 등 핵심적인 문제들을 지적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성격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하였다. 이런 점에서 그후의 연구는 오길보가 제기한 문제를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김사익은 1894년 농민전쟁사연구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방법론적 문제와 동학과 관계 및 농민전쟁의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시도하였다. 첫째, 농민전쟁의 역사를 전 시기와의 역사적 연계 속에서 발전적으로 고찰해야 함을 역설하면서 특히 1893년 4월의 보은취회를 종전의 민요 형태의 지방적 분산적 봉기로부터 대규모적인 농민전쟁으로의 이행에 주요한 계기를 열어놓은 역사적 사건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둘째, 동학과 관련성 문제는 농민전쟁의 전 과정을 통하여 복잡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았다. 즉, 양자의 관련성을 어느정도 인정하였다. 셋째, 농민전쟁의 성격은 부르조아 민족운동의 일환으로서 갑신정변 이후 한 계단 더 높은 단계로의 발전으로 규정하였다. 넷째, 종교적 외피 문제에 대해서는 중세 구라파나 중국의 농민전쟁 시기와는 달리 종교적 사상인 동학이 혁명동력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로 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종교적 외피론을 비판하였다.<sup>42)</sup>

김증식은 반침략 반봉건 투쟁의 지도층의 성격과 관련하여 당시 농민들의 계급적 의식의 제한성과 투쟁을 지도할 만한 선진적 계급의 역량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조선봉건사회의 중앙집권적 국가로서의 역사적 특성은 구라파의 분권적 봉건국가처럼 전국적 농민전쟁이 농민들 속에 깊이 침투된 종교적 조직의 힘이 없어도 능히 전국적 규모의 투쟁이 일어날 수 있는 역사적 전제가 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보은취회 때까지는 동학도가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갑오농민전쟁은 동학의 종교적 외피도 쓰지 않았으며 조직의 힘이나 동학의 사상과는 본질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단정하였다.<sup>43)</sup>

41) 『역사과학』 1959년 제5호.

42) 『역사과학』 1959년 제5호.

43) 『역사과학』 1959년 제5호.

### 집강소

전석담의 연구에서 집강소의 정치적 의의가 발견되었다면, 오길보의 연구에서는 집강소의 성격이 한층 구체적으로 해명되었다. 앞에서 잠시 검토한 바와 같이 전자는 집강소를 民政機關으로 이해했던 데에 비해, 후자는 집강소를 농민군이 조직한 軍政으로 파악하였다. 집강소의 기원은 초기 전투과정에서 농민군이 쟁취한 성과를 공고히하기 위해 지방관료들에게 강한 통제와 제재를 가하는 과정에서 군정 형태로 나타났는데, 이 군정 형태가 전주화약을 계기로 집강소로 교체되어 출현했다고 한다. 이처럼 집강소의 최초의 기원은 군정으로 지방자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전주화약은 집강소의 기능을 지방자치기관으로 부터 자문기관으로 약화시킨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집강소는 자문기관으로서 활동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기관으로 사업하였다고 주장하였다.<sup>44)</sup>

집강소의 기구로는 집강을 위시하여 서기, 성찰, 집사, 동몽 등의 부서들과 각각 해당 사업내용을 분석하여 집강소의 역할과 성격에 대한 이해를 체계화시켰다. 그리고 농민군은 별도로 많은 수는 아니었으나 정규군의 형식으로 군대가 있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후 그의 연구에서 보다 발전된 형태로 분석하게 된다. 나아가 이러한 집강소의 조직적 역할을 통해서 제2차 농민군 봉기인 대일전을 준비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시각의 연장선 위에서 그는 농민군의 투쟁활동과 관련하여 전봉준이 지도한 갑오농민군의 탁월한 군사전략을 예술적 차원으로 승화시켜 농민전쟁의 전과정을 상세하게 분석한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sup>45)</sup>

마지막으로 집강소의 평가문제에 대해서 그는 농민군의 혁명적인 자치기관이었던 집강소와 동학의 반동적인 종교적 기관이었던 大都所를 혼동하는 경향에 썩기를 박았다. 또한 집강소를 “인민들의 창의에 의하여 조직된 <인민정권의 맹아적 형태>로 출현하였다”<sup>46)</sup>는 평가 - 이는 전석담의 논리를 수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 를 비판하였다.

44) 오길보, 「갑오농민전쟁과 동학에 대하여; 집강소에 대하여」, 『력사과학』 1959년 제5호

45) 오길보, 「갑오 농민군의 군사예술」, 『력사과학』 1960년 제3호

46) 『조선통사』 하권(1958년) p. 94.(상권은 1956년에 출판)

논문을 통한 집강소에 대한 연구성과는 그후 단행본으로 출간된 『조선근대혁명운동사』에 대부분 반영되었다. 여기서는 집강소를 ‘군정’ 형태에서 발전된 것으로 전제하고 봉건정부의 지방통치기구가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서 집강소 자체가 사실상의 정권기관의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나타난 지방자치기관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고 서술하였다.<sup>47)</sup>

한편 1960년대 초반 무렵에 인민들에게 애국전통과 찬란한 문화유산을 교양하여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분돋우기 위한 노력들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애국명장들의 공적과 과학 문화 예술 분야에서 창조된 업적들과 애국주의 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작업의 결실로 『조선의 명인』을 출간하였다.<sup>48)</sup> 이 명인전에서는 전봉준을 1880년대 이후 꼬리를 물고 일어난 민란들과 특히 우리나라의 첫 부르조아 개혁운동인 갑신정변의 영향을 받은 지도자로 서술하며서, 그의 부르조아 개혁에 관한 지향성이 그후 갑오경장의 추진력으로 되었다고 평가하였다.<sup>49)</sup>

북한학계에서는 이 즈음 갑오농민전쟁이 갑오경장을 끌어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갑오경장을 갑오농민전쟁에서 인민들이 제기한 혁명적 요구를 반영한 역사적 산물이며 혁명적 계급투쟁의 공고한 결실로 파악하여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나갔다.<sup>50)</sup>

민족근대사의 방향정립이라는 과제에 부응한 갑오농민전쟁 연구는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갑오농민전쟁 70주년과 전봉준 탄생 110주년을 기념하는 오길보의 논문에서 한층 심화 발전된 모습으로 나타났다.<sup>51)</sup> 그는 이 분

47)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편, 『조선근대혁명운동사』 (평양, 1961; 서울, 한마당, 1988), pp. 85-86. 이 책의 발간과 관련한 서평 및 서적 해제로는 전석담·김희일, 「조선인민의 근대혁명운동사 연구에서 새로운 성과」, 『역사과학』 1962년 제3호, 참조.

48) 김일성 종합대학 역사연구소 편, 『조선의 명인』 (상)(하) (과학원 출판사 발행, 1962.11 ; 조선청년사 번인, 1963.8). 이 책은 기원전 시기로부터 19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명인 78인의 업적을 밝히고 있다.

49) 『조선의 명인』 (하), pp. 346-357.

50) 리유백, 「1894년 <<갑오개혁안>>의 채택에 대하여」, 『역사과학』 1961년 제6호; 탁병채, 「갑오경장(甲午更張)의 역사적 전제 조건」, 『역사과학』 1963년 제6호 등, 참조.

51) 오길보, 「1894년 - 1895년 (갑오)농민전쟁의 성격에 대하여」, 『역사과학』 1964년

야에 대한 수 차례의 연구발표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갑오농민전쟁의 성격 규명을 시도하였다. 이 글에서 농민군이 제기한 투쟁구호를 분석하는 가운데 경제적 요구에서 균등사상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를 정다산의 사상에다 연계하였다. 즉, 정다산은 균등사상을 주장하는 데 그쳤다면, 전봉준은 그것을 대중투쟁과 결부시켜 투쟁목적으로 전환시켰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관심을 끄는 새로운 점은 전봉준의 사상 형성과정에 대한 시각으로 후기 실학사상가들의 진보적 사상, 특히 정다산의 진보적이고 애국적인 사상의 계승을 강조한 점이라 하겠다.<sup>52)</sup>

또한 이와 다른 차원에서 전봉준은 토지의 균등분작과 자유민권사상 등의 근대적 사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에서 갑신정변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힌다. 뿐만 아니라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등의 농민군지도자들이 모두 '개화'를 지향하였다고 주장하였다.<sup>53)</sup> 그런데 이처럼 농민군지도층의 사상을 갑신정변과 개화사상에 접맥시키는 입장은 그후 근대민족운동사와 관련하여 갑오농민전쟁의 역사적 성격을 개화와 중심의 부르조아 민족운동사의 큰 흐름 위에서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주장이다.

1960년대 후반기로 부터 1970년대 초반에 이르러 주체사관의 형성을 모색하고 있던 과도기적인 시기에 역사학 분야의 또다른 업적으로 『력사사전』이 출간되었다.<sup>54)</sup> 이 사전은 동학, 전봉준, 1894년(갑오)농민전쟁 등의 항목을 수록하고 있는데, 특히 동학에 대한 평가는 농민전쟁과의 관련 속에서 파악하

### 제3호.

52) 오길보는 후기 실학사상 가운데 정다산 사상과의 연계 문제를 밝히는 자료로 『康津邑誌』의 <名僧草衣傳>의 일절을 인용하고 있다. <명승초의전>에는 정다산의 혁신적 사상이 그의 詩友이자 道交를 가졌던 초의를 통해 전봉준 김개남 일파에게 전수되었을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내용이 전해오고 있었다. 『강진읍지』의 <명승초의전>의 내용은 일제 강점기인 1930년대 부터 다산학의 연구에 큰 업적을 남긴 崔益翰의 발견을 통해 소개되었다. 오길보는 정다산 연구를 집대성한 최익한의 『실학파와 정다산』(평양, 1955; 서울 청년사, 1989)의 연구성과를 수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53) 오길보, 앞의 논문, 참조.

54)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력사사전』(I)(II)(1970. 12. 1). 이 사전의 편찬방향을 밝히는 머리말에서 김일성을 '천재적 맑스-레닌주의자'로 천명함과 동시에 '주체성의 원칙에 서서 당성, 노동계급성'을 강조하고 있는 사실에서 나타나듯이 이 시기에는 아직 '주체성' - 사상적 내용이 채워진 상태는 아니지만 - 이 '맑스-레닌주의'를 추방한 단계는 아니었다.

고 있지만 그 역사적 의의를 전면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여기서는 동학을 낡은 봉건적 성리학과 천주교를 반대하는데 일정한 작용을 하였으나 그 자체의 종교적인 교리와 종교의식은 극히 미신적이며 몽매한 것이었다고 하면서, 농민들의 계급적 각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동학의 영향은 약화되었다고 평가하였다.<sup>55)</sup>

지금까지 근대민족운동사에서 차지하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북한학계의 연구성과를 검토하였다. 이 단계에서 제기된 문제의식과 연구방향은 동학농민혁명을 비롯하여 근대민족운동사 연구분야의 지평을 활짝 열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후의 연구는 이 시기의 연구성과를 집약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 3. 제 3기: '갑오농민전쟁'의 역사적 의의

『조선전사』의 <근대편 1>에서는 1860년대부터 1894년 갑오농민전쟁 때까지 반식민지적 위기를 타개하고 민족적 자주권을 수호하고 근대화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서술의 기본 방침으로 내세웠다. 근대사 부분에 대한 북한의 해석은, 이를 부르조아 민족운동사의 범주내에서 바라보는 데에 특징이 있다. 부르조아 민족운동사의 단계적 발전에 대한 접근으로 갑신정변을 첫 '부르조아 혁명'으로 성격지우고, 그후의 혁명적 기세가 대규모적 농민전쟁으로 일어났으며 그리고 농민전쟁의 영향 밑에서 봉건통치층의 일부 혁신관료들이 '부르조아 개혁'을 실행하였다고 파악한다.<sup>56)</sup> 어쨌든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는 이제 『조선전사』의 <근대편 1>에 와서 '60년대 이래 지금까지의 연구성과가 집대성되었으며 이후에 크게 변화된 내용은 발견하기 어렵다.

1894년(갑오)농민전쟁에 대한 이 책의 서술은 고부농민폭동의 시작으로부터 전주화약을 비롯하여 일제침략에 반대하여 일어난 제2차 기포에 이르기까지 농민전쟁의 전 과정을 포괄하고 있다. 농민전쟁의 과정에 대한 서술은 객관적 사실에 토대를 둔 것으로 우리 학계의 연구와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여기서 다시 동학 문제를 해명하는 입장으로 농민군 지도부가 동학의 지방조직

55) 『력사사전』(I), pp. 544-545.

56) 『조선전사』13 <근대편 1> 머리말,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0), pp. 6-7, 289-299 참조.

을 이용한 사실을 들고 있는데, 이런 점으로 미루어보아 이 단계에 와서는 동학의 조직과 사상과의 관련성을 어느정도 긍정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것을 볼 수 있다.<sup>57)</sup> 이와 더불어 19세기 후반기 철학사에서 진보적인 철학사상 조류를 동학사상, 위정척사론, 개화사상, 농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농민전쟁 참가자들의 사상으로 나눈 가운데, 동학사상은 근대적인 반봉건·반침략적 측면과 함께 범신론적·관념적인 것이 뒤섞였던 한계를 보였지만 근대사상사의 발달을 동학사상의 발생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였다.<sup>58)</sup>

그러나 농민전쟁과 동학과의 관련성에 대한 문제는 '80년대 중반에도 지속적인 연구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보은집회투쟁을 연구한 논문에서는, 이를 교조신원운동이 아니라 반침략·반봉건적 성격을 띤 투쟁으로 동학하층이 동학에 대한 종교적 환상에서 벗어나 보은집회투쟁을 통하여 계급적·민족적 각성의 계기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요컨대 이 투쟁은 동학의 '사상'과는 무관하지만 종교 '조직'의 역할은 긍정적으로 파악하였다.<sup>59)</sup> 이로 보아 동학 문제에 대한 북한학계의 입장은 유물사관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사상 및 제관념 형태의 규정력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입장으로 이해된다.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와 평가에 대한 문제는 역사적 사실기술의 차원과는 달리 북한학계의 연구방향과 역사서술의 원칙이 가장 뚜렷하게 반영된 부분이라는 점에서 항상 우리 학계의 입장과 비교적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사회에서 역사학의 존재이유는 당면한 실천적 과제에 대한 교훈을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의지를 고취시키는 데에 있다. 이런 까닭에 동학농민혁명의 실패원인을 밝히는 문제와 함께 역사적 의의를 규정하는 문제야말로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고 하겠다.

『조선전사』는 농민전쟁의 실패요인은 바로 농민전쟁의 기본담당자였던 농민들 자신의 사회계급적인 제한성과 관련되어 있었다는 사실에서 출발하고 있다.<sup>60)</sup> 또 다른 실패의 주관적 요인으로 전쟁과정에서 드러난 우유부단성과

57) 동학 하층교도들과 상층교인들의 계급적 입장의 차이에서 전자의 대중적인 종교 운동은 반봉건투쟁과 결부될 수 있었다고 보면서 동학의 지방조직의 의미를 지적하였다. 앞의 책, p. 193.

58) 앞의 책, pp. 400-403 참조.

59) 정창규, 「1893년 보은집회투쟁의 성격에 대하여」, 『력사과학』 1984년 제3호.

60) 앞의 책, p. 349.

완만성 그리고 열악한 무장장비와 군사전략전술의 미숙성이 실패의 주된 요인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조선사회발전의 낙후성으로 말미암아 선진계급의 영도를 받지 못한 것이 실패의 주된 요인의 하나였다고 해명하면서, 농민의 사회적 해방과 자유의 실현은 반드시 선진적인 노동계급의 영도를 받아야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sup>61)</sup>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진계급의 영도'는 북한현대사에 있어서 식민지시대의 민족주의운동으로 부터 공산주의 운동에로의 방향전환을 위한 투쟁과 그후의 사회주의 조국건설과 오늘날의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확립에 전과정에서 관통하는 이른바 '수령의 영도론'을 이끌어 내기 위한 주체사관의 근대사 부분에서의 적용이라는 측면을 상기시키는 문제라고도 하겠다.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지적은 반외세 투쟁대열에서 부르조아세력을 대표하는 정치적 역량인 혁신세력과 농민대중 사이에 동맹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이다. 그러나 혁신세력의 민족적 입장과 양반 출신관료로서의 계급적 입장 사이의 동요로 인하여 농민군과 동맹을 이룩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문제는 부르조아 민족운동사에서 갑오경장의 주체세력을 혁신관료세력으로 즉, 긍정적인 정치세력으로 보는 북한역사학계의 입장에서는 계급적 모순에도 불구하고 반봉건·반외세에 대한 정치연합의 역사적 당위성을 반영한 시각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살피는 부분에서 '갑오농민전쟁'은 혁신세력의 개혁활동을 가능케하여 마침내 부르조아개혁인 갑오개혁은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보는 한편, 그후의 반침략·반봉건투쟁과 19세기 말 20세기초 거족적으로 일어난 반일의병투쟁은 '갑오농민전쟁'의 투쟁역량 아래 전개되었다고 하면서 역사적 평가의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sup>62)</sup>

61) 앞의 책, pp. 350-351 참조.

62) 앞의 책, pp. 353-354 참조.

#### IV. 결론

북한은 해방후 비교적 일찍부터 역사학 분야의 연구방향을 정립하는 문제에 많은 관심을 쏟았다. 민족사와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상당한 열정을 보였으며 그 결과 식민사관 극복의 문제에 따르는 진통은 쉽게 해소될 수 있었다.

지금까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북한 학계의 연구성과를 검토하면서, 북한은 초기 사회주의국가의 건설단계부터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올바른 민족사 확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러한 노력이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도 꾸준히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 대한 연구성과를 통해 196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는 우리 역사의 모든 분야에 걸쳐 선구적인 역사의식과 다양한 주제를 연구과제로 삼아 상당한 연구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던 모습을 살필 수 있었다. 이 때까지는 역사적 사실에 토대를 둔 연구방법이 중시되고 있었으며, 참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활발한 연구활동과 토론이 제기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북한학계는 학문과 문화 전반에 걸쳐 최고도의 전성기를 맞이한 시기로 여겨진다.

이 즈음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에서 주된 연구방향과 쟁점으로 부각된 것들은 앞에서 살펴 보았다. 여기서 농민전쟁론에 대한 북한학계의 일치된 입장은 이미 민족민주혁명이라는 정치적 과제의 실천과 관련된 문제제기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밝혔다. 이와 함께 동학사상과의 관련성의 문제, 집강소의 역할과 성격에 대한 분석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의 성격과 역사적 의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문제 등은 1980년대 이래 우리학계의 연구방향과 문제영역의 설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북한학계는 19세기 후반 근대민족운동사에서 사상과 운동의 측면에서 동학농민혁명, 개화운동, 위정척사운동 사이에 관련된 3자간의 상호관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해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다. 계급적 기반과 근대변혁운동의 지향점을 달리하는 세 차원의 민족운동을 모두 '반외세 자주화투쟁'의 역사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입장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현실적이고 당면한 과제와 결코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1980년대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로 주장하는 주체사관이 확립된 시기에

이르러서는 민족사와 민족문화 전반에 대한 논점과 서술체계가 상당히 획절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사 부분까지는 남북한 역사학의 연구방향의 근본적으로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특히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북한학계의 연구업적의 검토를 통해 민족사와 민족문화 부분에서 남북한이 만날 수 있는 공통의 영역을 발견할 수 있는 점에서 동학농민혁명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